#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5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정부의 재정중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간 동결되었던 0~2세 보육료가 2015년 3% 인상되었고, 2016년에는 6%가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그간 보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부모 부담 완화라는 정책 기조하에 어린이집보다는 부모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무상보육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연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보육현장에서는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정부도 국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를 추진하여 보육료 인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3년부터 추진된 세 번째 보육비용 산출 과제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보육의 질 제고 관점에서 보육비용 산정을 위한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들 연구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되, 중앙정부 지원 외에 시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비나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보육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육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항목을 선정하여 시도별 보육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정부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전국 어린이집 원장님과 한국어린이 집총연합회 임원진과 분과장님, 담당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 차 례

요 약1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10         4. 선행연구       13
Ⅱ.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
Ⅲ. 어린이집 재정운영 현황
IV. 보육비용 산정 기준       84         1. 인건비       84         2. 급간식비       90         3. 교재교구비       99         4. 관리운영비       104         5. 시설비       108
V. 보육비용과 정책 과제       112         1.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12         2.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17         3. 정책 과제       122         4. 맺는말       125

참고문헌	126
Abstract ····	129
부록1	131
부록 1. 부록 표 1	133
부록 2. 연령별 교재교구 목록 및 단가(2015년 기준)	1 <b>7</b> 9
부록 3. 조사표	207

# 표 차례

〈班 I-3-1〉	어린이집 조사 내용11
〈班 I-3-2〉	조사 완료 어린이집 특성11
〈鈕 I-4-1〉	영유아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 산출 기준14
〈班 I-4-2〉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15
〈班 I-4-3〉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16
〈표 Ⅱ-1- 1〉	어린이집 세입 관·항·목19
〈표 Ⅱ-1- 2〉	어린이집 세출 관·항·목22
〈표 Ⅱ-2- 1〉	전체 어린이집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24
〈표 Ⅱ-2- 2〉	전체 어린이집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26
〈됖 Ⅱ-2- 3〉	어린이집 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28
〈됖 Ⅱ-2- 4〉	시도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29
〈표 Ⅱ-2- 5〉	시도 및 인건비 지원 여부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 30
〈표 Ⅱ-2- 6〉	지역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31
〈표 Ⅱ-2- 7〉	어린이집 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32
〈됖 Ⅱ-2-8〉	시도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33
〈표 Ⅱ-2- 9〉	시도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34
〈표 Ⅱ-2-10〉	지역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35
〈표 Ⅱ-2-11〉	전체 어린이집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36
〈표 Ⅱ-2-12〉	전체 어린이집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38
〈표 Ⅱ-2-13〉	어린이집 규모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표 Ⅱ-2-14〉	시도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41
〈됖 Ⅱ-2-15〉	시도 및 인건비 지원 여부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 42
〈됖 Ⅱ-2-16〉	규모별 어린이집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43
〈표 Ⅱ-2-17〉	시도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44
〈됖 Ⅱ-2-18〉	시도 및 인건비 지원 여부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45
〈됖 Ⅱ-2-19〉	시도별 인건비 세출 분포46
〈됖 Ⅱ-2-20〉	시도별 업무추진비 세출 분포47
〈표 Ⅱ-2-21〉	시도별 관리운영비 세출 분포49

〈표 Ⅱ-2-22〉	시도별 사업운영비 세출 분포50
〈묲 Ⅱ-2-23〉	시도별 시설비 세출 분포51
⟨표 Ⅲ-1- 1⟩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지원 여부54
〈됖 Ⅲ-1- 2〉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인건비 지원 여부55
〈됖 Ⅲ-1- 3〉	인건비 지원 도움정도56
〈표 Ⅲ-1- 4〉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인건비 지원: 1+2순위 56
〈됖 Ⅲ-1- 5〉	제 특성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인건비 지원: 1순위 58
〈묲 Ⅲ-1- 6〉	어린이집 유형별 사업운영비 지원 여부59
⟨표 Ⅲ-1- 7⟩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사업운영비 지원 여부59
〈표 Ⅲ-1- 8〉	사업운영비 지원 도움정도60
〈표 Ⅲ-1- 9〉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관련 지원(1순위)61
〈됖 Ⅲ-1-10〉	제 특성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관련 지원:1순위 61
〈표 Ⅲ-1-11〉	어린이집 유형별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62
〈됖 Ⅲ-1-12〉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63
〈묲 Ⅲ-1-13〉	관리운영비 지원 도움정도63
〈珏 Ⅲ-1-14〉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 관련 지원:1+2순위 64
〈묲 Ⅲ-1-15〉	제 특성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 지원: 1순위 65
〈됖 Ⅲ-1-16〉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비 지원 여부66
〈표 Ⅲ-1-17〉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시설비 지원 여부66
〈표 Ⅲ-1-18〉	시설비 지원 도움정도67
〈표 Ⅲ-1-19〉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시설비 관련 지원: 1+2순위 67
〈됖 Ⅲ-1-20〉	초임 보육교사 기본급 지급수준68
〈珏 Ⅲ-1-21〉	기본급 외 수당 지급 여부
〈표 Ⅲ-1-22〉	시간외 근무 여부 및 수당 지급방법70
〈묲 Ⅲ-1-23〉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단가 책정 방법 및 금액71
〈珏 Ⅲ-1-24〉	교재교구 주 구입처72
〈묲 Ⅲ-1-25〉	공동구매 여부 및 구매 식자재 종류74
〈표 Ⅲ-1-26〉	시도 및 시군구 식자재 지원75
〈표 Ⅲ-1-27〉	난방연료 종류 및 월 지출액76
⟨፟፟፟፟፟፟፟፟፟፟፟፟፟፟፟፟፟፟፟፟፟፟፟፟፟፟፟፟፟፟፟፟	렌탈비·월정료 지불 항목77
〈표 Ⅲ-1-29〉	렌탈비·월정료 월 총 지출액

〈표 Ⅲ-1-30〉	차량 운행 여부
〈표 Ⅲ-1-31〉	월 평균 총 주유비
〈표 Ⅲ-1-32〉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여부81
〈표 Ⅲ-1-33〉	시설개보수비 주요 지출 항목: 1+2순위82
〈표 Ⅲ-1-34〉	제 특성별 시설개보수비 주요 지출 항목: 1순위82
〈丑 IV-1- 1〉	특수보육시책 사업
〈丑 IV-1- 2〉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87
〈丑 IV-1-3〉	인력 배치 비율 및 어린이집 수 대비 인력 수 비율88
〈丑 IV-1- 4〉	인건비 산출 시 인력배치 및 급여 기준89
〈丑 IV-1- 5〉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인건비89
〈丑 IV-2- 1〉	연령별 에너지 필요추정량91
〈丑 IV-2- 2〉	이유식 식단(초·중·후기): 서울 ······ 92
〈丑 IV-2- 3〉	만 1-2세 표준 식단: 서울92
〈丑 IV-2- 4〉	만 3-5세 표준 식단: 서울92
〈丑 IV-2- 5〉	표준레시피 작성 예시(쇠불고기)93
〈丑 IV-2- 6〉	식재료 단위가격 산출 예시(쇠불고기)93
〈丑 IV-2- 7〉	식재료 조정중량 및 표준분량단가 산출 예시(쇠불고기) 93
〈丑 IV-2- 8〉	1일 식단가 산출 예시: 서울94
〈丑 IV-2- 9〉	지역별 식재료 사용 빈도: 2015년 6월 기준95
〈丑 IV-2-10〉	지역별 농축산물 평균가격: 2015년 5월 기준97
〈丑 V-2-11〉	연령 및 지역별 식단가98
〈丑 IV-2-12〉	특수보육시책 사업99
〈丑 IV-3- 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101
〈丑 IV-3- 2〉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단가101
〈丑 IV-3- 3〉	특수보육시책 사업102
〈丑 IV-3- 4〉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102
〈丑 IV-3- 5〉	연령별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103
〈班 IV-4-1〉	관리운영비 항목별 내역104
〈丑 IV-4- 2〉	특수보육시책 사업105
〈丑 IV-4-3〉	지역별 도시가스·LPG 가격106
〈丑 IV-4- 4〉	시도별 석유제품(실내등유) 가격 현황107

〈표 IV-4- 5〉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108
〈丑 IV-5- 1〉	놀이터 면적 기준109
〈班 IV-5- 2〉	시도별 아동 1인당 자산취득비110
〈班 IV-5-3〉	아동 1인당 시설비111
〈班 V-1-1〉	0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112
〈班 V-1- 2〉	1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113
〈班 V-1-3〉	2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113
〈丑 V-1- 4〉	3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113
〈班 V-1-5〉	4세 이상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114
〈班 V-1-6〉	아동 1인당 보육비용 항목별 구성 비율: 1안(77인 기준) 114
〈班 V-1-7〉	0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115
〈班 V-1-8〉	1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115
〈丑 V-1- 9〉	2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115
〈묲 V-1-10〉	3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116
〈班 V-1-11〉	4세 이상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116
〈班 V-1-12〉	아동 1인당 보육비용 항목별 구성비율: 2안(77인 기준)116
〈丑 V-1-12〉	1, 2안 비교: 50인, 77인117
〈묲 V-2- 1〉	0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118
$\langle$	1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119
〈丑 V-2-3〉	2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120
$\langle$	3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121
$\langle$ 丑 $V$ -2- $5\rangle$	4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122

# 그림 차례

[그림 Ⅱ-2-1]	전체 어린이집의 시도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25
[그림 Ⅱ-2-2]	전체 어린이집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37
[그림 Ⅲ-1-1]	어린이집 운영이 되움되는 인건비 지원: 1+2순위57
[그림 Ⅲ-1-2]	어린이집 운영이 되움되는 관리운영비 지원: 1+2순위 64
[그림 IV-2-1]	지역별 식재료 사용 빈도96
[그림 IV-2-2]	연도 및 월별 농축산물 물가지수97
[그림 IV-4-1]	연도별 전력 판매단가107
[그림 V-1-1]	아동 1인당 보육비용 항목별 구성 비율: 77인 기준 116
[그림 V-2-1]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0세아(77인)117
[그림 V-2-2]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세아(77인)118
[그림 V-2-3]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2세아(77인)119
[그림 V-2-4]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3세아(77인)120
[그림 V-2-5]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4세아(77인)121

# 부표

〈부표 Ⅱ-2- 1〉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 133
〈부표 Ⅱ-2- 2〉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137
〈부표 Ⅱ-2- 3〉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세출 분포141
〈부표 Ⅱ-2- 4〉	어린이집 규모별 인건비 세출 분포 145
〈부표 Ⅱ-2- 5〉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업무추진비 세출 분포 149
〈부표 Ⅱ-2- 6〉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관리운영비 세출 분포 153
〈부표 Ⅱ-2- 7〉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사업운영비 세출 분포 156
〈부표 Ⅱ-2- 8〉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시설비 세출 분포160
〈부표 IV-2- 1〉	17개 시도 영영아 식단(초·중·후기 이유식) ······164
〈부표 IV-2- 2〉	17개 시도 영아 식단(만 1-2세)167
〈부표 IV-2- 3〉	17개 시도 만 3-5세 표준 식단172
〈부표 IV-2- 4〉	17개 시도 식재료 사용 빈도177
〈부표 IV-3- 1〉	0세 교재교구179
〈부표 IV-3- 2〉	0세 비품182
〈부표 IV-3- 3〉	1세 교재교구
〈부표 IV-3- 4〉	1세 비품186
〈부표 IV-3- 5〉	2세 교재교구187
〈부표 IV-3- 6〉	2세 비품191
〈부표 IV-3- 7〉	3세 교재교구192
〈부표 IV-3- 8〉	3세 비품197
〈부표 IV-3- 9〉	4·5세 교재교구
〈부표 IV-3-10〉	4·5세 비품
〈부표 IV-3-11〉	연령별 소모품205

# 요 약

#### 1. 서론

- □ 본 연구는 17개 시도에 따른 차이를 '지역 특성'으로 간주하고,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자료와 재무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시도별 보육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 □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세입·세출 자료를 분석함.
  - 어린이집 재정운영 특성 및 보육비용 관련 실태와 요구를 파악함.
  - 어린이집 지원 항목 및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시도별 차이를 분석하여,보육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원내용 관련 의견을 파악함.
  -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이외에 지역별로 보 육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기준을 설정하고 항목별 비용을 산출함.
  - 지역별 운영비 지원 차이를 반영하여 아동 연령 및 어린이집 규모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정함.
  - 지역별 보육비용 및 재정 운영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함.
-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보육비용 산정 관련 선행연구 및 어린이집 지원정책, 시도 특수보육사업시 책 등을 검토·분석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어린이집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14년 4월 말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유형 및 규모, 지역규모 및 시도별로 계정과목별 세입·세출 규모 및 비중을 분석함.
  - 어린이집 89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정운영 및 특수보육사업시책 관련 실태 및 요구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어린이집 재정

운영 실태 및 애로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하여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함.

####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 □ 어린이집 세입 중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보육료 수입이 58.4%, 기본보육 료가 20.1%, 인건비 보조금이 8.6%, 나머지는 5% 내외 수준임.
  - 2013년 4월 말 기준 세입 자료와 비교하여 보육료, 기타 비중이 늘고, 나 머지는 전반적으로 줄어듦.
- □ 보육료 수입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울산, 경기, 경남 등은 60%를 상회하고, 나머지는 50%대로 서울이 52.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기본보육료는 16~21%대의 고른 분포를 보임. 경기가 21.9%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6%로 가장 낮음.
  - 인건비 보조금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서, 서울과 전남이 각각 1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주 13.3%, 대전 12.7%, 세종과 충남, 전북이 11%대, 강원 10.2%, 나머지는 10% 미만 수준임.
- □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세입을 보면,
  - 읍면지역은 보육료 수입 56.6%, 기본보육료 16.4%로 타 지역보다 낮은 반면, 인건비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이 각각 12.5%, 7.1%로 높은 편임.
    - ·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등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임.
  - 대도시는 보육료 수입이 57.1%, 기본보육료 19.3%, 인건비보조금 10.9% 정도이나 중소도시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수입이 각각 60.1%, 22.3%로 대도시보다 높음.
- □ 전체 어린이집 세출 분포 중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인건비가 66.3%, 사업비 18.9%, 관리운영비 9.5%, 나머지는 2% 미만임.
- □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65%를 상회하나 울산과 경북이 각각 63.3%, 64.5%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비는 16~20% 사이에 고르게 분포함. 17개 시도 중 경남과 전남이

16%대로 가장 적음.

- 관리운영비는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만 10%가 넘고 나머지 지역은 그 미만 수준임.
- □ 지역규모별로는, 인건비는 대도시가 67.2%로 65% 정도의 중소도시나 읍면지 역보다 높음.
  - 사업비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관리운영비는 읍면지역일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나머지 항목은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3.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지원 차이

- □ 어린이집 조사자료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으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지원받는 인건비 항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이고, 취사부 등 지원 인력 인건비 65.1%, 장기 근속수당과 평가인증 수당, 담임수당 30% 정도, 복리후생비 26.4%,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18.5%를 차지함.
  -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추가 인건비가 도움된다는 비율은 75%를 상회함.
  - 어린이집이 현재 지원받지 않으나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인건비 지원
     은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각각 60%대, 담
     임수당 18.8%, 장기근속수당 11.0%, 복리후생비와 평가인증수당,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8~9% 정도임.
- □ 급간식 및 교재교구비 등 사업운영비로 지원받는 항목은 교재교구비가 83.8%, 영유아 급간식비 47.0%, 보육교사 중식비 27.6%, 친환경 급간식비 17.0%, 우유급식비 8.9% 순임.
  -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비가 도움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간연 장 운영비, 영유아반 운영비 순임.
  - 어린이집이 지원받지 않으나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지원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교재교구비가 72.3%, 영유아급간식비 60.1%,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 19.0%, 보육교사 중식비 18.8% 순임.

- □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지원받는 관리운영비 항목은 냉난방비로 57.4%를 차지하고, 안전공제 가입비 32.3%, 차량운영비 23.2%, 배상보험료 10.8%,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와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가 각각 8%대 정도임.
  - 지원받는 관리운영비 중 도움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안전공제가 입비와 배상보험료, 공기질관리비로 90%를 상회함.
  -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 1, 2순위 조사결과, 냉난방비가 76.8%로 높고, 안전공제가입비와 차량운영비가 35% 정도, 공기질관리비 12.9%, 배상보험료 11.4% 순임.
- □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시설비 항목은 시설개보수비가 1/3 정도, 비품수선비나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설치비, CCTV 설치비 등은 1~2%대로 소수임. 시설비는 관항목 중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음.
  - 도움된다는 비율은 90% 이상을 차지함.
  -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시설비 항목 1, 2순위를 합산하면, 시설개보수 비와 비품수선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4. 보육비용

### 가. 항목별 비용

- □ 인건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은 인건비 지급기준과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함.
  -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월 17만원, 원장 겸직 교사는 월 7만 5천원, 누리과 정 교사는 월 30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함. 시간외 수당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월 7만 8천원을 책정함.
- □ 급간식비는 급식단가는 표준 레시피 작성, 메뉴별 표준분량 단가, 1일 식단 가, 월 식단가, 표준 식단가, 표준 급식비 산출 단계별로 진행함.
  - 초기 이유식은 충남과 전북이 1일 식단가 156원으로 가장 높고, 중기 이유
     식은 부산이 218원, 전북 226원, 후기 이유식은 부산이 718원, 전북이 756
     워의 순으로 높음.

- 만 3-5세 일반 식단가 기준으로 서울 식단가가 2,349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 1,940원, 인천 2,076원, 경남 2,093원, 제주 2,143원 순임.
- 만 1-2세 전국 평균 식단가는 1,750원이고, 만 3-5세는 2,186원으로 산출함.
- □ 교재교구비 산출기준은 서문희 외(2013b)가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추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의 산출기준을 따르되, 그간 물가인상, 환율 변동, 판매업체의 제품판매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교재교구비 시장가격을 재조사 함.
  - 반 구성은 연령 단독반을 원칙으로 하고, 0~1세는 2반 합반, 3세, 4·5세반은 단독반으로 배치하고, 교재교구는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실내는 영역별 교재교구, 비품, 소모품, 실외환경은 실외놀이 기구를 배치함.
  -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중 규모가 큰 3개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제품 카다로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품 단가를 조사한 후 3개업체 가격 중 중간 가격대를 단가 산출에 적용함.
  -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는 연령별로 3만원~4만 5천원 사이에 분포함.
- □ 관리운영비 산출기준은 2014년 4월 기준 재무회계 지출 상의 아동 1인당 비용을 화산하 금액을 적용함.
  - 20인이 77,230원으로 가장 많고, 이후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감소하여 169인 40,880원 정도까지 감소함.
- □ 시설비 산출기준은 건축비와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 건축비는 서문희 외(2013a, 2013b, 2014)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기준으로 산출한 건축비 산출 기준을 적용함.
    - · 아동 1인당 보육면적 4.29㎡를 기준으로 건축비 ㎡당 지원단가를 적용,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하여 산출할 경우 1인당 건축비는 14,315원임.
  - 놀이터 설치비는 놀이터 바닥공사와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1종을 포함한 3 종 이상을 설치한 경우, 평균 4천 만원 정도로 내구연한 10년을 반영하면 아동 1인당 월 3,300원이 됨.
  - 시설장비비는 2014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상의 자산취득비 아동

1인당 평균 6,700원을 적용함.

- 시설유지관리비는 서문희 외(2013)의 연구결과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인은 아동 1인당 2,230원, 50인 4,230원, 77인 이상 3,820원임.

#### 나. 지역별 추가 지원

- □ 중앙 정부의 인건비 지원 외에 지방 정부가 시도특수보육시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시도에 따라 월 6만원에서 19만원 사이에 분포함.
- □ 급간식비는 17개 시도 중 충남과 세종, 경북에서 지원함. 충남과 세종은 영유아 급식비로 1인당 1일 기준 300원, 경북은 1인당 월 9,000원을 지원함.
- □ 교재교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시도는 제주로 정부지원 시설 연 100만원, 정 부미지원 시설은 정원별로 40~100만원을 지원함.
- □ 관리운영비는 관리비로 지출되는 연료비와 보험 등의 수용비 등에 대한 지 원이 추가로 이루어짐.
  - 대전은 도서구입비 개소 당 연 13만원, 충북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아동 1인당 연 2,500원, 경남도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며, 세종은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를 정원별로 차등 지원함.

# 다.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지역별 보육비용

- □ 1안의 0세아 20인이 923,470 원이고 50인이 99만원을 초과하며, 이후 96만 원 선으로 감소하다가 169인은 947,670원임.
  - 만 1세는 20인 62만원에서 50인 695,800원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다시 감소 하여 169인은 64만원 정도가 됨.
  - 만2세는 20인 485,660원, 50인 555,490원이며 이후 감소하여 169인 이상은 507,790원
  - 만3세는 50인 415,300원이고, 77인 이상은 4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169인 이상은 368,800원임.
  - 만4세 이상은 50인이 370,600원이고, 77인과 97인이 34만원 대이며, 169인 이상은 322,900원임.

#### 라. 지역별 보육비용

- □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1안 77인의 보육비용에 앞서 제시한 지방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시도 특수보육시책사업비를 적용함.
  - 0세아는 서울이 세종이 1,031,300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등은 10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96~99만원 선임.
  - 1세아의 경우 세종이 709,500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시도는 66만원에서 69만원 사이에 분포함.
  - 2세아도 세종이 56만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52~53만원 선에 분포함.
  - 3세아는 세종만 4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37~39만원 대에 분포함.
  - 4세 이상아도 세종이 35만원으로 가장 높음. 나머지 지역은 33~34만원 대로 0~3세보다 시도 간에 차이가 적음.

#### 5. 정책 제언

- □ 시도 특수보육 시책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함.
-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급간식비,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들은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단가 또한 통일시키고, 이 외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함.
- □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함.
- □ 보육비용 산정 시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함.
  - 어린이집에서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지역 간에 차이가 있고, 급간식비 식재료도 지역별 물가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 차이를 반영한 보육비용 산출을 세분화함.
- □ 물가 인상을 반영한 중앙 정부차원의 보육비용 산출 정례화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정례적으로 보육비용을 산출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에는 정부의 재정중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4년 간 동결되었던 0~2세 보육료가 3% 인상되었고(조선일보 2015년 3월 9일자 기사), 2016년에는 6%가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경향신문, 2015년 12월 31일자 기사).

그간 보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부모 부담 완화라는 정책 기조하에 어린이집보다는 부모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무상보육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연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서문희 외, 2013). 이에 보육현장에서는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하였고1), 정부도 국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를 추진하여 보육료인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준보육비용 산정은 1991년 정부예산 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되었다. 2005년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였고(박기백 외, 2005), 2008년에는 2005년 연구를 보완하여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현숙 외, 2008). 이후 표준보육비용산정은 한국어린이집연합회(김혜금 외, 2010)와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임양미외, 2010), 육아정책연구소(이미화 외, 2012; 서문희 외, 2013; 서문희 외, 2014)에서 이루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 1차년도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보육비용 산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 연구(서문희 외, 2013)는 보육의 질 제고 관점에서 인건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보육비용 산정을 위한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표준'의 의미가 '적정' 수준인지, '최저' 수준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표준보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또한 명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sup>1)</sup> SBS 뉴스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업 예고-맞벌이 가정 비상"(2012년 2월 27일 뉴스) EBS 뉴스 "가정어린이집 집단휴가 첫날-갈등 불씨 여전"(2014년 12월 6일 뉴스)

때문에 '표준'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서문희 외(2013)는 김현숙 외(2008)가 설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세입·세출자료 분석결과와 조사 자료를 토대로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2차년도 연구(서문희 외, 2014)는 전년도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가설치한 국공립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인이 자본을 투자한 어린이집 간에 재정 운영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 하에 어린이집 유형별로비용을 산출하였다.

서문희 외(2013, 2014)는 두 차례에 걸친 연구를 통해 보육비용 산정 시 어린이집 유형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물가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차년도 연구(서문희 외, 2014)에서 어린이집 설치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축 및 매입 시 소요되는 설비비와 임대료의 지역 간 차이가 컸고, 평당 공시지가 또한 지역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어린이집 운영비 중 지출 비중이 큰급간식 재료나 교재교구 등은 대형마트나 전문업체를 통해 구매하므로 지역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나, 지역별 생활물가 지표(한국물가협회, 2015)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차가 존재하므로 보육 비용 산출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지방정부가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또한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종류나 규모가 상이하므로 보육비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에 따른 차이를 '지역 특성'으로 간주하고, 중앙정부 지

본 연구는 17개 시도에 따른 차이를 '지역 특성'으로 간수하고, 중앙정무 지원 외에 시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비나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17개 시도별 보육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고,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17개 시도별 보육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지역별 보육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별 보육비용을 추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세입·세출 자료를 분석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어린이집 통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 4천여개소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자료 중 2014년 4월 자료를 수집하여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 지역규모, 17개 시도별 세입·세출 계 정 과목의 규모와 비중을 분석한다. 둘째,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특성 및 보육비용 관련 실태와 요구를 파악한다. 셋째, 시도 특수보육시책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항목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검토하고, 보육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원 항목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넷째, 아동 연령 및 어린이집 규모,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 한다.

다섯째, 보육비용 및 재정 운영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 가.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보육비용 산정 관련 선행연구 및 어린이집 지원정책, 시도 특수보육사업시책 등을 검토·분석하고, 지역별로 보육료를 차등 적용하는 사례를 고찰한다.

## 나. 어린이집 회계자료 분석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14년 4월 말 기준의 어린이집 재무회계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유형 및 규모, 지역규모, 시도에 따른 계정과목별 세입·세출 규모 및 비중을 분석한다. 이 자료는 선행연구(서문회 외, 2013a, 2013b, 2014)와 동일하게 전체적 개요와 현원 규모, 반 구성 등 제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각 모형별로 일정 수의 어린이집 세입과 세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한다.

# 다. 설문조사 실시

# 1) 조사 개요

어린이집 1,00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였다. 시설유형, 규모, 지역별로 어린이집 재정운영 및 특수보육사업시책 관련 실태 및 요구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 중 일부는 보육비용 산정 시 지역별 추가 항목과 비용 수준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을 추 출하고, 지역 차를 반영한 보육비용 산정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표 I-3-1 참조).

구분	조사 내용		
1. 특수보육시책 지원	인건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지원 여부, 도움정도, 도 움되는 지원 여부		
2. 보육교직원 인건비	초임 보육교사 기본급, 기본급 외 수당 시간외 근무 여부 및 수당 지급 형태, 시간외수당금액		
3. 교재교구비	교재교구 구입처, 교재교구 전문업체 가격 차이 여부		
4. 급간식비 공동구매 여부, 공동구매 식자재, 공동구매 비중 식자재 추가 지원 여부 및 품목			
5. 관리운영비 난방연료 유형, 난방비 지출액, 농어촌 특례 적용 여부 차량운영 여부, 차량 수, 총 연료비			
6. 시설개보수비	시설개보수 여부, 시설개보수 항목 렌탈비 및 월정료 지출 여부 및 항목, 지출액		
7. 어린이집 일반사항	어린이집 유형, 정원, 현원, 지역규모, 시도,		
8. 응답자 일반사항	연령, 성별, 최종학력, 원장 경력, 재직경력		

〈표 I-3-1〉 어린이집 조사 내용

# 2) 조사 결과

어린이집 재정 운영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특성은 <표 I-3-2>와 같다.

〈표 I-3-2〉 조사 완료 어린이집 특성

			단위: 개소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어린이집 유형		정원 규모	
국공립	36.9(321)	20인	15.1(131)
사회복지법인	6.9(60)	45-55인	25.2(219)
법인단체등	5.3(46)	72-82인	24.6(214)
민간개인	36.0(313)	92-102인	22.0(191)
가정	13.9(121)	124인 이상	13.1(114)
직장	0.9(8)	지역규모	
		대도시	45.3(394)
		중도시	35.0(304)
		소도시	19.7(171)
전체	100.0(896)	전체	100.0(896)

어린이집 896개소의 유효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국공

립이 36.9%, 민간개인이 36.0%, 가정이 13.9%, 사회복지법인 6.9%, 법인단체 등 5.3% 순이다. 정원별로 45~55인이 25.2%, 72~82인 24.6%, 92~102인 22.0%로 많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5.3%, 중소도시 35.0%, 읍면지역 19.7% 순이다.

#### 라. 보육비용 시뮬레이션

세부항목별 보육비용과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세부항목 중 인건비와 시설비는 2013년(서문희 외, 2013a; 서문희 외, 2013b)과 2014년(서문희 외, 2014) 연구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였고, 관리운영비는 2015년 재무회계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는 2013년 연구에서 산정한 바 있으나 2년 간의 물가상승률2)을 고려하여 재산정하였다. 급간식비는 국가가 정한 연령별로 필요한에너지 열량에 기초하여 식단을 구성하여 일일 단가를 산출한 후 월 평균 비용을 내어 이를 다시 1일 1인당 비용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하여 17개 시도별로 산정한 후 평균 식단가를 비용 산출 시 적용하였다. 교재교구비는 서문희 외(2013) 연구에서 사용한 교재교구 목록을 검토한 후 교재교구 판매업체 시장조사와 어린이집 의견 조사를 반영하여 재산정하였다.

이 외에 지역별로 추가되는 항목은 특수보육사업시책과 어린이집 조사자료, 재무회계 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2015년 기준 보육비용을 아동 연령 및 규모별로 산출하고, 이중 77인 기준의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재산출하였다.

# 마. 자문회의 및 간담회

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어린이집 재정운영 실태 및 애로 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 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과 조사결과,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sup>2)</sup> 통계청(2013, 2014)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2013년 전년대비 1.3%, 2014년 1.3% 상승함.

#### 4. 선행연구

최근 표준보육비용 현실화에 대한 보육현장의 요구와 정부의 보육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출 요구에 힘입어 표준 보육비용 산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표준보육비용 산정 관련 연구

보육비용 산출 연구가 처음 실시된 것은 서울시 요청으로 삼성복지재단(2000)이 실시한 것이다. 이 연구는 동 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과 수입·지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변용찬·임유경, 2002)은 2002년 일정한 기준에서 아동을 실제로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보육료로 정의하고, 이를 산출하였다 (서문희 외, 2013).

2004년에는 한국조세연구원(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손녕민, 2005)에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표준보육비용을 공식적인 어린이집을 통해 만 0~5세의 영유아 1인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일정 기준으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보육비용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설치비 등이며, 적용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준하고, 교사대아동 비율이나 교재교구 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설규모와 반 편성 연령기준을 혼합한 기준으로 산출하였다(서문희 외, 2013).

김현숙·서병선(2008)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2005년 한국조세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의 표준보육료 구성 항목의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이전 연구(박기백 외, 2005)에서 간과한 내용을 보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에 적합한 보육비용을 재산정하였다. 산출항목은 박기백 외(2004)의 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교사 경력과 표준보육과정을 반영하였으나 지방정부보조금은 산정 시 삭감하였다. 또한 이 연구자는 표준보육비용에서 '표준'을 현실적인 운영비용, 영유아 보육법령의 준수와 사회기준 충족, 보육서비스 내용과 수준이 사회가 합의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다.

下 양 巾 <u>.</u>, 슈 표준 보 용 비 용 るがの 田 1-4-1〉

子子	<u>박기백 · 김현숙 외(2005)</u> 김현숙 · 서	김현숙·서병선(2008)	김혜금 외(2010)	이미화 외(2012)	서문희 외(2013a)	서문희 외(2013b)	서문희 외(2014)
바쉬	- 뀨범적 접근	- 규범적 접근에 현상 반영	- 현상적 접근에 규범 반영	- 현상적 접근에 규범 반영	- 규범적 접근에 현상 반영	- 규범적 접근에 현상 반영	- 규범적 접근에 현상 반영
五 以	- 종사자 인전비, - 아동급간식비, - 마동급간식비, - 교계교구비(보통 교육설비비, 소모품, -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급 및 세세공과급, 수용정비), - 시설설치비	바 저 '	- 임건비, - 업무추진비, - 압무추진비, - 관리운영비(여비, 구용비 및 수명, 장로의, 지, 한라비, 연료의, 기타 운영비) - 사업운영비((급간스비, 교제교구비, 행사비)) - 시설비	- 인건비, - 엄구추진비, - 엄구추진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장국요리, 차관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 사업소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 제산조성비 (자산취득지,	- 완전비 -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업무추진비) - 기타운영비 - 교계교구비 - 급간식비	- 인건비 -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업무추진비) - 기타운영비 - 교세교구비 - 급간식비	- 인건비 -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업무추진비) - 기타운영비 - 교개교구비 - 급간식비
규모유형	- 7개 집단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연명유형	- 교사대 아동 비율 차 이 반영	- <del>최</del> 독	- 좌조	- <del>좌</del> 동	- <del>조동</del>	- <del>최</del> 독	- 좌동
기타	- 유치원과 통합 모형 적용 - 2개 안 제시	- 교사경력, 표준보육과정 반영 - 지방정부보조금 삭감 - 2개 안 제시	- 수준과 운전기사 인건비 반영하여 4개안 제시	- 단일안 제시	- 2개 안 제시	- 3개 안 제시 - 보육교사 수당, 누리과정 보조교사 태치한 3개 안 제시	- 국공립, 범인, 민간가정 3개 안 제시

바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 부담수준에 관한 역구. 여성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역구, 여성가족부·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미화서문희·임양미·이진경(2012),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a), 보육의 쥘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박진아-유영준·이영미·유옥수정승구·이세원·이혜민(2013b),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박진아-유영준·이영미·유옥수정승구·이세원·이혜민(2013b),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사료:

일부 재인용.

김혜금(2010)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요청으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표준보육비용을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제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비용을 산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보육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2012년 연구(이미화 외, 2012)는 경기여성가족연구원(임양미 외, 2010) 연구의 산출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여 차이점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2013년 연구(서문희 외, 2013)는 김현숙 외(2008)의 연구를 근거로 인건비,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 등 산출항목을 선정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항목별 비용 산정기준을 정한 후 아동연령 및 시설규모별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어서 2014년 연구(서문희 외, 2014)는 2013년 연구에 의거하되 설치 주체와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육비용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별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보육비용 산정 시 반영하였다.

# 나. 시·도 특수보육시책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10, 2011, 2012, 2013)는 2010년부터 시도 특수보 육시책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 왔다.

내용	지역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전체 16개 시·도
교사 교통급식비(복지비) 지원	부산, 대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보육료 차액 지원	충북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대전, 충남, 경북
저소득층 기타 경비 지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서울, 광주, 충북, 경북, 경남
냉난방비 지원	인천, 울산, 강원도, 전북
차량운행비 지원	경북, 전북, 전남
친환경 식재료 비용 지원	전남

〈표 Ⅰ-4-2〉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2013). 시도 특수보육시책 내부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 세부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시도 전체가 지원하는 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며, 평가인증이나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자는 특수보육시책은 지원 수준이나 대상이 각각 다르고 복잡하여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비교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2013년 연구는 2012년 무상보육 도입에 따라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하였다.

〈표 1-4-3〉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특수시책사업		국고사업대비	국고사업대비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시·도 특별사업비 (B/A)	시·군·구 특별사업비 (C/A)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010년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11.3	4.0
2011년	5,018,610	455,187	271,159	5,744,956	9.1	5.4
2012년	6,132,183	438,914	552,566	7,132,663	7.2	9.0
2013년	8,341,814			1,036,342		
2014년	8,557,370			1,084,360		

주: 2011년까지는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사도 특별사업비는 사도 특별사업의 사도 및 사·군구 예산이며, 사·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2012년은 사·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사·도 예산이며, 사·군구 사업비는 시·도 사업 분담금과 사·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가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서문희 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화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재인용.

# 다. 지역간 가격 차이에 관한 연구

# 1) 임금

김주영·조동훈·이번송·조준모·이인재(2009)는 한국노동패널자료 8차년도(2006) 의 178개 시군구 간의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산업 집중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금이 그렇지 않는 지역의 종사자보다 유의하게 높고, 한 지역 산업에 속한 업체의 경쟁은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우영(2012)은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이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표본선택 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임금 프리미엄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임금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임금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의 해소로 귀결된다고 강조하였다.

허식(2007)은 한국노동패널 5차 자료를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고 Oaxaca(1973) 임금분해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경력 등의 근로자 질적 변수와 종사지위, 노조 유무 등의 제도 변수들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 근로자의 질적 차이가 아닌 차별적 요소에 의해서도 임금 격차가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 2) 토지 가격

1989년 공시지가제도 도입 이후 토지 가격 차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크게 지가와 도시공간구조 관계에 관한 연구, 토지 가격형성요인 탐색연구, 지가변동 시계열 분석연구로 나뉜다.

토지가격형성요인 탐색연구는 토지가격을 지역적 특성요인에 의한 가격 결정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방경식·장희순(2004)에 의하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격형성 요인은 크게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일반요인은 지역 물가, 이자율, 임금, 고용, 생산규모 등 전국적 또는 광역적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거용 토지가격은 교육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 역시 중요한 지가 형성요인 중에 하나이다. 지역요인으로는 광역수준의 지역이 아닌,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요인들에 한정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경관, 일조 등의 자연조건, 공공시설, 통신기반 확보, 혐오시설 위치, 토지계획 등의 도시정비상태 등이 그 예이다. 개별요인에는 교통, 교육, 관공서, 상업지역의 접근성 등이 있다.

김형순·김호철(2006)의 연구에서 CAPM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토지시장의 지역별 지가변동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내 토지시장의 가격변동

과 위험간의 관계를 조명하였고, 시군구 단위 지역가격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CAPM모형에 의해, 각 지역의 특성을 지가변동률(자본수익률)과 위험도에따라 분류되고 있다. 지가변동 및 위험의 추세를 종합 고려하여, 지역특성별 지가변동 및 위험 추세선을 비교하였다. 나아가 토지시장을 세분화 하여, 개별 토지시장, 즉 지역(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허식·이성원(2008)에서는 서울지역에 한하여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토지가 격 차를 설명하기 위해, Oaxaca 기법과 Reimers기법을 적용하여 조사대상 토지가격을 분해하였다.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지가함수를 추정하고, 분해한 결과, 지가 격차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26.6~30.6%였다. 설명부분의 대부분이 교통여건적 요소가 많았다.

# Ⅱ.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제2장은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전체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4년 4월말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의 세입과 세출 항목별 비중과 아동 1인당 금액을 산출하였다.

## 1. 어린이집 세입·세출 구조

#### 가. 세입

필요경비수입(항)은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목)으로 구성된다. 기타필요경비(항)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이고, 특별활동비(항)은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이다(보건복지부, 2015).

	$\langle \pm$	Ξ II	-1	-1	> 0	[리이	집	세입	관·항·목
--	---------------	------	----	----	-----	-----	---	----	-------

항	목	목
피스거리	기타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
필요경비 스이	필요경비	경비
수입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 0~4세아, 만 5세아, 장애
보육료수입	보육료수입	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
		료 환급금 통합
	인건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보조금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경상보조금 수입	기비비수무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
	기본보육료	금
	기타지워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기나시전급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u> 자본보조금</u>	키.뷰 H 고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
수입	자본보조금	비비 등

주: 전입금(항)의 전입금(목)과 차입금(목), 이월금(항)의 전년도 이월금(목)과 전년도 이월사 업비(목)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수입(항)과 (목)은 보육 아동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5).

경상보조금 수입(항)은 인건비보조금과 기본보육료, 기타 지원금(목)으로 구성된다. 인건비보조금(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4대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과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중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시간연장형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이다(보건복지부, 2015).

기본보육료(목)은 만0~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보건복지부, 2015).

기타 지원금(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교재교 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운영비, 건강 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이다(보 건복지부, 2015).

전입금(목)은 어린이집 운영 경비(예:인건비 등) 일부를 법인, 관련 단체, 대표 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다(보건복지부, 2015).

차입금(목)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50인 이 하 7백만원, 51~100인 이하 1천만원, 100인 이상 1천 5백만원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5).

# 나. 세출

<표 Ⅱ-1-2>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 항목이다. 이들 항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추진비(항)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목)으로 구성된다. 기관운영비 (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이고, 직책급(목)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회의비(목)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이다(보건복지부, 2015).

관리운영비(항) 중 수용비 및 수수료(목)은 다양한 항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는 실제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임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분류되어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조리와 난방에 모두사용하므로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료비는 도시가스 이외 연료비만 산정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5).

차량비(항)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하는 아동에 한정되는 선별적 수혜인데, 이 경우에도 통학비만 산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기타운영비(항)은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감가삼각비는 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고, 건물임대료나 건물 융자금의 이자 역시 어린이집 시설설비비와 연계되어 있다. 차량할부금은 관리운영비의 차량비와 분리되어 있으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요한 항목이다. 감가상각비는 실제 지출 상에서는 시설설비비이다.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감가상각은 그대로 어린이집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 내용 연수에 따라 매년 정해진 액수를 상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식회계에서 실제로지출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회계에 일정한 부분을 매년 산정하여 소유 자산이 완전폐기처분 될 당시에 시설에 주는 비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적립금으로 보고 또 다른시설명의 통장으로 적립 운영 가능하며, 그 해 연말 결산처리 후 다음 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이월하여 관리하거나 '시설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사업운영비(항)은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목)이 포함된다. 급간식비(목)은 식재료비이고, 교재교구비(목)은 5만원 미만의 내구연한 3년 미만으로 한정하지만 보육활동에는 비품성 교구도 가능하다. 행사비(목)은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 경비이고, 기타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목)은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5).

시설비(항)은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개·보수비이고,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와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목)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수선비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이다(보건복지부, 2015).

〈표 II-1-2〉 어린이집 세출 관·항·목

항	목	목			
	기본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인건비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제수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 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기타 후생경비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업무 추진비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 비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관리 운영비	여비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 공고료·등기료·수수료,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 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보험료 등			
	차량비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 지비·차량소모품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사업 운영비	급간식비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기타필요경비 지출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시설비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주: 전출금, 과년도 지출, 잡지출, 예비비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 2.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 및 지역별 세입 현황

#### 가. 자료 분석 기준

본 연구는 2014년 4월말 기준 43,259개소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린이집 회계자료 중 세입·세출 자표가 없거나 입력 오류라고 판단되는 2,529개소를 제외한 40,730개소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3)

어린이집 회계자료 분석은 선행연구(서문회 외, 2013a, 2014)와 동일하게 먼저전체 세입액 및 세출액에서 각 관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시도 및 지역규모, 시설유형별 세입·세출 비율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어린이집 규모를 중심으로 정원 대비 현원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을 선별하고, 보육비용 산정 시 기본 모형이 되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 기준으로 ±4인 범주에 포함되는 어린이집 간의 세입·세출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 및 시도별 분석을 추가하였다.

### 나. 시설유형별 전체 어린이집 세입·세출 분포

# 1) 세입 분포

#### 가)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세입은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은 그 유형에 따라 운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표 Ⅱ-2-1>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입 항목별 분포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료 수입이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기본보육료가
 20.1%, 인건비 보조금이 8.6%, 나머지는 5% 내외 수준이다. 2013년 4월 말 기준세입 자료와 비교하여 보육료, 기타 비중이 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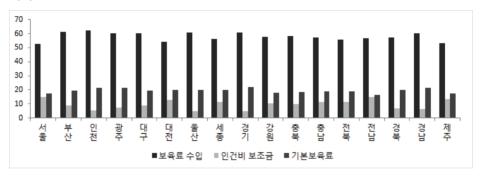
<sup>3)</sup> 서문희·양미선·이동하(2014)는 12개월(2013년 3월~2014년 2월) 분의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2015년 1월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1월과 2월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서문희 외(2013)와 동일하게 전년도 4월말 자료를 분석에 사용함.

〈표 II-2-1〉 전체 어린이집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단위	위: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계(수)
전체	58.4	8.6	20.1	5.4	0.1	0.3	7.2	(40,730)
시도								
서울	52.9	15.0	17.4	8.5	0.4	0.7	5.1	( 6,228)
부산	61.1	8.8	19.5	4.4	0.1	0.3	5.8	( 1,819)
인천	62.5	5.3	21.7	4.7	0.2	0.3	5.2	( 2,183)
광주	60.3	7.3	21.7	3.3	0.1	0.2	7.1	( 1,155)
대구	60.4	8.9	19.3	4.2	0.1	0.0	7.2	( 1,361)
대전	54.4	12.7	19.9	4.5	0.0	0.2	8.2	( 1,538)
울산	60.9	4.8	20.2	5.3	0.3	0.4	8.1	( 854)
세종	56.0	11.5	20.2	4.8	0.0	0.0	7.5	(116)
경기	60.6	4.8	21.9	4.0	0.03	0.2	8.5	(12,541)
강원	57.7	10.2	18.1	6.9	0.3	0.1	6.7	( 1,193)
충북	58.5	9.8	18.4	7.4	0.1	0.1	5.7	( 1,146)
충남	57.2	11.2	18.8	5.8	0.1	0.3	6.6	( 1,942)
전북	55.5	11.3	19.1	3.9	0.1	0.1	10.1	(1,581)
전남	56.9	15.0	16.6	5.2	0.04	0.3	5.9	(1,134)
경북	57.3	7.0	20.0	7.2	0.1	0.2	8.3	( 2,023)
경남	60.1	6.2	21.3	4.6	0.1	0.1	7.7	(3,340)
세종	53.1	13.3	17.6	9.6	0.1	0.3	6.1	( 576)
F	120.8***	161.4***	49.2***	181.0***	11.6***	5.8***	28.7***	, ,
지역규모								
대도시	57.1	10.9	19.3	6.1	0.3	0.4	6.0	(14,663)
중소도시	60.1	5.1	22.3	4.0	-	0.2	8.2	(18,394)
읍면지역	56.6	12.5	16.4	7.1	0.1	0.1	7.2	(7,668)
F	254.4***	873.2***	619.2***	722.6***	39.1***	18.3***	111.5***	
시설유형								
국공립	46.1	43.7	0.2	7.9	0.7	-	1.4	( 2,233)
법인	45.0	43.7	0.4	7.3	0.2	-	3.5	( 1,368)
법인단체등	47.1	37.7	2.0	8.4	0.3	-	4.5	(817)
민간	64.7	4.3	15.1	8.6	0.1	-	7.2	(13,690)
가정	57.4	4.2	27.7	2.8	0.1	-	7.8	(21,899)
직장	41.2	14.7	1.3	6.1	0.9	18.3	17.4	( 589)
부모협동	57.7	2.4	11.4	6.8			21.7	( 134)
F	1354.9***	8866.2***	6970.8***	1395.9***	44.2***	2459.5***	182.3***	
2013년	57.3	8.0	19.8	5.1	0.1	0.2	9.5	(42,468)
*** 11 / 001								

<sup>\*\*\*</sup> p < .001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서문화·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3년 4월말 기준). 이를 시도별로 보면, 보육료 수입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울산, 경기, 경남 등은 60%를 상회하나, 나머지는 50%대로 서울이 52.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다음으로 기본보육료는 16~21%대의 고른 분포를 보이며, 경기와 전남이 각각 21.9%, 16.6%로 최고,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인건비 보조금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서, 서울과 전남이 각각 1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주 13.3%, 대전 12.7%, 세종과 충남, 전북이 11%대, 강원 10.2%, 나머지는 10% 미만 수준이다.



[그림 II-2-1] 전체 어린이집의 시도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이를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는 보육료 수입 비중이 57.1%, 기본보육료 19.3%, 인건비보조금 10.9% 정도이나 중소도시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수입 비중이 각각 60.1%, 22.3%로 대도시보다 보육료 수입이 높다. 반면에 읍면지역은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수입이 각각 56.6%, 16.4%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대신 읍면지역은 인건비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이 각각 12.5%, 7.1%로 높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등 추가 지원이많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보육료와 기본 보육료 수입 차이가 크다. 보육료의 경우, 민간이 64.7%로 높은 반면 직장이 41.2%로 20%p 이상 차이가 나고, 가정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57.4% 수준이다. 기본보육료는 영아보육 중심인 가정이 27.7%로 높고, 다음으로 민간 15.1%, 부모협동 11.4%, 나머지는 1% 내외로 낮다(표 Ⅱ-2-1 참조).

<표 Ⅱ-2-2>는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세입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표 II-2-2〉 전체 어린이집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개소) 기타핔 특볔 보육료 인건비 기본 기타 기업 자본 구분 기타 (수) 보조금 지원금 요경비 활동비 수입 보육료 지원금 보조금 전체 3.8 4.5 8.0 18.7 0.3 0.1 (40,730)53.1 4.8 6.8 시도 서울 2.2 5.5 48.4 14.0 7.7 0.4 0.7 16.4 4.8 (6,228)부산 2.5 5.4 56.0 8.2 18.2 4.0 0.1 0.3 5.4 (1,819)인처 7.4 3.8 55.1 4.9 19.5 4.1 0.1 0.3 4.8 (2,183)광주 2.1 3.7 56.5 6.7 20.9 2.9 0.1 0.2 6.9 (1,155)대구 1.9 5.4 55.7 8.3 18.1 3.7 0.1 0.0 6.9 (1,361)대전 2.9 0.0 4.6 50.0 11.8 18.6 4.0 0.2 7.8 (1,538)울산 1.5 7.0 55.2 4.6 18.7 4.7 0.3 0.4 7.6 854) 세종 3.4 3.7 51.7 10.7 19.1 4.3 0.0 0.0 7.1 (116)경기 4.4 19.8 0.0 0.2 7.8 6.6 4.6 53.2 3.4 (12,541)강워 3.9 54.2 1.6 9.6 17.4 6.4 0.3 0.1 6.5 (1,193)충북 1.9 4.8 54.2 9.3 17.5 6.7 0.1 0.1 5.4 (1,146)충남 3.1 4.5 52.4 10.5 17.8 5.1 0.1 0.3 6.3 (1,942)전북 2.8 2.5 52.2 10.6 18.4 3.6 0.1 0.1 9.7 (1,581)전남 2.1 3.4 53.5 14.4 16.0 4.7 0.0 0.2 5.7 (1,134)경북 1.5 2.6 54.7 6.8 19.3 6.8 0.0 0.2 8.1 (2,023)경남 2.1 3.8 56.3 5.9 4.1 0.1 0.1 7.4 20.3 (3,340)제주 2.9 12.7 9.0 1.3 50.6 17.1 0.1 0.3 6.0 576) F 739.1\*\*\* 103.9\*\*\* 106.4\*\*\* 161.3\*\* 32.7\*\*\* 218.0\*\*\* 11.6\*\*\* 5.8\*\*\* 27.7\*\*\* 지역규모 대도시 3.0 5.1 52.1 10.2 18.0 5.5 0.4 0.2 5.6 (14,663)중소도시 4.6 4.2 54.3 4.7 20.6 3.5 0.2 \_ 7.7 (18,394)읍면지역 3.9 3.5 52.0 11.8 15.4 6.4 0.1 0.1 6.8 (7,668)F 544.0\* 209.5\*\*\* 179.5\* 870.3\*\*\* 515.4\*\*\* 825.8\* 39.2\*\* 18.7\* 107.0\*\*\* 시설유형 국공립 42.7 40.8 0.7 3.0 4.1 0.2 7.4 1.3 (2,233)법인 3.1 4.7 41.1 40.6 0.4 6.6 0.1 3.3 (1,368)법인단체등 3.6 4.6 42.7 35.1 1.8 7.6 0.3 4.2 (817) 민간 5.9 7.6 55.3 3.9 13.3 7.3 0.1 6.5 (13,690)가정 2.7 2.5 54.2 26.2 2.7 4.1 0.1 7.5 (21,899)직장 3.0 38.8 14.1 1.2 5.8 17.9 0.9 1.5 16.9 589) 부모협동 2.3 1.4 1.3 55.9 10.9 6.6 21.5 134) 44.8\*\*\* 796.8\*\*\* 2310.6\*\*\* 927.0\*\*\* 8246.5\*\*\* 7191.5\*\*\* 1135.1\*\*\* 2,429.1\*\*\* F 191.3\*\*\* 2013년 3.3 4.2 52.6 7.4 18.7 4.6 0.2 0.1 9.0 (42,468)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서문화양미선·이영마박형진·김희정(2013).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3년 4월말 기준).

<sup>\*\*\*</sup> p < .001

관항목 중 보육료 수입이 53.1%, 기본보육료 18.7%, 인건비보조금 8% 순이며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기타 지원금 등은 5% 미만이다. 앞서 살펴본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입 분포보다 각각의 항목별 비중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년 세입 자료와 비교하여 기타 항목만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보육료 수입은 전반적으로 50%대를 나타내나 서울이 48.4%로 가장 적다. 기본보육료는 광주가 20.9%, 경남 20.3%로 높고, 나머지 지역들은 16~19%를 나타낸다. 전남과 서울이 각각 16% 대로 낮다. 인건비보조금은 전남과 서울이 각각 14%대로 높고, 울산과 인천이 4%대로 낮다. 기타필요경비는 인천과 경기가 각각 7.4%, 6.6%로 높은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1~3%대로 낮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보육료 수입의 경우 중소도시 54.3%로 높고, 대도 시와 읍면지역이 52% 정도이다. 기본보육료도 중소도시가 20.6%, 대도시 18.0%, 읍면지역 15.4%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 인건비 보조금은 지자체 지원이 많은 읍면지역과 대도시가 각각 11.8%, 10.2%로 높고, 중소도시는 절반 수준인 4.7%이다. 기타 필요경비는 지역별로 3~4%대로 큰 차이가 없으나 특별활동비는 도시지역일수록 비중이 높아진다.

이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보육료 수입은 부모협동, 민간, 가정이 55% 내외 정도이고, 직장이 40%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본보육료는 가정과 민간이각각 26.2%, 13.3% 순이다.

### 나) 인건비 지원 및 지역규모, 시도별 세입

전체 어린이집 중 정원 대비 현원률이 80% 이상이고, 보육비용 산정 시 기본 모형이 되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 기준으로 ±4인 범주 에 포함되는 어린이집 간의 세입 차이를 분석하였다(서문희 외, 2013).

먼저,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입 항목별 분포는 보육료 수입 비중이 60.2%를 차지하고, 기본보육료 22.2%, 인건비 보조금 8.1% 정도이다. 이를 다시 현원 규모별로 보면, 보육료 수입은 현원 규모가 93인 이상인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다. 기본보육료는 영아보육 중심인 16~20인과 46~54인이 각각 27.8%, 9.2%로 높고, 나머지는 4~5%대로 차이가 없다. 인건비보조금은 73~81인이 20.2%로 높고, 16~20인이 5.0%로 낮다.

인건비 지원 여부별로 보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

집은 보육료 수입과 인건비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30~50%를 차지한다. 반면, 인 건비 미지원 시설은 규모가 클수록 보육료 수입은 늘어나지만, 기본 보육료 수 입은 반대로 줄어든다. 기타 지원금은 90인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10%대 로 인건비 지원시설에 비해 높다.

〈표 II-2-3〉 어린이집 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단:	위: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宁)
전체								
전체	60.2	8.1	22.2	5.1	0.1	0.2	4.1	(11,322)
16~20인	59.7	5.0	27.8	3.1	0.1	0.0	4.2	(8,338)
46~54인	59.7	17.6	9.2	9.2	0.2	0.8	3.4	(1,067)
73~81인	59.7	20.2	5.1	10.7	0.4	0.4	3.5	(800)
93~101인	62.8	16.3	5.2	12.2	0.2	0.3	3.0	( 535)
120~128인	66.3	11.2	5.0	11.9	0.1	0.0	5.4	( 192)
138~146인	63.0	14.7	4.3	13.4	0.3	0.0	4.2	(112)
165인 이상	67.3	9.0	5.1	11.9	0.1	1.5	5.1	(278)
F	32.1***	315.2***	2273.9***	658.4***	$4.7^{***}$	19.6***	4.2***	
인건비지원								
전체	48.0	40.6	0.0	8.0	0.5	0.6	2.2	( 1,167)
16~20인	36.2	55.2	0.1	5.4	0.0	0.6	2.5	( 89)
46~54인	44.5	45.7	0.0	6.8	0.4	0.6	1.9	( 322)
73~81인	49.7	38.4	0.0	8.5	0.8	0.3	2.4	( 375)
93~101인	51.2	36.8	0.0	8.9	0.6	0.7	1.9	(211)
120~128인	51.9	35.8	0.1	9.7	0.2	0.0	2.2	( 54)
138~146인	55.1	32.8	0.0	9.2	0.6	0.0	2.2	(45)
165인 이상	52.9	31.1	0.0	10.0	0.3	1.8	3.9	(71)
F	65.3***	75.7***	1.9	11.0***	0.7	0.8	0.8	, ,
인건비미지원								
전체	61.6	4.4	4.4	4.8	0.1	0.1	4.3	(10,155)
16~20인	60.0	4.5	4.5	3.1	0.1	0.0	4.2	(8,249)
46~54인	66.3	5.4	5.4	10.2	0.1	0.8	4.0	( 745)
73~81인	68.6	4.1	4.1	12.7	0.1	0.5	4.5	(425)
93~101인	70.3	3.0	3.0	14.4	0.0	0.0	3.7	( 324)
120~128인	72.0	1.6	1.6	12.8	0.1	0.0	6.7	( 138)
138~146인	68.3	2.5	2.5	16.3	0.1	0.0	5.6	(67)
165인 이상	72.2	1.4	1.4	12.5	0.1	1.5	5.5	( 207)
F	169.9***	9.8***	1236.5***	668.0***	0.2	21.7***	2.6*	

<sup>\*</sup> *p* < .05, \*\*\* *p* < .001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표 Ⅱ-2-4>는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항목별 세입 분포를 시도별로 분석한 것이다. 보육료 수입의 경우, 대부분 60%대이지만, 서울과 대전, 전북, 경북, 제 주는 50% 대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서울이 52.9%로 낮다. 기본보육료도 대부 분의 지역이 20%를 상회하나, 서울과 제주가 각각 18.3%, 18.6%로 낮다. 인건비 보조금은 서울이 16.6%로 높고, 다음으로 대전 12.0%, 제주 10.5% 순이다.

〈표 II-2-4〉 시도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단원	위: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전체	60.2	8.1	22.2	5.1	0.1	0.2	4.1	(11,322)
서울	52.9	16.6	18.3	8.1	0.4	0.2	3.4	( 2,194)
부산	62.6	7.8	22.0	4.0	0.0	0.0	3.5	( 567)
인천	63.3	5.2	23.7	4.1	0.1	0.2	3.4	( 731)
광주	63.7	4.3	24.7	3.2	0.0	0.0	4.1	( 277)
대구	63.4	7.7	20.9	4.6	0.1	0.0	3.3	( 258)
대전	56.5	12.0	21.9	4.0	0.0	0.1	5.5	(458)
울산	62.8	4.7	22.9	5.0	0.3	0.2	4.1	( 244)
세종	60.1	8.2	23.6	5.6	0.0	0.0	2.6	( 31)
경기	62.8	4.6	24.0	3.7	0.0	0.2	4.7	( 3,573)
강원	60.8	6.6	22.7	6.4	0.1	0.0	3.4	( 290)
충북	61.2	5.9	22.5	6.9	0.1	0.0	3.4	( 332)
충남	60.5	8.0	22.8	5.0	0.0	0.4	3.3	( 490)
전북	59.2	8.0	22.6	3.8	0.2	0.0	6.2	( 320)
전남	61.0	9.6	20.3	4.9	0.0	0.0	4.2	( 269)
경북	59.8	6.1	22.2	7.1	0.1	0.4	4.3	( 371)
경남	63.2	5.4	22.9	4.5	0.0	0.1	3.8	( 790)
제주	57.4	10.5	18.6	9.5	0.0	0.0	3.9	( 127)
F	84.0***	79.5***	20.6***	54.2***	5.6***	0.7	4.5***	

\*\*\* p < .001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다음은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시도 및 항목별 세입 분포를 인건비 지원 여 부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건비 지원 시설을 보면, 보육료 수입은 부산, 광주, 세종, 강원, 전남, 경남, 제주가 50%를 상회하나 나머지 지역은 42~47%대에 분 포한다. 인건비 보조금은 35~45% 사이로, 인천, 대전, 울산이 40%대로 높은 편 이다. 반면에 인건비 미지워시설의 보육료 수입은 서울, 대전, 제주를 제외한 나 머지 지역 모두 61~65%대의 고른 분포를 보인다. 서울이 53.9%로 가장 낮다. 기본보육료도 시도별로 21~25% 사이에 분포하나 서울이 21.7%로 낮다. 반면, 인거비 보조금은 서울이 12.4%, 대전 10.1%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II-2-5〉 시도 및 인건비 지원 여부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다위 %(개소)

															<u> 1</u>	%(개소 <u>)</u>
				인건:	비 지원	<u> </u>						인건ㅂ	미기	원		
구분	보육 료 수입	인건 비 보조 금	기본 보육 료	기타 지원 금	자본 보조 금	기업 지원 금	기타	(수)	보육 료 수입	인건 비 보조 금	기본 보육 료	기타 지원 금	자본 보조 금	기업 지원 금	기타	(수)
전체	48.0	40.6	0.0	8.0	0.5	0.6	2.2	(1,167)	61.6	4.4	24.7	4.8	0.1	0.1	4.3	(10,155)
서울	47.4	39.8	0.0	8.2	1.2	1.0	2.3	(341)	53.9	12.4	21.7	8.1	0.3	0.1	3.6	(1,853)
부산	50.5	41.8	0.0	6.9	0.0	0.0	0.9	( 88)	64.9	1.5	26.1	3.5	0.0	0.0	4.0	(479)
인천	45.7	45.0	0.0	6.9	0.8	0.3	1.3	( 57)	64.8	1.8	25.7	3.9	0.0	0.2	3.6	(674)
광주	51.8	38.3	0.0	7.3	0.0	0.0	2.6	( 24)	64.8	1.0	27.1	2.9	0.0	0.0	4.2	( 253)
대구	49.5	40.7	0.0	6.9	0.0	0.0	2.9	( 36)	65.7	2.4	24.2	4.3	0.1	0.0	3.3	( 222)
대전	42.6	44.7	0.0	7.8	0.0	0.0	4.9	( 26)	57.3	10.1	23.2	3.7	0.0	0.2	5.5	( 432)
울산	43.9	43.3	0.0	6.4	0.4	2.7	3.3	(18)	64.3	1.6	24.7	4.9	0.2	0.0	4.2	( 226)
세종	54.6	35.0	0.0	9.4	0.0	0.0	1.1	(4)	60.9	4.2	27.1	5.0	0.0	0.0	2.8	( 27)
경기	47.9	42.3	0.0	8.0	0.1	0.0	1.7	(211)	63.8	2.2	25.5	3.4	0.0	0.2	4.9	(3,362)
강원	50.2	37.7	0.1	9.4	0.7	0.0	1.9	(41)	62.5	1.5	26.4	5.9	0.0	0.0	3.7	( 249)
충북	47.6	35.3	0.0	10.9	0.0	0.0	6.2	( 36)	62.9	2.3	25.3	6.4	0.1	0.0	3.1	( 296)
충남	46.9	41.3	0.0	9.2	0.0	0.0	2.6	( 33)	61.5	5.5	24.5	4.7	0.0	0.4	3.4	( 457)
전북	47.2	41.6	0.0	6.6	1.0	0.0	3.6	(43)	61.1	2.8	26.1	3.3	0.1	0.0	6.6	( 277)
전남	50.3	41.5	0.0	6.5	0.0	0.0	1.7	( 51)	63.5	2.1	25.1	4.5	0.0	0.0	4.7	(218)
경북	41.5	39.2	0.0	11.6	0.9	2.7	4.1	(49)	62.6	1.0	25.6	6.4	0.0	0.0	4.3	( 322)
경남	52.0	37.7	0.1	7.3	0.0	1.4	1.6	( 79)	64.5	1.8	25.4	4.2	0.0	0.0	4.1	(711)
제주	50.8	39.9	0.0	8.2	0.0	0.0	1.1	( 30)	59.5	1.5	24.3	9.9	0.0	0.0	4.8	( 97)
F	5.4***	2.5**	0.3	3.7***	1.4	1.1	1.7*		85.5***	179.3***	13.6***	50.9***	3.9***	1.1	4.1***	

앞서 살펴본 세입분포를 지역규모별로도 분석하였다. 보육료 수입은 중소도 시, 읍면지역, 대도시 순이며, 기본보육료는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 인건비 보조금은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이다.

이를 인건비 지원 여부별로도 살펴보았다.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보육료 수입과 인건비보조금은 지역별로 48% 내외, 40% 내외로 차이가 없다. 반면에 인건비미지원 시설은 보육료 수입이 중소도시가 63.4%, 읍면지역 62.9%, 대도시 59% 순이고, 기본보육료도 중소도시가 26.1%로 높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23%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인건비보조금은 대도시가 7.5%이고, 나머지 지역이 2% 대로 차이가 크다.

<sup>\*</sup> p < .05, \*\*\* p < .001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0.1

0.6

4.7

5.8\*\*

(1,441)

							단의	위: %(개소 <u>)</u>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전체								
대도시	57.6	11.6	20.7	6.0	0.2	0.2	3.7	(4,602)
중소도시	62.5	4.6	24.5	3.8	0.0	0.2	4.4	(4,999)
읍면지역	60.4	8.9	19.5	6.8	0.0	0.2	4.2	( 1,721)
F	203.6***	3.3.4***	156.1***	204.0***	16.2***	-	$7.4^{**}$	
인건비 지원								
대도시	47.8	40.8	0.0	7.7	0.8	0.7	2.2	( 573)
중소도시	48.8	39.4	0.0	7.8	0.5	0.5	3.1	( 314)
읍면지역	47.7	41.6	0.0	8.9	0.0	0.3	1.5	( 280)
F	1.4	2.8	0.4	5.1**	4.3*	0.6	$3.4^{*}$	
인건비미지원								
대도시	59.0	7.5	23.6	5.7	0.2	0.1	3.9	(4,029)
중소도시	63.4	2.3	26.1	3.5	0.0	0.1	4.5	(4,685)

〈표 II-2-6〉 지역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읍면지역

62.9

172.8\*\*\*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23.2

73.6\*\*\*

2.6

436.9\*\*\*

17개 시도의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입 부포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분석한 자료는 <부표 Ⅱ-2-1>에 제시하였다.

6.4

173.7\*\*\*

0.1

11.9\*\*\*

<표 Ⅱ-2-7>은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관항목별 세입 비중 을 어린이집 규모별로 분석한 것이다.

보육료 수입은 16~20인 55.6%에서 46~54인 50.8%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165 인 이상 53.4%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기본보육료는 16~20인이 25.9%로 1/4 정도를 차지하고 이후 4% 대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타 필요경비 는 16~20인 3.4%로 적으로나 시설 규모가 커집에 따라 8~9%까지 늘어난다. 특 별활동비의 경우 138인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10% 내외로 높다.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인건비 지원 시설은 보육료 수입과 인건비보조금이 모두 70~80%를 차지하고,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는 1%대 에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4~6%까지 증가한다. 인건비 미지워 시설의 경우. 보육료 수입은 50% 정도이나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가 시설규모에 비례해 증가하여 10%를 상회한다.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Ⅱ-2-7〉 어린이집 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 %(개소)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 활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전체										
전체	4.2	4.6	54.6	7.6	20.5	4.6	0.1	0.2	3.8	(11,322)
16~20인	3.4	3.2	55.6	4.8	25.9	3.0	0.1	0.0	4.0	(8,338)
46~54인	5.8	7.8	50.8	16.2	7.7	7.8	0.2	0.8	3.0	(1,067)
73~81인	5.5	8.0	51.1	18.3	4.2	9.2	0.4	0.4	3.1	( 800)
93~101인	6.4	8.9	52.4	14.7	4.3	10.2	0.2	0.3	2.6	( 535)
120~128인	8.5	10.5	53.0	9.7	4.0	9.5	0.1	0.0	4.8	( 192)
138~146인	7.4	9.5	51.6	13.0	3.4	11.2	0.3	0.0	3.8	(112)
165인 이상	8.7	10.3	53.4	8.1	4.1	9.4	0.1	1.5	4.4	(278)
F	192.7***	734.8***	65.0***	280.7***	2451.4***	500.2***	4.3***	19.2***	5.4***	
인건비지원										
전체	3.2	4.9	43.9	37.4	0.0	7.3	0.5	0.6	2.1	( 1,167)
16~20인	1.5	1.2	35.1	53.8	0.1	5.2	0.0	0.6	2.5	( 89)
46~54인	2.9	3.9	41.4	42.6	0.0	6.3	0.4	0.6	1.8	( 322)
73~81인	3.3	5.1	45.5	35.1	0.0	7.7	0.7	0.3	2.2	( 375)
93~101인	3.7	5.9	46.1	33.2	0.0	8.0	0.5	0.7	1.7	(211)
120~128인	4.3	8.6	45.4	31.0	0.1	8.4	0.1	0.0	2.1	( 54)
138~146인	4.4	6.9	48.8	29.2	0.0	8.1	0.6	0.0	2.0	(45)
165인 이상	3.8	6.7	47.2	27.8	0.0	8.9	0.3	1.8	3.6	( 71)
F	7.9***	38.9***	41.8***	94.9***	1.9	7.8***	0.7	0.8	0.8	
인건비미지원										
전체	4.3	4.6	55.8	4.1	22.9	4.2	0.1	0.1	4.0	(10,155)
16~20인	3.4	3.2	55.8	4.3	26.2	2.9	0.1	0.0	4.0	(8,249)
46~54인	7.1	9.5	54.8	4.7	11.1	8.5	0.1	0.8	3.5	(745)
73~81인	7.4	10.6	56.0	3.4	7.9	10.4	0.0	0.5	3.8	(425)
93~101인	8.2	10.9	56.6	2.6	7.1	11.6	0.0	0.0	3.1	(324)
120~128인	10.1	11.2	56.0	1.3	5.5	9.9	0.1	0.0	5.8	( 138)
138~146인	9.4	11.2	53.4	2.1	5.7	13.2	0.0	0.0	4.9	(67)
165인 이상	10.3	11.6	55.6	1.3	5.5	9.6	0.0	1.4	4.7	( 207)
F	310.1***	1017.3***	2.5*	10.6***	1379.2***	467.1***	0.3	21.1***	2.3*	

<sup>\*</sup> *p* < .05, \*\*\* *p* < .001

앞서 살펴본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항목별 세입분포를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보육료 수입은 전반적으로 55% 내외에 분포하나 서울이 48.7%로 가장 적다. 기본보육료도 전반적으로 20~23% 사이에 분포하지만, 서울이 17.3%로 적고, 제주 18.0%, 대구 19.7%, 전남 19.6% 정도이다.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표 II-2-8〉 시도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 %(개소)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활 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전체	4.2	4.6	54.6	7.6	20.5	4.6	0.1	0.2	3.8	(11,322)
서울	2.1	5.1	48.7	15.7	17.3	7.4	0.4	0.2	3.2	( 2,194)
부산	2.2	4.7	58.1	7.3	20.7	3.7	0.0	0.0	3.3	( 567)
인천	7.5	3.6	56.0	4.7	21.3	3.5	0.1	0.2	3.1	( 731)
광주	2.3	4.0	59.4	3.8	23.7	2.8	0.0	0.0	3.9	( 277)
대구	2.2	5.5	58.3	7.1	19.7	4.1	0.1	0.0	3.1	( 258)
대전	2.8	4.7	52.0	11.1	20.4	3.5	0.0	0.1	5.2	(458)
울산	1.3	6.6	57.7	4.5	21.4	4.5	0.2	0.2	3.8	( 244)
세종	4.2	3.8	54.8	7.6	22.3	4.7	0.0	0.0	2.5	( 31)
경기	7.2	4.9	54.8	4.2	21.4	3.1	0.0	0.2	4.2	( 3,573)
강원	1.6	3.8	57.3	6.2	21.8	5.9	0.1	0.0	3.3	( 290)
충북	2.0	4.7	56.9	5.5	21.4	6.2	0.1	0.0	3.2	( 332)
충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전북	3.1	2.7	55.5	7.4	21.7	3.3	0.2	0.0	6.0	( 320)
전남	2.1	3.7	57.3	9.0	19.6	4.3	0.0	0.0	4.0	( 269)
경북	1.6	2.9	57.1	5.8	21.4	6.7	0.1	0.3	4.1	( 371)
경남	2.8	4.3	58.5	5.0	21.6	4.0	0.0	0.1	3.6	( 790)
제주	1.5	3.7	54.3	9.9	18.0	8.8	0.0	0.0	3.8	( 127)
F	274.9***	17.7***	80.6***	81.8***	14.6***	67.6***	5.6***	0.7	4.3***	

\*\*\* p < .001

·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시도별 세입분포를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Ⅱ-2-9>와 같이, 인건비 지원 시설은 보육료 수입이 30~50%대로 차이를 보인다. 경남과 제주는 47% 정도이나 대전과 경북이 각각 38% 내외로 적다. 인건비 보조금도 전반적으로 40% 내외이나 세종과 충북, 광주는 33% 정도로 15%p 정도 차이가 난다. 기타 필요경비는 경기와 전북이 5%대로 높고,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이다. 특별활동비는 광주가 9%로 가장 높고, 세종과 인천이 각각 2.9%, 3%로 낮다. 이는 특별활동 수납 한도액이 타 지역보다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보육료 수입이 50~60% 사이로 인건비 지원시설 보다 높다. 기본 보육료도 20%를 상회하며 광주가 26.0%, 세종 25.6%, 강원 25.4%, 전북 25%로 높은 편이다.

〈표 II-2-9〉 시도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개소)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기타 특별 보육 있는 기본 기타 자본 기업 기타 특별 보육 <sup>인건</sup> 기본 기타 자본 기업 비 보육지원 보조지원 보조 보육지원 보조지원 нJ 필요 활동 필요활동 료 보육 지원 보조 지원 료 경비 비 수입 보조 타 경비 비 수입 료 료 전체 3.2 4.9 43.9 37.4 0.0 7.3 0.5 0.6 2.1 (1,167) 4.3 4.6 55.8 4.1 22.9 4.2 0.1 0.1 4.0(10,155) 서울 1.8 5.1 44.0 37.0 0.0 7.7 1.1 1.0 2.2 (341) 2.1 5.0 49.6 11.7 20.5 7.4 0.3 0.1 3.3(1,853) 부산 2.9 4.6 46.4 38.9 0.0 6.3 0.0 0.0 0.8 ( 88) 2.1 4.8 60.2 1.5 24.6 3.2 0.0 0.0 3.7( 인천 6.5 3.0 41.1 41.0 0.0 6.2 0.7 0.3 1.2 ( 57) 7.5 3.6 57.3 1.6 23.1 3.3 0.0 0.2 3.2( 674)광주 3.9 9.0 45.0 33.6 0.0 6.2 0.0 0.0 2.3 ( 24) 2.1 3.5 60.8 1.0 26.0 2.4 0.0 0.0 4.1( 253) 대구 3.8 6.3 44.1 36.9 0.0 6.2 0.0 0.0 2.6 ( 36) 2.0 5.3 60.6 2.2 22.8 3.8 0.1 0.0 3.2( 222) 대전 4.4 6.3 37.4 40.5 0.0 6.8 0.0 0.0 4.6 ( 26) 2.7 4.6 52.9 9.4 21.7 3.3 0.0 0.2 5.2( 432) 울산 1.7 4.0 41.2 41.1 0.0 6.0 0.4 2.7 3.0 (18) 1.2 6.8 59.0 1.6 23.1 4.3 0.2 0.0 3.9( 226)세종 3.3 2.9 51.2 32.8 0.0 8.8 0.0 0.0 1.0 ( 4) 4.4 4.0 55.4 3.8 25.6 4.1 0.0 0.0 2.7( 27) 경기 5.2 4.5 43.1 38.4 0.0 2.8 0.2 4.4( 3.362) 7.2 0.1 0.0 1.5 (211) 7.3 4.9 55.5 2.1 22.8 0.0 강원 2.8 5.3 46.1 34.7 0.1 8.6 0.6 0.0 1.8 ( 41) 1.4 3.6 59.2 1.5 25.4 5.5 0.0 0.0 3.5( 충북 2.5 4.4 44.0 32.9 0.0 10.2 0.0 0.0 6.0 ( 36) 1.9 4.8 58.4 2.2 24.0 5.7 0.1 0.0 2.9( 충남 3.9 5.2 42.7 37.7 0.0 8.1 0.0 0.0 2.4 ( 33) 3.1 4.7 56.3 5.2 23.0 4.0 0.0 0.4 3.2( 457) 전북 5.1 4.7 42.3 37.7 0.0 5.8 1.0 0.0 3.4 ( 43) 2.8 2.4 57.6 2.7 25.0 3.0 0.0 6.4( 277) 전남 2.3 5.2 46.3 38.7 0.0 5.9 0.0 51) 2.1 3.3 59.9 2.0 24.2 3.9 0.0 4.6( 0.0 1.6 ( 218) 경북 2.2 3.6 38.7 37.3 0.0 10.9 0.7 2.6 3.9 ( 49) 1.5 2.8 59.9 1.0 24.7 6.0 0.0 4.2( 322) 2.8 경남 28 6.0 47.3 34.4 0.1 6.6 0.0 1.5 ( 79) 1.3 4.1 59.8 1.7 24.0 3.7 0.0 0.0 3.8( 711) 제주 1.5 4.9 47.4 37.4 0.0 7.7 0.0 0.0 1.0 ( 30) 1.5 3.3 56.5 1.4 23.6 9.1 0.0 0.0 4.7( 97) 17.9 46 64 19 41\*\*\* 1.7 256.5 19.0 96.4 176.0 12.3 63.4 3.8 0.3 1.4 1.1 1.1 40

\*\*\* p < .001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표 Ⅱ-2-10>은 기타 필요경비를 포한한 세입 분포를 지역규모별로 살펴본 것이다. 보육료 수입은 대도시가 52.8% 정도이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55%가 넘는다. 기본보육료는 중소도시가 22.4%로 높고, 나머지는 20% 미만 수준이다. 인건비보조금은 대도시가 10.9%로 높으나 읍면지역이 8.3%, 중소도시 4.3%로 차이를 보인다. 특별활동비는 4%대로 거의 차이가 없으나 기타 필요경비는 중 소도시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다. 인건비 지원 시설만을 분석하면, 보육료 수입과 인건비보조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에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읍면지 역일수록 보육료 수입이 높고, 기본보육료는 도시 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인건비보조금은 대도시가 7.1%로 높으나 타 지역은 2%대로 차이를 보 인다.

									<u>단위</u>	<u>: %(개소)</u>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활 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전체										
대도시	3.0	4.8	52.8	10.9	19.3	5.4	0.2	0.2	3.4	(4,602)
중소도시	5.3	4.5	56.0	4.3	22.4	3.3	0.0	0.2	4.1	(4,999)
읍면지역	3.9	4.4	55.0	8.3	18.3	6.1	0.0	0.2	3.9	(1,721)
F	318.3***	7.1**	127.1***	308.0***	113.8***	235.0***	16.4***	0.001	6.3**	
인건비지원										
대도시	2.8	5.1	43.9	37.7	0.0	7.1	0.8	0.7	2.0	(573)
중소도시	4.2	4.8	44.2	36.0	0.0	7.0	0.4	0.5	2.9	(314)
읍면지역	3.2	4.8	43.7	38.5	0.0	8.2	0.0	0.3	1.4	(280)
F	$18.4^{***}$	1.0	0.4	3.8*	0.3	5.3**	$4.4^{*}$	0.6	3.6*	
인건비미지원										
대도시	3.0	4.8	54.1	7.1	22.1	5.2	0.1	0.1	3.6	(4,029)
중소도시	5.4	4.5	56.8	2.1	23.9	3.0	0.0	0.1	4.1	(4,685)
읍면지역	4.1	4.3	57.2	2.4	21.8	5.6	0.0	0.1	4.4	(1,441)
F	283.1***	6.0**	108.8***	430.8***	41.3***	201.1***	11.7***	0.5	5.1**	

〈표 II-2-10〉 지역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17개 시도의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세입 분포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는 <부표 Ⅱ-2-2>에 제시하였다.

### 2) 세출 분포

### 가)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전체 어린이집의 세출 분포를 항목별로 분석하였다(표 Ⅱ-2-11 참조). 기타 필 요경비를 제외하고 보면, 인건비가 66.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18.9%, 관리운영비 9.5%, 나머지는 2% 미만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비중이 높은 인건비와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65%를 상회하나 울산과 경북이 각각 63.3%, 64.5%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사업비는 16~20% 사이에 고 르게 분포한다. 17개 시도 중 경남과 전남이 16%대로 가장 낮다. 관리운영비는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만 10%가 넘고 나머지 는 이에 못 미친다.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II-2-11〉 전체 어린이집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_			_			단위	l: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전출금	기타	(수)
전체	66.3	2.0	9.5	18.9	1.6	1.4	0.3	(40,730)
시도								
서울	67.9	1.8	7.6	19.4	2.0	1.0	0.2	( 6,228)
부산	67.4	1.8	9.7	18.1	1.7	1.2	0.1	( 1,819)
인천	66.0	2.5	8.7	19.9	1.5	1.1	0.4	( 2,183)
광주	67.0	2.5	10.1	17.3	1.5	1.4	0.2	( 1,155)
대구	66.6	2.0	9.6	19.0	1.7	0.8	0.3	( 1,361)
대전	68.1	1.4	9.3	17.5	1.3	2.1	0.3	( 1,538)
울산	63.3	2.3	10.6	19.9	2.6	1.1	0.2	( 854)
세종	65.4	2.3	10.3	18.8	1.7	1.0	0.5	( 116)
경기	65.5	1.9	9.3	20.1	1.2	1.7	0.2	(12,541)
강원	65.6	1.8	10.6	17.7	2.5	1.5	0.3	( 1,193)
충북	66.7	2.0	9.7	18.0	2.3	1.0	0.2	( 1,146)
충남	65.8	2.0	9.8	18.8	1.6	1.4	0.6	( 1,942)
전북	67.8	1.9	10.6	15.9	2.0	1.7	0.1	( 1,581)
전남	67.4	1.8	10.3	16.7	2.2	1.4	0.3	( 1,134)
경북	64.5	2.1	11.5	18.0	1.8	1.9	0.3	(2,023)
경남	65.7	2.1	10.9	18.2	1.4	1.3	0.2	(3,340)
제주	68.6	1.6	9.7	16.6	2.6	0.7	0.1	( 576)
F	31.5***	18.9***	107.9***	66.3***	15.5***	11.3***	4.6***	
지역규모								
대도시	67.2	2.0	8.7	19.0	1.8	1.2	0.2	(14,663)
중소도시	65.9	2.0	9.7	19.3	1.4	1.6	0.3	(18,394)
읍면지역	65.6	1.9	10.6	18.1	2.1	1.5	0.2	(7,668)
F	84.9***	376.5***	8.5***	62.4***	64.6***	25.8***	0.6	
시설유형								
국공립	69.1	1.2	9.0	16.0	4.2	0.4	0.1	( 2,233)
법인	68.7	1.3	9.9	15.0	4.3	0.7	0.1	(1,368)
법인단체등	70.0	1.3	9.1	15.8	3.1	0.6	0.2	(817)
민간	64.6	1.4	8.9	21.5	1.8	1.5	0.2	(13,690)
가정	66.7	2.4	10.1	18.0	1.0	1.5	0.3	(21,899)
직장	67.4	5.5	4.0	19.7	1.7	1.5	0.2	( 589)
부모협동	70.4	1.0	7.4	18.4	1.3	1.2	0.4	( 134)
F	122.0***	503.2***	194.7***	482.0***	231.0***	26.8***	8.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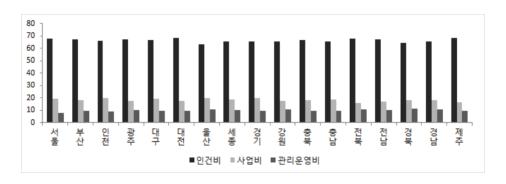
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지역규모별로는, 인건비는 대도시가 67.2%로 65% 정도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높다. 사업비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도시

와 중소도시가 각각 19% 정도이나 읍면지역은 18.1%로 낮다. 관리운영비는 읍 면지역일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서 읍면지역 10.6%, 중소도시 9.7%, 대도시 8.7% 순이다. 나머지 항목은 지역 간에 차이가 없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는 부모협동과 법인단체 등이 70%를 상회하 고, 민간이 64.6%로 가장 적다. 사업비는 민간이 21.5%로 높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이 15%대로 낮다. 관리운영비는 보육 아동수가 적은 가정이 10.1%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직장은 4%로 다른 유형의 절반 수준이다(표 Ⅱ-2-11 참조).



[그림 II-2-2] 전체 어린이집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표 Ⅱ-2-12>와 같이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60.9%, 관리운영비 8.7%로 낮아지고, 사업비는 25.5%로 증가한다.

시도별로 보면, 인건비 비중이 60% 내외로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60%를 웃도 는 수준이나, 인천, 울산, 경기가 각각 58% 정도로 낮다. 사업비 20~30% 사이에 분포한다. 경기가 28.9%, 전북이 19.9%로 시도 간에 10%p 정도의 차이를 보인 다. 관리운영비도 7~10% 사이에 분포하나 강원과 전북, 경남, 경북 4개 지역만 10%가 넘는다.

이를 지역규모별로 보면, 인건비는 대도시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 고, 사업비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다. 관리운영비는 반대로 읍면지역이 높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인건비는 민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60~70% 사이에 분포하 고 민간만 56.1%로 낮다. 사업비는 반대로 민간이 31.7%로 높고, 나머지 유형은 20~22%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관리운영비는 가정만 3.6%로 낮고 나머지 는 전체 평균 수준인 7~8%대를 나타낸다.

〈표 II-2-12〉 전체 어린이집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	위: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	전출금	기타	(수)
전체	60.9	1.8	8.7	25.5	1.5	1.3	0.2	(40,730)
시도								
서울	62.9	1.7	7.1	25.4	1.8	0.9	0.2	( 6,228)
부산	62.2	1.7	9.0	24.3	1.6	1.1	0.1	( 1,819)
인천	58.6	2.2	7.7	28.8	1.3	1.0	0.3	( 2,183)
광주	63.2	2.4	9.5	22.0	1.4	1.4	0.1	(1,155)
대구	61.9	1.9	9.0	24.7	1.6	0.8	0.2	(1,361)
대전	62.6	1.3	8.5	24.1	1.2	2.0	0.2	(1,538)
울산	57.9	2.1	9.7	26.7	2.4	1.1	0.2	( 854)
세종	61.2	2.2	9.6	23.9	1.6	1.0	0.5	( 116)
경기	58.3	1.7	8.3	28.9	1.1	1.5	0.2	(12,541)
강원	61.8	1.7	10.1	22.4	2.3	1.5	0.3	(1,193)
충북	62.3	1.9	9.0	23.4	2.2	1.0	0.2	(1,146)
충남	60.8	1.8	9.1	24.9	1.5	1.3	0.5	(1,942)
전북	64.5	1.8	10.1	19.9	1.9	1.7	0.1	(1,581)
전남	63.7	1.7	9.8	21.1	2.0	1.4	0.2	(1,134)
경북	61.7	2.0	11.0	21.5	1.7	1.8	0.2	( 2,023)
경남	61.7	2.0	10.3	23.2	1.3	1.2	0.2	(3,340)
세종	65.6	1.6	9.3	20.2	2.5	0.7	0.1	( 576)
F	90.9***	18.3***	132.1***	204.3***	17.0***	11.1***	4.5***	,
지역규모								
대도시	61.9	1.8	8.0	25.4	1.6	1.1	0.2	(14,663)
중소도시	60.2	1.8	8.8	26.2	1.2	1.4	0.2	(18,394)
읍면지역	60.7	1.7	9.9	24.1	1.9	1.4	0.2	(7,668)
F	88.5***	374.3***	5.7**	112.4***	64.4***	25.1***	0.7	
시설유형								
국공립	63.8	1.1	8.3	22.4	3.9	0.3	0.1	( 2,233)
법인	63.6	1.2	9.1	21.3	4.0	0.7	0.1	( 1,368)
법인단체외	64.2	1.2	8.3	22.7	2.9	0.6	0.2	(817)
민간	56.1	1.2	7.8	31.7	1.6	1.4	0.2	(13,690)
직장	63.1	2.2	9.5	22.5	1.0	1.4	0.3	(21,899)
가정	65.4	5.5	3.6	22.2	1.6	1.4	0.2	( 589)
부모협동	68.6	1.0	7.2	20.5	1.2	1.2	0.3	( 134)
F	625.4***	600.7***	291.7***	1405.3***	218.2***	25.8***	9.4***	
** p < .01, **		014) 6171	പ്ചി ചിറി	계호 취계:	-ı) = (001 4ı	-1 401ml =	12)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 나) 인건비 지원 및 지역규모, 시도별 세출

앞서 살펴본 세입 분석과 동일하게 정원 대비 현원률이 80% 이상, 보육비용 산정 시 기본 모형이 되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 기준 으로 ±4인 범주에 포함되는 어린이집 간의 세출 차이를 분석하였다(서문희 외, 2013).

<표 Ⅱ-2-13>은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항목별 세출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6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이 18.9%, 관리운영비8.6% 순이다. 나머지는 1~2%로 매우 적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면, 인건비는 어린이집 규모가 커질수록 인건비 비중은 줄어드나 사업비는 반대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재산조성비로 어린이집 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크지는 않다. 나머지 항목은 규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인건비 지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인건비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모두 전체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는 어린이집 현원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6~20인 76.4%에서 165인이상 64.6%까지 줄어든다. 사업비와 재산조성비도 현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도 인건비 지원시설과 유사한 경향을보인다. 16~20인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68.3%로 높으나 165인 이상으로 현원이늘어나면 58.2%까지 줄어든다. 사업비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보다 높은 17.8%에서 28.9%까지 증가한다.

〈표 II-2-13〉 어린이집 규모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단	위: %(개소)
구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업무 추진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	전출금	기타	(宁)
전체								
전체	67.3	8.6	2.1	18.9	1.7	1.1	0.3	(11,322)
16~20인	68.4	8.8	2.3	17.8	1.1	1.3	0.3	(8,338)
46~54인	66.4	8.0	1.7	20.4	2.4	0.8	0.3	(1,067)
73~81인	63.6	8.6	1.5	21.6	4.0	0.5	0.1	(800)
93~101인	63.5	8.5	1.3	22.6	3.1	0.8	0.2	( 535)
120~128인	63.8	8.1	1.1	23.2	3.4	0.5	0.1	( 192)
138~146인	62.5	8.5	1.0	23.4	4.2	0.3	0.1	( 112)
165인 이상	59.9	7.5	1.4	26.7	3.4	1.1	-	( 278)
F	108.1***	12.2***	68.3***	207.6***	89.1***	6.6***	2.7*	

(표 Ⅱ-2-13 계속)

구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업무 추진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	전출금	기타	(수)
인건비 지원								
전체	67.8	8.8	1.3	17.2	4.5	0.2	0.1	( 1,167)
16~20인	76.4	8.5	1.8	11.9	1.2	0.2	0.1	( 89)
46~54인	70.7	8.6	1.6	15.2	3.7	0.2	0.1	( 322)
73~81인	65.4	9.1	1.3	18.4	5.5	0.2	-	( 375)
93~101인	66.1	9.0	1.1	18.9	4.5	0.3	0.1	( 211)
120~128인	66.0	9.4	1.0	17.6	5.9	0.1	-	( 54)
138~146인	64.9	8.9	0.8	19.5	5.8	0.1	-	(45)
165인 이상	64.6	7.8	1.4	20.4	5.5	0.4	0.1	( 71)
F	34.4***	2.1*	4.3***	35.2***	5.1***	0.5	0.8	
인건비 미지원								
전체	67.3	8.6	2.2	19.1	1.3	1.2	0.3	(10,155)
16~20인	68.3	8.8	2.3	17.8	1.1	1.3	0.3	(8,249)
46~54인	64.6	7.7	1.8	22.6	1.9	1.1	0.3	(745)
73~81인	62.1	8.2	1.7	24.4	2.7	0.8	0.2	(425)
93~101인	61.7	8.2	1.4	25.1	2.2	1.2	0.3	(324)
120~128인	62.9	7.6	1.1	25.4	2.4	0.6	0.1	( 138)
138~146인	60.9	8.2	1.1	26.0	3.2	0.5	0.1	(67)
165인 이상	58.2	7.4	1.3	28.9	2.7	1.4	-	( 207)
F * * * * * * * * * * * * * * * * * * *	127.0***	16.3***	37.4***	331.7***	25.7***	1.7	1.2	

<sup>\*</sup> p < .05, \*\*\* p < .001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앞서 살펴본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항목별 세출 분포를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인건비 세출은 65~68% 사이에 분포한다. 세종과 울산, 경북이 각각 64.8%, 65.0%, 65.1%로 인건비 부담이 가장 적고, 대전이 69.1%, 서울과 제주가 각각 68.8%, 68.7%로 부담이 크다. 사업비도 16~19% 대로 시도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 업무추진비는 세종, 전북, 경북과 경남이 각각 10% 정도로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관리운영비와 재산조성비 등은 1%대로 시도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II-2-14〉 시도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				단위	: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전출금	기타	(수)
전체	67.3	8.6	2.1	18.9	1.7	1.1	0.3	(11,322)
서울	68.8	7.2	1.8	19.1	2.2	0.7	0.3	( 2,194)
부산	68.6	9.2	2.0	17.5	1.5	1.0	0.2	( 567)
인천	66.8	8.0	2.7	19.2	1.7	1.1	0.5	( 731)
광주	67.2	9.4	2.7	18.4	1.4	0.7	0.1	( 277)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 258)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458)
울산	65.0	9.8	2.5	19.1	2.3	0.9	0.4	( 244)
세종	64.8	10.3	1.7	19.2	2.2	0.8	1.0	( 31)
경기	66.8	8.5	2.1	19.8	1.2	1.3	0.3	( 3,573)
강원	66.5	9.9	2.0	18.1	2.2	1.0	0.3	( 290)
충북	66.6	10.0	2.3	17.9	2.4	0.7	0.1	( 332)
충남	67.2	8.8	2.1	18.9	1.4	0.9	0.7	( 490)
전북	67.3	10.2	2.0	16.6	2.2	1.4	0.3	( 320)
전남	67.2	9.9	1.9	17.0	2.2	1.8	0.1	( 269)
경북	65.1	10.5	2.4	18.6	1.4	1.7	0.3	( 371)
경남	66.3	10.1	2.3	18.4	1.4	1.2	0.2	( 790)
제주	68.7	9.0	1.8	17.5	2.2	0.6	0.2	( 127)
F	10.1***	51.9***	12.3***	12.8***	5.7***	4.2***	2.0**	

\*\* p < .01, \*\*\* p < .001

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표 Ⅱ-2-15>는 시도별 세출 분포를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인건비는 대전과 부산이 각각 70.8%, 70.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세종이 62.4%로 가장 낮다. 나머지 지역은 65% 내외로 적 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비는 전체 세출 분포와 유사하게 15~20% 사이에 분포한다. 광주가 20.1%로 가장 낮은 13%의 대전과 7%p 정도 차이가 난다. 나 머지 지역은 대부분 16~17%대의 분포를 보인다. 관리운영비는 세종이 11.7%, 경북 10.1%로 높고, 나머지 지역은 8~9%대로 차이가 거의 없다. 재산 조성비는 충북이 7.9%로 타 시도에 비해 높다.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인건비 지원시설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충북은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5.8%p 정도 인건비 지출의 차이가 난다. 시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65%를 상회한다. 울산과 경북이 64.7%, 64.8%로 가장 낮고, 서울과 대전, 경남이 69% 내외로 70%에 육박하여 부담이 크다. 사업비는 17~19%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관리운영비는 충북, 전

북,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10% 미만 수준이다.

〈표 II-2-15〉 시도 및 인건비 지원 여부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단위: %(개소)

															<u>で</u> 刊・	<u> %(개소)</u>
				인건:	비 지원	]						인건비	미지			
구분	인건 비	업무 추진 비	관리 운영 비	사업 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타	(수)	인건 비	업무 추진 비	관리 운영 비	사업 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타	(수)
전체	67.8	1.3	8.8	17.2	4.5	0.2	0.1	(1,167)	67.3	2.2	8.6	19.1	1.3	1.2	0.3	(10,155)
서울	67.8	1.1	7.7	17.9	5.3	0.1	0.1	(341)	69.0	1.9	7.1	19.3	1.6	0.8	0.3	( 1,853)
부산	70.6	1.3	9.7	15.2	3.1	0.0	0.0	( 88)	68.2	2.1	9.1	18.0	1.3	1.2	0.2	(479)
인천	68.5	1.5	7.9	15.9	5.7	0.5	0.1	( 57)	66.6	2.8	8.0	19.5	1.3	1.2	0.5	( 674)
광주	65.7	1.4	9.2	20.1	3.4	0.1	0.0	( 24)	67.3	2.9	9.4	18.3	1.2	0.8	0.1	( 253)
대구	66.6	1.5	9.8	15.6	6.2	0.2	0.0	( 36)	67.4	2.4	8.5	19.1	1.4	0.8	0.4	( 222)
대전	70.8	1.8	8.3	13.0	6.1	0.0	0.0	(26)	69.0	1.6	8.3	17.5	1.3	1.9	0.3	( 432)
울산	67.8	2.0	8.6	16.4	4.9	0.1	0.1	( 18)	64.8	2.5	9.9	19.3	2.1	1.0	0.4	( 226)
세종	62.4	1.8	11.7	18.7	4.0	1.3	0.0	(4)	65.2	1.7	10.1	19.3	2.0	0.7	1.1	( 27)
경기	69.3	1.2	9.2	17.3	2.7	0.2	0.0	(211)	66.7	2.1	8.4	19.9	1.1	1.4	0.3	(3,362)
강원	65.3	1.4	9.7	17.1	6.1	0.2	0.1	(41)	66.7	2.1	9.9	18.2	1.5	1.1	0.3	( 249)
충북	61.4	1.1	9.5	18.8	7.9	1.2	0.1	( 36)	67.2	2.4	10.0	17.8	1.7	0.7	0.1	( 296)
충남	66.7	1.8	9.3	17.7	4.4	0.1	0.1	( 33)	67.2	2.1	8.8	19.0	1.1	1.0	0.7	( 457)
전북	65.0	1.6	8.9	17.2	6.8	0.4	0.2	( 43)	67.7	2.0	10.4	16.6	1.5	1.5	0.3	( 277)
전남	66.2	1.3	9.6	18.6	4.3	0.0	0.0	(51)	67.5	2.0	9.9	16.6	1.7	2.2	0.1	(218)
경북	67.6	1.5	10.1	15.9	3.9	0.9	0.0	(49)	64.7	2.5	10.5	19.0	1.0	1.9	0.4	( 322)
경남	68.1	1.8	9.2	18.1	2.6	0.0	0.1	( 79)	66.2	2.4	10.2	18.5	1.3	1.3	0.2	(711)
제주	68.2	1.1	8.8	16.7	5.0	0.1	0.1	( 30)	68.9	2.1	9.1	17.7	1.3	0.8	0.2	( 97)
F	3.4***	2.0*	4.7***	3.4***	2.6**	2.3**	0.9		10.5***	11.1***	49.6***	12.3***	2.0**	3.8***	1.9*	
at at	. 01	datat.	- 00													

<sup>\*\*</sup> *p* < .01, \*\*\* *p* < .001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표 Ⅱ-2-16>은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세출 분포를 나타낸다. 인건비는 16~20인이 63.8%로 높고, 어린이집 규모에 반비례하여 줄어드는 경향을보인다. 165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50% 미만 수준을 나타낸다. 사업비는 반대로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6~20인 23.4%에서 165인 이상어린이집은 39.7%로 증가한다. 관리운영비는 6~8% 대로 차이가 크지 않다.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인건비는 16~20인이 73.8%로 매우 높고, 어린이집 규모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다가 165인 이상이 되면 다시 늘어난다. 사업비는 어린이집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6~20인이 14.9%로 낮지만, 165인 이상은 28.3%로 두배 정도로 증가한다.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16~20인 63.7%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65인 이상이 되면 46.4%로 줄어든다. 사업비

는 16~20인 23.4%에서 165인 이상 43.5%로 증가한다.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인건비는 10%p 정도, 사업비는 10~20%p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

〈표 II-2-16〉 규모별 어린이집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전출금	기타	<u>(</u> 수)
전체								
전체	61.4	7.9	1.9	26.0	1.5	1.0	0.3	(11,322)
16~20인	63.8	8.2	2.1	23.4	1.0	1.2	0.3	(8,338)
46~54인	57.4	6.9	1.5	31.1	2.1	0.7	0.2	(1,067)
73~81인	54.6	7.4	1.3	32.6	3.6	0.5	0.1	(800)
93~101인	53.7	7.2	1.1	34.4	2.7	0.7	0.2	( 535)
120~128인	52.1	6.6	0.9	37.1	2.9	0.4	0.1	( 192)
138~146인	51.7	7.0	0.8	36.5	3.6	0.3	0.1	( 112)
165인 이상	49.4	6.1	1.1	39.7	2.8	0.9	-	(278)
F	357.3***	46.4***	88.2***	542.5***	74.0***	7.9***	3.0**	
인건비 지원								
전체	61.9	8.0	1.2	24.5	4.1	0.2	0.1	( 1,167)
16~20인	73.8	8.2	1.7	14.9	1.2	0.2	0.1	( 89)
46~54인	65.4	8.0	1.4	21.6	3.4	0.1	0.1	( 322)
73~81인	59.4	8.2	1.2	25.8	5.1	0.2	-	( 375)
93~101인	59.2	8.0	1.0	27.4	4.1	0.3	0.1	( 211)
120~128인	57.7	8.3	0.9	27.7	5.3	0.1	-	( 54)
138~146인	57.7	7.9	0.7	28.4	5.2	0.1	-	(45)
165인 이상	58.2	6.9	1.3	28.3	4.9	0.4	0.1	( 71)
F	57.5***	1.9	$4.9^{***}$	55.8***	$4.6^{***}$	0.5	0.9	
인건비 미지원	]							
전체	61.3	7.8	2.0	26.2	1.2	1.1	0.3	(10,155)
16~20인	63.7	8.2	2.1	23.4	1.0	1.2	0.3	(8,249)
46~54인	54.0	6.4	1.5	35.3	1.6	1.0	0.3	(745)
73~81인	50.4	6.6	1.4	38.5	2.2	0.7	0.2	(425)
93~101인	50.1	6.7	1.1	39.0	1.8	1.0	0.3	( 324)
120~128인	49.9	6.0	0.9	40.7	1.9	0.5	0.1	( 138)
138~146인	47.7	6.4	0.8	41.9	2.6	0.4	0.1	(67)
165인 이상	46.4	5.8	1.1	43.5	2.1	1.1	-	( 207)
F	477.1***	64.9***	55.0***	865.2***	15.8***	2.3*	1.4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세출 분포를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60%를 상회하나, 경기, 울산, 인천 3개 지역만 59% 내외로 낮다. 사업비 또한 시도별로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20%가 넘는다. 경기가 29.4%, 인천 28.3%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관리운영비는 경북 10.0%, 서울 6.6%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7~9% 대에 분포한다(표 Ⅱ-2-17, 부표 Ⅱ-2-3 참조).

〈표 II-2-17〉 시도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개소)

							단키	· %(개소)
구분	인건비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전출금	기타	 (수)
전체	61.4	7.9	1.9	26.0	1.5	1.0	0.3	(11,322)
서울	64.0	6.6	1.7	24.7	2.0	0.7	0.3	(2,194)
부산	63.6	8.5	1.8	23.5	1.4	0.9	0.2	( 567)
인천	59.2	7.1	2.4	28.3	1.5	1.0	0.4	( 731)
광주	62.8	8.8	2.6	23.7	1.3	0.7	0.1	( 277)
대구	62.0	7.9	2.2	25.0	1.9	0.7	0.3	(258)
대전	63.6	7.7	1.5	23.8	1.4	1.7	0.3	(458)
울산	59.8	9.1	2.3	25.5	2.1	0.9	0.3	(244)
세종	60.0	9.5	1.5	25.1	2.1	0.8	0.9	( 31)
경기	58.8	7.4	1.8	29.4	1.1	1.2	0.3	( 3,573)
강원	62.7	9.3	1.9	22.8	2.0	0.9	0.3	( 290)
충북	62.3	9.3	2.2	23.2	2.2	0.7	0.1	( 332)
충남	61.7	8.1	2.0	25.5	1.2	0.9	0.6	( 490)
전북	63.4	9.6	1.9	21.4	2.1	1.3	0.3	( 320)
전남	63.3	9.3	1.8	21.9	2.0	1.7	0.1	( 269)
경북	62.0	10.0	2.3	22.5	1.3	1.7	0.3	( 371)
경남	61.2	9.4	2.1	24.7	1.3	1.1	0.1	( 790)
제주	65.0	8.5	1.8	22.0	2.0	0.6	0.2	( 127)
F	32.4***	62.7***	11.9***	57.0***	6.5***	4.2***	2.0*	

<sup>\*</sup> p < .05, \*\* p < .01, \*\*\* p < .001

17개 시도의 세출 분포를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인건비지원 시설의 경우,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60% 내외 수준을 나타낸다. 부산이64.4%, 울산 63.9%, 대전 63.8%로 3개 지역의 인건비 부담이 가장 많은 반면, 충북과 세종, 광주가 56~57%대로 낮다. 사업비는 광주가 30.2%로 17개 시도 중가장 높은 반면에 경북과 대전, 울산이 21%대로 10%p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지원시설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 제주가 65.5%로 전체 평균치를 상회하고, 인천, 울산, 경기는 60% 이하이다. 충북과 전북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 간에 인건비 비중이 5%p 이상 차이가 난다. 사업비는 경기가 29.7%, 인천 28.6%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25% 내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외 정도이다. 전남과 전북이 20~21%로 타 시도보다 낮은 편이다(표 Ⅱ-2-18 참 조).

〈표 II-2-18〉 시도 및 인건비 지원 여부별 세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개소)

	단귀, %(개소												<u> (세요)</u>			
			(	인건비	지원						Ç	인건비	미지	원		
구분	인건 비	관리 운영 비	업무 추진 비	사업 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 타	(수)	인건 비	관리 운영 비	업무 추진 비	사업 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 타	(수)
전체	61.9	8.0	1.2	24.5	4.1	0.2	0.1	(1,167)	61.3	7.8	2.0	26.2	1.2	1.1	0.3	(10,155)
서울	62.7	7.1	1.0	24.0	4.9	0.1	0.1	(341)	64.3	6.5	1.8	24.9	1.5	0.7	0.3	( 1,853)
부산	64.4	8.8	1.2	22.6	2.8	0.0	0.0	(88)	63.5	8.5	2.0	23.6	1.2	1.1	0.2	( 479)
인천	61.0	7.0	1.4	25.0	5.2	0.5	0.0	( 57)	59.1	7.1	2.5	28.6	1.2	1.1	0.5	( 674)
광주	57.4	8.0	1.3	30.2	3.0	0.1	0.0	( 24)	63.3	8.9	2.7	23.1	1.1	0.7	0.1	( 253)
대구	58.9	8.7	1.3	25.4	5.6	0.2	0.0	( 36)	62.5	7.8	2.3	25.0	1.3	0.8	0.3	( 222)
대전	63.8	7.3	1.6	21.8	5.4	0.0	0.0	( 26)	63.6	7.7	1.5	23.9	1.2	1.8	0.3	( 432)
울산	63.9	8.1	1.9	21.3	4.6	0.1	0.1	( 18)	59.5	9.1	2.3	25.9	1.9	0.9	0.4	( 226)
세종	57.0	11.0	1.6	25.3	3.9	1.2	0.0	(4)	60.4	9.3	1.5	25.1	1.8	0.7	1.1	( 27)
경기	62.5	8.3	1.1	25.5	2.4	0.2	0.0	(211)	58.5	7.3	1.9	29.7	1.0	1.3	0.3	(3,362)
강원	59.2	8.9	1.3	24.7	5.7	0.2	0.1	(41)	63.2	9.4	2.0	22.5	1.4	1.0	0.3	( 249)
충북	56.8	8.8	1.0	24.6	7.5	1.2	0.1	( 36)	63.0	9.4	2.3	23.0	1.5	0.6	0.1	( 296)
충남	60.1	8.3	1.6	26.0	3.9	0.1	0.1	( 33)	61.8	8.1	2.0	25.5	1.0	0.9	0.7	( 457)
전북	58.9	8.1	1.4	24.8	6.3	0.4	0.2	(43)	64.1	9.9	1.9	20.9	1.5	1.5	0.3	( 277)
전남	61.1	8.9	1.2	24.9	4.0	0.0	0.0	( 51)	63.8	9.4	1.9	21.2	1.5	2.1	0.1	( 218)
경북	63.2	9.5	1.4	21.4	3.6	0.8	0.0	( 49)	61.8	10.1	2.4	22.6	1.0	1.8	0.3	( 322)
경남	61.5	8.2	1.7	26.1	2.3	0.0	0.1	( 79)	61.2	9.5	2.2	24.6	1.2	1.3	0.2	( 711)
제주	63.3	8.2	1.0	22.6	4.7	0.1	0.1	( 30)	65.5	8.6	2.0	21.8	1.2	0.8	0.2	( 97)
F	2.9***	4.4***	1.7*	2.8***	2.7***	2.3**	1.0		34.6***	61.3***	11.4***	56.4***	2.4**	3.9***	1.9*	

<sup>\*</sup> p < .05, \*\* p < .01, \*\*\* p < .001

#### 다) 관항목별 세부 지출

#### (1) 인건비 지출

인건비(항)은 기본급과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 담비용(목)으로 구성된다(표 Ⅱ-2-19, 부표 Ⅱ-2-4 참조).

세부 항목별 세출 분포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급의 경우, 기타 필요경비와 상관없이 16~20인이 가장 높고, 이후 규모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우, 제주 16~20인이 56.4%, 광주 55.0%, 전남 54.1%로 높고, 세종과 충남 165인 이상이 각각 28.9%, 30.2%로 낮다.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면, 제주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서울 16~20인이 57.6%, 57.1%로 높고, 울산 138~146인이 25.9%로 낮다.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시도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광주는 규모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나,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은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이러한 경향성은 둔화된다(표 Ⅱ-2-19, 부표 Ⅱ-2-4 참조).

〈표 II-2-19〉 시도별 인건비 세출 분포

단위: %(개소)

		기	타 필요	.경비 저	의			7]1	타 필요	.경비 포	함		
구분	기본급	일용 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사회보 험부담 비용	기타 후생경 비	기본급	일용잡 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까거도	기타 후생경 비	(宁)
서울	51.5	1.0	1.4	3.7	5.2	1.3	55.3	1.1	1.5	3.9	5.6	1.4	(2,194)
부산	50.0	1.1	1.5	3.8	6.0	1.2	53.9	1.2	1.7	4.1	6.5	1.2	(567)
인천	47.6	0.9	1.2	3.3	5.2	1.2	53.6	1.0	1.4	3.7	5.8	1.3	(731)
광주	50.5	1.7	1.0	3.3	5.2	1.1	53.9	1.9	1.1	3.6	5.6	1.2	(277)
대구	48.5	1.1	0.9	3.7	6.2	1.6	52.6	1.2	1.0	4.0	6.7	1.8	(258)
대구	48.5	1.1	0.9	3.7	6.2	1.6	52.6	1.2	1.0	4.0	6.7	1.8	(258)
대전	45.3	2.0	6.3	3.4	5.2	1.5	49.2	2.1	6.9	3.7	5.6	1.6	(458)
울산	45.5	1.6	1.7	3.1	6.2	1.6	49.5	1.8	1.8	3.4	6.8	1.7	( 244)
세종	48.8	0.9	2.1	3.1	4.1	1.0	52.8	1.0	2.2	3.4	4.4	1.1	( 31)
경기	46.1	1.4	1.2	3.6	5.0	1.4	52.4	1.6	1.4	4.1	5.7	1.6	(3,573)
강원	48.8	1.9	1.8	3.2	5.5	1.5	51.8	2.1	1.9	3.4	5.8	1.6	(290)
충북	48.0	2.3	1.8	4.0	5.0	1.3	51.2	2.5	1.9	4.2	5.3	1.4	( 332)
충남	49.3	0.9	1.0	4.0	4.9	1.6	53.7	1.0	1.1	4.4	5.3	1.7	(490)
전북	49.6	1.2	1.4	4.1	5.9	1.3	52.7	1.3	1.4	4.4	6.3	1.4	(320)
전남	50.0	1.1	1.3	3.8	5.9	1.2	53.1	1.2	1.4	4.1	6.2	1.3	( 269)
경북	48.6	0.9	1.3	4.0	5.5	1.7	51.0	1.0	1.3	4.2	5.8	1.8	( 371)
경남	48.1	1.1	1.6	3.4	5.7	1.3	52.1	1.2	1.8	3.7	6.2	1.4	( 790)
제주	51.2	0.9	2.1	4.0	5.8	1.0	54.1	1.0	2.2	4.3	6.2	1.1	( 127)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 (2) 업무추진비 세출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목)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항)의 세부 항목별 지출 여부와 지출 시 비중을 시도별로 살펴보았다(표 Ⅱ-2-20, 부표 Ⅱ-2-5 참조).

기관운영비 지출 여부를 보면, 서울과 대전, 경북 등은 뚜렷하지 않으나 어린이집 규모에 비례하여 지출한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광주는 16~20인이 73.3%를 나타내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관운영비를 현원으로 나눈 아동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시도 및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시도별 전체 평균 기관운영비는 2~6천원 사이에 분포하나, 이를 다시 어린이집

규모별로 분석하면 1천원 미만인 경우도 있다. 전남의 93~101인은 아동 1인당 평균 15,539원이고, 120~128인은 723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직책급을 지출한다는 비율은 시도별로 60~8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제주의 경우 80.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이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면, 경남은 16~20인 시설 중 64.2%가 지출하나 어린이집 규모가 증가하면서 138~146인 83.3%로 늘어난다. 나머지 지역은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직책급을 지출한다는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지출액은 시도별로 평균 11,000~16,000원 사이에 분포한다. 대부분 16~20인이 1만원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어린이집 규모에 반비례하여 낮아진다(표 II-2-20, 부표 II-2-5 참조).

〈표 II-2-20〉 시도별 업무추진비 세출 분포

단위: %(개소)

										/0(/11-11/
 구분	지·		는 비율		기관	운영비	직	핵급	회의	의비
丁亚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서울	50.5	70.6	20.4	(2,194)	4,423	(1,107)	12,366	(1,549)	1,598	(447)
부산	40.2	71.1	12.3	(567)	3,979	(228)	12,372	(403)	1,978	(70)
인천	42.7	71.7	13.4	(731)	5,866	(312)	16,008	(524)	1,505	(98)
광주	65.0	72.9	9.0	(277)	3,308	(180)	16,978	(202)	2,363	(25)
대구	50.8	69.8	15.5	(258)	3,828	(131)	13,966	(180)	1,803	(40)
대전	46.5	61.6	9.0	(458)	3,533	(213)	12,350	(282)	282	(41)
울산	43.9	73.8	18.4	(244)	4,062	(107)	15,191	(180)	180	(45)
세종	58.1	61.3	29.0	( 31)	2,546	(18)	10,981	( 19)	1,730	(9)
경기	48.2	63.8	9.6	(3573)	4,742	(1,722)	13,678	(2,281)	1,751	(344)
강원	45.9	67.6	8.3	(290)	4,117	(133)	13,290	(196)	1,812	(24)
충북	65.1	72.0	9.9	(332)	4,154	(216)	13,696	(239)	1,546	(33)
충남	42.2	70.2	11.0	(490)	6,088	(207)	13,280	(344)	2,097	(54)
전북	45.6	75.3	7.2	( 31)	4,621	(146)	11,769	( 241)	2,299	(23)
전남	48.0	67.7	6.7	(3573)	5,150	(129)	11,881	(182)	1,935	(18)
경북	50.4	73.0	17.0	(290)	5,141	(187)	14,663	(271)	2,064	(63)
경남	38.7	66.3	15.2	( 332)	5,336	(306)	14,923	(524)	2,046	(120)
제주	21.3	80.3	17.3	(490)	2,497	( 27)	11,628	(102)	1,564	( 22)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회의비 지출 비율은 업무추진비(목) 중에서 가장 낮다. 세종과 서울이 각각 29.0%, 20.4%로 가장 높고, 전남이 전북이 7% 내외로 가장 낮다. 시도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나, 서울의 경우 16~20인 16.4%에서 165인 이상 33.3%로 증가한다. 아동 1인당 지출 비용은 평균 1,500~2,200원 사이로, 전북이 평균 2,299원, 인천이 1,505원으로 700원 정도 차이난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도 시도에 따라 상이한 경향성을 보인다. 광주는 16~20인이 3,145원에서 165인 333

원으로 규모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고, 경기와 충남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표  $\Pi$ -2-20, 부표  $\Pi$ -2-5 참조).

#### (3) 관리운영비 세출

여비, 수용비, 차량비, 연료비 (목)이 포함된 관리운영비(항) 세부항목별 세출비율과 아동 1인당 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Ⅱ-2-21>과 같다.

여비를 지출하는 어린이집은 시도별로 10~30%에 정도이다. 서울이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북 25.3%, 전남 23.4%, 강원 21.7% 순이다. 이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여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지출 규모는 시도별로 1,600원~5,000원 선이며, 제주가 평균 5,835원으로가장 많고 대전이 평균 1,693원으로 시도 간에 4천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를다시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면, 16~20인 시설이 가장 많고, 어린이집 규모가 커질수록 아동 1인당 여비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수용비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시도별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수용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지출 비용은 시도별로 34,000~41,000원 사이에 분포한다. 서울,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등은 4만원 초반 대로 높은 반면 대구는 35,000원 정도로 5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16~20인이 가장 많다.

차량비는 시도별로 차이가 크다. 차량비를 지출한다는 비율은 전남, 경북, 울산 등이 80%를 상회하고, 전북, 경남, 강원은 70%대를 나타낸다. 반면에 서울은 16.5%, 제주 17.3%로 낮다. 차량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지출 비용도시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제주가 9,292원인데 반해 전북과 경북은 17,000원을 초과한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연료비는 경북, 대구, 세종 등이 지출한다는 비율이 50~60%로 높고, 제주가 7.9%로 시도 간에 차이가 크다. 연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시도별로 6,000~10,000원 정도로 대구와 제주가 각각 6,371원, 6,011원으로 가장 적고, 강원이 10,749원으로 가장 많다. 이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면, 경남, 부산, 인천 등 몇몇 시도는 어린이집 규모에 비례하여 지출 비율이 늘어나다가 일정 규모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머지 지역들은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타 운영비는 시도별로 지출한다는 비율이 70~80%이고, 아동 1 인당 지출 비용은 30,000원~50,000원 사이에 분포한다. 서울이 아동 1인당 50,567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광주가 평균 29,579원으로 가장 적어서 2 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 다(표 Ⅱ-2-21, 부표 Ⅱ-2-6 참조).

〈표 II-2-21〉 시도별 관리운영비 세출 분포

단위: %(개소)

	지	출 '있	다는	비율		여	비	수원	}비	차링	門	연호	로비	기타	운영비
여비	수용 비	차량 비	연료 비	기타 운영 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2,177)	8,080	( 362)	8,814	(275)	50,567	(1,627)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13,010	(337)	7,611	(226)	33,861	(442)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99)	8,722	(149)	40,797	(600)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88)	7,229	(66)	29,579	(226)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33)	6,371	(149)	31,502	(207)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229)	8,154	(79)	41,159	(387)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243)	11,336	(196)	9,665	(101)	38,749	(190)
19.4	100.0	61.3	54.8	71.0	( 31)	3,334	(6)	40,435	( 31)	15,006	( 19)	7,951	(17)	38,594	(22)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1,129)	8,045	(719)	45,568	(2,946)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13)	10,749	(122)	35,394	(229)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6,031	(219)	6,875	(136)	35,475	(258)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1,131	(226)	8,082	(159)	34,028	(407)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48)	9,420	(130)	30,974	(235)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230)	8,329	(123)	28,533	(204)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315)	8,686	(230)	34,897	(288)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598)	7,951	(294)	37,326	(623)
7.9	100.0	17.3	7.9	76.4	(127)	5,836	(10)	37,514	(127)	9,292	(97)	6,011	(72)	30,906	(93)
	31.2 16.4 21.3 10.5 16.3 10.9 13.9 19.4 14.7 21.7 25.3 15.7 15.0 23.4 15.9 11.1	ch         ch           31.2         99.2           16.4         99.8           21.3         99.0           10.5         99.6           10.9         99.3           13.9         99.6           19.4         100.0           14.7         99.5           21.7         100.0           25.3         99.4           15.7         99.2           15.0         100.0           23.4         99.3           15.9         99.5           11.1         99.5	어비 수용 차량 비 비 31.2 99.2 16.5 16.4 99.8 59.4 21.3 99.0 27.2 10.5 99.6 67.9 16.3 99.6 51.6 10.9 99.3 50.0 13.9 99.6 80.3 19.4 100.0 61.3 14.7 99.5 31.6 21.7 100.0 73.4 25.3 99.4 66.0 15.7 99.2 46.1 15.0 100.0 77.5 23.4 99.3 85.5 15.9 99.5 84.9	어비 수용 차량 연료 비 비 비 31.2 99.2 16.5 12.5 16.4 99.8 59.4 39.9 21.3 99.0 27.2 20.4 10.5 99.6 67.9 23.8 16.3 99.6 51.6 57.8 10.9 99.3 50.0 17.2 13.9 99.6 80.3 41.4 19.4 100.0 61.3 54.8 14.7 99.5 31.6 20.1 21.7 100.0 73.4 42.1 25.3 99.4 66.0 41.0 15.7 99.2 46.1 32.4 15.0 100.0 77.5 40.6 23.4 99.3 85.5 45.7 15.9 99.5 84.9 62.0 11.1 99.5 75.7 37.2	chil         ris         chil         chil         chil           31.2         99.2         16.5         12.5         74.2           16.4         99.8         59.4         39.9         78.0           21.3         99.0         27.2         20.4         82.1           10.5         99.6         67.9         23.8         81.6           16.3         99.6         51.6         57.8         80.2           10.9         99.3         50.0         17.2         84.5           13.9         99.6         80.3         41.4         77.9           19.4         100.0         61.3         54.8         71.0           14.7         99.5         31.6         20.1         82.5           21.7         100.0         73.4         42.1         79.0           25.3         99.4         66.0         41.0         77.7           15.7         99.2         46.1         32.4         83.1           15.0         100.0         77.5         40.6         73.4           23.4         99.3         85.5         45.7         75.8           15.9         99.5         84.9         62.0 <t< td=""><td>어비 수용 차량 연료 기타 운영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16.4 99.8 59.4 39.9 78.0 (567) 21.3 99.0 27.2 20.4 82.1 (731) 10.5 99.6 67.9 23.8 81.6 (277) 16.3 99.6 51.6 57.8 80.2 (258) 10.9 99.3 50.0 17.2 84.5 (458) 13.9 99.6 80.3 41.4 77.9 (244) 19.4 100.0 61.3 54.8 71.0 (31) 14.7 99.5 31.6 20.1 82.5 (3,573) 21.7 100.0 73.4 42.1 79.0 (290) 25.3 99.4 66.0 41.0 77.7 (332) 15.7 99.2 46.1 32.4 83.1 (490) 15.0 100.0 77.5 40.6 73.4 (320) 23.4 99.3 85.5 45.7 75.8 (269) 15.9 99.5 84.9 62.0 77.6 (371) 11.1 99.5 75.7 37.2 78.9 (790)</td><td>어비 수용 차량 연료</td><td>어비 수용 차량 연료</td><td>어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평균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td><td>어비 수용 차량 연료 무영 (수) 평균 (수) 평균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2,177)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243)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td><td>여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명균 (수) 13.010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5,006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6,031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1,131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td><td>여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2,177) 8,080 (362)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13,010 (337)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99)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88)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33)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229)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243) 11,336 (196)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5,006 (19)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1,129)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13)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6,031 (219)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1,131 (226)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48)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230)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315)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598)</td><td>여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명균 (수) 면균 (수) 면균</td><td>여비 수용 차량 연료 기타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2,177) 8,080 (362) 8,814 (275)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13,010 (337) 7,611 (226)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99) 8,722 (149)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88) 7,229 (66)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33) 6,371 (149)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229) 8,154 (79)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243) 11,336 (196) 9,665 (101)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5,006 (19) 7,951 (17)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1,129) 8,045 (719)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13) 10,749 (122)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6,031 (219) 6,875 (136)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1,131 (226) 8,082 (159)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48) 9,420 (130)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230) 8,329 (123)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315) 8,686 (230)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598) 7,951 (294)</td><td>여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8년 (수) 16년 (수) 98.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13,010 (337) 7,611 (226) 33,861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99) 8,722 (149) 40,797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88) 7,229 (66) 29,579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33) 6,371 (149) 31,502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229) 8,154 (79) 41,159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5,006 (19) 7,951 (17) 38,594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1,129) 8,045 (719) 45,568 (17.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13) 10,749 (122) 35,394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58 (330) 16,031 (219) 6,875 (136) 35,475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48) 9,420 (130) 30,974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230) 8,329 (123) 28,533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315) 8,686 (230) 34,897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598) 7,951 (294) 37,326</td></t<>	어비 수용 차량 연료 기타 운영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16.4 99.8 59.4 39.9 78.0 (567) 21.3 99.0 27.2 20.4 82.1 (731) 10.5 99.6 67.9 23.8 81.6 (277) 16.3 99.6 51.6 57.8 80.2 (258) 10.9 99.3 50.0 17.2 84.5 (458) 13.9 99.6 80.3 41.4 77.9 (244) 19.4 100.0 61.3 54.8 71.0 (31) 14.7 99.5 31.6 20.1 82.5 (3,573) 21.7 100.0 73.4 42.1 79.0 (290) 25.3 99.4 66.0 41.0 77.7 (332) 15.7 99.2 46.1 32.4 83.1 (490) 15.0 100.0 77.5 40.6 73.4 (320) 23.4 99.3 85.5 45.7 75.8 (269) 15.9 99.5 84.9 62.0 77.6 (371) 11.1 99.5 75.7 37.2 78.9 (790)	어비 수용 차량 연료	어비 수용 차량 연료	어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평균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어비 수용 차량 연료 무영 (수) 평균 (수) 평균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2,177)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243)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여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명균 (수) 13.010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5,006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6,031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1,131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여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2,177) 8,080 (362)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13,010 (337)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99)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88)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33)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229)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243) 11,336 (196)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5,006 (19)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1,129)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13)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6,031 (219)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1,131 (226)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48)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230)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315)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598)	여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명균 (수) 면균	여비 수용 차량 연료 기타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31.2 99.2 16.5 12.5 74.2 (2,194) 2,457 (685) 40,249 (2,177) 8,080 (362) 8,814 (275) 16.4 99.8 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13,010 (337) 7,611 (226)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99) 8,722 (149)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88) 7,229 (66)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33) 6,371 (149)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229) 8,154 (79) 13.9 99.6 80.3 41.4 77.9 (244) 2,722 (34) 39,013 (243) 11,336 (196) 9,665 (101)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5,006 (19) 7,951 (17)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1,129) 8,045 (719)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13) 10,749 (122)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6,031 (219) 6,875 (136)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1,131 (226) 8,082 (159)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48) 9,420 (130)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230) 8,329 (123)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315) 8,686 (230)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598) 7,951 (294)	여비 수용 차량 연료 무성 (수) 평균 (수) 8년 (수) 16년 (수) 98.594 39.9 78.0 (567) 2,928 (93) 37,350 (566) 13,010 (337) 7,611 (226) 33,861 (21.3 99.0 27.2 20.4 82.1 (731) 2,161 (156) 37,177 (724) 8,941 (199) 8,722 (149) 40,797 (10.5 99.6 67.9 23.8 81.6 (277) 2,666 (29) 38,168 (276) 12,958 (188) 7,229 (66) 29,579 (16.3 99.6 51.6 57.8 80.2 (258) 2,957 (42) 34,655 (257) 10,697 (133) 6,371 (149) 31,502 (10.9 99.3 50.0 17.2 84.5 (458) 1,693 (50) 41,640 (455) 11,889 (229) 8,154 (79) 41,159 (19.4 100.0 61.3 54.8 71.0 (31) 3,334 (6) 40,435 (31) 15,006 (19) 7,951 (17) 38,594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1,129) 8,045 (719) 45,568 (17.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13) 10,749 (122) 35,394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58 (330) 16,031 (219) 6,875 (136) 35,475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48) 9,420 (130) 30,974 (23.4 99.3 85.5 45.7 75.8 (269) 2,917 (63) 37,421 (267) 14,587 (230) 8,329 (123) 28,533 (15.9 99.5 84.9 62.0 77.6 (371) 3,622 (59) 39,141 (369) 17,096 (315) 8,686 (230) 34,897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598) 7,951 (294) 37,326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 (4) 사업운영비 세출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행시비로 구성되는 사업운영비 지출 비율과 아동 1 인당 지출 규모를 살펴보았다(표 Ⅱ-2-22, 부표 Ⅱ-2-7 참조).

급간식비는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지출하며, 시도별로 아동 1인당 평균 48,000~58,000원 정도를 지출한다. 대구, 울산, 강원,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모두 5만원을 상회한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다음으로 교재교구비는 시도별로 지출한다는 비율이 차이가 있다. 제주가 100%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서울과 충남이 각각 83.9%, 83.1%, 대전이 53.3%로 가장 낮다. 교재교구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지출 비용은 12,000~21,000원 정도로 경기가 12,735원으로 가장 적고, 울산이 21,630원으로 가장 많다.

행사비를 지출한다는 비율은 20~90%대로 시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인천 25.6%, 경기 31.2%를 제외하고 대부분 60%가 넘는다. 사업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지출 비용은 시도별로 6,000원~10,000원 정도이다. 경북이 10,083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1만원 이하 수준이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II-2-22〉 시도별 사업운영비 세출 분포

단위: %(개소)

		지출 '있다'	'는 비율		급간	식비	교재	고구비	 행/	사비 
구분	급간 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宁)
서울	99.9	83.9	68.6	(2,194)	57,791	(2,191)	14,895	(1,840)	7,763	(1,506)
부산	100.0	56.4	67.7	(567)	50,241	(567)	13,373	(320)	7,569	( 384)
인천	99.9	63.3	25.6	(731)	53,268	(730)	13,482	(463)	6,960	(187)
광주	100.0	56.0	80.9	(277)	50,102	(277)	16,093	(155)	9,829	(224)
대구	100.0	69.8	76.4	(258)	49,134	(258)	15,839	(180)	7,884	(197)
대전	100.0	53.3	71.6	(458)	53,041	(458)	11,614	(244)	9,789	(328)
울산	100.0	55.3	75.0	(244)	48,728	(244)	21,630	(135)	8,166	(183)
세종	100.0	67.7	93.5	(31)	51,316	(31)	20,717	(21)	8,266	(29)
경기	100.0	65.4	31.2	(3,573)	53,203	(3,573)	12,735	(2,337)	8,618	(1,113)
강원	100.0	64.5	72.8	(290)	49,636	(290)	17,111	(187)	7,091	(211)
충북	99.7	63.0	78.9	(332)	51,634	(331)	14,519	(209)	8,802	(262)
충남	100.0	83.1	62.9	(490)	55,970	(490)	15,093	(308)	8,591	(335)
전북	99.7	59.1	72.8	(320)	50,609	(319)	16,243	(189)	9,345	(233)
전남	100.0	56.5	62.1	(269)	51,482	(269)	21,088	(152)	7,570	(167)
경북	100.0	66.8	83.3	(371)	54,144	(371)	18,051	(248)	10,083	(309)
경남	100.0	59.2	78.9	(790)	48,967	(790)	17,874	(468)	8,792	(524)
제주	56.7	100.0	73.2	(127)	53,486	(127)	13,510	( 89)	7,082	(102)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 (5) 시설비 세출

시설비(항)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목)으로 구성된다(표 Ⅱ -2-23, 부표 Ⅱ-2-8 참조).

시설비 지출 비율은 충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10% 내외로 낮다. 충남이 68.4%로 가장 높고, 울산, 세종, 경기가 9% 정도로 낮아서 7배정도 차이가 난다.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지출 비용은 시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전북이 6만원대로, 서울, 대구, 강원이 5만원대로 높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경향성을 찾을 수가 없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지출한다는 비율은 시도별로 8~30% 사이에 분포한다. 세

종이 38.7%로 가장 높고, 경남이 8.4%로 낮다. 자산취득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11,000원에서 35,000원 정도를 시도별로 지출한다. 어린이집 규모별 차이는 일정하지가 않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제주가 70.1%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10~20%대의 고른 분포를 보인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평균 6,000~15,000 원 정도를 지출한다. 울산, 인천, 광주, 충북, 전남, 대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1만 원 미만 수준이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표 Ⅱ-2-23, 부표 Ⅱ-2-8 참조).

〈표 II-2-23〉 시도별 시설비 세출 분포

다위: %(개소)

									단귀.	<u>%(개소)</u>
		지출 '있다	l'는 비율		시설	클비	자산추	무비	시설장비	유지비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서울	16.5	24.1	18.9	(2,194)	50,267	(363)	20,519	(528)	8,633	(414)
부산	12.0	20.8	13.9	(567)	29,406	(68)	17,054	(118)	8,669	(79)
인천	12.7	19.3	19.2	(731)	42,799	(93)	16,979	(141)	10,548	(140)
광주	12.6	20.2	17.3	(277)	21,004	(35)	15,205	(56)	11,462	(48)
대구	17.8	19.4	20.2	(258)	53,341	(46)	16,786	(50)	7,374	(52)
대전	11.4	19.2	11.4	(458)	33,525	(52)	34,296	(88)	10,328	(52)
울산	9.4	27.0	14.8	(244)	34,107	(23)	29,720	(66)	15,033	(36)
세종	9.7	38.7	25.8	( 31)	36,380	(3)	18,672	(12)	6,098	(8)
경기	9.2	18.9	20.2	(3,573)	28,507	(327)	15,776	(674)	6,238	(723)
강원	14.1	26.2	19.7	(290)	50,782	(41)	18,619	(76)	5,653	(57)
충북	16.0	28.6	19.6	(332)	22,846	(53)	36,574	(95)	11,182	(65)
충남	68.4	10.4	24.7	(490)	24,455	(51)	15,392	(121)	8,241	(67)
전북	10.0	28.1	15.9	(320)	62,239	(32)	56,599	(90)	7,134	(51)
전남	14.5	28.6	20.4	(269)	36,473	(39)	16,314	(77)	11,683	(55)
경북	9.4	17.0	14.8	(371)	33,964	(35)	28,983	(63)	9,512	(55)
경남	66.3	8.4	19.4	(790)	32,645	(66)	26,559	(153)	8,928	(103)
제주	56.7	73.2	70.1	(127)	24,846	(24)	11,941	(49)	6,439	(37)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 3. 소결

제2장에서는 2014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어린이집의 세입 항목별 분포는,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보육

료 수입이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기본보육료가 20.1%, 인건비 보조금이 8.6%, 나머지는 5% 내외 수준으로 전년도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보육료, 기타 비중이 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분포는 보육료 수입이 53.1%, 기본보육료 18.7%, 인건비보조금 8% 순이며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기타 지원금 등은 5% 미만으로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정원 대비 현원률이 80% 이상이고, 보육비용 산정 시 기본 모형이 되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 기준으로 ±4인 범주에 포함되는 어린이집의 세입 분포는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보육료 60.2%, 기본보육료 22.2%, 인건비 보조금 8.1% 정도이고,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면 보육료는 54.6%, 기본보육료는 20.5%, 인건비보조금은 7.6%로 낮아진다.

셋째,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입 분포는 보육료 수입의 경우, 대부분 60%, 기본보육료도 대부분의 지역이 20%를 상회하나 서울이 모두 낮았다. 대신 서울은 인건비 보조금이 16.6%로 높았다.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항목별 세입분포는 보육료 수입은 전반적으로 55%, 기본보육료도 전반적으로 20~23% 사이에 분포하나 두 항목 모두 서울이 가장 낮았다.

넷째, 전체 어린이집의 세출 분포는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66.3%, 사업비 18.9%, 관리운영비 9.5%, 나머지는 2% 미만,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는 60.9%, 관리운영비 8.7%로 낮아지고, 사업비는 25.5%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정원 대비 현원률이 80% 이상, 보육비용 산정 시 기본 모형이 되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 기준으로 ±4인 범주에 포함되는 어린이집의 세입분포는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인건비 67.3%, 사업비 18.9%, 관리운영비 8.6%이고,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61.4%, 사업비 26.0%, 관리운영비 7.9%로 낮아진다.

여섯째, 시도별 세출분포를 보면,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인건비는 65~68%, 사업비 16~19%이고,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인건비는 전 반적으로 60%를 상회하나, 경기, 울산, 인천 3개 지역만 59% 내외로 낮고, 사업비 또한 시도별로 20%가 넘는다.

# Ⅲ. 어린이집 재정운영 현황

제3장은 어린이집이 국고사업 외에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과 어린이집 재정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관련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지원 수혜 현황과 도움 정도, 지원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 비용 산출과 관련된 어린이집 재정 운영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 1.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지원

1절은 어린이집이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지원받는 인건비, 사업운 영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 운영에의 도움정도 및 요구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 가. 인건비

# 1) 지원 항목

어린이집이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으로 지원받는 인건비를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대다수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고, 65.1%는 취사부 등 지원 인력 인건비, 30% 정도는 장기근속수당과 평가인증 수당, 담임수당을 각각 지원받았으며, 26.4%는 복리후생비, 18.5%는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 나머지는 5% 내외로 지원 비율이 낮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가 각각 96.6%, 97.8%로 가장 높고, 복리후생비가 34.3%, 장기근속수당과 평가인증 수당, 담임수당이 각각 20%대,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13.4% 순이다. 사회복지법인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가 90%를 상회한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43.3% 정도이고, 장기근속수당과 평가인증수당, 담임수당이 각각 30%를 나타낸다. 법인단체 등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91.3%로 높고,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는 89.1%, 평가인증 수당이 30.4%, 장기근속수당과 담임수당,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각각 20% 정도이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15.2%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다. 민간개인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97.8%로 높고, 장기근속수당과 평가인증수당, 담임수당이 각각 40% 내외, 복리후생비와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20%대를 나타낸다. 가정도 민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100%이고,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 62.5%, 장기근속수당과 보육교사 교통비가 각각 37.5%이다(표 Ⅲ-1-1 참조).

〈표 Ⅲ-1-1〉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지원 여부

						단위:	<u>%(개소)</u>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개인	가정	직장	전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6.6	93.3	91.3	97.8	100.0	100.0	97.0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	97.8	96.7	89.1	36.7	27.3	62.5	65.1
장기근속수당	21.8	35.0	23.9	46.6	42.1	37.5	34.8
복리후생비	34.3	6.7	19.6	21.7	28.9	37.5	26.4
보육교사 교통비	6.2	13.3	8.7	5.1	5.0	12.5	6.3
평가인증 수당	22.1	38.3	30.4	40.6	52.9	12.5	34.5
담임수당	26.2	35.0	23.9	37.4	38.8	12.5	32.3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13.4	43.3	21.7	20.4	14.9	-	18.5
교사 인건비	1.9	-	-	0.6	4.1	-	1.5
교사 연구수당	1.6	-	2.2	0.3	0.8	-	0.9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2	6.7	15.2	2.6	8.3	12.5	6.1
보조교사 인건비	0.6	1.7	-	-	3.3	-	0.8
명절, 휴가 등 상여	0.9	3.3	-	1.0	0.8	-	1.0
시간외 근무수당	4.4	5.0	-	-	-	-	2.0
영유아, 장애아 등 특별수당	5.0	3.3	-	4.8	4.1	-	4.4
장려수당	2.5	1.7	-	0.6	-	-	1.3
기타1	3.4	3.3	2.2	2.6	4.1	-	3.1
기타2	0.3	-	-	-	-	-	0.1
(수)	(321)	(60)	(46)	(313)	(121)	(8)	(8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어린이집 대부분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고, 75.6%는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 40.9%는 복리후생비, 10% 정도씩은 장기 근속수당과 평가인증수당, 담임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도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장기근속수당이 40~50%대로 높다. 특히 읍면지역은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94.2%로 높다.

어린이집 규모별 차이를 보면, 20인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수당이 51.9%로 높고, 나머지 항목은 전반적으로 45인 이상 어린이집들보다 지원 비율 이 낮다. 45인 이상 어린이집은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는 70% 내외를 나타 내고, 장기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평가인증수당, 담임수당이 20~40% 정도이다 (표 Ⅲ-1-2 참조).

〈표 Ⅲ-1-2〉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인건비 지원 여부

LIOI: 0//JII Y )

								<u> 위: %(개소)</u>
	7	지역규모			•	어린이집	규모	
구분	대도시	중도시	읍면 지역	20인	45-55인	72-82인	92-102인	124인이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8.5	96.7	94.2	100.0	95.9	97.2	96.3	96.5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	75.6	52.0	64.3	29.8	71.2	77.6	69.1	64.0
장기근속수당	16.2	53.3	44.4	38.9	25.1	36.0	35.1	45.6
복리후생비	40.9	18.1	7.6	29.0	26.0	27.6	28.3	18.4
보육교사 교통비	8.6	1.6	9.4	6.9	7.8	6.5	4.7	5.3
평가인증 수당	17.5	49.3	47.4	51.9	27.4	28.0	32.5	43.9
담임수당	18.5	43.8	43.9	36.6	22.8	39.3	29.3	37.7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	-	94.2	16.8	12.8	17.8	21.5	28.1
누리과정지원비	5.1	3.6	4.1	-	3.7	4.7	8.9	2.6
교사 인건비	1.8	1.3	1.2	3.8	2.3	-	0.5	1.8
교사 연구수당	1.8	0.3	-	0.8	1.4	1.4	0.5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6	3.9	6.4	8.4	8.7	5.6	4.7	1.8
보조교사 인건비	1.0	0.7	0.6	3.1	0.5	0.9	-	-
명절, 휴가 등 상여	1.0	0.3	2.3	0.8	-	1.9	0.5	2.6
시간외 근무수당	3.3	1.3	-	-	1.4	2.3	3.1	2.6
영유아, 장애아 등 특별수당	3.6	4.9	5.3	3.1	3.2	4.2	6.3	5.3
장려수당	1.5	1.3	0.6	-	0.5	-	2.1	5.3
기타1	1.3	3.9	5.8	3.8	3.2	4.2	2.1	1.8
기타2	-	-	0.6	-	0.5	-	-	-
<u>(</u> 수)	(394)	(304)	(171)	(131)	(219)	(214)	(191)	(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2) 도움정도

<표 Ⅲ-1-3>은 어린이집이 받고 있는 인건비 지원이 어린이집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 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대부분의 항목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75% 이상을 나타낸다. 보육교사 교통비와 장기근속수당, 보육교사 교통비 등은 어린 이집 운영에 도움된다는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도 움정도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모든 항목이 3점 이상을 나타내지만, 보육교사 교통비와 평가인증 수당이 평균 3.2점으로 가장 낮다.

〈표 Ⅲ-1-3〉 인건비 지원 도움정도

단위: %(명) 전혀 별로 대체로 매우 구분 도움되지 도움되지 계(수) 평균 도움 도움 않음 않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8 5.0 36.5 56.7 100.0(843) 3.5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 79.3 \_ 1.8 18.9 100.0(566) 3.8 장기근속수당 2.0 10.9 39.7 47.4 100.0(302) 3.3 복리후생비 1.3 10.5 38.0 50.2 3.4 100.0(229) 보육교사 교통비 20.0 40.0 40.0 100.0(55) 3.2 평가인증 수당 3.0 16.7 36.0 44.3 100.0(300) 3.2 담임수당 8.2 38.8 52.0 1.1 100.0(281) 3.4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1.2 2.5 70.2 100.0(161) 3.7 26.1 누리과정지워비 2.6 18.4 78.9 100.0(38) 3.8 교사 인건비 7.7 15.4 76.9 100.0(13) 3.7 교사 연구수당 25.0 25.0 50.0 100.0(8) 3.3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9 24.5 73.6 100.0(53) 3.7 보조교사 인건비 28.6 71.4 100.0(7) 3.7 명절, 휴가 등 상여 11.1 33.3 55.6 100.0(9) 3.4 시간외 근무수당 5.9 47.1 47.1 100.0(17) 3.4 영유아, 장애아 등 특별수당 44.7 55.3 100.0(38) 3.6 장려수당 9.1 45.5 45.5 100.0(11)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현재 어린이집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 이 되는 인건비 지원을 1, 2순위로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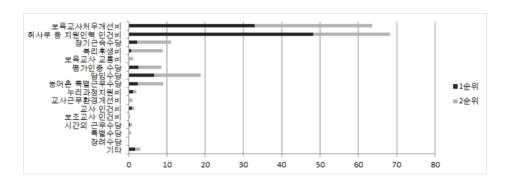
〈표 Ⅲ-1-4〉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인건비 지원: 1+2순위

단위: %(명) 취사 농어 누립 보육 교사 (수) 인건 H) 1순위 33.0 48.2 2.2 2.4 1.2 0.7 2.5 6.7 0.1 0.8 0.2 0.3 1.7 100.0(869) 2순위 30.6 20.1 8.9 8.2 1.2 6.0 12.2 6.6 0.8 0.9 0.8 0.2 0.6 0.6 0.1 1.4 100.0(862) 1+2순위 63.4 68.1 11.0 8.9 1.2 8.5 18.8 9.0 2.0 1.0 1.6 0.5 0.9 0.6 0.1 1.8

주: 특별수당은 영유아장애아 특별수당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1순위로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가 48.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3.0%, 나머지는 5% 내외로 적었다. 2순위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0.6%,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가 20.1%이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각각 60%대, 담임수당 18.8%, 장기근속수당 11.0%, 복리후생비와 평가인증수당,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8~9% 정도이다(표 Ⅲ-1-4 참 조).



[그림 Ⅲ-1-1] 어린이집 운영이 되움되는 인건비 지원: 1+2순위

< 표 Ⅲ-1-5>는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인건비 지원을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40%대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고,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는 지원인력 인건비가 각각 60%대로 높다.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담임수당이 10.2%, 사회복지법인은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6.7%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지원 인력 인건비가 50%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중소도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지원인력 인건비가 각각 40%대로 비등하다. 읍면지역은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11.7%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보육교사처우개선비와 지원인력인건비가 각각 40% 가까이 되는 20인을 제외하고, 보육교사처우개선비와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은 정원 규모에 비례하여 도움된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지원인력인건비는 반비례한다.

〈표 Ⅲ-1-5〉 제 특성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인건비 지원: 1순위

단위: %(명)

													L	<u> ゴガ・ ((3)</u>
구분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비	지원 인력 인건 비	장기 근속 수당	복리 후생 비	평가 인증 수당	담임 수당	농어 촌 특별 근무당	누리 과정 지원 비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비	교사 인건 비	보조 교사 인건 비	시간 외 근무 수당	기 타	계(수)
전체	33.0	48.2	2.2	0.7	2.5	6.7	2.4	1.2	0.1	0.8	0.2	0.3	1.6	100.0(869)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21.2	65.1	2.2	1.2	2.5	4.7	0.9	0.9	-	0.6	-	0.3	0.3	100.0(321)
사회복지법인	13.3	63.3	5.0	-	1.7	5.0	6.7	-	-	-	-	3.3	1.7	100.0(60)
법인단체	26.1	65.2	2.2	-	2.2	2.2	-	2.2	-	-	-	-		100.0(46)
민간개인	47.0	30.7	1.0	-	2.6	10.2	3.5	1.9	0.3	0.3	-	-	2.5	100.0(313)
가정	40.5	35.5	4.1	0.8	3.3	5.8	2.5	-	-	3.3	1.7	-	2.5	100.0(121)
직장	37.5	37.5	-	12.5	-	-	-	-	-	-	0.0	-	12.5	100.0(8)
지역규모														
대도시	32.2	52.5	2.3	0.8	2.5	6.3	-	0.8	0.3	1.0	-	0.3	1.0	100.0(394)
중도시	40.1	41.1	1.6	0.3	2.6	7.6	0.3	2.0	-	0.7	0.7	0.3	2.6	100.0(304)
읍면지역	22.2	50.9	2.9	1.2	2.3	5.8	11.7	0.6	-	0.6	-	0.6	1.2	100.0(171)
정원규모														
20인	37.4	39.7	3.8	1.5	3.1	5.3	2.3	-	-	3.1	1.5	-	2.3	100.0(131)
45~55인	27.9	55.7	1.8	1.8	0.5	6.8	0.9	0.9	0.5	0.9	-	0.5	2.0	100.0(219)
72~82인	29.0	59.3	2.3	-	1.4	4.7	1.4	0.9	-	-	-	-	1.0	100.0(214)
92~102인	33.5	44.0	2.1	-	4.7	8.4	2.6	2.6	-	-	-	-	2.1	100.0(191)
124인 이상	44.7	29.8	0.9	-	4.4	8.8	7.0	0.9	-	0.9	-	1.8	0.9	100.0(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나. 사업운영비

# 1) 지원 항목

급간식 및 교재교구비 등 사업 운영비 지원 항목을 보면, 교재교구비가 83.8%로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영유아 급간식비 47.0%, 보육교사 중식비 27.6%, 친환경 급간식비 17.0%, 우유급식비 8.9% 순이다. 나머지는 1% 대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국공립은 보육교사 중식비가 53.6%, 사회복지법인은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와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가 각각 30%대, 직장은 보육교사 중식비가 37.5%로 다른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표 III-1-6 참조).

〈표 Ⅲ-1-6〉 어린이집 유형별 사업운영비 지원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 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개인	가정	직장	전체
영유아 급간식비	49.5	35.0	30.4	48.9	47.1	50.0	47.0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	24.0	30.0	15.2	11.8	6.6	12.5	17.0
우유 급식비	10.9	1.7	2.2	8.9	9.1	12.5	8.9
보육교사 중식비	53.6	6.7	23.9	10.5	14.0	37.5	27.6
교재교구비	81.3	88.3	91.3	84.7	86.0	37.5	83.8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1.6	-	4.3	1.0	3.3	12.5	1.7
시간연장 운영비	2.8	-	-	0.3	0.8	-	1.3
현장학습 및 행사비	2.5	1.7	-	-	-	-	1.0
영유아반 운영비	0.9	-	2.2	0.3	3.3	-	1.0
기타	1.6	-	2.2	1.6	1.7	-	1.5
<u>(</u> 수)	(321)	(60)	(46)	(313)	(121)	(8)	(8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교재교구비가 모두 80%를 상회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영유아급간식비가 도움된다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대도시는 보육교사 중식비가 58.9%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단연 높다. 이 외에 대도시는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가 20.6%, 중소도시는 우유급식비가 13.5%로 높은 편이다.

〈표 Ⅲ-1-7〉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사업운영비 지원 여부

단위: %(개소) 지역규모 어린이집 규모 구분 대도 중도 읍면 124ণ 45-55 72-82 92-102 20인 시 지역 인 인 시 인 이상 영유아 급간식비 35.5 53.3 52.6 48.1 47.5 49.5 45.5 42.1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 20.6 12.5 17.0 6.9 12.8 22.4 20.9 20.2 우유 급식비 7.9 13.5 2.9 8.4 7.3 13.6 5.8 8.8 보육교사 중식비 58.9 2.0 13.7 35.2 24.6 20.2 1.2 35.0 교재교구비 81.7 86.2 84.2 84.0 79.0 86.0 86.9 83.3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0.5 3.0 2.3 3.1 1.4 1.4 1.0 2.6 시간연장 운영비 1.5 0.9 1.8 1.6 0.8 1.4 1.6 현장학습 및 행사비 2.0 0.6 1.4 1.9 1.8 영유아반 운영비 0.8 1.0 1.8 2.3 0.9 0.9 1.4 기타 1.3 2.0 1.2 1.5 0.9 2.6 1.4 1.6 (수) (394) (304) (171) (131) (219)(191)(214)(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72인 이상 구간은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를 지원받는다는 비율이 20%가 넘고, 45인 이상은 보육 교사 중식비가 20~30%로 20인 어린이집에 비해 높다. 영유아 급간식비는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40%대로 비슷한 수준이다(표 Ⅲ-1-7 참조).

### 2) 도움정도

< 때-1-8>은 앞서 살펴본 인건비 지원과 동일하게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운영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영유아 급식비 등 10개 항목 중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비가 도움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비, 영유아반 운영비 순이다. 현장학습 및 행사비와 보육교사 중식비가 도움된다는 비율이 가장 낮다. 도움정도도 전반적으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나타낸다.

〈표 Ⅲ-1-8〉 사업운영비 지원 도움정도

단위: %(명) 저혀 별로 대체로 매우 구분 도움되지 도움되지 계(수) 평균 도움 도움 않음 않음 영유아 급가식비 37.7 41.4 100.0(408) 3.2 3.9 16.9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 2.7 14.9 41.2 41.2 100.0(148) 3.2 우유 급식비 2.6 11.7 32.5 53.2 100.0(77) 3.4 보육교사 중식비 22.9 40.8 0.8 35.4 100.0(240) 3.1 교재교구비 2.5 13.3 44.6 39.6 100.0(728) 3.2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20.0 80.0 100.0(15) 3.8 시간연장보육 운영비 9.1 27.3 63.6 100.0(11) 3.5 현장학습 및 행사비 22.2 22.2 44.4 100.0(9) 3.0 11.1 영유아반 운영비 11.1 55.6 33.3 100.0(9) 3.1 기타 7.7 7.7 38.5 46.2 100.0(13)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지원 항목을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1순위로 교재교구비와 영유아급간식비가 각각 39.6%, 38.7%로 높고, 다음으로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가 10.1%이다. 나머지는 5% 미만이다. 2순위도 교재교구비가 38.3%로 높고, 영유아급간식비 25.1%, 보육교사중식비 16.5%,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 10.4% 순이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교재교구비가 72.3%, 영유아급간식비 60.1%,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 19.0%, 보육교사 중식비 18.8% 순이 된다(표 III-1-9 참조).

〈표 Ⅲ-1-9〉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관련 지원(1순위)

										E	<u> 산위: %(명)</u>
구분	영유아 급간식 비	친환경 (유기농) 급간 식비	보육 교사 중식비	우유 급식비	교재 교구비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 정 운영비	시간 연장 운영비	식표	영유아 반 운영비	기타	계(수)
1순위	38.7	10.1	4.7	2.8	39.6	0.8	0.7	0.1	0.3	2.2	100.0(869)
2순위	25.1	10.4	16.5	6.3	38.3	1.1	0.5	0.4	0.7	0.7	100.0(741)
1+2순위	60.1	19.0	18.8	8.2	72.3	1.7	1.2	0.5	0.9	2.7	(869)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표 Ⅲ-1-10〉 제 특성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관련 지원:1순위

단위: %(명) 현장 학습 및 누리과정 시간 연장 친환경 영유아 보육 교재 영유 (유기 농)급 우유 표준보 급간식 교구 구분 중식비 급식비 아반 기타 계(수) 훈형 육과정 비] 운영비 간식비 운영비 행사비 비 정체 4.7 39.6 0.7 0.1 0.3 2.2 100.0(869) 38.7 10.1 2.8 0.8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37.7 12.8 9.0 2.8 33.3 1.2 1.6 100.0(321) 사회복지법인 26.7 50.0 1.7 20.0 \_ 1.7 100.0(60) 법인단체 52.2 32.6 6.5 4.3 2.2 2.2 100.0(46) 민간개인 44.7 6.7 2.2 4.5 37.7 0.6 0.3 0.3 2.9 100.0(313) 가정 35.5 7.4 1.7 0.8 50.4 0.8 0.8 2.5 100.0(121) 직장 12.5 25.0 12.5 50.0 100.0(8) 지역규모 대도시 37.1 10.2 38.3 0.3 100.0(394) 8.1 3.3 0.8 0.5 1.5 중도시 36.5 9.9 1.6 2.0 44.4 1.3 1.0 0.3 2.9 100.0(304) 읍면지역 46.2 10.5 2.3 2.9 33.9 1.2 0.6 2.4 100.0(171) 정원규모 20인 35.1 7.6 1.5 0.8 51.1 0.8 0.8 2.3 100.0(131) 45~55인 35.6 5.9 6.4 2.3 44.7 0.9 1.4 2.8 100.0(219) 72~82인 39.3 7.0 31.8 0.5 0.5 1.5 100.0(214) 14.5 5.1 92~102인 47.1 3.7 32.5 0.5 1.0 2.6 100.0(191) 11.0 1.0 0.5 124인 이상 33.3 2.6 4.4 43.0 1.8 0.9 0.9 1.8 100.0(114) 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교재교구비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가정은 교재교구비, 국공립과 민간개인은 영유아급간식비, 사회복지법인은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이나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읍면지역은 영유아 급간식비, 20인 소규모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 72~82인은 친환경(유기농) 간식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III-1-10 참조).

### 다. 관리운영비

# 1) 지원 항목

관리운영비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를 보면, 냉난방비가 57.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안전공제가입비 32.3%, 차량운영비 23.2%, 배상보험료 10.8%,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와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가 각각 8%대 정도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국공립은 배상보험료가 13.4%, 가정은 냉난방비가 74.4%, 법인단체는 전기가스안전점검 수수료 15.2%로 상대적으로 높다(표 Ⅲ-1-11 참조).

〈표 Ⅲ-1-11〉 어린이집 유형별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 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개인	가정	직장	전체
안전공제 가입비	34.6	36.7	37.0	30.0	29.8	12.5	32.3
배상보험료	13.4	10.0	10.9	9.9	7.4	-	10.8
공기질관리비	5.6	3.3	-	1.9	2.5	-	3.3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7.8	3.3	15.2	8.3	8.3	12.5	8.2
소독방제비	7.8	5.0	8.7	7.3	4.1	-	6.9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	7.2	10.0	10.9	9.9	9.1	-	8.7
냉난방비	42.1	61.7	60.9	66.5	74.4	12.5	57.4
차량운영비	15.9	55.0	32.6	27.8	13.2	-	23.2
기타	0.9	1.7	2.2	0.6	1.7	-	1.0
(수)	(321)	(60)	(46)	(313)	(121)	(8)	(8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안전공제가입비가 중소도시에 비해 지원 비율이 높고, 대도시는 배상보험료와 소독방제비가 각각 10%대, 중소도시는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12.5%, 읍면지역은 차량운영비가 80.1%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보이나, 20인 어린이집은 냉난방비가 71.8%로 45인 이상 어린이집에 비해 상당히 높고, 차량운영비는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45~55인

과 72~82인은 배상보험료가 10%가 넘는다(표 Ⅲ-1-12 참조).

〈표 Ⅲ-1-12〉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단위:	%(개소)
		지역규모			어택	원이집 F	구모	
구분	대도시	중도시	읍면 지역	20인	45-55 인	72-82 인	92-102 인	124인 이상
안전공제 가입비	37.3	25.7	32.7	31.3	32.4	35.0	31.4	29.8
배상보험료	15.0	6.9	8.2	8.4	12.3	13.1	8.4	10.5
공기질관리비	4.1	2.6	2.9	2.3	3.2	3.3	2.1	7.0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4.1	12.5	9.9	8.4	8.2	7.9	8.4	7.9
소독방제비	10.7	3.6	4.1	3.8	7.8	7.5	5.8	9.6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	8.6	8.2	9.9	8.4	10.5	7.5	7.3	10.5
냉난방비	48.0	67.4	61.4	71.8	55.7	59.3	50.3	52.6
차량운영비	6.3	13.2	80.1	16.0	19.2	24.3	26.7	31.6
기타	1.0	1.0	1.2	1.5	1.4	1.4	0.5	-
(수)	(394)	(304)	(171)	(131)	(219)	(214)	(191)	(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2) 도움정도

<표 Ⅲ-1-13>은 앞서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관리운영비의 도움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안전공제가입비와 배상보험료, 공기질관리비는 도움되다는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와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이 70~80% 정도로 낮다. 도움정도는 모든 항목이 4점 만점에 평균 3점이 넘는다. 특히 공기질관리비가 3.6점으로 높다.

〈표 Ⅲ-1-13〉 관리운영비 지원 도움정도

단위: %(명) 매우 전혀 도움되지 별로 도움되지 대체로 구분 평균 계(수) 않음 않음 도움 도움 안전공제 가입비 0.4 7.8 45.9 45.9 100.0(281) 3.4 배상보험료 100.0(94) 3.4 7.4 40.4 52.1 공기질관리비 6.9 31.0 62.1 100.0(29) 3.6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2.8 18.3 43.7 35.2 100.0(71) 3.1 소독방제비 1.7 18.3 45.0 35.0 100.0(60) 3.1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 3.9 19.7 42.1 34.2 100.0(76) 3.1 냉난방비 5.0 19.6 40.5 34.9 100.0(499) 3.1 차량운영비 3.0 20.3 41.1 35.6 100.0(202) 3.1 11.1 11.1 77.8 100.0(9)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를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표 Ⅲ-1-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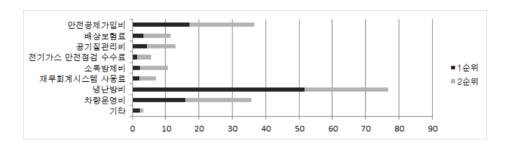
1순위로 냉난방비가 51.6%로 높고, 다음으로 안전공제가입비 17.1%, 차량운영비 15.8% 순이다. 2순위도 냉난방비가 25.2%, 차량운영비 20.0%, 안전공제가입비 19.4% 순이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냉난방비가 76.8%로 단연 높고, 안전공제가입비와 차량운영비가 35% 정도, 공기질관리비 12.9%, 배상보험료 11.4%, 소독방제비 10.6% 순이다(그림 Ⅲ-1-2 참조).

〈표 Ⅲ-1-14〉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 관련 지원:1+2순위

단위: %(명)

										- /1 /4(0)
구분	안전공제 가입비	배상 보험 료	공기질 관리비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소독 방제비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료	냉난방 비	차량 운영비	기타	계(수)
1순위	17.1	3.3	4.3	1.5	2.3	2.0	51.6	15.8	2.2	100.0(869)
2순위	19.4	8.1	8.6	4.1	8.3	5.0	25.2	20.0	1.2	100.0(823)
1+2순위	36.5	11.4	12.9	5.6	10.6	7.0	76.8	35.8	3.4	(8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그림 III-1-2] 어린이집 운영이 되움되는 관리운영비 지원: 1+2순위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 지원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냉난방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히,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안전공제가입비,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 민간 어린이집은 차량운영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일수록 안전공제가입비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차량운영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정원규모별로는 45인 이상 규모는 안전공제가입비와 차량운영비, 20인은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표 III-1-15 참조).

〈표 Ⅲ-1-15〉 제 특성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 지원: 1순위

									ᆫ	<u> </u> 위: %(명)
구분	안전 공제 가입비	배상 보험료	공기질 관리비	전기 가스안전 점검수수료	소독 방제 비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료	냉난방 비	차량 운영비	기타	계(수)
전체	17.1	3.3	4.3	1.5	2.3	2.0	51.6	15.8	2.2	100.0(86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2.4	5.3	6.2	2.5	2.2	2.2	48.0	9.3	1.8	100.0(321)
사회복지법인	10.0	3.3	1.7	-	3.3	1.7	53.3	21.7	5.0	100.0(60)
법인단체	15.2	2.2	6.5	4.3	-	-	47.8	19.6	4.4	100.0(46)
민간개인	16.6	1.9	3.2	0.6	2.2	1.9	47.9	23.6	1.8	100.0(313)
가정	8.3	2.5	1.7	0.8	2.5	2.5	71.1	9.1	1.6	100.0(121)
직장	25.0	-	12.5	-	12.5	-	50.0	-		100.0(8)
지역규모										
대도시	22.3	5.6	5.1	1.5	2.8	1.8	49.7	8.9	2.3	100.0(394)
중도시	14.1	1.6	4.3	2.0	1.6	2.3	58.9	12.8	2.3	100.0(304)
읍면지역	10.5	1.2	2.3	0.6	2.3	1.8	42.7	36.8	1.8	100.0(171)
정원규모										
20인	8.4	2.3	1.5	0.8	2.3	2.3	71.0	9.9	1.6	100.0(131)
45~55인	16.9	3.2	3.2	2.3	2.7	1.8	53.0	15.5	1.5	100.0(219)
72~82인	22.4	4.2	4.7	0.9	2.8	1.9	41.6	19.6	1.9	100.0(214)
92~102인	15.2	3.1	4.2	2.1	1.6	2.6	52.9	13.6	4.6	100.0(191)
124인 이상	21.1	3.5	8.8	0.9	1.8	0.9	43.0	19.3	0.9	100.0(114)

# 라. 시설비

# 1) 지원항목

< 표 Ⅲ-1-16>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개보수비 등 시설비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의 추가 지원 비율을 나타낸다.

시설비는 앞서 살펴본 관항목 중 지원률이 가장 낮아서, 조사대상 중 1/3 정도가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고, 비품수선비나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설치비, CCTV 설치비 등은 1~2%대로 매우 소수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시설개보수비가 각각 60.1%, 43.3%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72~82인이 시설개보수비가 42.5%로 높고, 20인이 13.7%로 낮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규모가 70~80인 사이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Ⅲ-1-16〉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비 지원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개인	가정	직장	전체
시설개보수비	60.1	43.3	32.6	12.8	12.4	-	33.3
비품수선비	4.0	3.3	6.5	1.0	1.7	-	2.6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3.4	1.7	2.2	-	1.7	-	1.7
시설설치비	0.6	-	-	-	-	-	0.2
CCTV설치비	-	1.7	-	-	0.8	-	0.2
환경개선비	0.3	-	-	0.6	0.8	-	0.5
기타	0.3	-	-	-	-	-	0.1
<u>(</u> 수)	(321)	(60)	(46)	(313)	(121)	(8)	(869)

〈표 Ⅲ-1-17〉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시설비 지원 여부

단위: %(개소) 지역규모 어린이집 규모 구분 읍면 45-55 92-102 124인 중소 72-82 대도시 20인 도시 지역 이 인 인 이상 시설개보수비 27.0 33.3 13.7 33.3 42.5 37.7 30.7 38.1 비품수선비 3.0 2.0 2.9 2.3 2.7 2.8 2.1 3.5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2.3 0.7 2.3 2.3 2.3 0.91.0 2.6 시설설치비 0.5 0.3 0.6 0.5 CCTV설치비 1.2 0.5 0.5 환경개선비 1.0 0.6 0.8 0.9 0.5 기타 0.3 0.5 (수) (394)(304)(191)(171)(131)(219)(214)(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2) 도움정도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지원받은 시설비의 도움정도를 보면, 도움된다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다. 도움정도도 4점 만점에 3점 이상이다. 항목별로는 CCTV설치비가 평균 3.0점으로 가장 낮고, 환경개선비와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가장 높다(표 Ⅲ-1-18 참조).

 <표 Ⅲ-1-19>는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시설비를 조사한 것이다. 1순위로 시설개보수비가 93.4%로 높고, 2순위는 비품수선비가 90.0%로 다빈도를 나타낸다. 1, 2순위를 합산하여도 시설개보수비와 비품수선비가 다른 항목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표 Ⅲ-1-18〉 시설비 지원 도움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대체로 도움	매우 도움	계(수)	평균
시설개보수비	0.3	4.8	20.8	74.0	100.0(289)	3.7
비품수선비	-	-	30.4	69.6	100.0(23)	3.7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	-	20.0	80.0	100.0(15)	3.8
시설설치비	-	-	50.0	50.0	100.0(2)	3.5
CCTV설치비	-	-	100.0	-	100.0(2)	3.0
환경개선비	-	-	-	100.0	100.0(4)	4.0
기타	-	-	100.0	-	100.0(1)	3.0

〈표 Ⅲ-1-19〉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시설비 관련 지원: 1+2순위

							!	단위: %(명)
구분	시설 개보수비	비품 수선비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 설치비	CCTV 설치비	환경 개선비	기타	계(수)
1순위	93.4	3.7	0.2	0.1	-	0.3	2.2	100.0(869)
2순위	4.4	90.0	3.9	0.1	0.5	0.9	0.2	100.0(803)
1+2순위	97.8	93.7	4.1	0.2	0.5	1.2	2.4	(8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2. 어린이집 재정 운영 현황 및 관련 의견

# 가. 인건비

2015년 기준 최저임금4) 수준은 월 1,166,220원이다. 정부 미지원시설의 초임 보육교사 기본급이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과반수 이 상이 최저 임금 이상, 33.2%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민간개인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는 비율이 75% 이지만, 가정은 최저임금 수준이 61.2%로 다수를 차지한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과반수 이상이 최저 임금보다 많이 주지만, 중소도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비율이 40%로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20인 어린이집은 최저 임금수준 지급이 63.0%로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45인 이상 구간은 최저

<sup>4)</sup> 월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4.34주)+(8시간:주휴×4.34주) 약 209시간이며, 최저임금은 5,580원 (시간당)×209시간=1,166,220원임.

임금보다 높다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124인 이상 어린이집 중 33.9%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표 III-1-20 참조).

〈표 Ⅲ-1-20〉 초임 보육교사 기본급 지급수준

다위: %(명)

								·	
 구분	최저 임금 미만	최저 임금 수준	최저 임금 이상	계	구분	최저 임금 미만	최저 임금 수준	최저 임금 이상	계
전체	0.6	33.2	66.2	100.0(488)					
어린이집유형					정원규모				
법인단체	-	61.2	38.8	100.0(46)	20인	0.8	63.0	36.2	100.0(127)
민간개인	12.5	12.5	75.0	100.0(313)	45~55인	1.9	25.7	72.4	100.0(105)
가정	-	61.2	38.8	100.0(121)	72~82인	-	15.1	84.9	100.0(86)
직장	12.5	12.5	75.0	100.0(8)	92~102인	-	19.4	80.6	100.0(108)
지역규모					124인이상	-	33.9	66.1	100.0(62)
대도시	1.2	28.7	70.1	100.0(167)					
중도시	-	40.8	59.2	100.0(223)					
읍면지역	1.0	23.5	75.5	100.0(98)					

주: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은 호봉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유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표 Ⅲ-1-21>는 어린이집이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수당을 조사한 것이다.

〈표 Ⅲ-1-21〉 기본급 외 수당 지급 여부

단위: %(명) 근무환경개선비 성과급및상여 관리업무수당 특별근무수단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자녀학자금 정근수당 경조사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구분 계(수) 정체 19.4 21.1 6.6 59.8 19.6 4.5 33.1 83.8 1.0 0.3 16.1 3.7 0.9 3.5 1.6 2.0 3.2 100.0(869)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23.7 29.3 4.4 81.9 29.3 3.4 44.5 83.8 0.9 0.3 16.2 3.1 0.3 5.0 2.8 1.9 0.3 100.0(321) 사회복지법인 21.7 21.7 6.7 45.0 18.3 1.7 36.7 78.3 - - 20.0 3.3 3.3 법인단체 26.1 21.7 10.9 63.0 13.0 6.5 43.5 89.1 4.3 2.2 17.4 6.5 - 2.2 2.2 6.5 4.3 100.0(46) 민간개인 13.4 12.5 7.7 49.2 14.1 6.4 26.2 84.0 0.6 0.3 15.3 3.2 1.0 1.9 1.0 1.6 4.8 100.0(313) 가정 19.8 19.8 6.6 33.9 9.9 3.3 15.7 85.1 1.7 - 15.7 5.8 1.7 5.8 2.5 5.0 100.0(121) 직장 25.0 37.5 25.0 75.0 37.5 - 25.0 62.5 12.5 12.5 - 12.5100.0(8) 지역규모 대도시 22.1 25.1 6.1 66.2 22.6 3.3 35.3 83.0 1.3 0.5 16.0 5.3 1.0 3.0 2.3 2.5 3.3 100.0(394) 중도시 18.1 19.4 7.2 53.6 15.5 6.9 31.3 85.2 0.7 0.3 14.5 2.0 0.3 3.9 1.0 2.0 3.6 100.0(304) 읍면지역 15.8 14.6 6.4 56.1 19.9 2.9 31.6 83.0 1.2 - 19.3 2.9 1.8 3.5 1.2 0.6 2.3 100.0(171)

#### (표 Ⅲ-1-21 계속)

구분	처 우 개 선 비	근무환경개선비	급식비	시간 외/ 야간 /후 일무 당	연구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휴 가 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특별근무수당	경조사비	근속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및상여금	기타	전화이由	계(수)
정원규모																		
20인	20.6	19.8	7.6	33.6	9.2	3.8	16.0	85.5	1.5	-	15.3	6.1	1.5	4.6	-	2.3	5.3	100.0(131)
45~55인	24.2	23.7	5.9	60.7	19.2	4.6	37.0	82.6	1.8	0.5	14.2	2.7	0.9	3.7	1.4	2.3	5.0	100.0(219)
72~82인	18.2	23.8	6.1	71.0	21.5	3.3	37.4	90.2	-	-	15.9	3.3	1.4	2.8	1.4	2.3	0.5	100.0(214)
92~102인	16.8	16.2	3.7	62.8	19.4	6.8	32.5	82.7	-	0.5	16.2	2.6	0.5	4.2	2.6	1.0	2.6	100.0(191)
124인 이상	15.8	20.2	12.3	62.3	28.9	3.5	38.6	73.7	2.6	0.9	21.1	5.3	-	1.8	2.6	1.8	3.5	100.0(114)
 자료: 본 연구	를 위	비한	[어	린이	집 집 지	H정	운영	에 된	<u></u> 가한	조시	<u>}</u> ];	결과	임.					

명절 휴가비가 83.8%로 대다수 어린이집이 지급하고,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은 59.8%, 관리업무 수당 33.1%, 근무환경개선비 21.1%, 연구수당과 처우개선비가 19%대, 특별근무수당 16.1%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전체 비율과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국공립은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이 81.9%, 법인단체는 관리업무수당이 43.5%로 높다. 특히 민간개인과 가정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 유형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항목의 지급 비율이 낮다. 기본급 외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이 4~5% 정도를 차지한다. 지역규모별로는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도시지역일수록 지급 비율이 높고, 특별근무수당은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앞서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수당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수준 및 단가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중 70% 정도가 시간외 근무가 있고, 나머지 중 절반 정도는 일부 교사만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모든 교사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모든 교사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40%대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많다. 민간 개인은 일부 교사만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비율이 37.4%로 다수를 차지한다. 가정은 시간외 근무가 없다는 비율이 62.0%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지역규모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대도시는 일부 교사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타지역보다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20인 어린이집은 과반수가 시간외 근무가 없고, 72~82인은 모든 교사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43.0%로 높은 편이다(표 Ⅲ -1-22 계속).

〈표 Ⅲ-1-22〉 시간외 근무 여부 및 수당 지급방법

단위: %(명)

								`	_ /11 /0(0)
		시간외	근무 ㅇ	<b>부</b>		시간외 근	무수당 지	급방	법
구분	없음	일부 교사만 시간외 근무	모든 교사가 시간외 근무	계(수)	근무한 시간 따라 지급	모든 교사 동일 금액 지급	호봉,연차 별 일정 금액 지급	미지 급	계(수)
전체	29.7	35.8	34.5	100.0(869)	45.3	19.0	19.0	16.7	100.0(61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4.6	37.7	47.7	100.0(321)	62.4	17.9	14.2	5.5	100.0(274)
사회복지법인	25.0	33.3	41.7	100.0(60)	28.9	22.2	6.7	42.2	100.0(45)
법인단체	30.4	32.6	37.0	100.0(46)	31.3	43.8	12.5	12.5	100.0(32)
민간개인	32.9	37.4	29.7	100.0(313)	25.2	18.1	29.5	27.1	100.0(210)
가정	62.0	30.6	7.4	100.0(121)	58.7	10.9	15.2	15.2	100.0(46)
직장	50.0	12.5	37.5	100.0(8)	75.0	-	25.0	-	100.0(4)
지역규모									
대도시	26.6	37.3	36.0	100.0(394)	53.3	18.3	14.2	14.2	100.0(289)
중도시	33.6	34.5	31.9	100.0(304)	43.1	16.8	23.3	16.8	100.0(202)
읍면지역	29.8	34.5	35.7	100.0(171)	30.0	24.2	23.3	22.5	100.0(120)
정원규모									
20인	62.6	29.8	7.6	100.0(131)	59.2	10.2	12.2	18.4	100.0(49)
45~55인	26.5	36.1	37.4	100.0(219)	50.3	14.3	14.3	21.1	100.0(161)
72~82인	22.0	35.0	43.0	100.0(214)	44.9	23.4	21.0	10.8	100.0(167)
92~102인	23.0	39.3	37.7	100.0(191)	40.1	19.7	21.1	19.0	100.0(147)
124인 이상	23.7	37.7	38.6	100.0(114)	37.9	23.0	24.1	14.9	100.0(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시간외근무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 방법은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45.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모든 교사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거나 호봉, 연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 19.0%이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6.7%로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고, 법인단체 등은 모든 교사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민간개인은 호봉, 연차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지역일수록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비율이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규모가 클수록 호봉이나 연차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비율이 높다(표 III-1-22 참조).

시간외 근무한 시간만큼 계상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단가는 91%

가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나머지 9%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 시급을 지급하 고 있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개인과 가정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 시급을 지급하는 비율이 20% 내외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중소도시, 읍면지역이나 20인 어린이집에서 모든 직원에게 동일 시급을 지급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Ⅲ-1-23 참조).

〈표 Ⅲ-1-23〉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단가 책정 방법 및 금액

단위: %(명), 원

						70(0), L
급여기준	모든 직원	게(스)	시간당	단가	동일 지급 시	월 수당
으로 산출	동일 시급	/11( 1 )	평균	(수)	평균	(수)
91.0	9.0	100.0(277)	7,936.0	(25)	78,800.8	(116)
95.9	4.1	100.0(171)	10,428.6	(7)	67,127.1	(49)
92.3	7.7	100.0(13)	7,500.0	(1)	47,500.0	(10)
90.0	10.0	100.0(10)	6,000.0	(1)	117,655.0	(14)
81.1	18.9	100.0(53)	7,674.0	(10)	90,776.3	(38)
77.8	22.2	100.0(27)	5,860.0	(6)	56,000.0	(5)
100.0	-	100.0(3)				
	-		1.1		1.8	
92.9	7.1	100.0(154)	8,650.9	(11)	61,692.5	(53)
88.5	11.5	100.0(87)	7,724.0	(10)	89,353.7	(34)
88.9	11.1	100.0(36)	6,500.0	(4)	97,695.5	(29)
	-		0.4		2.3	
79.3	20.7	100.0(29)	5,860.0	(6)	56,000.0	(5)
91.4	8.6	100.0(81)	6,951.4	(7)	67,529.1	(23)
96.0	4.0	100.0(75)	13,666.7	(3)	85,459.6	(39)
89.8	10.2	100.0(59)	9,083.3	(6)	82,234.5	(29)
90.9	9.1	100.0(33)	6,360.0	(3)	<i>7</i> 9,500.0	(20)
			2.8		0.3	
	91.0 95.9 92.3 90.0 81.1 77.8 100.0 92.9 88.5 88.9 79.3 91.4 96.0 89.8	95.9 4.1 92.3 7.7 90.0 10.0 81.1 18.9 77.8 22.2 100.0 92.9 7.1 88.5 11.5 88.9 11.1 - 79.3 20.7 91.4 8.6 96.0 4.0 89.8 10.2	91.0 9.0 100.0(277)  95.9 4.1 100.0(171)  92.3 7.7 100.0( 13)  90.0 10.0 100.0( 10)  81.1 18.9 100.0( 53)  77.8 22.2 100.0( 27)  100.0 - 100.0( 3)  -  92.9 7.1 100.0(154)  88.5 11.5 100.0( 87)  88.9 11.1 100.0( 36)  -  79.3 20.7 100.0( 29)  91.4 8.6 100.0( 81)  96.0 4.0 100.0( 75)  89.8 10.2 100.0( 59)	으로 산출 동일 시급         계(구)         평균           91.0         9.0         100.0(277)         7,936.0           95.9         4.1         100.0(171)         10,428.6           92.3         7.7         100.0(13)         7,500.0           90.0         10.0         100.0(10)         6,000.0           81.1         18.9         100.0(53)         7,674.0           77.8         22.2         100.0(27)         5,860.0           100.0         -         100.0(3)         1.1           92.9         7.1         100.0(154)         8,650.9           88.5         11.5         100.0(87)         7,724.0           88.9         11.1         100.0(36)         6,500.0           0.4         -         0.4           79.3         20.7         100.0(29)         5,860.0           91.4         8.6         100.0(81)         6,951.4           96.0         4.0         100.0(75)         13,666.7           89.8         10.2         100.0(59)         9,083.3           90.9         9.1         100.0(33)         6,360.0	으로 산출 동일 시급 계(구) 평균 (수)  91.0 9.0 100.0(277) 7,936.0 (25)  95.9 4.1 100.0(171) 10,428.6 (7) 92.3 7.7 100.0(13) 7,500.0 (1) 90.0 10.0 100.0(10) 6,000.0 (1) 81.1 18.9 100.0(53) 7,674.0 (10) 77.8 22.2 100.0(27) 5,860.0 (6) 100.0 - 100.0(3) - 1.1  92.9 7.1 100.0(154) 8,650.9 (11) 88.5 11.5 100.0(87) 7,724.0 (10) 88.9 11.1 100.0(36) 6,500.0 (4) - 0.4  79.3 20.7 100.0(29) 5,860.0 (6) 91.4 8.6 100.0(81) 6,951.4 (7) 96.0 4.0 100.0(75) 13,666.7 (3) 89.8 10.2 100.0(59) 9,083.3 (6) 90.9 9.1 100.0(33) 6,360.0 (3)	으로 산출 동일 시급 계(구) 평균 (수) 평균 91.0 9.0 100.0(277) 7,936.0 (25) 78,800.8 95.9 4.1 100.0(171) 10,428.6 (7) 67,127.1 92.3 7.7 100.0(13) 7,500.0 (1) 47,500.0 90.0 10.0 100.0(10) 6,000.0 (1) 117,655.0 81.1 18.9 100.0(53) 7,674.0 (10) 90,776.3 77.8 22.2 100.0(27) 5,860.0 (6) 56,000.0 100.0 - 100.0(3) - 1.1 1.8 1.8 92.9 7.1 100.0(154) 8,650.9 (11) 61,692.5 88.5 11.5 100.0(87) 7,724.0 (10) 89,353.7 88.9 11.1 100.0(36) 6,500.0 (4) 97,695.5 - 0.4 2.3 79.3 20.7 100.0(29) 5,860.0 (6) 56,000.0 91.4 8.6 100.0(81) 6,951.4 (7) 67,529.1 96.0 4.0 100.0(75) 13,666.7 (3) 85,459.6 89.8 10.2 100.0(59) 9,083.3 (6) 82,234.5 90.9 9.1 100.0(33) 6,360.0 (3) 79,5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시간당 근무수당을 계상하는 경우, 시간당 단가는 평균 7,936원이다. 국공립이 시가당 평균 10.428.6원으로 가장 높고, 가정이 5.860.0원으로 가장 적다. 도시지 역이 8,650.9원, 중소도시 7,724.0원, 읍면지역 6,500원으로 도시지역이 시간당 단 가가 높았다. 정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교사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경우, 월 평균 시간외 수당은 평균 78,800.8 원으로 법인단체가 117,655.0원으로 가장 많고, 가정이 56,000원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읍면지역일수록 월 지급액이 높고, 정원규모별로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표 Ⅲ-1-23 참조).

### 나. 교재교구비

<표 Ⅲ-1-24>는 교재교구 주 구입처와 교재교구 전문업체 구입 시 지역별 가격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다.

〈표 Ⅲ-1-24〉 교재교구 주 구입처

단위: %(명)

		교재.	교구 주	구입	처	전문업체의 지역 간 차이					
구분	교재 교구 전문 업체	유아교 재교구 온라인 업체	일반 온라인 쇼핑몰	기타	계(수)	제품 가격 동일	일부 제품만 지역마다 가격 다름	대부분 제품 지역마 다 가격 다름	기타	모름	계(수)
전체	66.1	20.7	12.3	0.9	100.0(869)	28.9	52.3	16.0	0.2	2.6	100.0(57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5.1	16.8	7.2	0.9	100.0(321)	36.1	52.3	8.7	0.4	2.5	100.0(241)
사회복지법인	66.7	23.3	8.3	1.7	100.0(60)	25.0	62.5	12.5	-	-	100.0(40)
법인단체	65.2	19.6	15.2	-	100.0(46)	20.0	56.7	23.3	-	-	100.0(30)
민간개인	62.3	20.1	16.9	0.6	100.0(313)	21.5	50.3	24.6	-	3.6	100.0(195)
가정	51.2	31.4	15.7	1.7	100.0(121)	32.3	46.8	17.7	-	3.2	100.0(62)
직장	75.0	25.0	-	-	100.0(8)	16.7	83.3	-	-	-	100.0(6)
지역규모											
대도시	67.0	21.1	11.2	0.8	100.0(394)	29.5	51.1	15.9	0.4	3.0	100.0(264)
중도시	68.8	18.4	12.2	0.7	100.0(304)	25.8	54.5	17.2	-	2.4	100.0(209)
읍면지역	59.1	24.0	15.2	1.8	100.0(171)	33.7	50.5	13.9	-	2.0	100.0(101)
정원규모											
20인	49.6	31.3	17.6	1.5	100.0(131)	32.3	47.7	16.9	-	3.1	100.0(65)
45~55인	63.9	19.6	15.1	1.4	100.0(219)	29.3	52.9	15.7	-	2.1	100.0(140)
72~82인	71.0	17.3	10.7	0.9	100.0(214)	32.2	53.3	10.5	-	3.9	100.0(152)
92~102인	71.2	20.9	7.9	-	100.0(191)	24.3	52.9	20.6	-	2.2	100.0(136)
124인 이상	71.1	16.7	11.4	0.9	100.0(114)	27.2	51.9	18.5	1.2	1.2	100.0(8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교재교구 주 구입업체는 66.1%가 교재교구 전문업체, 20.7%는 유아교재교구 온라인업체, 12.3%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대부분 교 재교구 전문업체를 통해 구입하지만, 가정은 유아교재교구 온라인 업체를 구입 한다는 비율이 31.4%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개인 과 법인단체, 가정 어린이집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15% 내외로 높다. 또한 주로 도시지역은 교재교구 전문업체, 읍면지역은 유아교재교 구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원규모가 클수록 구매 물품이나 수 량이 많아서 교재교구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20인 이하 소규모 어 린이집은 소량 구매로 유아교재교구 온라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재교구 전문업체를 통해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있는 지 추가적으로 물었다. 절반 정도인 52.3%는 일부 제품만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답하였고, 28.9%는 제품 가격이 동일하며, 16%는 대부분의 제품이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주로 교재교구 전문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은 지역에 상관없이 제품 가격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36.1%로 높고, 법인단체 등과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대부분의 제품이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의견이 각각 23.3%, 24.6%로 높다. 지역규모별로는 일부 제품만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읍면지역은 제품 가격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33.7%로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고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표 Ⅲ-1-24 참조).

# 다. 급간식비

다음은 질 높은 식재료를 적기에 공급받아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구매시간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동구매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중 40.4%가 공동구매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었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이 60%를 상회하고, 민간개인과 가정 어린이집은 10~20%대로 낮다. 또한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과 45~55인과 72~82인의 중간 규모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이 공동구매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채소가 92.0%, 생선 및 어패류 84.9%, 쌀 등 곡식 83.8%, 육류 78.1%, 과일 71.8%, 유재품 65% 순이었다. 햄, 어묵류 등의 가공식품이나 고춧가루, 간장, 된장 등의 양념류 등은 5% 미만으로 소수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이나 지역규모, 정원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전체 급간식 식자재 중 공동구매 비중은 평균 73.9%로 약 3/4을 차지한다. 국공립과 법인단체는 78% 내외로 높고, 사회복지법인은 절반 정도인 54.5%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낮다. 또한 대도시와 중규모 어린이집의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Ⅲ-1-25 참조).

〈표 Ⅲ-1-25〉 공동구매 여부 및 구매 식자재 종류

단위: %(명)

													<u> </u>	/o( o )
	구매	여부					공동구	개 식지	<b>나</b> 재					7 📶
구분	구매	(수)	쌀 등 곡식	육류	생선, 어패류	채소	과일	빵,과 자류	유제 품	가공 식품	양념 류	기 타	(수)	구매 비중
전체	40.4	(869)	83.8	78.1	84.9	92.0	71.8	34.2	65.0	3.1	4.0	1.7	(351)	73.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5.4	(321)	87.1	87.1	90.0	95.7	77.1	37.6	66.7	2.4	4.3	1.4	(210)	77.8
사회복지법인	16.7	(60)	90.0	50.0	70.0	90.0	40.0	20.0	50.0	-	-	-	(10)	54.5
법인단체	37.0	(46)	94.1	76.5	88.2	100.0	100.0	35.3	70.6	-	11.8	-	(17)	78.5
민간개인	27.2	(313)	74.1	58.8	74.1	82.4	57.6	31.8	60.0	7.1	2.4	2.4	(85)	66.2
가정	19.8	(121)	79.2	75.0	79.2	87.5	70.8	16.7	70.8	-	4.2	4.2	(24)	69.9
직장	62.5	(8)	80.0	100.0	100.0	100.0	60.0	40.0	60.0	-	-	-	( 5)	81.8
X²(df)/F	-							-						7.1***
지역규모														
대도시	69.5	(394)	84.3	79.6	87.2	93.1	74.1	36.1	67.9	2.9	4.0	1.1	(274)	75.3
중도시	18.1	(304)	83.6	76.4	78.2	87.3	63.6	20.0	52.7	5.5	3.6	5.5	(55)	69.6
읍면지역	12.9	(171)	77.3	63.6	72.7	90.9	63.6	45.5	59.1	-	4.5	-	(22)	67.5
$X^2(df)/F$	-							-						3.1*
정원규모														
20인	20.6	(131)	77.8	70.4	74.1	88.9	70.4	14.8	70.4	-	3.7	3.7	(27)	69.2
45~55인	49.3	(219)	85.2	76.9	86.1	94.4	71.3	38.0	63.9	1.9	6.5	0.9	(108)	74.8
72~82인	48.6	(214)	83.7	84.6	87.5	93.3	76.9	36.5	74.0	1.9	1.9	2.9	(104)	74.8
92~102인	37.2	(191)	84.5	74.6	83.1	87.3	67.6	36.6	54.9	4.2	5.6	-	(71)	73.9
124인 이상	36.0	(114)	82.9	75.6	85.4	92.7	68.3	26.8	58.5	9.8	-	2.4	(41)	72.4
$X^2(df)/F$	-							-						0.5

<sup>\*</sup>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다음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자재 지원을 조사한 것이다(표 Ⅲ-1-26 참조).

조사대상 중 77.6%는 시도 및 시군구의 추가 지원을 받지 않고, 나머지 중 19%는 쌀 등 곡식, 4.9%는 유제품, 4.3%는 유기농 채소 순이다. 이 외에 과일이나 육류, 생선 및 어패류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쌀 등 곡식류를 지원받는 경우가 20%가 넘는다. 사회복지법인은 유기농 채소와 과일이 10%가 넘는다. 또한 읍면지역일수록 쌀 등곡식류와 유기농 채소, 과일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도시지역일수록 유제품을 많이 지원받는다 또한 정원규모가 클수록 곡식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주: 공동구매 식자재는 중복응답 결과임,

〈표 Ⅲ-1-26〉 시도 및 시군구 식자재 지원

									단위	: %(명)
구분	쌀 등 곡식	육류	생선, 어패류	유기농 채소	과일	유제품	전체 지원	기타	없음	(宁)
전체	19.0	3.6	1.2	4.3	3.5	4.9	0.3	0.6	77.6	(86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2.1	4.7	0.9	3.1	2.8	8.1	0.9	0.3	73.2	(321)
사회복지법인	28.3	6.7	1.7	13.3	11.7	1.7	-	-	71.7	(60)
법인단체	26.1	2.2	0.0	2.2	-	-	-	-	73.9	(46)
민간개인	16.6	2.9	1.3	4.2	3.5	3.2	-	1.3	80.2	(313)
가정	10.7	0.8	1.7	4.1	2.5	4.1	-	-	86.0	(121)
직장	-	12.5	-	-	-	12.5	-	-	87.5	(8)
지역규모										
대도시	15.7	2.8	1.8	2.3	1.3	7.1	0.5	0.8	80.5	(394)
중도시	18.1	4.3	0.3	3.9	4.3	3.9	0.3	0.7	77.6	(304)
읍면지역	28.1	4.1	1.2	9.4	7.0	1.8	-	-	70.8	(171)
정원규모										
20인	10.7	0.8	1.5	3.8	2.3	3.8	-	-	86.3	(131)
45~55인	16.0	3.7	1.4	2.7	3.2	4.1	-	0.5	81.7	(219)
72~82인	22.0	2.8	0.9	3.7	2.8	8.9	1.4	0.5	72.0	(214)
92~102인	22.5	5.2	0.5	4.7	4.2	3.1	-	0.5	75.4	(191)
124인 이상	22.8	5.3	1.8	7.9	5.3	3.5	-	1.8	73.7	(11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라. 냉난방비

난방으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표 Ⅲ-1-27>와 같이, 68.8%가 도시가스, 19%는 전기, 6.1%는 등유이었다. 국 공립과 가정 어린이집 중 80% 가까이는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도시가스가 30%로 낮은 반면, 전기 50%, 등유 16.7%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과 다른 응답 분포를 보인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도시지역일수록 도시가스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전기 사용 비율이 높다. 읍면지역은 등유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19.3%로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가스 비율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전기 사용 비율이 높다.

난방비 지출이 많은 1월과 적은 8월 월 지출액을 살펴보았다. 1월은 월평균 107.8만원, 8월은 27.4만원으로 난방 여부에 따라 8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1월 기준으로 국공립이 130.7만원으로 많고, 가정이 32.8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유의미하

게 많고, 정원규모에 비례하여 난방비가 많다.

〈표 Ⅲ-1-27〉 난방연료 종류 및 월 지출액

단위: %(명), 만원

								C 71.	/0(0), [[
				난방 연	료 종류			난방비	월 지출액
구분	도시 가스	등유	전기	LPG가스	지역/ 중앙난방	기타	계(수)	1월 지출액	8월 지출액
전체	68.8	6.1	19.0	2.8	3.0	0.3	100.0(869)	107.8	27.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9.1	6.2	10.3	2.5	1.6	0.3	100.0(321)	130.7	28.8
사회복지법인	30.0	16.7	50.0	3.3	-	-	100.0(60)	117.5	27.9
법인단체	56.5	6.5	32.6	4.3	-	-	100.0(46)	123.4	38.1
민간개인	62.9	4.8	26.2	3.2	2.6	0.3	100.0(313)	110.3	30.9
가정	78.5	4.1	4.1	1.7	10.7	0.8	100.0(121)	32.8	10.7
직장	100.0	-	-	-	-	-	100.0(8)	55.3	17.8
X²(df)/F				-				29.1***	2.5*
지역규모									
대도시	88.1	2.0	7.6	0.8	1.3	0.3	100.0(394)	110.2	23.5
중도시	68.1	3.9	19.4	1.6	6.6	0.3	100.0(304)	98.9	24.8
읍면지역	25.7	19.3	44.4	9.4	0.6	0.6	100.0(171)	117.7	40.7
X²(df)/F				-				3.0*	5.4**
정원규모									
20인	76.3	4.6	6.1	2.3	9.9	0.8	100.0(131)	33.2	10.8
45~55인	73.1	5.5	15.5	3.2	2.7	-	100.0(219)	83.5	18.9
72~82인	67.3	5.1	23.4	1.4	1.9	0.9	100.0(214)	105.5	23.4
92~102인	62.3	8.9	24.1	3.7	1.0	-	100.0(191)	148.1	43.3
124인 이상	65.8	6.1	23.7	3.5	0.9	-	100.0(114)	176.5	43.5
$X^2(df)/F$				-				82.9***	9.6***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마. 수용비

어린이집이 매월 내는 렌탈비나 월정료 항목은 <표 III-1-28>와 같다. 렌탈비 및 월정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0.8%로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비용을 부담한다. 프린터, 방역 및 소독, 정수기 렌탈비 또는 월정료를 낸다는 비율이 80% 내외이고, 공기청정기와 복사기는 30~40% 정도, 수족관 22.0%, 음식물쓰레기 처리 19.8% 순이다. 나머지는 5% 내외로 소수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은 방역 및 소독 월정료와 프린터 렌탈비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법인은 복사기 렌탈비를 낸다는 비율이 높다. 또한 도시지역일수록 공기청정기, 프린터,

복사기,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족관, 보안시스템 등 렌탈비 및 월정료를 낸다는 비율이 높다.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보안시스템, 방역 및 소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복사기 등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정원에 비례하여 높았다.

〈표 Ⅲ-1-28〉 렌탈비·월정료 지불 항목

단위: %(명) 음식물쓰레기처 컴퓨터인터넷관련 무회계세무관 방역및소도 LE 수족관 안시스테 프린 D CC 비기 구분 간판 TV 데 타 리 련 전체 33.085.3 2.6 58.022.076.919.840.6 79.6 0.6 0.8 1.8 0.6 0.5 2.9 1.2 0.5 1.7 1.6 0.8 (869)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44.588.2 3.4 87.531.886.025.243.3 87.5 - 0.9 1.2 1.2 0.9 6.2 0.6 0.3 2.5 1.9 - (321) 사회복지법인 25.083.3 - 50.010.073.318.350.0 73.3 - 1.7 1.7 - - - - 1.7 - - - (60) 법인단체 39.184.8 2.2 45.715.280.423.928.3 80.4 - - - - 2.2 - - - - 2.2 - (46) 민간개인 21.786.3 1.6 49.814.476.417.340.3 79.6 0.3 1.0 1.9 0.3 - 1.6 1.0 0.6 1.6 1.6 0.3 (313) 가정 30.676.0 5.0 9.121.554.5 9.134.7 60.3 3.3 - 4.1 - - 4.1 - 0.8 0.8 5.0 (121) 직장 75.087.5 - 62.562.575.050.037.5100.0 -- 12.512.5 - (8) 지역규모 대도시 40.184.8 3.3 65.528.282.023.642.6 83.2 0.3 1.3 0.8 1.3 0.3 3.0 1.3 0.3 1.8 2.0 0.8 (394) 중도시 28.988.2 3.0 52.320.170.716.841.4 77.6 1.3 0.3 3.0 - 0.7 2.3 1.0 1.0 1.6 0.7 1.3 (304) 읍면지역 24.081.3 0.6 50.911.176.016.434.5 74.9 - 0.6 2.3 - 0.6 3.5 1.2 - 1.8 2.3 - (171) 정원규모 20인 30.577.9 4.6 13.022.954.2 9.232.8 58.8 3.1 - 3.8 - - 3.1 - 0.8 0.8 4.6 (131) 33.387.2 1.4 59.823.779.512.834.7 79.5 - 0.9 1.4 - 0.9 2.3 1.8 0.5 2.7 1.4 0.5 (219) 45~55인 72~82°l 39.387.4 5.1 67.822.080.417.340.7 85.5 - 1.4 0.9 0.5 0.9 2.3 0.0 0.5 1.4 2.8 - (214) 92~102인 31,985.9 0.5 65.420.983.828.844.5 83.8 - 1.0 0.5 1.0 - 3.1 0.5 0.5 1.0 1.0 - (191) 124인 이상 25.485.1 1.8 75.419.379.835.154.4 86.0 0.9 - 4.4 1.8 - 7.9 0.9 0.9 2.6 1.8 - (11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렌탈비 및 월정료를 내는 경우 지출 규모는 월평균 312.8천원이다. 월 총 지출액을 구간별로 보면, 10~30만원이 38.9%, 30~50만원 26.3%, 10만원 미만과 50~70만원은 각각 13% 정도, 나머지는 5% 미만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이 월평균 437.6천원으로 높고, 가정이 104.4천원으로 유의하게 낮다.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출액이 많고, 정원 규모가 클수록 렌탈비 및 월정료가 많다(표 Ⅲ-1-29 참조).

〈표 III-1-29〉 렌탈비·월정료 월 총 지출액

단위: %(명), 천원

								리 커 : /이(리/	, 2
구분	10만원 미만	10~30만 원 미만	30~50만 원 미만	50~70만 원 미만	70~90만 원 미만	90~110만 원 미만	11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8	38.9	26.3	13.3	4.5	2.1	1.0	100.0(862)	312.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2	25.5	35.5	22.4	8.7	3.7	1.9	100.0(321)	437.6
사회복지법인	16.7	40.0	26.7	13.3	-	1.7	1.7	100.0(60)	286.2
법인단체	-	52.2	28.3	15.2	4.3	-	-	100.0(46)	301.3
민간개인	12.8	49.0	25.0	8.7	2.2	1.6	0.6	100.0(312)	266.7
가정	53.9	43.5	0.9	0.9	0.9	-	-	100.0(115)	104.4
직장	-	25.0	62.5	-	12.5	-	-	100.0(8)	372.1
$X^2(df)/F$				-					48.6***
지역규모									
대도시	8.2	33.5	32.0	15.6	6.6	2.8	1.3	100.0(391)	363.0
중도시	20.0	43.7	21.3	10.0	2.7	1.3	1.0	100.0(300)	264.9
읍면지역	15.8	42.7	22.2	14.0	2.9	1.8	0.6	100.0(171)	282.2
$X^2(df)/F$				-					16.9***
정원규모									
20인	52.0	46.4	0.8	-	0.8	-	-	100.0(125)	101.7
45~55인	11.0	46.8	33.9	6.4	0.5	1.4	-	100.0(218)	264.7
72~82인	7.9	36.9	31.8	17.8	4.2	0.9	0.5	100.0(214)	332.5
92~102인	3.7	38.7	27.2	17.3	6.3	3.7	3.1	100.0(191)	390.4
124인 이상	5.3	19.3	28.1	26.3	14.0	5.3	1.8	100.0(114)	469.8
$X^2(df)/F$				-					56.5***

<sup>\*\*\*</sup>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바. 차량운영비

차량 운영기관은 조사대상 중 절반 정도인 55.5%이다.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개인 88% 정도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국공립은 26.2%로 적다. 읍면지역일수록, 정원 규모가 클수록 차량을 운영한다는 비율이 높다. 특히 읍면지역은 89.5%로 대도시 38.6%의 두 배가 넘고, 124인 이상은 72.8%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 수는 평균 1.5대이다. 차량 수별로는 1대가 61.0%, 2대가 33.0% 순이다. 국공립은 1대가 대부분이고,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개인 어린이집은 2대가 40%를 상회한다. 차량 수를 보면, 어린이집 유형 중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1.7대로 많다. 읍면지역일수록, 정원규모가 클수록 운영하는 차량 수가 유의하게 많다(표 Ⅲ-1-30 참조).

〈표 Ⅲ-1-30〉 차량 운행 여부

단위: %(명). 대

	운영	여부			차량 수		
구분	운행	<u>'</u> (수)	1대	2대	3대 이상	계(수)	 평균
전체	55.5	(869)	61.0	33.0	6.0	100.0(482)	1.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6.2	(321)	90.5	9.5	-	100.0(84)	1.1
사회복지법인	88.3	(60)	45.3	43.4	11.3	100.0(53)	1.7
법인단체	67.4	(46)	71.0	29.0	-	100.0(31)	1.3
민간개인	88.2	(313)	48.9	43.1	8.0	100.0(276)	1.6
가정	31.4	(121)	97.4	-	2.6	100.0(38)	1.1
$X^2(df)/F$	-			-			15.4***
지역규모							
대도시	38.6	(394)	69.1	28.9	2.0	100.0(152)	1.3
중도시	58.2	(304)	59.9	32.2	7.9	100.0(177)	1.5
읍면지역	89.5	(171)	54.2	37.9	7.8	100.0(153)	1.6
$X^2(df)/F$	-			-			5.2**
정원규모							
20인	34.4	(131)	100.0	-	-	100.0(45)	1.0
45~55인	49.3	(219)	83.3	13.0	3.7	100.0(108)	1.2
72~82인	57.5	(214)	65.9	33.3	0.8	100.0(123)	1.3
92~102인	64.4	(191)	46.3	45.5	8.1	100.0(123)	1.6
124인 이상	72.8	(114)	25.3	57.8	16.9	100.0(83)	1.9
$X^2(df)/F$	-			-			27.0***

\*\*\* v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총 주유비는 월평균 60.6만원을 지출한다. 구간별로 보면, 10~40만원 미만이 36.5%, 40~70만원 미만 33.0%, 70~100만원 14.3%, 나머지는 10% 미만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월평균 69.6만원으로 가정 24.2만원보다 45만원 정도 많이 지출한다. 또한 읍면지역일수록, 정원 규모가 클수록 월지출액이 유의하게 많다. 구간별로 보면, 가정은 10~40만원 미만이 86.8%로 다수를 차지하나, 사회복지법인은 100~130만원 미만이 17.0%로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10~40만원 미만이 많다. 읍면지역은 70~100만원 미만과 100~130만원 미만이 각각 17.0%, 10.5%로 높다.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20인은 10~40만원 미만이 84.4%로 다수를 차지한다. 124인 이상은 70~100만원 미만과 130~160만원 미만이 26.5%, 16.9%로 높다.

〈표 Ⅲ-1-31〉 월 평균 총 주유비

단위: %(명), 만원

								L71. 70(0	,,
구분	10만원 미만	10~40만 원 미만	40~70만 원 미만	70~100 만원 미만	100~130 만원 미만	130~160 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계(수)	<del></del> 평균
전체	1.2	36.5	33.0	14.3	7.3	2.7	5.0	100.0(482)	60.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2	42.9	29.8	13.1	2.4	2.4	8.3	100.0(84)	60.7
사회복지법인	-	18.9	37.7	17.0	17.0	5.7	3.8	100.0(53)	69.6
법인단체	3.2	35.5	38.7	9.7	9.7	-	3.2	100.0(31)	54.7
민간개인	0.4	31.2	36.6	16.7	7.2	2.9	5.1	100.0(276)	64.5
가정	7.9	86.8	2.6	-	2.6	-	-	100.0(38)	24.2
$X^2(df)/F$				-					5.2***
지역규모									
대도시	2.0	50.7	27.0	12.5	3.3	0.7	3.9	100.0(152)	50.6
중도시	1.1	33.3	36.2	13.6	7.9	1.7	6.2	100.0(177)	61.9
읍면지역	0.7	26.1	35.3	17.0	10.5	5.9	4.6	100.0(153)	68.9
$X^2(df)/F$				-					$4.4^{^*}$
정원규모									
20인	6.7	84.4	6.7	-	-	-	2.2	100.0(45)	30.3
45~55인	-	54.6	31.5	5.6	5.6	1.9	0.9	100.0(108)	43.4
72~82인	1.6	30.9	43.9	13.8	2.4	0.8	6.5	100.0(123)	58.2
92~102인	0.8	23.6	36.6	19.5	9.8	3.3	6.5	100.0(123)	72.4
124인 이상	-	14.5	27.7	26.5	16.9	7.2	7.2	100.0(83)	85.4
$X^2(df)/F$				-				. ,	13.1***

<sup>\*</sup> p < .05, \*\* p < .01, \*\*\* p < .001

### 사. 시설비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여부 및 비용을 조사하였다(표 Ⅲ-1-32 참 조).

조사대상 중 73.8%가 시설 개보수를 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과반수 이상이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도시지역일수록 개보수를 실시하였다는 비율이 높다. 정원규모에 따라서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규모가 클수록 시설개보수를 하였다는 비율이 높다.

개보수를 실시한 경우, 비용은 평균 2,912.2만원으로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개보수 비용 구간별로 보면, 1,000~2,000만원이 18.6%, 5,000만원 이상 17.6%, 2,000~3,000만원이 16.8%, 500~1,000만원 15.3%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4,319.8만원으로 가장 많고, 직장이 810만원으로 유의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하게 적다. 정원 규모가 클수록 어린이집이 부담한 개보수 비용이 유의하게 많아서 20인은 1천만원 정도이나 124인은 5천만원에 근접하여 5배 가까이 차이가나다.

〈표 Ⅲ-1-32〉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여부

단위: %(명), 만원

										L 71. 70(0	<i>,</i>
	개보=	수여부				7	개보수 ㅂ	l)용			
구분	있음	(수)	500 만원	500~ 1,000 만원	1,000~ 2,000 만원	2,000~ 3,000 만원	3,000~ 4,000 만원	4,000~ 5,000 만원	5,000 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73.8	(869)	14.2	15.3	18.6	16.8	10.9	6.6	17.6	100.0(641)	2,912.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6.3	(321)	6.1	15.1	18.0	20.8	13.9	7.3	18.8	100.0(245)	3,266.8
사회복지법인	66.7	(60)	7.5	7.5	15.0	15.0	7.5	10.0	37.5	100.0(40)	4,319.8
법인단체	89.1	(46)	17.1	7.3	24.4	12.2	12.2	2.4	24.4	100.0(41)	3,947.1
민간개인	75.7	(313)	11.4	16.0	19.4	18.6	11.4	7.6	15.6	100.0(237)	2,781.0
가정	60.3	(121)	52.1	21.9	13.7	2.7	1.4	1.4	6.8	100.0(73)	939.8
직장	62.5	(8)	20.0	20.0	60.0	-	-	-	-	100.0(5)	810.0
$X^2(df)/F$	-					-					6.2***
지역규모											
대도시	76.6	(394)	12.3	14.6	17.9	16.6	11.3	9.3	18.2	100.0(302)	2,951.5
중도시	74.7	(304)	19.4	15.0	21.1	15.0	10.1	2.6	16.7	100.0(227)	2,560.8
읍면지역	65.5	(171)	8.9	17.9	15.2	21.4	11.6	7.1	17.9	100.0(112)	3,518.7
$X^2(df)/F$	-					-					2.3
정원규모											
20인	60.3	(131)	50.6	22.8	12.7	2.5	1.3	2.5	7.6	100.0(79)	1,002.6
45~55인	71.7	(219)	18.5	17.8	21.7	16.6	10.8	1.9	12.7	100.0(157)	2,294.4
72~82인	77.1	(214)	5.5	17.6	18.8	20.6	12.1	10.3	15.2	100.0(165)	2,946.9
92~102인	80.1	(191)	7.2	11.8	20.3	20.3	12.4	5.2	22.9	100.0(153)	
124인 이상	76.3	(114)	2.3	5.7	14.9	17.2	14.9	13.8	31.0	100.0(87)	
$X^2(df)/F$	-					-					11.6***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표 Ⅲ-1-33>은 시설개보수비를 지출하는 경우, 주요 지출항목을 1, 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페인트, 벽지, 장판, 타일, 방수 등 마감재 공사비가 60.1%, 보인러, 배관, 온수 등 냉난방설비가 19.0%, 수도 배관, 양변기, 세면기 등 급배수설비가 10.1%, 나머지는 3% 내외이다. 2순위는 급배수 시설이 23.7%, 마감재 23.4%, 냉난방설비가 22.9%, 현광등, 백열등, 소화기 등 소모품이 10% 정도이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마감재가 83.5%로 높고, 냉난방설비가 41.9%, 급배수설비가 33.8%, 채광설

비와 소모품이 10% 정도이다.

〈표 Ⅲ-1-33〉 시설개보수비 주요 지출 항목: 1+2순위

단위: %(명)

구분	냉난방 설비	· 마감 재	소방 및 가스안전설비	급배수 설비	채광 설비	소모 품	비상대피 시설설비	건물외 부설비	기타	계(수)
1순위	19.0	60.1	2.2	10.1	3.9	2.5	0.5	1.6	0.2	100.0(641)
2순위	22.9	23.4	4.1	23.7	12.3	10.0	0.5	2.2	0.9	100.0(641)
1+2순위	41.9	83.5	6.3	33.8	16.2	12.5	1.0	3.8	1.1	(6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다음은 시설개보수비 주요 지출 항목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급배수설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고, 읍면지역과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냉난방설비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표 III-1-34 참조).

〈표 Ⅲ-1-34〉 제 특성별 시설개보수비 주요 지출 항목: 1순위

단위: %(명)

내나바 마가 소방 및 금베수 채과 소모폰 비상대 거문인	
구분 냉난방 마감 소방 및 급배수 채광 소모품 비상대 건물외 기수인 설비 설비 등 설비 기타 전설비 설비 들 설비	계(수)
전체 19.0 60.1 2.2 10.1 3.9 2.5 0.5 1.6 0.2	100.0(64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9.6 58.0 - 13.1 4.9 2.0 0.8 1.2 0.4	100.0(245)
사회복지법인 22.5 57.5 - 12.5 2.5 - 2.5 -	100.0(40)
법인단체 31.7 51.2 - 4.9 2.4 2.4 - 7.3 -	100.0(41)
민간개인 15.6 63.7 5.9 9.3 2.5 1.7 0.4 0.8 -	100.0(237)
가정 19.2 63.0 - 5.5 6.8 5.5	100.0(73)
직장 20.0 40.0 20.0 - 20.0 -	100.0(5)
지역규모	
대도시 17.5 60.3 2.0 10.6 3.6 3.0 1.0 1.7 0.3	100.0(302)
중도시 17.6 60.8 3.5 9.3 4.4 2.6 - 1.8 -	100.0(227)
읍면지역 25.9 58.0 - 10.7 3.6 0.9 - 0.9 -	100.0(112)
정원규모	
20인 21.5 62.0 - 5.1 6.3 5.1	100.0(79)
45~55인 17.8 59.9 1.9 12.1 3.2 3.2 - 1.9 -	100.0(157)
72~82인 13.9 63.6 1.8 12.1 4.2 1.8 0.6 1.8 -	100.0(165)
92~102인 21.6 56.9 3.9 11.8 2.6 1.3 0.7 1.3 -	100.0(153)
124인 이상 24.1 57.5 2.3 4.6 4.6 2.3 1.1 2.3 1.1	100.0(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3. 소결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지원 현황과 도움정도, 어린이집 재정 운영 현황과 관련 의견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있다.

첫째, 취사부 등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도 및 시군 구 특수보육시책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97%, 취사부 등 지원 인력 인건비 65.1%, 장기근속수당과 평가인증 수당, 담임수당은 각각 30% 정도, 복리후생비 26.4%,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18.5% 순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인건비로 취사부 등 지원 인력 인건비가 68.1%로 어린이집의 지원 요구가 높았다.

둘째, 보육교사의 기본급은 최저 임금 수준보다 높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과반수 이상이 최저 임금보다 많이, 33.2%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민간과 직장 12.5%씩은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중소도시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40.8% 정도이었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임금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수당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기본급 외에 명절 휴가비가 83.8%로 다수를 차지하고,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이 59.8%, 관리업무 수당 33.1%, 근무환경개선비 21.1%, 연구수당과 처우개선비가 19%대, 특별근무수당 16.1% 순으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 지역규모 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읍면지역일수록 특별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었다. 시간외/야간/휴일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연구수당은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수당은 기관 유형이나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Ⅳ. 보육비용 산정 기준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 및 아동 연령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비용 산정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아동 연령별 1인당 비용을 산정하였다.

# 1. 인건비

#### 가. 관련 제도

영유아보육법 상 원장은 영유아 20인 이상 어린이집에 배치하며, 담임교사는 반당 1인을 배치한다. 영유아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연령별 교사대 아동 비율에 따라 배치한다. 만0세는 영아 3명당 1인, 만1세는 영아 5명당 1인, 만2세는 영아 7명당 1인, 만3세는 영아 15명당 1인, 만4세 이상은 영아 20명당 1인을 배치한다. 조리원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아동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두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인력 배치 아동수 기준은 모두 현원이 기준이지만 원장만 정원 기준이다(보건복지부, 2015).

또한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이 외에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비로 보조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3~4개반에 최소 1명 이상, 5~7개반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이상 최소 3명이상, 11개반 이상 최소 4명이상을 둘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5).

#### 나. 인건비 지원

#### 1) 정부지원시설 지원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건 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아반 교사는 인거비의 30%를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는 인거비의 80%를 지원한다. 이 외에 농어촌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 보육교사 1명과 취사부 1명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도 시와 대도시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취사부 1명의 월 지급액 100%를 지원하다.

#### 2) 프로그램별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에는 영아전담,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형,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다.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 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워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에 원장 및 소요 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취사부 1 명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도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는데.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민간어린 이집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시설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은 방과후과정 지원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이다.

# 3) 지방정부 지원

중앙 정부의 인건비 지원 외에 지방 정부가 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1>와 같이, 대부분의 시도가 보육교사에게 월 6만원에 서 19만원 선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정부지원 보육교사에 게 월 2만원을 지원하는 경남이 가장 적고, 인천이 19만원으로 가장 많다. 시도

<sup>5)</sup> 영유아보육법 제17조 1항에 보조교사 배치 조항 신설(2015, 5, 18), 보조교사 지원대상은 영아반 3개 이상 운영하는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으로 1일 4시간 월 78만원을 지원함.

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 근속년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 〈표 IV-1-1〉 특수보육시책 사업

단위: 명. 천원

어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 14만5천원 민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인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인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인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원육교자 처우개선비 등,573 7,896,000 4,198,000 3,698,000 월 9만원 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 7,620 4,572,000 2,286,000 2,286,000 월 5만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8,000 800,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보육교직원 제주개선비 보육교직원 제주개선비 5,558,400 2,779,200 2,799,200 월 1만원 보육교직원 제구개선비 보육교직원 제구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제주가선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857,600 월 10만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경부지원 의원수당 기,792,000 2,779,200 9,275,552 월 6~15만원 제주가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변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변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92,755,520 1만당 1년당원 제우가전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원육교사 처우가전비 원위에 10만원 보육교사 처우가전비 원위에 11,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제우가전비 보육교사 처우가전비 기용교사 처우가전비 기용교과사 처우가전비 기용교과사 처우가전비 기,793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가전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교직원 10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가전비 9,060 9,156,000 9,156,000 9,156,000 명기 전원 원인원 제무지원 원모만원 경부 보육교직원 처우가전비 9,060 9,156,000 9,156,000 7,980,000 정부지원 월 2만원 경부 보육교직원 처우가전비 9,060 9,156,000 9,156,000 9,174,000 선보 5만원 전부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전부 11,120 11,120,121,120 11,120,121,120 12,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 1							난위: 명, 전원
지 시비 구비 정부지원원장1905원원 교사 14만5천원 민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원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73 7.896,000 4.198,000 3.698,000 월 9만원 유학반 보육교직원 특별 7,620 4.572,000 2.286,000 월 9만원 보육교직원 특별 7,620 4.572,000 1.566,000 1.0만원(연 1회) 보육교직원 특별 7,620 4.572,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7,700 3.132,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보육교직원 저우개선비 8,889 7,467,600 7,467,600 월 7만원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 7,000 1.680,000 1.680,000 월 2만원 한국 전체 사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보육교직원 제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가시원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가시원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가시원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가시원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가시원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구의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교식원 10만원 교식원 10만원 교식원 10만원 교식원 1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기구의 4,4472,000 4,342,000 10,130,000 교식원 10만원 교식원 10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기구의 14,472,000 4,342,000 10,130,000 교식원 10만원 교식원 10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기기원인 14,472,000 4,342,000 10,130,000 교식원 10만원 교식원 10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기기원인 14,472,000 4,342,000 10,130,000 교사원 10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기기원인 11,400,000 3,420,000 7,980,000 정부지원원 일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3,100 11,400,000 3,420,000 7,980,000 정부지원원 4만원 취사원원 2만원 수석 5만원 어린이집 중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0 점보 5만원 수석 5만원 연건비 25만원 기원인 건선보 25만원 수석 5만원 인건비 24만원 기사원인 기가원인 2년 18만원 기업시설 1가 원인만원 기사원인 2년 19만원	71-	ग्रस	기어라		사업비		-) () r) -)
어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 14만5천원 민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인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인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인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원육교자 처우개선비 등,573 7,896,000 4,198,000 3,698,000 월 9만원 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 7,620 4,572,000 2,286,000 2,286,000 월 5만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8,000 800,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보육교직원 제주개선비 보육교직원 제주개선비 5,558,400 2,779,200 2,799,200 월 1만원 보육교직원 제구개선비 보육교직원 제구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제주가선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857,600 월 10만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경부지원 의원수당 기,792,000 2,779,200 9,275,552 월 6~15만원 제주가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변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변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92,755,520 1만당 1년당원 제우가전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원육교사 처우가전비 원위에 10만원 보육교사 처우가전비 원위에 11,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제우가전비 보육교사 처우가전비 기용교사 처우가전비 기용교과사 처우가전비 기용교과사 처우가전비 기,793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가전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교직원 10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가전비 9,060 9,156,000 9,156,000 9,156,000 명기 전원 원인원 제무지원 원모만원 경부 보육교직원 처우가전비 9,060 9,156,000 9,156,000 7,980,000 정부지원 월 2만원 경부 보육교직원 처우가전비 9,060 9,156,000 9,156,000 9,174,000 선보 5만원 전부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전부 11,120 11,120,121,120 11,120,121,120 12,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120 11,120 1	시노	사업명	사업당	계	시비	구비	시원단가
대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73 7,896,000 4,198,000 3,698,000 월 9만원	서울						민간: 교사 20만원
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 7,620 4,572,000 2,286,000 월 5만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8,000 800,000 1,00만원(연 1회)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7,700 3,132,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889 7,467,600 7,467,600 월 7만원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000 1,680,000 1,680,000 월 10만원 월 10만원 경우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000 1,680,000 1,680,000 월 1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857,600 2,857,600 월 10만원 보육교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청무지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후 1,7930 1,7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후 7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후 55,000 1,980,000 9,900,000 월 3만원 보육교자 처우개선비 후 7 지원 보육교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청우개선비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1,152,000 345,600 월 2만원 전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일 1,500,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보육교자원 처우개선비 9,734,000 4,342,000 10,130,000 원자인원 경부지원 월 2만원 전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4,342,000 10,130,000 원자인원 경부지원 월 2만원 전략지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734,000 4,342,000 10,130,000 원자인원 월 5만원 전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10,130,000 원자인원 월 5만원 전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10,130,000 경부지원 월 2만원 전략지선의 경부지원 월 2만원 전략 5만원 선택 5만원 전략 5만원 선택 5만원 4년만원 5만원 4년만원 5만원 45만원 5만원 45만원 45만원 45만원 5만원 45만원 5만원 45만원 4	인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6~19만 차등지급
수당 보유교직원 특별수당 8,000 800,000 1,566,000 1,566,000 1 10만원(연 1회) 보유교직원 교통·급식비 7,700 3,132,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보유교직원 처우개선비 8,889 7,467,600 7,467,600 월 7만원 보유교직원 시간외근무 7,000 1,680,000 1,680,000 월 2만원  울산 보유교사 처우개선비 2,5558,400 2,779,200 2,779,200 월 12만원	대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73	7,896,000	4,198,000	3,698,000	월 9만원
대전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7,700 3,132,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889 7,467,600 7,467,600 원 7만원 불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58,400 1,680,000 원 12만원 광주 검직원장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원 2만원 강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청부지선비 민간어린이집 교직 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자 처우개선비 기사용자전비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청부지선비 보육교자 처우개선비 수가전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사원이 기사용자전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사원			7,620	4,572,000	2,286,000	2,286,000	월 5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7,000 1,680,000 1,680,000 월 2만원 원육교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7,000 1,680,000 1,680,000 월 2만원 원조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 선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월 10-25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월 2만원 장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청부지원 어린이집 교직 원 처우개선비 부육교사 서우개선비 부육교사 서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후 55,000 19,800,000 9,900,000 월 3만원 장부 교직원 처우개선비 후 55,000 19,800,000 9,900,000 월 3만원 충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청우개선비 기구원 사용교직원 처우개선비 기구원 11,152,000 345,600 806,400 월 2만원 장부 자유개선비 기구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정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정부 1만원 교직원 처우개선비 기구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8,000	800,000	800,000		10만원(연 1회)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7,000 1,680,000 1,680,000 월 2만원  울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58,400 2,779,200 2,779,200 월 12만원  광주 검직원장 처우개선비 월 1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3,600 월 2만원  강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청부지원 어린이집 교직 청부지선비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육교사 46,601 93,503,696 17,207,110 76,296,586 월 6~20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 7,730 19,800,000 9,900,000 월 3만원  충북 이근에 담임교사 수당 4,800 1,152,000 345,600 806,400 월 2만원  청라기선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정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경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정부지원 최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가인원 등지원 원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원가인원 등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원가인용인간 원5만원 정부미지원 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원5만원 성남 5만원 연건회 기사 월10만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건비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월 45만,	대전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i>7,7</i> 00	3,132,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유당			8,889	7,467,600	7,467,600		월 7만원
광주 결직원장 처우개선비 일 10만원 일 10만원 일 1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일 10만원 일 10만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일 2만원 차등지급 보육교식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 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 55,000 19,800,000 9,900,000 일 3만원 창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 7,7 지원 12만원 전체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하는 2세 담임교사 수당 4,800 1,152,000 345,600 806,400 월 2만원 청우개선비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장 15만원 정부미지원: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설날 5만원 수석 5만원 (연2회) 미지원사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건비 1.139,600			7,000	1,680,000	1,680,000		월 2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857,600   2,857,600   월 1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 선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월 2만원     간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 원 처우개선비   명치우개선비   전투자기선비   전투자기선의   전투자인 전투자인 전투자인 전투자인 전투자인 전투자인 전투자인 전투자인	울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58,400	2,779,200	2,779,200	월 12만원
변육교사 저우개선비 보육지선통사자 처우개 선비 2,857,600 2,857,600 월 10~25만원 차등지급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월 2만원 장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 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11,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19,800,000 9,900,000 월 3만원 3만원 장남 인근에집 보육교의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이건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45,600 806,400 월 2만원 청우개선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당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당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당 10만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성무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당 10만원 정부지원: 월 2만원 기안원등지원 기산의 기산의 기산의 11,400,000 3,420,000 7,980,000 정부미지원: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철달 5만원,추석 5만원 (연2회)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시부 일 45만	カス	겸직원장 처우개선비					월 10만원
세종 선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월 2만원  강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 원 처우개선비 8,139 11,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차등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46,601 93,503,696 17,207,110 76,296,586 월 6~20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장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45,600 806,400 월 2만원  장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정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지원: 월 5만원  경부지원: 월 1만원	るて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
장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 원 처우개선비 8,139 11,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차등지원 인간어린이집 보육교사 46,601 93,503,696 17,207,110 76,296,586 월 6~20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0~2세 담임교사 수당 4,800 1,152,000 345,600 806,400 월 2만원 청우개선비 전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정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당 5, 10만원 정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당 1,0만원 정부기원: 월 2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철말 5만원, 추석 5만원, 수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취사부 월 45만,	세종	선비		2,857,600	2,857,600		월 10~25만원 차등지급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 8,139 11,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처우개선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46,601 93,503,696 17,207,110 76,296,586 월 6~20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 55,000 19,800,000 9,900,000 9,900,000 월 3만원 분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0~2세 담임교사 수당 4,800 1,152,000 345,600 806,400 월 2만원 처우개선비 전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경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경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원간하는지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월 45만,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월 2만원
원 처우개선비   8,139   11,434,072   2,178,320   9,275,352   차등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46,601   93,503,696   17,207,110   76,296,586   월 6~20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000   19,800,000   9,900,000   9,900,000   월 3만원	강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청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   7,930   19,800,000   9,900,000   9,900,000   월 3만원		원 처우개선비	8,139	11,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차등지원
가 지원 35,000 19,800,000 9,900,000 월 3단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0~2세 담임교사 수당 4,800 1,152,000 345,600 806,400 월 2만원 하라기선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경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월1만5천~10만차등지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미지원: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월 45만,	경기	처우개선비	46,601	93,503,696	17,207,110	76,296,586	월 6~20만원 차등지원
중복 응남0~2세 담임교사 수당4,8001,152,000345,600806,400월 2만원충남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11,12014,472,0004,342,00010,130,000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전북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9,0609,156,0009,156,000월 5, 10만원경북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9,734,000월1만5천~10만차등지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미지원: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21,0002,100,000630,0001,470,00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제주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건비1.139,600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가 지원		19,800,000	9,900,000		
전부 이란이집 보육교직원   11,120   14,472,000   345,600   806,400   월 2만원   2만원   처우개선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정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월1만5천~10만차등지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미지원: 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건비   1.139,600   기시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월 45만,	추보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정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전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734,000 월 5, 10만원 경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월1만5천~10만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100 11,400,000 3,420,000 7,980,000 정부미지원:월 2만원 정부미지원: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월 45만,	0 7		4,800	1,152,000	345,600	806,400	
정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월1만5천~10만차등지원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미지원: 월 2만원 정부미지원: 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월 45만,		처우개선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교직원 10만원
경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100 11,400,000 3,420,000 7,980,000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미지원: 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건비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경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100 11,400,000 3,420,000 7,980,000 정부미지원: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월 45만,	경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월1만5천~10만차등지원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건비 1.139,600 1,470,00 추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 건비 1.139,600	경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100	11,400,000	3,420,000	7,980,000	정부미지원:월 4만원 평가인증민간 월5만원
제구 건비 1.159,000 취사부 월 45만,			21,000	2,100,000	630,000	1,470,00	추석 5만원 (연2회)
그 나이크라이 시키에 키가 카이지 신급 가드는 페이크리 이어		건비					미지원시설 기사 월10만 취사부 월 45만,

주: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 지원이 없는 시도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 다. 인건비 산출

#### 1) 인력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 인력 배치는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기준을 따르나, 누리과정비담임 교사와 보조교사는 예외 기준을 둔다. 원장은 2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배치하고, 교사는 반당 1인 담임교사와 누리과정 반 수에 따라 단시간 보조교사를 둔다. 아동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영양사와 간호사는 5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둔다. 이 취사부는 영유아 40인~79인 어린이집은 1인을 두며, 영유아가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하는 것으로 한다.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반일제 취사부를 둔다. 이외에 어린이집이 임의로 배치할 수 있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등의 교직원은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15).

〈표 IV-1-2〉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단위: 반
구분	20인미만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원장	-	1	1	1	1	1	1
담임교사							
0세아반	1	1	1	1	1	2	2
1세아반	1	1	1	2	2	2	2
2세아반	2	1	2	2	3	3	4
3세아반	-	1	1	2	2	3	3
4세아 이상반	-	1	2	2	3	3	4
소계	4	5	7	9	11	13	15
취사원	1/2	1	1	2	2	2	3
영양사	-	-	-	-	1/5	1/5	1/5
간호사	-	-	-	-	1/5	1/5	1/5
누리보조교사	-	-	1/2	1/2	1	1	1
계	4.5	7	10	13	15.25	19.25	21.25

자료: 서문희 외(2014).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22 재구성.

< IV-1-3>은 취사부 등 기타 인력 배치 비율과 어린이집 수 대비 기타 인력수를 나타낸다. 2014년 4월 기준, 취사부는 현원 기준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96.9%에 배치되어 있고, 간호사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56.7%, 영양사는

<sup>6)</sup> 어린이집 간호(조무)사 배치 비율은 5% 미만으로 배치한 경우에도 겸직이 다수임.

38.1%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기관 중 35.1% 정도만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원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 중 26.7%만 기타 보육교직원이 있다.

또한 40인 이상 어린이집 수 대비 취사부 수는 137.6%로 해당 어린이집 중 37.6%는 2명 이상의 취사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 수 대비 간호사와 영양사 수는 각각 56.7%, 38.1%으로, 100인 이상 어린이집 절반 정도만 간호사를 두고 있고, 이중 2/5는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다.

〈표 IV-1-3〉 인력 배치 비율 및 어린이집 수 대비 인력 수 비율

단위: % 인력 배치 비율 어린이집 대 구분 법인. 부모 사회복지 인력 비율 직장 가정 국공립 민간 전체 단체 등 협동 취사부 99.7 95.5 98.0 92.3 99.6 97.5 96.9 137.6 가호사 56.9 52.8 71.8 51.0 94.3 56.7 55.8 영양사 53.8 38.0 92.0 38.1 37.0 33.4 37.9 누리과정보조교사 0.8 57.5 33.2 41.5 24.1 43.3 34.7 48.1 35.1 기타 보육교직원 8.7 56.2 42.6 73.3 18.4 75.0 34.4 26.7 26.7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어린이집 운영자료(2014년 4월 기준).

### 2) 급여 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은 인건비 지급기준과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서문희 외(2013)와 유사하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산출 된 원장과 보육교사 평균 호봉을 적용하고 단가는 2015년 기준 보육교사 인건 비 기준을 적용한다. 어린이집 전체 원장은 평균 11.3호봉으로 급여는 2015년 기준으로 월 254만원이다. 보육교사는 평균 5호봉으로 급여는 2015년 기준 월 171만원이 된다. 2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평균 호봉을 적용한다. 원장 14.9호봉, 보육교사 5.9호봉이고, 급여는 2015년 기준으로 각각 279만원, 183만원이다.

취사부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산출된 급여가 평균 94만원이고, 영양사는 평균 114.9만원, 간호사는 평균 124.7만원이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반 영하면, 취사부는 평균 97만원, 영양사는 119만원, 간호사는 129만원이 된다.

이 외에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월 17만원, 원장 겸직 교사는 월 7만 5천원, 누리과정 교사는 월 30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된다. 또한 시간외 수당은 본연구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월 7만 8천원을 책정한다.

구분	1안	2안		
원장	- 11호봉	- 15호봉		
보육교사	- 5호봉	- 6호봉		
취사부	- 정액 100만원	- 3호봉		
영양사	- 5개 시설 공동	- 5개 시설 공동		
3 371	- 1호 <del>봉</del>	- 3호봉		
가항사	- 5개 시설 공동	- 5개 시설 공동		
신모사	- 1호봉	- 3호봉		
보조(비담임)교사	- 누리과정반 보조교사	- 누리과정반 보조교사 1호봉		
3535(11 12 12) 355 / 1	- 정액 120만원(최저임금 적용)	- 1 HA 8 & ESTEV 13-8		
계스다	- 근무환경개선비	- 근무환경개선비		
^1	- 시간외 수당	- 시간외 수당		

〈표 IV-1-4〉 인건비 산출 시 인력배치 및 급여 기준

# 3) 아동 1인당 인건비

<표 Ⅳ-1-2>와 <표 Ⅳ-1-4>를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1 안을 시설규모별로 보면, 0세 기준으로 20인 어린이집이 750,900원으로 가장 적 고 50인이 838,000원으로 높다. 1세는 40~53만원, 2세는 32~40만원 사이에 분포 한다. 3세와 4세는 규모에 따른 차이가 2~3만원 정도로 크지 않다.

2안도 20인이 70만원대로 가장 적으며 1안과 비교하여 약 4만원 정도 높게 산출되었다. 시설규모별로는 50인이 가장 높다.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1안							
0	750,900	838,000	819,600	818,300	816,100	808,300	806,500
1	450,300	535,900	517,500	516,300	515,200	506,200	504,400
2	321,600	406,600	388,100	387,000	384,700	376,900	375,100
3		242,500	224,100	222,900	221,800	214,000	212,200
4+		203,300	184,900	183,700	181,400	173,600	171,800
2안							
0	796,700	903,800	884,100	886,400	883,100	873,200	872,700
1	478,500	584,100	564,400	566,600	563,400	552,300	551,800
2	341,600	446,500	426,800	429,100	425,800	414,700	415,400
3		271,900	252,200	254,400	252,300	241,200	240,800
4+		230,300	210,600	212,900	209,600	198,500	198,100

〈표 IV-1-5〉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인건비

# 2. 급간식비

2절은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급간식단, 급식단가 산출, 급 간식비 산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 가. 관련 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8의 나목에는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5)에는 급간식비 적용 범위를 보육 아동과 보육 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로 한정하고 있다. 아동 1인당 적정 수준의 비용은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 이 비용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한다.

# 나. 급간식비 산출기준

# 1)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종전의 '영양권장량'은 각 영양소별로 단일 값을 제시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이나 영양소 과다섭취 등에 대한 우려와 예방 차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러수준의 '영양섭취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은 질병이 없는 대

다수의 한국인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영양소 섭취수준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은 2005년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2010년에 개정된 후 이기준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 나) 연령별 에너지 필요추정량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르면 연령 구분은 만 1~2세와 만 3~5세로 구분되어 있다. 서문희 외(2013)는 각 연령별 발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3-5세 각 연령별 에너지 필요추정량을 한국영양학회의 산출 공식에 따라 연령별 1인 급식적정량을 산출하였고, 연령별 에너지 필요추정량은 각 연령별 1인 급식 적정량 산정에 적용하였다.

구분	형	o}	유아				
	0~5개월 6~11개 <sup>4</sup>		1-2세	3-5세			
총 에너지	80*체주	(kg)-100	남자: 88.5-61.9*연령(세)+PA[26.7*체중(kg)+903*신장(m)]				
필요추정량	09 41 8	(Kg)-100	여자: 135.3-30.8*연령(세)+PA[1	[0.0*체중(kg)+934*신장(m)]			
생애주기별 부가량	+115.5	+22	+20	+20			

〈표 IV-2-1〉 연령별 에너지 필요추정량

# 다. 급간식 식단

급간식 식단은 영유아 연령별로 이유식과 영유아 식단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다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17개 시도별 식단을 구성하였다.

# 1) 이유식 식단

영아의 성장발달은 개인의 차가 크므로 영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하여야한다. 영아기는 섭식운동 발달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이유기 초기(4~5개월), 이유기 중기(6~8개월), 이유기 후기(9~11개월) 3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IV-2-2>는 서울 지역의 이유식 식단 예시이고, 나머지 지역의 식단은 <부표 IV-2-1>에 제시하였다.

주: 생애주기별 부가량은 성장 및 대사변화에 따른 에너지 추가 필요량임. PA=1.0(비활동적), 1.13(저활동적), 1.26(활동적), 1.42(매우 활동적)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015).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선.

분류

초기 중기

`		0171 1 1		~~=	
월	화	수	목	금	토
감자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당근미음	당근미음	당근미음
쇠고기양파죽	아욱죽	미역죽	달걀노른자죽	순두부죽	배죽

달걀노른자죽

순두부죽

배죽

〈표 IV-2-2〉 이유식 식단(초·중·후기): 서울

미역죽

자료: 어린이급식지원센터(2015). 내부자료.

아욱죽

#### 2) 영유아 식단

후기 쇠고기양파죽

전국 17개 시·도의 만 3-5세 표준 식단을 토대로 비교하였으며, 만 1-2세는 만 3-5세 제공량의 70%로 산정하였다.

<표 IV-2-3>은 서울 지역의 표준 식단을 제시한 것이다. 나머지 시도는 <부표 IV-2-3>에 제시하였다.

〈표 IV-2-3〉 만 1-2세 표준 식단: 서울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간식	제철과일/우유	견과류/치즈	채소스틱/플레인 요구르트	스크램블에그	제철과일	우유
점심 식사	기장밥 부추달갈국 쇠불고기 숙주나물 열무김치	후미밥 아욱국 돈육데리아끼 오이나물 깍두기	키레라이스 미역국 과일샐러드 배추김치	수수밥 열무된장국 오징어볶음 청포묵무침 배추감치	보리밥 맑은순두부국 닭살채소볶음 가지나물 깍두기	채소볶음밥 북엇국 양배추샐러드 깍두기
오후 간식	채소전	절편/보리차	우동	단팥뺑우유	찐단호박우유	
열량	440kcal	435kcal	427kcal	432kcal	390kcal	339kcal

자료: 어린이급식지원센터(2015). 내부자료.

〈표 IV-2-4〉 만 3-5세 표준 식단: 서울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간식	제철과일/우유	견과류/치즈	채소스틱/플레인 요구르트	스크램블에그	제철과일	<del>?   </del>
점심 식사	기장밥 부추달갈국 쇠불고기 숙주나물 열무김치	후미밥 이욱국 돈육데리아끼 도라지오이무침 깍두기	키레라이스 미역국 과일샐러드 배추김치	수수밥 열무된장국 오징어볶음 청포묵무침 배추감치	보리밥 순두부찌개 닭살채소볶음 가지나물 깍두기	채소볶음밥 북엇국 양배추샐러드 깍두기
오후 간식	채소전	절편보리차	우동	단팥뺑우유	찐단호박우유	
열량	600kcal	580kcal	599kcal	598kcal	535kcal	327kcal

자료: 어린이급식지원센터(2015). 내부자료.

### 라. 급식단가 산출

### 1) 급식단가 산출과정

급식단가는 표준 레시피 작성, 메뉴별 표준분량 단가 산출, 1일 식단가 산출, 월 식단가 산출, 표준 식단가 산출, 표준 급식비 산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기초로 1일 식단가를 산출한 후 1개월 식단가를 산출하여 지역별 급식단가를 비교하였다.

〈표 IV-2-5〉 표준레시피 작성 〈표 IV-2-6〉 식재료 단위가격 산출 예시(쇠불고기)

예시(쇠불고기)

	,			,	
	단위: <u>g</u>				단위: g
재료명	분량(g)	재료명	중량	가격	단위가격
쇠고기,등심	40.0	쇠고기,등심	1kg	21,000	21
느타리버섯	10.0	느타리버섯	1kg	9,750	9.75
양배추	5.0	양배추	1kg	1,233	1.2
양파	10.0	양파	1kg	1,767	1.77
표고버섯	5.0	표고버섯	1kg	24,000	24
당근	10.0	당근	1kg	2,110	2.11
간장	3.0	간장	15L	43,000	2.8
마늘	0.5	마늘	1kg	8,100	8.1
설탕, 백설탕	1.5	설탕, 백설탕	1kg	1,980	1.98
참기름	1.0	참기름	1kg	18,125	8.13
파,대파	3.0	파,대파	1kg	2,217	2.22
총 분량	89.0	총 분량			93.06

주: 단위가격=가격/중량

〈표 IV-2-7〉 식재료 조정중량 및 표준분량단가 산출 예시(쇠불고기)

 재료명	쇠고기, 등심	느타리 버섯	양배추	양파	표고 버섯	당근	간장	마늘	참기름	파,대 파
분량	40	10	5	10	5	10	3	0.5	1.5	1
출고계수	1	1	1.16	1.09	1	1.12	1	1	1	1.23
조정중량	40	10	5.8	10.9	5	11.2	3	0.5	1.5	1.23
단위가격	21	9.75	1.2	1.77	24	2.11	2.8	8.1	1.98	18.13
식재료단가	840.0	97.50	6.96	19.29	120.0	23.63	8.40	4.05	2.97	22.30

주: 1) 분량 : 실제 필요한 재료량(가식부)

<sup>2)</sup> 조정중량 = 분량×출고계수

<sup>3)</sup> 식재료 단가=조정중량×단위가격

<sup>4)</sup> 표준분량단가 산출=메뉴에 사용되는 각 식재료 구매 단가의 총합.

〈표 IV-2-8〉 1일 식단가 산출 예시: 서울

단위: <u>g,</u> 원 1일 1인 분량 조정중량 재료별 구분 메뉴명 식재료명 출고계수 단위가격 식단가 단가 (g) 오전 제철과일 배 50.0 1.2 60 9.75 585.0 간식 쌀(백미) 2.35 49.5 1 49.5 116.3 보리밥 보리 5.5 5.5 2.9 1 16.0 순두부 1 3.3 30.0 30 99.0 달걀 15.0 1.16 17.4 3.2 55.7 바지락살 5.0 1 5 25.2 126.0 양파 1.06 10.0 10.6 1.77 18.8 고춧가루 순두부 24.0 1.0 1 1 24 찌개 마늘 1 8.1 0.5 0.5 4.1 소금 0.5 1 0.5 3 1.5 참기름 1.98 1.0 1 1 2.0 파(중파) 3.0 1.19 3.57 18.13 64.7 후춧가루 0.5 1 0.5 18.4 9.2 닭고기(살코기) 6.5 40.0 1 6.5 6.5 당근 10.0 1.12 11.2 2.11 23.6 생강 1.2 14.5 8.7 0.5 0.6 점심 2,138 양파 1.77 10.0 1.06 10.6 18.8 피망 1.15 11.5 46.0 닭살채소 10.0 4 볶음 파, 소파 2.0 1.19 2.38 18.13 43.1 간장 1.5 1 1.5 2.8 4.2 마늘 1.0 1 1 8.1 8.1 설탕(백설탕) 1.0 1 1 1.88 1.9 소금 0.5 1 0.5 3 1.5 가지 40.0 1.06 42.4 3.5 148.4 간장 1 2.8 2.8 1.0 1 참깨 1 12 12.0 1.0 1 마늘 가지나물 0.5 1 0.5 8.1 4.1 소금 3 0.5 1 0.5 1.5 참기름 1.0 1 1 18.12 18.1 파(소파) 2.38 18.13 2.0 1.19 43.1 깍두기 깍두기 20.0 20 3.4 68.0 1 찐단호박 단호박(찐 것) 1.2 40.0 48 1.48 71.0 오후 간식 우유 우유(흰우유) 200.0 1 200 2.42 484.0

# 마. 지역별 급간식비 차이

# 1) 식단 구성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단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식단 구성 시자주 사용되는 식재료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IV-2-9 참조).

2015년 6월 한 달 식단에서 사용되어진 식재료의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급 가식 재료 중 쌀 및 잡곡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콩류는 세종, 대전, 강 원, 경북에서 사용 빈도가 높으며, 육류는 경기, 전북, 충북, 경북, 인천, 제주에 서 많이 사용하였다.

생선 및 어패류는 전북, 부산, 전남, 울산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해조류는 경 기, 충남, 광주에서 높았다. 과일은 울산, 경기, 경남, 부산, 세종이 높고, 유제품 은 충북, 인천, 충남에서, 달걀은 전북, 충북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특히 생선 및 어패류는 전북, 부산, 전남 등에서 12~14회 제공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식품을 구입하기 쉬운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IV-2-9〉 지역별 식재료 사용 빈도: 2015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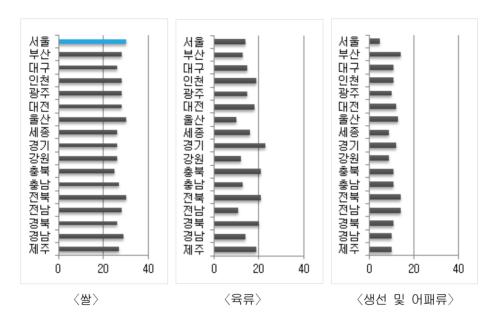
단위: 회

												71
구분	쌀 및 잡곡	콩류	육류	생선 및 어패류	해조류	채소	과일	가공 식품	유제품	달걀	간식류 (떡,빵)	기타
서울	30	7	14	5	3	86	13	-	23	4	9	-
부산	28	8	13	14	3	78	16	3	13	5	9	-
대구	26	9	15	11	3	91	13	1	20	6	7	-
인천	28	7	19	11	2	94	11	1	25	5	12	-
광주	28	11	15	10	4	82	14	1	16	2	8	-
대전	28	14	18	12	2	89	12	1	23	3	10	-
울산	30	11	10	13	3	101	18	2	14	3	13	-
세종	26	17	16	9	3	98	16	1	15	4	9	-
경기	26	11	23	12	8	84	17	3	15	5	9	-
강원	26	13	12	9	3	79	12	3	15	5	6	-
충북	25	9	21	11	3	79	15	3	26	7	8	-
충남	27	8	13	11	5	85	9	3	25	5	9	-
전북	30	11	21	14	3	80	14	3	19	8	10	1
전남	28	7	11	14	1	82	12	1	17	3	16	-
경북	26	12	20	11	1	72	14	1	19	6	11	-
경남	29	11	14	10	2	73	16	2	19	5	5	-
제주	27	10	19	10	2	71	14	4	22	5	9	-

주: \*기타 : 다슬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역별 어린이집 급식 식단 조사」결과임.

[그림 IV-2-1]는 주요 식재료인 쌀, 육류, 생선 및 어패류 등17개 시도별 사용 빈도를 나타낸다. 이 외에 지역별 식재료 사용 빈도는 <부표 Ⅳ-2-4>에 수록하 였다.



[그림 IV-2-1] 지역별 식재료 사용 빈도

#### 2) 식재료 가격

지역별 물가수준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영역으로는 식자재 구입 비용이 그 중의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도시화 속도가 상이하고, 농축산물 생산지가 지역 환경에 따라 분포되어져 있어서 식자재 가격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급식단 계획 시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지역별 가격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V-2-10 참조).

2015년 3월 기준, 쌀(정미, 포장미) 20kg 가격은 충북이 51,200원, 강원 50,604원, 인천 50,139원 순으로 높다.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광주 44,800원, 대전 44,900원, 울산 46,598원 순이다. 닭고기(육계) 1kg은 충남 6,660원, 부산 6,450원, 울산 6,423원으로 높다. 감자 1kg은 지역에 따라 700원 정도 차이를 보여서, 경기 3,990원, 강원 3,943원, 부산 3,920원 순으로 높고, 충북 3,216원, 서울 3,477원, 인천 3,472원으로 낮다. 주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콩은 서울과 대구, 인천은 1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7~9천원대에 분포한다.

$\langle \Pi$	IV-2-10	지여벽	노추사모	평규가겨:	2015년	5월	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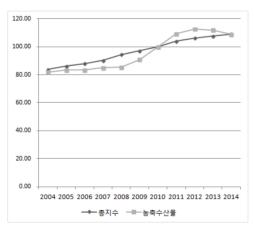
															단위	의: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쌀	47,673	48,905	49,744	50,139	44,800	44,900	46,593	49,188	50,604	51,200	47,197	47,580	48,167	47,605	46,864	48,967
돼지고기	9,221	8,888	8,728	8,727	8,323	7,485	8,867	9,090	8,820	9,438	8,587	9,110	8,770	8,694	8,185	9,883
쇠고기	38,539	36,450	31,154	33,381	33,987	30,933	35,280	34,609	36,433	34,088	36,475	32,638	33,511	31,580	34,789	33,386
닭고기	5,571	6,450	5,388	5,992	5,530	6,095	6,423	6,300	5,580	6,165	6,660	5,763	5,714	5,891	5,620	6,154
달캴	1,856	2,626	2,110	2,228	1,859	2,200	2,229	2,232	2,039	2,546	2,259	2,440	2,630	2,419	2,698	2,549
뺘	628	844	704	738	802	652	808	706	758	763	922	724	688	834	698	834
무	682	696	770	722	891	779	725	802	679	856	802	761	839	773	744	531
감자	3,466	3,920	3,608	3,472	3,670	3,775	3,335	3,990	3,943	3,216	3,832	3,794	3,604	3,870	3,897	3,704
콩	10,478	8,219	11,035	10,127	8,212	8,468	9,981	9,435	7,768	8,573	6,586	6,009	7,039	8,384	7,651	8,128
亦루	2,620	2,476	2,098	2,845	2,128	2,598	2,337	2,847	2,427	2,371	2,679	2,507	2,222	2,125	2,272	2,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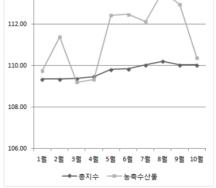
주: 2015. 3.기준, 쇠고기(정육등심)500g, 돼지고기(정육 삼겹살)500g, 닭고기(육계)1kg, 달걀 (개당 65g정도 특란)10개, 배추(통배추)1kg, 무(재래종, 잎 없는 것)1kg, 감자(신선한 것)1kg, 고추가루(중품)100g, 콩(백태)1kg, 쌀(정미, 포장미)20kg

자료: http://kostat.go.kr(2015. 5. 29 인출).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와 2015년 10개월 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 추세를 살펴보았다. 먼저, 농축수산물 가격은 2010년까지 소비 자물가지수보다 낮았으나 이후 이를 상회하여 주요 가격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114.00





〈최근 10년간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2015년 월별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그림 IV-2-2] 연도 및 월별 농축산물 물가지수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농축수

산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등락률이 상당히 커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지역별 식단가

#### 가) 이유식 식단가

2015년 6월 표준 이유식 식단을 기초로 1일 식단가를 산출한 후 한 달을 구성하는 식단가를 산출하였다. 초기 이유식은 충남과 전북이 1일 식단가 156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지역은 130~140원대에 분포한다. 중기 이유식은 부산이 218원, 전북 226원으로 높고, 충남이 131원으로 가장 낮다. 후기 이유식은 부산이 718원, 전북이 726원 순이고, 중기 이유식과 마찬가지로 충남이 631원으로 가장 낮다. 초기, 중기이유식보다 후기 이유식의 식단가가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간식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V-2-11〉 연령 및 지역별 식단가

단위: 원 초기 이유식 중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 만 1-2세 만 3-5세 구분 1일 월 1일 월 1일 월 1일 월 1일 월 서울 3,525 5,250 17,750 1,644 41,100 2,349 58,725 141 210 710 부산 3,525 5,450 17,950 1,503 37,575 2,147 53,675 141 218 718 3,525 대구 1,538 141 215 5,375 715 17,875 38,450 2,197 54,925 인천 141 3,525 217 5,425 717 17,925 1,453 36,325 2,076 51,900 광주 132 3,300 210 5,250 710 17,750 1,542 38,550 2,203 55,075 대전 132 3,300 209 5,225 709 17,725 1,505 37,625 2,150 53,750 울산 132 3,300 216 5,400 716 17,900 1,580 39,498 2,257 56,425 세종 132 3,300 208 5,200 708 17,700 1,549 38,725 2,212 55,300 경기 132 3,300 210 5,250 710 17,750 1,556 38,900 2,223 55,575 강원 132 3,300 5,250 17,750 1,588 2,268 210 710 39,700 56,700 충북 132 3,300 208 5,200 708 1,580 39,500 2,258 56,450 17,700 충남 156 3,900 131 3,275 631 15,775 1,528 38,200 2,183 54,575 전북 156 3,900 226 5,650 726 18,150 1,579 39,475 2,256 56,400 전남 132 3,300 204 5,100 704 17,600 1,540 38,500 2,200 55,000 경북 132 3,300 207 5,175 707 17,675 1,358 33,950 1,940 48,500 경남 132 3,300 206 5,150 706 17,650 1,465 36,625 2,093 52,325 제주 138 5,325 3,450 213 713 17.825 1,500 37,500 2.143 53,575 평균 137 3,432 707 207 5,174 17,674 1,530 38,247 2,186 54,640

주: 월 식단가 1개월 25일 운영 기준으로 산출 자료: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부자료.

#### 나) 일반 식단가

2015년 6월 표준 식단을 기초로 하여 1일 식단가를 산출한 후 한 달을 구성하는 식단가를 산출하였다. 만 1-2세는 연령별 에너지 섭취기준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만 3-5세의 식단가의 80%로 산출하였다. 만 3-5세 일반 식단가 기준으로 서울의 식단가가 2,34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1,940원, 인천 2,076원, 경남 2,093원, 제주 2,143원 순으로 낮았다. 만 1-2세 전국 평균 식단가는 1,530원이고, 만 3-5세 전국 평균 식단가는 2,186원으로 산출되었다(표 V-2-11 참조).

#### 바. 급간식비 지원

보육료에는 점심 급식 1회와 간식 2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 중 기존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 중 일부를 급간식비로 지출할 수 있다.

중앙 정부 지원 외에 일부 시도 및 시군구가 특수보육시책으로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충남과 세종은 영유아 급식비로 1인당 1일 기준 300원, 경북은 1인당 월 9,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12〉 특수보육시책 사업

단위: 명 처원

_							
-	시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기도	스타 I	사립당	계	시비	구비	시원인/[
_	충남	영유아 급간식비	69,000	5,175,000	1,552,000	3,623,000	1인 300원/일
	세종	영유아 급·간식비	-	633,060	633,060	-	1인 300원/일
	경북	보육아동 간식비	73,000	-	-	-	1인당 9,000원/월

자료: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 3. 교재교구비

3절은 중앙 정부의 교재교구비 지원과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특수보육시책 등을 살펴보고, 교재교구비 산출기준과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를 제시하였다.

#### 가. 교재교구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15).

또한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료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가 포함된다고 제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5). 보육료 외에 교재교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누리과정 교재교구비 지원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와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아동수로 균분한 금액이다. 이 비용은 3~5세 누리과정 유아수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다음 8개 항목으로 사용할수 있다. 우선 보조교사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사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에 따른 개선비용,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비용, 담당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 후생경비 지급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시도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으로, 이중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솥 등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15).

# 2)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정부는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7)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개소당 평균 연 100만원으로, 지자체가 예산범위, 지원시

<sup>7)</sup>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됨. 또한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교재교구비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이다.

## 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운영비는 어린이집의 교사 수와 반수, 아동 현원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3개 항목을 지원한다. 유아반 운영비는 3~5세반 1개소당 60만원, 교육·환경개선비는 재원 아동 1인당 1만 5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

	THE THE COLUMN TO THE COLUMN T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소당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 - 4세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교육·환경 개선비	1.5만원	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표 IV-3-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주: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은 종일반 1개소당 월 35만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공고 내부자료.

# 4)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정부는 지역 보육아동 감소에 따라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

〈표 IV-3-2〉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단가

					<u> 단위: 천원</u>
정원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주: 정원충족률은 매월 말일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규모(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월 20~28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5) 지방정부 지원

앞서 살펴본 중앙 정부지원 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지방비로 교재교 구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제주는 정부지원 시설 연 10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은 정원별로 40~100만원을 지원한다(표 IV-3-3 참조).

〈표 IV-3-3〉 특수부육시책 사업

자료: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 나. 교재교구비 산출기준

교재교구비 산출기준은 서문희 외(2013b)가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추진한 표 준보육비용 산정연구의 산출기준을 따른다.

0세(6명)	1세(10명)	2세(14명)	3세(15명)	45세(20명)
실내환경	실내환경	실내환경	실내환경	실내환경
일상영역(수유,기	일상영역(수유,기	신체	언어	언어
저귀갈이,낮잠)	저귀갈이,낮잠)	언어	수과학	수과학
신체	신체	감각·탐색	역할	역할
언어	언어	역할·쌓기	쌓기	쌓기
감각·탐색	감각·탐색	미술	음률	음률
	역할·쌓기	음률	미술	미술
비품	비품	비품	비품	비품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실외놀이	실외놀이	실외놀이	실외놀이	실외놀이

〈표 IV-3-4〉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

주: 사업량과 시비, 구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주: 서문희 외(2013).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표 Ⅳ-3-4>와 같이, 반 구성은 연령 단독반을 원칙으로 하고, 0~1세는 2반 합반, 3세, 4·5세반은 단독반으로 배치한다. 교재교구 범위는 실내와 실외로 구 분하고, 실내는 영역별 교재교구, 비품, 소모품, 실외환경은 실외놀이 기구를 배 치하다.

#### 다. 교재교구비 산출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 산출을 위하여 교재교구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서 문희 외(2013)가 2013년 실시한 바 있으나, 그간 물가인상, 환율 변동, 판매업체 의 판매상품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서문희 외(2013)와 동일한 방법 으로 교재교구비를 조사하였다.

먼저, 서문희 외(2013)에서 사용한 연령 및 영역별 교재교구 목록을 이용하여 국공립, 민간개인, 가정 등의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보유 현황 및 필요정 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보육현황이 30% 미만이고, 필요 정도가 4점 만점에 2점 미만인 항목을 제외하여 교재교구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중 규모가 큰 3개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제품 카다로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품 단가를 조사한 후 3개 업체 가 격 중 중간 가격대를 단가 산출에 적용하였다. 그런 다음, 각 교재교구별로 내 용연수8)를 반영하여 연·월간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한 후 아동 1인당 소요되는 월평균 교재교구 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IV-3-5〉 연령별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다의 의/원

					건기 전/결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실내환경					
교재교구	22,900	27,070	16,990	19,750	17,210
소모품	1,950	4,010	5,310	5,260	7,190
비품	15,950	7,240	4,810	8,090	5,770
소계	40,800	38,320	27,110	33,100	30,170
실외환경	4,490	2,650	2,900	6,440	3,860
계	45,290	40,970	30,010	39,540	34,030

주: 원 단위는 절삭함.

<sup>8)</sup> 교재교구별 내용연수는 조달청 및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관련 자 료가 없는 항목은 원장 및 보육교사 검토를 통해 내용연수를 설정함(서문희, 2013 재인 용).

연령별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를 보면, 0세는 실내환경 교재교구와 소모품, 비품을 합산한 교재교구비가 40,800원, 만1세 38,320원, 2세 27,100원, 3세 33,100원, 4·5세 30,170원으로 0세가 가장 많다. 실외환경에 비치한 교재교구비는 만 0세가 4,490원, 만1세 2,650원, 만2세 2,900원, 만3세 6,440원, 만4·5세 3,860원 이다. 실내환경과 실외환경 교재교구비를 합산하면, 만0세가 45,290원, 만1세 40,970원, 만2세 30,010원, 만3세 39,540원, 만4·5세 34,030원이 된다.

# 4. 관리운영비

#### 가. 관련 제도

영유아보육법 상 관리운영비는 재무회계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로 구성된다. 표준보육비용산정 시에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에 재무회계규칙의 업무추진비(항)의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목)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각 항목별 세부항목은 <표 IV-4-1>과 같다.

구분 세부 내역 여비 -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 제외) 수용비. - 도서구입비 수수료 및 - 공고료·등기료·수수료,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 공공요금 - 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보험료 등 -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 차량비 모품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기관운영비 -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직책급 -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회의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표 IV-4-1〉 관리운영비 항목별 내역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 나. 관리운영비 지원

국고지원 사업에는 관리운영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량운영비와 냉난방

비가 일부 특수사업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 1) 차량운영비 지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이나 정부지원 영아전담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도 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개소당 월 20만원(연 240만원)을 차량운영비로 지원한다.

#### 2)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으나 보육 수요가 존재하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소당 연 100백만원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3) 지방정부 지원

관리비로 지출되는 연료비와 보험 등 수용비에 대한 시도 특수보육시책 지원 을 살펴보았다.

〈표 IV-4-2〉 특수보육시책 사업

단위: 명. 개소. 천원

					<u> </u>	0, 7111, 111
 시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 지워단가
71-	<b>八月</b> 3	\L H 20	계	시비	구비	- 시원인기
대전	도서구입비	1,670	217,100	217,100	-	연 13만원
세종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	-	106,200	106,200	-	정원별 차등지급
강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030	452,700	90,540	362,160	개소당 45만원
충북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52,000	130,000	52,000	78,000	유아1인당 연 2,500원
경북	어린이집 안정공제회비	73,000	182,500	-	-	유아1인당 연 2,500원
경남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110,000	555,000	277,500	277,500	-

자료: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대전은 도서구입비로 개소 당 연 13만원, 충북은 어린이집의 의무가입 사항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를 아동 1인당 연 2,500원 지원하고, 경남도 어린이

<sup>9)</sup>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셈터 지원 사업임.

집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며, 세종시는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를 정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 다. 지역별 차이

관리운영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운영 조사에서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68.8%가 난방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19%는 전기, LPG 가스는 2.8%로 소수이었다. 연료비로 지출되는 도시가스와 LPG 가스비의 지역별 가격을 조사하였다(표 IV-4-3 참조).

도시가스비를 계절별로 보면, 동절기를 제외하고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다. 2015년 다른 달을 기준으로 강원 20.6원, 경남 20.4원으로 높은 편이고, 충북 19.3원, 울산 19.0원 순으로 낮다. 동절기의 경우, 지역별로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경우, 하절기와 기타 월 19.3원에서 동절기 19.5원으로, 대전은 19.9원에서 20.1원으로 약 0.2원 정도 계절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

취사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PG 프로판 가스는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금액이 1,800원으로 경기 1,674원에서 부산 1,966원까지 지역 차이를 보인다.

#### 〈표 IV-4-3〉 지역별 도시가스·LPG 가격

단위: 원/mi. 원/l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도시가스 일반용

동절기 19.5 20.0 20.0 19.7 19.9 20.1 19.2 19.7 20.8 19.5 20.0 19.7 20.0 19.8 20.6 - 19.8 하절기 19.3 19.8 19.5 19.7 19.9 19.0 19.5 20.6 19.3 19.8 19.5 19.8 19.6 20.4 - 19.6 기타월 19.3 19.8 19.5 19.5 19.7 19.9 19.0 19.6 20.6 19.3 19.8 19.5 19.8 19.6 20.4 - 19.7

LPG

프로판 1,7731,9661,8571,7371,7511,7211,8881,6741,7781,7061,7001,7811,7511,8291,7981,8391,692 부 탄 1,9712,2242,0571,8992,1011,9122,1901,8851,9692,0241,9371,9982,1112,0922,0601,9881,972

주: 1) 도시가스 요금은 부가세 별도, 2015.3.1.기준임. LPG요금은2015.3. 1주.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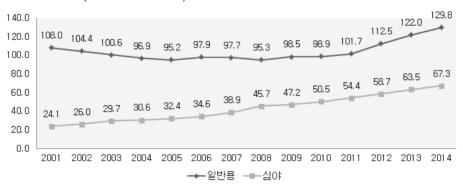
2) 계절구분: (일반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하절기 : 6~9월(4개월)/기타월 : 4~5 월, 10~11월(4개월)

자료: http://www.citygas.or.kr/gas\_intro/charge02.jsp(2015. 5. 29 인출). https://www.opinet.co.kr/user/main/mainView.do(2015. 5. 29 인출).

< IV-4-4>는 전력 판매 단가를 조사한 것이다. 전력 단가는 2014년 기준 시간-킬로와트당 129.8원이다. 2001년 시간-킬로와트당 108원에서 조금씩 하락하여 2008년 965.3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서 물가상승률 인상

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어린이집이 주로 사용하는 심야전기 전력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2001년 24.1원을 시작으로 2005년 32.4원, 2010년 50.5원, 2014년 67.3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IV-4-1 참조).



주: 부가세 포함 가격임. 자료: 한국전력(2015 9). 한국전력통계84호 판매분야.

[그림 IV-4-1] 연도별 전력 판매단가

농어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내 등유의 판매단가는 2015년 3월 기준 1L당 1,039원으로 2005년 1L당 870원에서 2008년 1L당 1,23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듬해 잠시 1천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여 2012년 1,394원까지 올랐다(한국석유공사, 각년도). 17개 시도별 실내 등유의 가격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실내등유 가격이 2015년 3월 기준 1L당 982원이나 서울은 1L당 1,227원으로 높은 반면 강원은 1L당 894원으로 지역 차를 보였다.

〈표 IV-4-4〉시도별 석유제품(실내등유) 가격 현황

단위: 원/ℓ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982 1,227 1,064 1,019 1,108 1,090 1,037 1,055 1,037 894 939 917 946 919 938 964 878 942 주: 부가세 포함 가격임.

자료: 한국석유공사(2015). 주간 국내석유동향(2015. 3.1주 기준)

# 다. 관리운영비 산출

관리운영비 산출은 2014년 4월 기준 재무회계 지출 상의 아동 1인당 비용을

환산한 금액을 관리운영비 산출 시 적용하였다. 17개 시도 간에 차이가 크고, 일관성을 보이지 않아 전체 평균 값을 활용하여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였다. 어린 이집 규모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관리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20인이 77,230원으로 가장 많고, 이후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감소하여 50인이 56,740원, 77인 50,670원, 97인 46,200원, 124인 40,680원, 142인 41,080원, 169인 40,880원이다.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여비	3,660	2,260	1,490	1,640	1,220	1,340	750
수용비 및 수수료	42,080	32,330	31,710	29,140	25,640	28,350	24,980
연료비	9,500	6,920	6,460	6,350	5,980	4,910	4,980
기관운영비	4,810	5,800	3,600	2,950	2,060	1,340	5,160
직책급	14,890	8,040	6,210	5,150	4,960	4,300	4,130
회의비	2,280	1,390	1,200	970	820	840	880
소계	<i>7</i> 7,230	56,740	50,670	46,200	40,680	41,080	40,880

〈표 IV-4-5〉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2014년 4월 기준 통학차량 운영률은 56.8%로, 차량비는 관리운영비 산출에서 제외함.

# 5. 시설비

# 가. 관련 제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상 시설비는 시설 신·중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이고,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밖에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구성된다. 시설비는 서문희 외(2013)와 동일하게 건축비와놀이터 설치비, 시설유지관리비로 제한하여 산출하였다.

# 1) 건축비

서문희 외(2013a, 2013b, 2014)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sup>10)</sup>를 기준으로 건축비

주: 워 단위는 절삭함.

<sup>10)</sup> 건축비 지원 어린이집 규모는 개소당 330m'기준이며 최대 396m'까지 지원 가능함. 지원단가는 2015년 1,201,300원/m'으로 국고 최대 지원금은 2억 3,785만원임.

를 산출하거나 김상호(201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축비를 산출한 바 있다. 전자는 아동 1인당 보육면적 4.29㎡를 기준으로 건축비 ㎡당 지원 단가를 적용하고,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하여 산출할 경우 1인당 건축비는 14,315원이다. 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 건축비가 정원 1인당 최소 1,037.7만원에서 최대 3,097.9만원에 이르며, 평균 공사비는 2,112만원이 된다. 이를 기초로 아동 1인당 건축비를 산출하면, 최소 월 28,825원에서 최대 월 86,052원이 된다. 서문희 외(2014)가 설명한 바와 같이, 김상호(2013)가 분석한 사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원하는 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사업으로 중앙과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보다 소요 비용이 많다.

#### 2) 놀이터 설치비

놀이터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고정식) 1종 이상을 포함한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원 규모별 놀이터 면적은 <표 IV-5-1>와 같다.

정 구분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 설치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m²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1 = .1 -1 11 //	2015) - 2 0 - 2 4 2 4 2 3	

〈표 IV-5-1〉 놀이터 면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놀이터 설치비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정원의 45% 기준으로 1인당 3.5㎡를 적용하면 놀이터 면적이 50평 정도 된다. 놀이터 바닥공사와 대근육활동 놀이기 구 1종을 포함한 3종 이상을 설치하면 평균 4천 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놀이기 구 내구연한 10년을 반영하여 아동 1인당 비용을 산출하면 월 3,300원이다.

# 3) 시설장비비

시설장비비는 재무회계 상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산취득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2014년 4

월 기준 자산취득비는 아동 1인당 평균 6,700원이다. <표 IV-5-2>, <부표 II -2-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규모 및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역별 지출 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평균 값을 시설장비비 산출에 적용하였다.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전체
시설장비비	20,519	17,054	16,979	15,205	16,786	34,296	29,720	18,67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700

〈표 IV-5-2〉 시도별 아동 1인당 자산취득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시설장비비 15,776 18,619 36,574 15,392 56,599 16,314 28,983 26,559 11,941

## 4) 시설유지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는 재무회계 상의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에 해당한다. 서문희 외(2013)는 어린이집 규모를 20인, 50인, 76인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건물 내부(바닥, 천장, 벽)와 건물 외부(외벽)와 전기급수난방설비의 연간 유지관리비<sup>11)</sup>를 산정하고, 이를 다시 정원 수로 나누어 아동 1인당 시설관리유지비를 산정하였다. 20인은 아동 1인당 2,189원, 50인 4,148원, 77인 이상 3,746원이다. 서문희 외(2013)의 연구결과에 물가상승률<sup>12)</sup>을 반영하면, 20인은 아동 1인당 2,230원, 50인 4,230원, 77인 이상 3,820원이 된다.

# 나. 시설비 산출

앞서 설명한 건축비와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를 모두 합산하면, 20인은 23,230원, 50인 28,530원, 77인 이상은 28,120원이 된다. 20인 어린이집은 놀이터설치 의무시설이 아니므로 놀이터 설치비를 제외하고 시설비산출하였다.

<sup>11)</sup> 서문희 외(2013)는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시설유지관리비를 산출함.

<sup>12)</sup> 물가상승률은 2014년 1.3%, 2015년 0.7%임(통계청http://www.index.go.kr 2016년 2월 24일 인출).

〈표 IV-5-3〉 아동 1인당 시설비

							<u>단위: 원</u>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건축비	14,300	14,300	14,300	14,300	14,300	14,300	14,300
놀이터 설치비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시설장비비	6,700	6,700	6,700	6,700	6,700	6,700	6,700
시설유지관리비	2,230	4,230	3,820	3,820	3,820	3,820	3,820
소계	23,230	28,530	28,120	28,120	28,120	28,120	28,120

주. 원 단위는 절삭함.

# V. 보육비용과 정책 과제

제5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항목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령 및 규모 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2개 안으로 제시하고, 1안은 기본으로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한 비용을 반영한 17개 시도의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 1. 아동 1인당 보육비용

## 가. 1안

1안은 앞서 인건비에서 산출된 1안의 연령 및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인건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의 전체 평균 호봉인 원장 11호봉, 교사 5호봉을 적용하고<sup>13)</sup>, 취사부는 정액 100만원을 적용하였다. 또한 영양사와 간호사는 5개 시설에 공동으로 배치하며, 3세 이상 반이 있는 경우 누리과정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였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120만원을 적용하였다.

〈표 V-1-1〉 O세 1인당 월 부육비용: 1안	⟨ ₩ \	$\sqrt{-1}$	-1	이세	1인당	웍	부윤비용:	1 아
-----------------------------	-------	-------------	----	----	-----	---	-------	-----

							<u>단위: 원</u>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750,900	838,000	819,600	818,300	816,100	808,300	806,500
급간식비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교재교구비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관리운영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23,200	28,5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923,470	995,370	970,580	964,840	957,100	949,700	947,670

급간식비는 17개 시도 평균 급간식비를 적용하고, 서문희 외(2013)와 동일하게 월 22일로 설정하였다. 교재교구비는 앞에서 산출된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를 적용하고, 관리운영비는 17개 시도의 재무회계자료를 분석한 전체 평균 결과

<sup>13)</sup> 원장과 교사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는 2015년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기준을 따름.

값을 사용하였으며, 시설비 또한 앞서 산출한 아동 1인당 비용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은 0세아 20인이 923,470원이고 50인이 99만원을 초과하며, 이후 감소하여 169인은 947,670원 정도가 된다. 만1세는 20인 62만원에서 50인 695,800원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다시감소하여 169인은 64만원 정도가 된다. 만2세는 20인 485,660원, 50인 555,490원이며 이후 감소하여 169인 이상은 507,790원이다. 만3세는 50인 415,300원이고, 77인 이상은 4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169인 이상은 368,800원이 된다. 만4세이상은 50인이 370,600원이고, 77인과 97인이 34만원 대이며, 169인 이상은 322,900원이다.

〈표 V-1-2〉 1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450,300	535,900	517,500	516,300	515,200	506,200	504,400
급간식비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관리운영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23,200	28,5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625,400	695,800	671,010	665,270	658,730	650,130	648,100

〈표 V-1-3〉 2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321,600	406,600	388,100	387,000	384,700	376,900	375,100
급간식비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관리운영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23,200	28,5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485,660	555,490	530,600	524,960	517,220	509,820	507,790

〈표 V-1-4〉 3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

							<u> 단위: 원</u>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242,500	224,100	222,900	221,800	214,000	212,200
급간식비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관리운영비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28,5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415,300	390,510	384,770	378,230	370,830	368,800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203,300	184,900	183,700	181,400	173,600	171,800
급간식비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관리운영비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28,5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70,600	345,809	340,071	332,333	324,929	322,900

〈표 V-1-5〉 4세 이상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

							/	
/ TT \	/_1_6\	시도 1이	당 보육비용	하모벼	ᄀᄸᆸ	ના ⊇∙ -	101/7701	コノヘト
\	v – i –to /	V( <del>S</del> 12)	2 74112		73 L	л ⇔.	1711/17	ノーエー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인건비	84.4	<i>7</i> 7.1	73.1	57.4	53.5
급간식비	2.8	5.0	6.4	12.3	13.9
교재교구비	4.7	6.1	5.7	10.1	9.8
관리운영비	5.2	7.6	9.6	13.0	14.7
시설비	2.9	4.2	5.3	7.2	8.1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나. 2안

2안도 1안과 마찬가지로 앞서 인건비에서 산출된 2안의 연령 및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인건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의 국공립 평균 호봉인 원장 15호봉과 교사 6호봉을 적용하였다<sup>14</sup>. 취사부와 영양사, 간호사는 각각 3호봉을 적용하였다. 특히 영양사와 간호사는 5개 시설이 공동으로 배치하였고, 3세 이상 반이 있는 경우 누리과정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였다. 인건비는 보육교사 1호봉을 적용하였다.

급간식비는 1안과 동일하게 17개 시도 평균 급간식비를 적용하였으나 아동 1

<sup>14) 1</sup>안과 동일하게 원장과 교사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는 2015년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기준을 따름.

인당 비용 산출 기준일은 월 25일로 하였다. 교재교구비는 1안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 산출한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를 적용하였다. 관리운영비는 17개 시도 재무회계자료를 분석한 전체 어린이집 평균 값을 사용하였고, 시설비 또한 앞서 산출한 아동 1인당 비용을 산출에 적용하였다.

<표 V-1-12>는 2안의 77인 기준 어린이집의 항목별 구성 비율을 제시한 것 이다. 0세 인건비 비율이 85.1%로 1안과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1안과 비교하여 연령별로 인건비 비율이 상승하였다. 3세 이상 유아는 급간식비, 관리 운영비, 시설비는 10%를 상회하나 교재교구비는 1안보다 낮은 9%대를 보인다.

⟨ ∏ \	√-1-7>	이세	1인당	월	부육비용:	261

							<u> 단위: 원</u>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796,700	903,800	884,100	886,400	883,100	873,200	872,700
급간식비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교재교구비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관리운영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소계	972,970	1,064,870	1,038,770	1,036,590	1,027,780	1,018,260	1,017,560

〈표 V-1-8〉 1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u> 단위: 원</u>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478,500	584,100	564,400	566,600	563,400	552,300	551,800
급간식비	38,300	38,300	38,300	38,300	38,300	38,300	38,300
교재교구비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관리운영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소계	658,200	748,600	722,500	720,220	711,510	700,790	700,090

〈표 V-1-9〉 2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u> 단위: 원</u>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341,600	446,500	426,800	429,100	425,800	414,700	415,400
급간식비	38,300	38,300	38,300	38,300	38,300	38,300	38,300
교재교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관리운영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77,200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소계	510,260	599,990	573,890	571,710	562,900	552,180	552,680

〈표 V-1-10〉 3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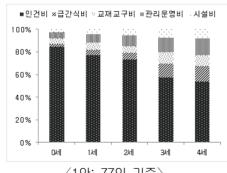
							<u>단위: 원</u>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271,900	252,200	254,400	252,300	241,200	240,800
급간식비		54,700	54,700	54,700	54,700	54,700	54,700
교재교구비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관리운영비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소계		451,300	425,200	422,920	415,310	404,590	403,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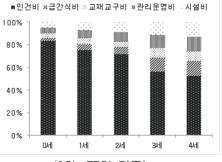
〈표 V-1-11〉 4세 이상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i>7</i> 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230,300	210,600	212,900	209,600	198,500	198,100
급간식비		54,700	54,700	54,700	54,700	54,700	54,700
교재교구비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관리운영비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시설비		56,700	50,700	46,200	40,700	41,100	40,900
소계		404,200	378,100	375,920	367,110	356,390	355,790

〈표 V-1-12〉 아동 1인당 보육비용 항목별 구성비율: 2안(77인 기준)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인건비	85.1	78.1	74.4	59.3	55.7
급간식비	2.9	5.3	6.7	12.9	14.5
교재교구비	4.4	5.7	5.2	9.3	9.0
관리운영비	4.9	7.0	8.8	11.9	13.4
시설비	4.9	7.0	8.8	11.9	13.4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안: 77인 기준〉 〈2안: 77인 기준〉

[그림 V-1-1] 아동 1인당 보육비용 항목별 구성 비율: 77인 기준

<표 V-1-12>는 앞서 살펴본 연령별 보육비용 1, 2안 중 50인과 77인을 비교 한 것이다. 50인과 77인 모두 2안이 1안보다 3~7만원 정도 많다.

〈표 V-1-12〉 1, 2안 비교: 50인, 77인	⟨ 표	V-1-	-12>	1.	2만	비교:	50인.	7791
-------------------------------	-----	------	------	----	----	-----	------	------

단위: 원

 구분	50인		<i>7</i> 7인		서문희 외(2013)	
干证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0세	995,370	1,064,870	970,580	1,038,770	879,650	978,627
1세	695,800	748,600	671,010	722,500	614,576	694,508
2세	555,490	599,990	530,600	573,890	488,365	559,640
3세	415,300	451,300	390,510	425,200	370,984	436,346
4세이상	370,600	404,200	345,810	378,100	331,888	394,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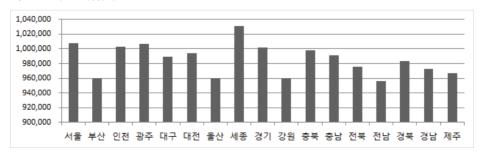
자료: 서문희 외(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외(2013)의 연구와 비교하면, 77인 기준으로 1안 0세는 10만원, 1세는 6만원, 2세는 5만원, 3세 2만원, 4세 이상 1만원 정도 높아졌고, 2안 0~2세는 2만원 정도 인상된 반면에 3세와 4세 이상은 1만원 정도 낮아졌다.

# 2.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1안 77인의 보육비용에 앞서 제시한 지방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비를 적용하였다.

먼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6개 지역의 연령 및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보면,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지역은 보육교사 1인당 10만원 내외의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1안보다 보육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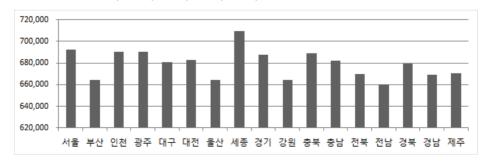
[그림 V-2-1]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0세아(77인)

0세아는 서울이 세종이 1,031,300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등은 10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96~99만원 선이다. 전남이 95만 원대로 가장 낮다.

						단위: 운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867,900	819,600	861,300	861,300	849,600	859,600
급간식비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교재교구비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1,007,600	960,100	1,002,600	1,006,400	988,900	994,5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819,600	884,600	864,600	819,600	852,900	854,850
급간식비	26,900	27,200	26,900	26,900	26,900	27,200
교재교구비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960,400	1,031,300	1,001,600	960,300	997,900	991,2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844,600	819,600	839,600	839,600	825,440	
급간식비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교재교구비	45,300	45,300	45,300	45,300	46,0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975,400	956,200	983,410	972,800	966,700	

〈표 V-2-1〉 0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1세아는, 세종이 709,500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67만원에서 69만원 사이에 분포한다. 부산,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66만원으로 가장 낮다.



[그림 V-2-2]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세아(77인)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546,500	517,500	542,500	542,500	535,500	541,500
급간식비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692,500	664,300	690,100	690,100	681,100	682,7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517,500	556,500	544,500	517,500	537,500	539,450
급간식비	33,700	34,000	33,700	33,700	33,700	34,000
교재교구비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664,600	709,500	687,800	664,500	688,800	682,1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532,500	517,500	529,500	529,500	523,340	
급간식비	33,700	33,700	34,11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41,000	41,000	41,000	41,000	41,7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표 V-2-2〉 1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2세아도 세종이 56만원 정도고 0,1세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52~53만원 선에 분포한다. 울산, 전남과 전북, 경남이 52만원대로 가장 낮다.

679,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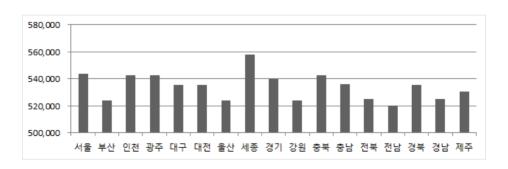
669,000

670,900

소계

669,600

660,400



[그림 V-2-3]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2세아(77인)

소계

524,900

520,000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408,800	388,100	406,000	406,000	401,000	405,200
급간식비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543,800	523,900	542,600	542,600	535,600	535,4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388,100	416,000	407,400	388,100	402,400	404,350
급간식비	33,700	34,000	33,700	33,700	33,700	34,000
교재교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524,200	558,000	539,700	524,100	542,700	536,0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398,800	388,100	396,700	396,700	393,940	
급간식비	33,700	33,700	34,11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7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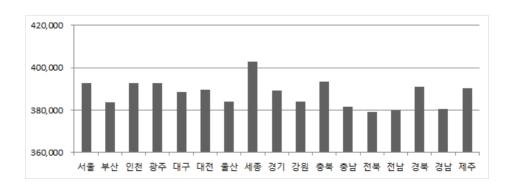
〈표 V-2-3〉 2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3세아는 세종만 4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37~39만원 대에 분포한다. 전남과 전북만 37만원 대이고, 경남, 울산, 경기, 강원, 충남, 부산, 대구, 대전은 38만원 대, 나머지 지역은 39만원 대이다.

535,810

525,200

53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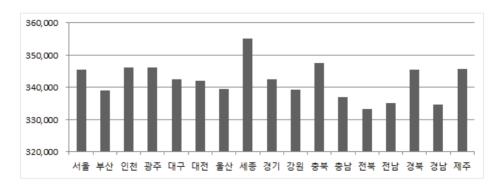


[그림 V-2-4]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3세아(77인)

						<u>단위: 원</u>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233,800	224,100	232,400	232,400	230,100	235,400
급간식비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92,700	383,800	392,900	392,900	388,600	389,5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224,100	237,100	233,100	224,100	229,400	226,050
급간식비	48,100	48,400	48,100	48,100	48,100	48,400
교재교구비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84,100	403,000	389,300	384,000	393,600	381,6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229,100	224,100	228,100	228,100	229,940	
급간식비	48,100	48,100	48,51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9,500	39,500	39,500	39,500	40,2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79,100	379,900	391,110	380,500	390,400	

〈표 V-2-4〉 3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4세 이상아도 세종이 35만원으로 가장 높다. 나머지 지역은 33~34만원 대로 앞서 살펴본 0~3세보다 시도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V-2-5]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4세아(77인)

						<u>단위: 원</u>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192,200	184,900	191,200	191,200	189,400	193,400
급간식비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45,600	339,100	346,200	346,200	342,400	342,0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184,900	194,700	191,700	184,900	188,900	186,850
급간식비	48,100	48,400	48,100	48,100	48,100	48,400
교재교구비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39,400	355,100	342,400	339,300	347,600	336,9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188,700	184,900	187,900	187,900	190,740	
급간식비	48,100	48,100	48,51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4,000	34,000	34,000	34,000	34,7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33,200	335,200	345,410	334,800	345,700	

〈표 V-2-5〉 4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 3. 정책 과제

지난 몇 년간 보육료 동결로 인하여 보육비용 산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의 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가 수 차례 추진되었다. 그간 성과로 2015년 0~2세 보육료가 3% 인상되었고(조선일보 2015년 3월 9일자 기사), 2016년에도 6%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2015년 12월 31일자 기사).

본 연구는 3차년도 연구로 그간 다양한 관점에서 보육비용을 산정하여 왔다. 1차 년도는 미래지향적으로 적정 수준으로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보육비용을 산정하였고(서문희 외, 2013), 2차 년도는 정부가 설립비용을 투자한 국공립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인이 자기자본이나타인 자본을 투자한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난다는 관점에서 설립유형별로 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서문희 외, 2014). 3차 년도 연구에서는 국고지원 외에 지방비지원 사업이 17개 시도별로 상이하고, 지역에 따라 물가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성별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지역특성별 차이는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자료와 재무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육비용 산출 시 고려해야 사항과 과제, 정책 제안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지역 간 보육서비스의 질 차이

시도 간 시도특수보육시책 지원 차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와 관련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특수보육 시책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15년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6조 규모로, 이중 시도와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국고대비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5). 보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다.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재정 여건이나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시책 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가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이나 세부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간의 유사 중복 문제가 심각하여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들 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급간식비,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들은 17개 시도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단가 또한 통일시킨다. 이 외의 지원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본 연구의 재무회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량비나 연료비 등이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역 차가 발생하였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특례 지역 어린이집에는 취사부와 차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2013년부터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차량운영비로

월 60만원 정도의 주유비가 소요되고, 차량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월 20만원 정도이다. 정부 지원과 운영비 간의 차액은 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연료비 또한 어린이집 조사에서 대도시는 1월 기준 110만원 정도인 반면, 중소도시는 98.9만원, 읍면지역은 117.7만원으로 지역 차이를 보였다. 난방 연료로 도시지역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나, 읍면지역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해도 지역에 난방비나 제설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나. 물가 차이 반영

첫째, 보육비용 산정 시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가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대형 마트나 전문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국 물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서문희 외, 2014 재인용).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지역 간에 차이가 있고, 급간식비식재료도 지역별 물가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조사에서 교재교구 전문업체가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동일하다는 의견은 28.9% 정도이고, 절반이 넘는 52.4%는 일부 제품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고, 16.0%는 대부분의 제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 차이를 반영하여보육비용 산출을 세분화한다.

둘째, 물가 인상을 반영한 중앙 정부차원의 보육비용 산출을 정례화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로 매년 물가가 오르는 실정이다. 세부 조사항목의 물가 인상률을 보면, 더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축수산물의 경우, 2013년 - 0.6, 2014년 - 2.7이었으나 2015년 6월 4.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어린이집 재정 지출에서 인건비 60~70%를 제외하면 나머지 재정 지출의 대부분은 물품이나 식재료 구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물가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 차원의 보육비용 산출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2013년에 실시되었으나, 이후 연구는 아직 계획된 바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보육비용을 산출하도록 하다.

# 4. 맺는말

본 연구는 17개 시도에 따른 차이를 '지역 특성'으로 간주하고, 국고지원 외에 지방비 지원 사업이 17개 시도별로 상이하고 지역에 따라 물가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자료와 재무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17개 시도별보육비용 산출하였다.

먼저,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적용할 보육비용은 2개 안으로 제시하였다. 1안과 2안은 인건비 산출기준을 달리 적용하였고, 급간식비는 전국 평균 단가를 적용하되, 비용 산정일은 차등을 두었다. 교재교구비, 시설비는 동일 단가를 적용하였다. 17개 시도별 보육비용은 1안 77인 기준 보육비용에 시도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수당,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 연령별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지난 수년간 보육비용 산출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고, 2015년 0~2세 보육료가 3% 인상되었고, 2016년에는 6% 인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육비용이 현장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다. 육아 정책연구소는 2013년에는 보육의 질 관점, 2014년에는 어린이집 설치주체에 따라 초기 설치 투자비용이 상이하다는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2015년에는 17개 시도별로 지방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특수보육시책이 다르고 물가가 상이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비용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17개 시도가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보육비용이 지원되는 데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7개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 김상호(20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연구. 도시건축연구소
- 김우영(2012).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 노동 정책연구. 12(1).pp 1~28.
- 김주영·조동훈·이번송·조준모·이인재(2009). 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2009-4 정책연구보고서.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형순·김호철(2006). CAPM을 이용한 국내 토지시장의 지역별 지가변동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2) pp121~137.
-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박기백·김현숙 외(2005). 표준교육, 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 방경식·장희순(2004). 부동학개론 2판.
- 변용찬·임유경(2002). 표준보육단가 평가와 단가 산출. 보건사회연구원.
- 법제처(2015).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2011).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
- 보건복지부(2013). 시도특수보육시책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공고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사회보장정보원(2015). 어린이집 운영자료.

- 삼성복지재단(2000). 서울특별시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산출 및 재정지원제 도에 관한 제언.
- 서문희·양미선·박진아·유영준·이영미·유옥수·장숭구·이세원·이혜민(2013). 표준 보육비용 산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동하(2014).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보육비용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 정책연구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015).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침서, 식 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 여성가족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 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임양미·이진경(2012).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임양미(2010). 경기도 민간·가정시설 보육료 산정 연구 만 3~5세아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워.
- 임양미(2011). 2012년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 연구.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
- 통계청(2015). 2015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
- 통계청92015). 201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
- 한국물가협회(2015). 지역별생활물가지표.
- 한국석유공사(2015). 주간 국내석유동향(2015. 3.1주 기준)
- 한국전력(2015. 9). 한국전력통계 84호\_판매분야.
- 허식(2007).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산

업경제연구. 20(1). pp 1-16.

허식·이성원(2008).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 감정 평가연구. 18(2).pp125~144.

SBS 뉴스.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업 예고-맞벌이 가정 비상"(2012년 2월 27일).
EBS 뉴스. "가정어린이집 집단휴가 첫날-갈등 불씨 여전"(2014년 12월 6일).
조선일보. "보육료 3%인상" (2015년 3월 9일).
경향신문. "2016년 보육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12월 31일).

#### <홈페이지>

http://kostat.go.kr(2015. 5. 29 인출)

http://www.citygas.or.kr/gas\_intro/charge02.jsp(2015. 5. 29 인출)

https://www.opinet.co.kr/user/main/mainView.do(2015. 5. 29 인출)

#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Childcare Expenses b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2015

Mi-sun, Yang Won-soon, Park Dong-ha,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tems that are additionally supported by cities and provinces as a special childcare policy other than the support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stimate childcare costs that incur per child by setting up a calculation standard for childcare expenses by cities and provinces based on the above reviewed items.

Items supported as a special childcare policy project by cities and provinces, and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re as follows. First, most cities and provinces support the cost for improving the treatment and labor conditions for childcare teachers and staffs but the amount largely differed by cities and provinces which ranged from 20,000 KRW to 200,000 KRW per month. Other than this, cities and provinces provided support on special allowances, transportation and meal allowances, overtime pay, holiday allowances, allowance for head teachers, other HR expenses for labor cost and etc. Second, Jeju was the only city that provided support for expenses on textbooks and materials. Third, cities and provinces also provided support on cooling/heating expenses, expenses for the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penses on the safety insurance and spending on books as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s.

Childcare expenses incurred per child by region was calculated by reflecting each city and province's budget for the special childcare policy based on childcare expenses incurred per child in nationwide childcare centers that accommodate average 77 persons. The amount by cities and provinces ranged between 957,200 to 1,031,300 KRW for 0 year-olds, 664,500 to 709,500 KRW for 1 year-olds, 520,000 to 558,000 KRW for 2 year-olds,

379,100 to 403,000 KRW for 3 year-olds, 333,200 to 355,100 KRW for 4 year-olds and above. Out of 17 cities and provinces, Sejong City's public expenditure on childcare per child by age was the highest.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Sejong City provided more support on labor costs and meals and snack costs for childcare staffs compared to other regions.

Each city and province develops their own special policy project and accordingly supports child care centers by taking into account their financial condition or characteristics of their community, but supported items or the amount largely differed by regio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mmon support for items such as the cost for improving the treatment and labor conditions for childcare staffs or unify similar supporting items, develop guidelines to reduce differences in supporting amount by cities and provinces and adjust the childcare expense support per child to a similar level.

# 부 록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연령별 교재교구 목록 및 단가(2015년 기준)

부록 3. 조사표

부록 1. 부록 표

〈부표 II-2-1〉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u>위: %(개소</u> )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서울	52.9	16.6	18.3	8.1	0.4	0.2	3.4	(2,194)
16~20인	52.1	12.7	24.4	7.2	0.3	0.0	3.3	(1,507)
46~54인	53.1	25.5	7.3	9.2	0.5	0.7	3.7	(270)
73~81인	54.9	27.0	3.7	10.4	0.9	0.3	2.7	(238)
93~101인	57.2	23.6	3.8	11.1	0.8	1.5	2.0	(99)
120~128인	57.7	18.9	4.3	10.9	0.3	0.0	7.8	(27)
138~146인	54.3	22.9	3.3	10.6	0.0	0.0	8.9	( 17)
165인 이상	53.6	25.5	1.6	10.7	0.3	1.0	7.3	( 36)
F	$4.9^{***}$	49.8***	355.4***	16.9***	1.4	3.9**	3.9**	
부산	62.6	7.8	22.0	4.0	0.0	0.0	3.5	( 567)
16~20인	62.0	3.8	28.5	2.1	0.1	0.0	3.5	(377)
46~54인	63.1	14.2	13.2	6.7	0.0	0.0	2.7	(83)
73~81인	60.3	21.9	5.5	9.2	0.0	0.0	3.0	(40)
93~101인	65.4	15.3	6.9	7.0	0.1	0.0	5.3	( 35)
120~128인	69.5	9.9	6.7	9.3	0.0	0.0	4.5	(16)
138~146인	-	-	-	-	-	-	-	-
165인 이상	67.3	12.9	4.8	10.5	0.0	0.0	4.4	( 16)
F	2.9*	18.6***	111.8***	37.1***	0.1	-	0.5	
인천	63.3	5.2	23.7	4.1	0.1	0.2	3.4	(731)
16~20인	62.6	3.0	29.2	1.9	0.0	0.0	3.2	(536)
46~54인	63.3	13.6	10.7	7.8	0.2	0.9	3.6	(82)
73~81인	62.4	13.6	8.1	8.8	0.7	0.0	6.5	( 36)
93~101인	65.9	9.7	6.9	15.0	0.0	0.0	2.5	( 37)
120~128인	67.5	12.5	5.6	10.7	0.0	0.0	3.7	( 14)
138~146인	67.7	0.9	9.7	16.1	0.0	0.0	5.6	( 5)
165인 이상	73.1	1.4	6.2	11.5	1.0	4.4	2.4	(21)
F	4.0**	13.4***	141.4***	78.2***	2.7*	4.9***	1.0	
광주	63.7	4.3	24.7	3.2	0.0	0.0	4.1	(277)
16~20인	62.1	1.1	31.6	0.4	0.0	0.0	4.7	(191)
46~54인	62.5	16.1	13.6	4.9	0.0	0.0	2.8	( 18)
73~81인	63.6	10.4	7.9	12.9	0.0	0.0	5.1	( 14)
93~101인	65.8	13.2	8.3	10.6	0.0	0.0	2.1	( 17)
120~128인	64.0	17.5	7.1	9.9	0.0	0.0	1.5	( 7)
138~146인	72.8	8.6	7.8	10.4	0.0	0.0	0.4	( 7)
165인 이상	72.9	5.4	9.2	9.9	0.0	0.0	2.5	( 23)
F	4.9***	12.5***	87.5***	70.5***	-	-	0.8	

(부표 Ⅱ-2-1 계속)

(宁亞 11-2-1	세녹)							
<del></del>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대구	63.4	7.7	20.9	4.6	0.1	0.0	3.3	(258)
16~20인	63.4	2.8	28.8	1.2	0.1	0.0	3.7	(154)
46~54인	63.2	12.9	11.7	8.4	0.4	0.0	3.4	( 37)
73~81인	63.6	14.8	10.1	10.2	0.0	0.0	1.3	(21)
93~101인	63.0	20.2	6.6	8.4	0.0	0.0	1.7	( 18)
120~128인	71.6	10.8	9.1	7.8	0.0	0.0	0.8	(8)
138~146인	63.2	12.0	5.6	16.5	0.0	0.0	2.7	( 9)
165인 이상	59.0	18.6	5.3	10.7	0.0	0.0	6.4	(11)
F	0.9	9.8***	55.1***	19.8***	0.5	-	0.7	
대전	56.5	12.0	21.9	4.0	0.0	0.1	5.5	(458)
16~20인	56.1	10.9	25.1	2.3	0.0	0.0	5.6	(381)
46~54인	54.0	22.5	6.8	12.6	0.0	2.0	2.1	( 33)
73~81인	58.9	14.4	7.9	12.0	0.0	0.0	6.8	(16)
93~101인	60.8	15.1	4.1	13.2	0.0	0.0	6.8	(11)
120~128인	68.7	13.7	4.1	12.6	0.0	0.0	0.9	(10)
138~146인	-	-	-	-	-	-	-	` -
165인 이상	59.4	8.2	1.6	11.5	0.0	0.3	19.0	(7)
F	4.3**	9.5***	87.6***	57.8***	-	2.6*	3.1**	, ,
울산	62.8	4.7	22.9	5.0	0.3	0.2	4.1	( 244)
16~20인	62.4	2.1	28.6	2.5	0.3	0.0	4.2	(170)
46~54인	61.5	14.8	13.0	6.6	0.0	0.0	4.1	( 33)
73~81인	61.8	9.2	8.2	14.2	0.8	2.7	3.1	(18)
93~101인	69.5	6.6	7.2	12.8	0.0	0.0	4.0	(17)
120~128인	64.5	2.7	4.6	26.4	0.0	0.0	1.8	(3)
138~146인	81.2	0.2	0.0	0.0	0.0	0.0	18.6	(1)
165인 이상	62.8	14.2	1.4	11.3	0.0	0.0	10.3	( 2)
F	1.7	6.6***	51.3***	21.1***	0.7	2.2*	0.9	
세종	60.1	8.2	23.6	5.6	0.0	0.0	2.6	( 31)
16~20인	59.7	4.7	30.1	1.8	0.0	0.0	3.7	(20)
46~54인	62.0	4.0	28.5	4.1	0.0	0.0	1.4	( 2)
73~81인	79.3	0.0	9.8	10.9	0.0	0.0	0.0	(1)
93~101인	64.2	25.2	0.0	9.2	0.0	0.0	1.4	(3)
120~128인	57.0	24.6	1.4	16.9	0.0	0.0	0.0	(3)
138~146인	64.7	1.1	4.8	29.4	0.0	0.0	0.0	(1)
165인 이상	38.4	0.0	52.5	9.1	0.0	0.0	0.0	(1)
F	2.2	6.1**	10.9***	10.9***	-	-	0.3	, ,
경기	62.8	4.6	24.0	3.7	0.0	0.2	4.7	(3,573)
16~20인	61.9	2.8	28.6	1.9	0.0	0.0	4.8	(2,829)
46~54인	65.3	11.2	9.3	9.2	0.1	1.4	3.5	(280)
73~81인	66.0	14.7	5.3	10.0	0.1	0.4	3.5	( 176)
93~101인	64.5	14.5	4.5	12.4	0.0	0.0	4.1	(126)
120~128인	70.9	5.0	4.8	11.0	0.0	0.0	8.3	( 53)
138~146인		11.7	4.0	13.0	0.0	0.0	2.3	( 32)
	68.9	11./	4.0	10.0	0.0	0.0		( ~-/
165인 이상	68.9 71.1	4.9	3.8	11.9 356.2***	0.0	2.4	5.9	( 77)

(부표 Ⅱ-2-1 계속)

(Tu II-2-1	,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강원	60.8	6.6	22.7	6.4	0.1	0.0	3.4	( 290)
16~20인	61.3	1.6	29.5	4.2	0.1	0.0	3.3	(211)
46~54인	63.1	12.9	7.7	13.3	0.0	0.0	3.0	( 21)
73~81인	54.6	27.2	2.9	10.9	0.0	0.0	4.5	( 32)
93~101인	64.2	17.2	3.9	13.0	0.0	0.0	1.7	(14)
120~128인	66.0	17.4	1.4	13.0	0.0	0.0	2.2	( 5)
138~146인	49.8	19.1	1.6	11.3	7.0	0.0	11.2	(4)
165인 이상	67.2	9.5	6.9	16.4	0.0	0.0	0.0	( 3)
F	3.0**	32.9***	96.7***	13.8***	12.7***	-	0.8	( 5)
<u>-</u> 충북	61.2	5.9	22.5	6.9	0.1	0.0	3.4	( 332)
16~20인	61.7	2.7	28.8	3.9	0.1	0.0	2.8	(242)
16 20년 46~54인	58.1	14.3	8.5	13.9	0.0	0.0	5.3	( 19)
73~81인	54.9	20.6	4.0	14.0	0.0	0.0	6.3	(27)
73~81년 93~101인	58.4	10.2	7.0	17.1	0.0	0.0	7.3	( 17)
93~101 년 120~128인	63.8	18.5	1.9	13.9	0.0	0.0	2.0	
120~126년 138~146인	64.0	11.8	5.1	13.9 17.5	0.0	0.0	1.5	( 7)
156~146원 165인 이상		7.5	5.1 5.7					(5)
	70.0	7.5 17.6***	5./ 103.2***	14.2	0.0	0.0	2.6	( 15)
F	4.2***	17.6***	102.3***	29.0***	0.1	1.9	1.7	/ 100\
충남	60.5	8.0	22.8	5.0	0.0	0.4	3.3	(490)
16~20인	59.8	6.6	27.8	2.4	0.0	0.2	3.3	( 382)
46~54인	59.2	15.6	6.9	13.4	0.0	2.7	2.1	( 34)
73~81인	60.0	16.1	4.7	12.7	0.0	1.6	5.0	( 32)
93~101인	69.0	11.4	2.9	14.0	0.0	0.0	2.7	( 17)
120~128인	61.5	11.2	4.9	21.6	0.0	0.0	0.8	( 5)
138~146인	60.6	8.8	7.7	18.3	0.0	0.0	4.5	( 5)
165인 이상	73.1 6.2***	1.8	6.1	13.9	0.0	0.0	5.0	( 15)
F	6.2	9.5***	136.3***	97.0***	-	2.1	0.6	
전북	59.2	8.0	22.6	3.8	0.2	0.0	6.2	( 320)
16~20인	59.0	3.2	28.5	1.7	0.1	0.0	7.6	(235)
46~54인	51.3	32.2	6.9	5.2	0.1	0.0	4.4	( 20)
73~81인	61.4	21.6	6.4	8.9	0.0	0.0	1.7	( 33)
93~101인	62.8	14.6	6.1	13.4	1.8	0.0	1.3	(23)
120~128인	48.1	11.6	3.4	15.5	0.0	0.0	21.4	( 2)
138~146인	59.8	30.8	0.0	8.9	0.0	0.0	0.5	( 3)
165인 이상	78.4	0.6	8.6	12.4	0.0	0.0	0.0	(4)
F	3.9**	29.5***	$64.7^{***}$	26.7***	1.5	-	3.2**	
전남	61.0	9.6	20.3	4.9	0.0	0.0	4.2	( 269)
16~20인	62.2	2.4	29.1	1.6	0.0	0.0	4.8	(171)
46~54인	54.8	28.0	7.0	9.4	0.0	0.0	0.8	( 24)
73~81인	54.6	29.2	2.6	8.0	0.0	0.0	5.6	( 24)
93~101인	62.4	19.8	5.0	11.8	0.0	0.0	0.9	( 17)
120~128인	63.3	16.5	4.6	11.6	0.0	0.0	3.9	(12)
138~146인	57.6	29.9	0.0	7.2	0.0	0.0	5.3	(3)
165인 이상	64.5	9.1	7.2	15.4	0.0	0.0	3.9	(18)
F	3.2**	29.9***	93.2***	43.0***	-	-	1.2	( )
	<b>-</b>		<del>-</del>					

(부표 Ⅱ-2-1 계속)

`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경북	59.8	6.1	22.2	7.1	0.1	0.4	4.3	( 371)
16~20인	60.5	2.4	27.5	4.9	0.0	0.0	4.6	( 272)
46~54인	55.3	21.5	8.4	10.8	0.0	0.0	4.0	(40)
73~81인	52.8	20.2	5.4	14.6	1.6	2.8	2.6	( 27)
93~101인	64.8	9.4	9.3	13.9	0.0	0.0	2.6	(19)
120~128인	82.0	1.4	6.1	10.6	0.0	0.0	0.0	( 4)
138~146인	57.6	0.0	7.1	35.3	0.0	0.0	0.0	( 3)
165인 이상	61.6	0.3	7.1	12.3	0.0	9.3	9.5	( 6)
F	5.8***	19.1***	61.9***	33.0***	2.1	5.2***	1.0	, ,
경남	63.2	5.4	22.9	4.5	0.0	0.1	3.8	(790)
16~20인	62.9	2.3	28.2	2.5	0.0	0.1	4.0	(600)
46~54인	61.8	17.1	8.9	9.0	0.0	0.0	3.2	( 56)
73~81인	65.0	15.1	5.5	10.6	0.0	0.0	3.9	(53)
93~101인	62.9	17.4	4.7	12.8	0.0	0.0	2.2	(44)
120~128인	67.2	8.2	4.6	12.8	1.0	0.0	6.2	(10)
138~146인	63.1	16.1	4.1	12.3	0.3	0.0	4.2	(12)
165인 이상	73.0	4.0	5.8	12.2	0.0	3.7	1.3	(15)
F	2.7*	35.7***	171.8***	66.1***	2.9**	$4.4^{***}$	0.6	, ,
제주	57.4	10.5	18.6	9.5	0.0	0.0	3.9	( 127)
16~20인	57.1	0.9	32.9	3.6	0.0	0.0	5.5	(60)
46~54인	56.7	15.2	10.9	15.1	0.0	0.0	2.1	(15)
73~81인	59.9	15.9	5.9	18.1	0.0	0.0	0.3	(12)
93~101인	56.8	24.4	3.7	14.3	0.0	0.0	0.8	( 21)
120~128인	58.7	6.2	6.8	18.9	0.0	0.0	9.6	(6)
138~146인	52.6	30.1	0.6	10.4	0.0	0.0	6.3	( 5)
165인 이상	61.6	20.6	3.9	10.0	0.0	0.0	3.9	( 8)
F	0.7	11.8***	114.5***	11.2***	-	-	1.8	
*** 001								

\*\*\* p < .001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4년 4월말 기준).

〈부표 II-2-2〉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세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Тш	11 2 2	/ //1-	- <del>&gt;</del> 0		ЛТР	/II 🗀	<u>-</u> т. ,	14 2-	топ	十口
									단우	l: %(개소)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활 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서울	2.1	5.1	48.7	15.7	17.3	7.4	0.4	0.2	3.2	(2,194)
16~20인	1.5	2.8	49.7	12.3	23.3	6.9	0.3	0.0	3.1	(1,507)
46~54인	3.1	9.5	45.7	23.1	6.2	7.9	0.5	0.7	3.3	(270)
73~81인	3.2	9.9	47.1	24.5	3.0	8.9	0.9	0.3	2.2	(238)
93~101인	3.4	11.6	47.7	21.3	3.0	9.2	0.7	1.5	1.7	(99)
120~128인	3.7	11.0	48.3	17.0	3.6	9.1	0.3	0.0	7.2	(27)
138~146인	3.3	10.3	46.2	20.5	2.5	8.9	0.0	0.0	8.4	(17)
165인 이상	2.9	9.5	46.0	23.3	1.2	9.1	0.2	0.9	6.8	(36)
F	37.4***	167.0***	8.2***	38.6***	398.0***	6.8***	1.2	3.9**	$4.0^{**}$	, ,
부산	2.2	4.7	58.1	7.3	20.7	3.7	0.0	0.0	3.3	( 567)
16~20인	1.5	2.9	59.2	3.7	27.2	2.0	0.1	0.0	3.3	(377)
46~54인	3.2	8.4	55.3	13.2	11.4	6.0	0.0	0.0	2.4	(83)
73~81인	3.4	7.4	53.6	20.0	4.8	8.2	0.0	0.0	2.7	(40)
93~101인	4.5	8.6	56.4	13.7	5.9	6.1	0.1	0.0	4.7	( 35)
120~128인	4.1	9.6	59.5	9.0	5.6	8.0	0.0	0.0	4.1	(16)
138~146인	-	-	-	-	-	-	-	-	-	-
165인 이상	3.8	9.3	58.0	11.9	4.0	9.0	0.0	0.0	4.0	(16)
F	17.8***	62.6***	4.5***	16.6***	127.2***	31.0***	0.1	-	0.5	
인천	7.5	3.6	56.0	4.7	21.3	3.5	0.1	0.2	3.1	( 731)
16~20인	6.3	2.7	56.9	2.8	26.5	1.8	0.0	0.0	3.0	(536)
46~54인	9.9	5.4	52.9	12.4	8.9	6.5	0.2	0.9	3.0	(82)
73~81인	11.0	6.1	51.0	11.9	6.5	7.3	0.7	0.0	5.6	( 36)
93~101인	10.4	6.9	54.1	8.7	5.6	12.3	0.0	0.0	2.1	( 37)
120~128인	12.1	6.8	54.2	10.5	4.5	8.7	0.0	0.0	3.3	(14)
138~146인	12.0	7.4	54.3	0.7	7.9	13.1	0.0	0.0	4.6	( 5)
165인 이상	12.5	6.7	58.4	1.2	4.9	9.1	0.9	4.4	1.9	(21)
F	35.9***	70.6***	5.2***	12.2***	156.1***	64.7***	2.7*	4.9***	0.8	
광주	2.3	4.0	59.4	3.8	23.7	2.8	0.0	0.0	3.9	(277)
16~20인	1.0	1.7	60.5	1.1	30.7	0.4	0.0	0.0	4.6	(191)
46~54인	2.5	6.2	56.6	15.2	12.3	4.4	0.0	0.0	2.7	(18)
73~81인	5.8	9.1	53.9	9.0	6.7	10.8	0.0	0.0	4.5	( 14)
93~101인	3.7	8.2	58.0	11.6	7.4	9.2	0.0	0.0	2.1	(17)
120~128인	7.4	12.4	51.6	13.6	5.8	7.9	0.0	0.0	1.2	( 7)
138~146인	6.6	10.8	59.9	7.5	6.3	8.6	0.0	0.0	0.3	( 7)
165인 이상	6.8	11.0	59.9	4.5	7.6	8.1	0.0	0.0	2.1	(23)
F	43.7***	85.4***	$2.4^{*}$	12.0***	108.7***	65.5***	-	-	0.9	

(부표 Ⅱ-2-2 계속)

<u> </u>	., ,,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활 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대구	2.2	5.5	58.3	7.1	19.7	4.1	0.1	0.0	3.1	( 258)
16~20인	1.2	3.2	60.5	2.7	27.6	1.2	0.1	0.0	3.5	(154)
46~54인	3.0	7.4	55.9	12.3	10.3	7.7	0.4	0.0	3.0	( 37)
73~81인	2.9	7.5	56.8	13.4	9.0	9.2	0.0	0.0	1.1	(21)
93~101인	5.3	9.2	53.5	17.8	5.7	7.1	0.0	0.0	1.5	(18)
120~128인	4.1	11.9	59.8	9.5	7.5	6.5	0.0	0.0	0.7	(8)
138~146인	3.2	11.7	53.3	10.7	4.6	14.2	0.0	0.0	2.3	( 9)
165인 이상	5.9	11.0	47.8	16.1	4.3	9.2	0.0	0.0	5.6	(11)
F	9.6***	28.6***	4.8***	8.9***	62.2***	16.6***	0.3	-	0.7	
대전	2.8	4.7	52.0	11.1	20.4	3.5	0.0	0.1	5.2	(458)
16~20인	2.2	3.9	52.6	10.3	23.6	2.1	0.0	0.0	5.3	(381)
46~54인	4.8	7.8	46.5	20.5	5.8	10.8	0.0	2.0	1.8	( 33)
73~81인	6.4	9.0	49.4	12.3	6.6	9.9	0.0	0.0	6.4	(16)
93~101인	6.2	8.6	51.5	12.7	3.5	11.2	0.0	0.0	6.3	(11)
120~128인	7.8	12.2	55.5	10.7	3.3	9.8	0.0	0.0	0.7	(10)
138~146인	-	-	-	-	-	-	-	-	-	-
165인 이상	4.9	11.0	48.7	6.8	1.3	9.4	0.0	0.2	17.6	( 7)
F	24.9***	$41.0^{***}$	3.7**	8.1***	92.4***	48.6***	-	2.6*	3.0*	
울산	1.3	6.6	57.7	4.5	21.4	4.5	0.2	0.2	3.8	( 244)
16~20인	0.9	4.7	58.9	2.0	27.0	2.4	0.3	0.0	3.9	(170)
46~54인	1.8	9.1	54.1	14.2	11.4	5.8	0.0	0.0	3.6	( 33)
73~81인	1.2	11.7	52.9	8.7	7.0	12.4	0.7	2.7	2.7	(18)
93~101인	3.2	11.7	59.0	5.9	6.1	10.8	0.0	0.0	3.3	(17)
120~128인	3.9	15.5	51.8	2.3	3.7	21.3	0.0	0.0	1.4	( 3)
138~146인	4.5	20.5	60.9	0.2	0.0	0.0	0.0	0.0	13.9	( 1)
165인 이상	4.7	15.6	48.6	12.3	1.0	8.7	0.0	0.0	8.9	( 2)
F	9.3***	19.0***	2.6*	6.5***	57.0***	17.1***	0.7	2.2*	0.8	
세종	4.2	3.8	54.8	7.6	22.3	4.7	0.0	0.0	2.5	( 31)
16~20인	2.2	2.5	56.8	4.5	28.7	1.7	0.0	0.0	3.5	(20)
46~54인	6.4	7.7	53.0	3.4	24.8	3.5	0.0	0.0	1.1	( 2)
73~81인	6.5	9.8	66.3	0.0	8.2	9.1	0.0	0.0	0.0	( 1)
93~101인	11.3	4.2	52.2	23.2	0.0	7.8	0.0	0.0	1.4	( 3)
120~128인	6.9	6.1	49.3	22.6	1.1	14.0	0.0	0.0	0.0	(3)
138~146인	11.7	11.9	49.4	0.9	3.7	22.5	0.0	0.0	0.0	( 1)
165인 이상	0.9	0.0	38.0	0.0	52.0	9.0	0.0	0.0	0.0	( 1)
F	2.5*	6.5***	2.9*	5.4**	11.7***	10.8***	-	-	0.3	

(부표 Ⅱ-2-2 계속)

구분         기본에 등에         변환 이 수입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전기         가는         (수)           경기         72         49         548         42         214         31         0.0         0.2         42         (3,573)           16~20인         6.0         4.1         55.5         2.6         25.7         1.7         0.0         0.0         44         (2,829)           46~54인         11.1         7.9         51.8         10.1         7.3         0.1         1.4         3.0         (280)           73~81인         10.7         7.4         53.3         13.1         4.2         8.1         0.0         0.0         3.3         (126)           93~101인         11.6         8.0         50.9         12.9         3.3         0.0         0.0         0.0         7.7         (53)           138~146인         12.7         9.3         52.6         10.3         2.9         10.0         0.0         0.0         7.7         (53)           150~104         14.1         9.3         53.1         4.4         2.9         8.9         0.0         0.0         0.0         7.7         1.5	`					1-1		3 - 3	3 . 3		
16-2인인 6.0 4.1 55.5 2.6 25.7 1.7 0.0 0.0 4.4 (2.829) 46~54인 11.1 7.9 51.8 10.1 7.3 7.3 0.1 1.4 3.0 (280) 73~81인 10.7 7.4 53.3 13.1 4.2 8.1 0.1 0.4 2.8 (176) 93~101인 11.6 8.0 50.9 12.9 3.4 9.9 0.0 0.0 0.3 3. (126) 120~128인 15.0 9.9 52.0 4.4 3.5 8.1 0.0 0.0 7.1 (53) 138~146인 12.7 9.3 52.6 10.3 2.9 10.3 0.0 0.0 1.8 (32) 165인 이상 14.1 9.3 53.1 4.4 2.9 8.9 0.0 2.3 5.0 (77) F 161.6 179.2 147" 71.8" 779.2 282.8" 2.2 13.4" 3.5" 장원 161.6 179.2 147" 71.8" 779.2 282.8" 2.2 13.4" 3.5" 장원 26 10.3 2.9 10.3 0.0 0.0 3.3 (290) 16~20인 1.1 2.4 59.0 1.6 28.5 4.1 0.1 0.0 3.2 (211) 46~54인 2.8 7.7 56.0 11.8 7.0 11.9 0.0 0.0 2.7 (21) 73~8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5 (14) 120~128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3) \$ 1.8 (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0.0 (3) \$ 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1.5 (1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5.7 8.4 49.7 14.6 5.8 11.3 10.9 0.0 0.1 13 (382) 46~54인 3.2 4.8 55.3 7.4 21.5 4.3 0.0 0.0 0.1 13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0.0 0.0 1.8 (7) 138~146인 4.2 4.8 55.3 7.4 21.5 4.3 0.0 0.0 0.0 1.8 (7) 138~146인 4.2 13.0 10.0 0.0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0.0 0.0 1.8 (7)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0.0 3.8 (5) 16~20 0.4 8.1 8.4 4.5 4.5 5.3 6.0 6.5 15.7 0.0 0.0 0.0	구분		특별활 동비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46~54인 11.1 7.9 51.8 10.1 7.3 7.3 0.1 1.4 3.0 (280) 73~81인 10.7 7.4 53.3 13.1 4.2 8.1 0.1 0.4 2.8 (176) 93~101인 11.6 8.0 50.9 12.9 3.4 9.9 0.0 0.0 3.3 (126) 120~128인 15.0 9.9 52.0 4.4 3.5 8.1 0.0 0.0 7.1 (53) 138~14여인 12.7 9.3 52.6 10.3 2.9 10.3 0.0 0.0 1.8 (32) 165인 이상 14.1 9.3 53.1 4.4 2.9 8.9 0.0 2.3 5.0 (77) F 161.6" 179.2" 14.7" 71.8" 779.2" 282.8" 2.2 13.4" 3.5" 77	경기	7.2	4.9	54.8			3.1	0.0	0.2	4.2	(3,573)
73~81인 10.7 7.4 53.3 13.1 4.2 8.1 0.1 0.4 2.8 (176) 93~101인 11.6 8.0 50.9 12.9 3.4 9.9 0.0 0.0 3.3 (126) 120~128인 15.0 9.9 52.0 4.4 3.5 8.1 0.0 0.0 7.1 (53) 138~146인 12.7 9.3 52.6 10.3 2.9 10.3 0.0 0.0 1.8 (32) 165인 이상 14.1 9.3 53.1 4.4 2.9 8.9 0.0 2.3 5.0 (77) F 161.6** 179.2*** 14.7*** 771.8*** 779.2** 282.8*** 2.2** 13.4*** 3.5**  강원 1.6 38 57.3 6.2 21.8 5.9 0.0 0.0 3.3 (290) 16~20인 1.1 2.4 59.0 1.6 28.5 4.1 0.1 0.0 3.2 (211) 46~54인 2.8 7.7 56.0 11.8 7.0 11.9 0.0 0.0 2.7 (21)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2.7 (21) 73~8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0 1.0 6.4 0.0 10.9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 2.2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0.0 1.8 (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0.1 6.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0.1 6.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0.1 6.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0.1 3.1 (382) 46~540 5.4 8.6 50.9 14.2 3.9 10.6 0.0 0.0 0.6 (5) 138~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0 4.5 (5) 138~1400	16~20인	6.0	4.1	55.5	2.6	25.7	1.7	0.0	0.0	4.4	(2,829)
93~101인 11.6 8.0 50.9 12.9 3.4 9.9 0.0 0.0 3.3 (126) 120~128인 15.0 9.9 52.0 4.4 3.5 8.1 0.0 0.0 7.1 (53) 138~146인 12.7 9.3 52.6 10.3 2.9 10.3 0.0 0.0 1.8 (32) 165인 이상 14.1 9.3 53.1 4.4 2.9 8.9 0.0 2.3 5.0 (77) F 16.6 18.8 57.3 6.2 21.8 5.9 0.1 0.0 3.3 (290) 16~20인 1.1 2.4 59.0 1.6 28.5 4.1 0.1 0.0 3.2 (211) 46~54인 2.8 7.7 56.0 11.8 7.0 11.9 0.0 0.0 2.7 (21)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2.7 (21) 73~8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5 (1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3) F 7.5 22.4 5.6 5.6 16.6 10.1 11.1 12.4 0.0 0.0 0.0 (3) F 7.5 22.4 5.6 5.9 13.6 10.1 11.1 12.4 0.0 0.0 0.0 (3) F 7.5 22.4 5.6 5.9 13.6 10.1 11.1 12.4 0.0 0.0 0.0 (3) F 7.5 22.4 5.6 5.9 13.6 10.1 11.1 12.4 0.0 0.0 0.0 (3) F 7.5 22.4 5.6 5.9 13.6 10.2 11.1 11.2 12.4 0.0 0.0 0.0 (3) F 7.5 22.4 5.6 5.9 13.0 7.4 12.1 0.0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0.0 4.7 (19) 73~8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0.0 1.7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4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1.4 (5) F 19.0 3.2 4.8 55.3 7.4 21.5 4.3 0.0 0.0 1.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1.1 5.9 (27) 93~101인 3.2 7.8 8.9 16.8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1 5.9 (27) 93~101인 3.2 7.8 8.9 16.8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49)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0.0 2.1 (7) 120~128인 7.8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0.0 2.1 (7) 120~128인 7.8 8.1 44.5 5.2 5.0 10.7 2.3 11.5 0.0 0.0 0.0 2.1 (7) 138~1460 4.2 9.7 52.0 8.0 6.5 15.7 0.0 0.0 0.0 3.8 (5) 138~1460 4.2 9.7 52.0 8.0 6.5 15.7 0.0 0.0 0.0 4.5 (5)	46~54인	11.1	7.9	51.8	10.1	7.3	7.3	0.1	1.4	3.0	(280)
120~128인 15.0 9.9 52.0 4.4 3.5 8.1 0.0 0.0 7.1 (53) 138~146인 12.7 9.3 52.6 10.3 2.9 10.3 0.0 0.0 1.8 (32) 165인 이상 14.1 9.3 53.1 4.4 2.9 8.9 0.0 2.3 5.0 (77) F 161.6" 179.2" 14.7" 71.8" 779.2" 282.8" 2.2 13.4" 3.5"	73~81인	10.7	7.4	53.3	13.1	4.2	8.1	0.1	0.4	2.8	
138~146인 12.7 9.3 52.6 10.3 2.9 10.3 0.0 0.0 1.8 (32) 165인 이상 14.1 9.3 53.1 4.4 2.9 8.9 0.0 2.3 5.0 (77) F 161.6*** 179.2*** 14.7*** 71.8*** 779.2*** 282.8*** 2.2*** 13.4*** 3.5**  강원 1.6 3.8 57.3 6.2 21.8 5.9 0.1 0.0 3.3 (290) 16~20인 1.1 2.4 59.0 1.6 28.5 4.1 0.1 0.0 3.2 (211) 46~54인 2.8 7.7 56.0 11.8 7.0 11.9 0.0 0.0 2.7 (21)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4.3 (32) 93~10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중북 20 4.7 56.9 5.5 21.4 6.2 0.1 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7.0 (1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7) 138~146인 4.6 15.4 52.5 6.9 4.3 10.7 0.0 0.0 1.8 (7) 138~146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0.0 2.1 (7) 138~1460 4.2 9.7 52.0 8.0 6.5 15.7 0.0 0.0 0.0 3.8 (5) 138~1460 4.2 9.7 52.0 8.0 6.5 15.7 0.0 0.0 0.0 4.5 (5)	93~101인	11.6	8.0	50.9	12.9	3.4	9.9	0.0	0.0	3.3	(126)
165인 이상 14.1 9.3 53.1 4.4 2.9 8.9 0.0 2.3 5.0 (77) F 16.6** 179.2*** 14.7*** 71.8*** 779.2*** 282.8*** 2.2*** 13.4*** 3.5***	120~128인	15.0	9.9	52.0	4.4	3.5	8.1	0.0	0.0	7.1	( 53)
당원         161.6*** 179.2*** 14.7*** 71.8*** 779.2*** 282.8***         2.2*** 13.4*** 3.5***           강원         1.6         3.8         57.3         6.2         21.8         5.9         0.1         0.0         3.3         (290)           16~20인         1.1         2.4         59.0         1.6         28.5         4.1         0.1         0.0         3.2         (211)           46~54인         2.8         7.7         56.0         11.8         7.0         11.9         0.0         0.0         2.7         (21)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4.3         (32)           93~10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0         10.0         0.0           5-         7.5***         22.4*** <td>138~146인</td> <td>12.7</td> <td>9.3</td> <td>52.6</td> <td>10.3</td> <td>2.9</td> <td>10.3</td> <td>0.0</td> <td>0.0</td> <td>1.8</td> <td>( 32)</td>	138~146인	12.7	9.3	52.6	10.3	2.9	10.3	0.0	0.0	1.8	( 32)
장원 1.6 3.8 57.3 6.2 21.8 5.9 0.1 0.0 3.3 (290) 16~20인 1.1 2.4 59.0 1.6 28.5 4.1 0.1 0.0 3.2 (211) 46~54인 2.8 7.7 56.0 11.8 7.0 11.9 0.0 0.0 2.7 (21)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4.3 (32) 93~10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충북 2.0 4.7 56.9 5.5 21.4 6.2 0.1 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7)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0 3.8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165인 이상	14.1			4.4						(77)
16~20인 1.1 2.4 59.0 1.6 28.5 4.1 0.1 0.0 3.2 (211) 46~54인 2.8 7.7 56.0 11.8 7.0 11.9 0.0 0.0 2.7 (21)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4.3 (32) 93~10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중복 2.0 4.7 56.9 5.5 21.4 6.2 0.1 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7)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1.9 1.6 중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6 1.9 (34) 73~81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F	161.6***	179.2***	$14.7^{***}$	$71.8^{***}$	779.2***	282.8***	2.2*	13.4***	3.5**	
46~54인 2.8 7.7 56.0 11.8 7.0 11.9 0.0 0.0 2.7 (21)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0.0 4.3 (32) 93~10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0.0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1.6	3.8	57.3	6.2	21.8	5.9	0.1	0.0	3.3	( 290)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4.3 (32) 93~10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59.0	1.6		4.1	0.1	0.0		(211)
93~10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0.0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56.0				0.0	0.0	2.7	(21)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0.0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73~81인	2.5	6.4	49.4	25.2	2.6	9.7	0.0	0.0	4.3	( 32)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 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0.0 (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	93~101인	2.4	9.8	55.7	15.8	3.4	11.3	0.0	0.0	1.5	(14)
165인 이상 4.4 8.5 58.3 8.7 5.9 14.3 0.0 0.0 0.0 0.0 (3)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중북 2.0 4.7 56.9 5.5 21.4 6.2 0.1 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중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120~128인	5.6	9.6	55.2	15.7	1.2	10.8	0.0	0.0	1.9	( 5)
F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충북         2.0         4.7         56.9         5.5         21.4         6.2         0.1         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8         (15)	138~146인	5.5	4.0	44.6	16.9	1.6	10.1	6.4	0.0	10.9	(4)
충북 2.0 4.7 56.9 5.5 21.4 6.2 0.1 0.0 3.2 (332)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중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0 3.8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165인 이상								0.0	0.0	( 3)
16~20인 1.1 3.0 59.1 2.6 27.5 3.8 0.1 0.0 2.7 (242)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중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7.5***	22.4***	5.6***	31.6***	102.1***	11.1***	12.4***	-	0.8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19)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등담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3.8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충북	2.0	4.7	56.9	5.5	21.4	6.2	0.1	0.0	3.2	(332)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등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0 3.8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3.0	59.1	2.6		3.8	0.1	0.0		(242)
93~101인 3.2 7.7 51.1 9.7 6.0 15.4 0.0 0.0 7.0 (17)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등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0 3.8 (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0.0 4.5 ( 15)	46~54인	3.2	8.8	50.9	13.0	7.4	12.1	0.0	0.0	4.7	( 19)
120~128인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중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0 3.8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73~81인	2.7	5.9	49.7	19.6	3.6	12.5	0.0	0.1	5.9	(27)
138~146인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5)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중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93~101인		7.7	51.1	9.7	6.0	15.4	0.0	0.0	7.0	( 17)
165인 이상 8.4 15.4 52.5 6.9 4.3 10.7 0.0 0.0 1.8 (15) F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충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0 2.1 (17) 120~128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7.5	12.7	49.4	16.4	1.3	10.9	0.0	0.0	1.8	( 7)
F     19.0 ***     32.7 ***     8.9 ***     16.8 ***     109.0 ***     22.2 ***     0.1     1.9     1.6       충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4.6	11.2	53.7	10.1	4.1	14.9	0.0	0.0	1.4	( 5)
충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490)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165인 이상							0.0	0.0	1.8	( 15)
16~20인 2.2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19.0***	32.7***	8.9***	16.8***	109.0***	22.2***	0.1	1.9	1.6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34)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충남	3.2	4.8	55.3	7.4	21.5	4.3	0.0	0.4	3.2	( 490)
73~81인 5.4 8.6 50.9 14.2 3.9 10.6 0.0 1.6 4.8 ( 3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 15)			3.2	56.4	6.3	26.3	2.3	0.0	0.1	3.1	(382)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17)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46~54인	5.7	8.4	49.7	14.6	5.8	11.3	0.0	2.6	1.9	( 34)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5)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73~81인	5.4	8.6		14.2	3.9	10.6	0.0	1.6	4.8	( 32)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93~101인	6.5	10.8	56.2	10.7	2.3	11.5	0.0	0.0	2.1	( 17)
138~146인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120~128인	7.8	18.1	46.5	7.3	3.9	15.8	0.0	0.0	0.6	( 5)
165인 이상 11.6 14.1 53.4 1.6 4.6 10.3 0.0 0.0 4.5 (15)		4.2	9.7	52.0	8.0	6.5	15.7	0.0	0.0	3.8	
	165인 이상							0.0	0.0	4.5	
	F	30.8***	48.6***	6.4***	8.6***	144.7***	80.6***	-	2.1	0.6	

(부표 Ⅱ-2-2 계속)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활 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전북	3.1	2.7	55.5	7.4	21.7	3.3	0.2	0.0	6.0	(320)
16~20인	1.8	1.6	56.9	3.1	27.5	1.6	0.1	0.0	7.4	(235)
46~54인	5.2	3.2	46.3	30.2	6.1	4.5	0.1	0.0	4.3	(20)
73~81인	6.2	6.0	53.7	19.2	5.7	7.7	0.0	0.0	1.5	( 33)
93~101인	8.2	8.4	52.0	12.3	5.1	11.1	1.7	0.0	1.1	(23)
120~128인	5.0	5.5	41.8	10.9	2.8	13.1	0.0	0.0	20.8	( 2)
138~146인	8.0	5.6	51.6	26.7	0.0	7.7	0.0	0.0	0.5	( 3)
165인 이상	11.7	6.2	64.3	0.5	7.2	10.0	0.0	0.0	0.0	(4)
F	34.4***	37.8***	4.6***	28.2***	69.4***	21.5***	1.5	-	3.3**	
전남	2.1	3.7	57.3	9.0	19.6	4.3	0.0	0.0	4.0	(269)
16~20인	1.4	0.8	60.7	2.4	28.4	1.5	0.0	0.0	4.7	(171)
46~54인	3.0	4.8	50.0	26.9	6.1	8.4	0.0	0.0	0.8	( 24)
73~81인	2.3	5.2	50.0	27.7	2.3	7.2	0.0	0.0	5.3	(24)
93~101인	3.0	9.2	54.1	18.5	4.2	10.2	0.0	0.0	0.8	( 17)
120~128인	4.5	12.7	52.4	13.7	3.9	9.6	0.0	0.0	3.2	(12)
138~146인	3.1	7.2	51.7	26.8	0.0	6.5	0.0	0.0	4.7	( 3)
165인 이상	5.3	15.2	51.2	7.6	5.6	11.9	0.0	0.0	3.2	( 18)
F	11.0***	88.8***	9.4***	30.1***	105.0***	40.0***	-	-	1.2	
경북	1.6	2.9	57.1	5.8	21.4	6.7	0.1	0.3	4.1	(371)
16~20인	1.1	2.1	58.5	2.4	26.7	4.7	0.0	0.0	4.5	(272)
46~54인	1.8	3.2	52.4	20.6	7.9	10.3	0.0	0.0	3.8	(40)
73~81인	3.4	5.0	48.2	18.7	5.0	13.3	1.3	2.7	2.4	(27)
93~101인	2.5	7.1	58.4	8.8	8.3	12.6	0.0	0.0	2.4	( 19)
120~128인	6.1	8.1	70.2	1.1	5.3	9.1	0.0	0.0	0.0	(4)
138~146인	5.2	11.0	48.5	0.0	5.9	29.3	0.0	0.0	0.0	( 3)
165인 이상	6.6	4.9	53.4	0.3	6.2	10.3	0.0	9.3	9.2	( 6)
F	9.1**	14.7**	6.5**	18.2**	65.0**	27.6**	2.1	5.3**	1.0	
경남	2.8	4.3	58.5	5.0	21.6	4.0	0.0	0.1	3.6	(790)
16~20인	2.0	3.0	59.7	2.3	26.8	2.3	0.0	0.1	3.8	(600)
46~54인	4.0	7.6	54.0	16.1	7.6	7.8	0.0	0.0	2.9	( 56)
73~81인	4.1	7.4	57.4	13.8	4.6	9.3	0.0	0.0	3.5	( 53)
93~101인	5.7	9.0	53.4	15.4	3.9	10.8	0.0	0.0	1.8	(44)
120~128인	8.0	10.3	54.7	6.9	3.9	10.4	0.8	0.0	5.0	( 10)
138~146인	7.3	9.3	52.1	13.9	3.3	10.2	0.3	0.0	3.7	(12)
165인 이상	8.0	11.3	58.1	3.5	4.6	9.8	0.0	3.6	1.1	( 15)
F	27.0***	61.4***	7.0***	33.4***	184.4***	55.1***	2.1*	4.6***	0.7	

(부표 Ⅱ-2-2 계속)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활 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제주	1.5	3.7	54.3	9.9	18.0	8.8	0.0	0.0	3.8	( 127)
16~20인	1.0	0.7	56.2	0.9	32.3	3.5	0.0	0.0	5.4	(60)
46~54인	1.7	5.0	52.6	14.6	10.1	14.0	0.0	0.0	1.9	(15)
73~81인	1.9	7.2	54.2	14.9	5.2	16.4	0.0	0.0	0.2	(12)
93~101인	2.1	5.5	52.3	23.0	3.3	13.0	0.0	0.0	0.7	(21)
120~128인	1.8	7.7	52.7	5.6	6.1	16.8	0.0	0.0	9.2	( 6)
138~146인	1.6	6.5	48.3	27.5	0.6	9.6	0.0	0.0	5.9	( 5)
165인 이상	2.1	9.0	54.6	18.8	3.3	8.8	0.0	0.0	3.4	(8)
F	5.0***	39.4***	1.3	11.3***	128.8***	$10.4^{***}$	-	-	1.8	

<sup>\*</sup> p < .05, \*\*\* p < .001

〈부표 II-2-3〉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세출 분포

단위: %(개소)

												단`	۲۱: ۶	<u>%(개소)</u>	
			타 필.	요경비	] 제외				기	타 필.	요경비				
구분	인건 비	관리 운영 비	업무 추진 비	사업 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타	인건 비	관리 운영 비	업무 추진 비	사업 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 타	(수)
서울	68.8	7.2	1.8	19.1	2.2	0.7	0.3	64.0	6.6	1.7	24.7	2.0	0.7	0.3	(2,194)
16~20인	70.3	7.0	2.1	18.2	1.3	0.8	0.3	67.3	6.7	2.0	21.6	1.2	0.8	0.3	(1,507)
46~54인	67.9	7.1	1.6	19.7	2.9	0.6	0.2	59.2	6.2	1.4	30.0	2.5	0.5	0.2	(270)
73~81인	64.8	7.8	1.2	21.1	4.6	0.4	0.1	55.9	6.8	1.1	31.7	4.1	0.3	0.1	(238)
93~101인	62.8	7.7	1.0	22.9	4.9	0.3	0.3	53.7	6.6	0.8	33.9	4.5	0.3	0.2	(99)
120~128인	64.8	7.2	0.7	20.3	6.7	0.4	0.0	54.3	6.0	0.5	32.8	6.0	0.3	0.0	(27)
138~146인	65.5	7.0	0.7	22.5	4.1	0.1	0.0	57.5	6.1	0.6	32.0	3.7	0.1	0.0	( 17)
165인 이상	62.5	6.6	0.9	25.4	4.5	0.0	0.1	55.3	5.7	0.8	34.0	4.1	0.0	0.1	( 36)
부산	68.6	9.2	2.0	17.5	1.5	1.0	0.2	63.6	8.5	1.8	23.5	1.4	0.9	0.2	( 567)
16~20인	69.8	9.2	2.2	16.5	0.9	1.2	0.2	66.4	8.7	2.1	20.6	0.8	1.1	0.2	(377)
46~54인	67.4	9.1	1.7	18.6	2.4	0.6	0.2	59.8	8.1	1.5	27.8	2.2	0.6	0.1	(83)
73~81인	65.6	9.8	1.5	19.3	3.7	0.3	0.0	57.9	8.7	1.3	28.6	3.3	0.3	0.0	(40)
93~101인	65.0	9.6	1.0	19.8	3.0	1.3	0.2	56.4	8.4	0.9	30.3	2.7	1.2	0.2	( 35)
120~128인	65.7	9.0	1.6	20.1	3.6	0.1	0.0	56.9	7.6	1.5	30.8	3.2	0.0	0.0	(16)
138~146인	-	-	-	-	-	-	-	_	-	-	-	-	-	-	-
165인 이상	63.4	7.7	1.3	24.2	2.7	0.5	0.2	55.7	6.7	1.1	33.4	2.4	0.4	0.2	(16)

(부표 Ⅱ-2-3 계속)

	(Tu II-2-0 /15)															
인천대分분허보러 <td></td> <td colspan="6"></td> <td></td> <td colspan="6"></td> <td></td> <td></td>																
16-20인   68.3   8.2   2.9   17.8   1.1   1.0   0.6   61.8   7.4   2.7   2.56   1.1   1.0   0.5   (5.86)   46-5되인   65.2   7.2   2.3   21.4   2.5   0.7   0.6   55.2   61.1   2.0   33.4   2.3   0.6   0.5   (8.2)   73-81인   61.4   8.8   1.5   22.4   3.8   1.7   0.3   51.2   7.3   1.2   35.2   3.2   1.5   0.3   3.6   3.9   3.9   1.01   0.1   0.1   0.2   2.3   1.2   2.5   1.3   36.3   3.7   1.9   0.2   (3.7)   120-128인   63.9   7.7   1.0   24.5   2.8   0.1   0.0   52.5   5.3   0.8   38.0   3.7   1.0   0.2   (3.7)   1.38-146인   63.2   8.5   1.1   23.5   1.4   2.4   0.0   51.2   6.9   0.8   37.9   1.2   2.1   0.0   (5.5)   1.65인 이상   5.6   7.5   2.4   29.8   2.9   1.0   0.0   44.4   5.8   2.6   23.7   1.3   0.7   0.1   (2.77)   16-20인   68.8   9.7   3.2   16.3   1.0   0.8   0.2   66.9   9.4   3.1   18.6   1.0   0.2   0.2   (1.8)   1.0   0.5   0	구분		운영	주진		조성	전출 금	기타		관리 운영 비	주진		조성	전출 금	기타	(수)
146-54인   65.2   7.2   23   21.4   2.5   0.7   0.6   55.2   61.1   20   33.4   23   0.6   0.5   (82)   73-81인   61.4   8.8   1.5   22.4   3.8   1.7   0.3   51.2   7.3   1.2   35.2   3.2   1.5   0.3   (36)   93-101인   62.1   67   1.0   24.5   2.8   0.1   0.0   52.5   6.3   0.8   38.0   2.3   0.0   0.0   (14)   138-146인   63.2   8.5   1.1   23.5   1.4   2.4   0.0   51.2   6.9   0.8   37.9   1.2   21   0.0   (5)   165인 이상   55.6   7.5   2.4   29.8   2.9   1.9   0.0   44.4   58.8   2.2   43.5   2.3   1.8   0.0   (21)   37-410인   64.5   8.8   2.5   18.9   1.1   0.7   0.1   62.8   8.8   2.6   23.7   1.3   0.7   0.1   (277)   16-20인   68.8   8.2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18)   46-54인   68.8   8.2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18)   47-401인   64.5   8.5   1.5   22.5   1.9   0.9   0.0   54.7   7.5   2.2   26.2   1.0   0.0   0.0   (17)   120-128인   63.3   8.8   2.9   14.2   25.2   0.4   0.0   0.5   54.5   0.3   0.4   0.0   0.0   (7)   165인 이상   6.0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2.3)   1.3   1.4   4.5	인천	66.8	8.0	2.7	19.2	1.7	1.1	0.5	59.2	7.1	2.4	28.3	1.5	1.0	0.4	(731)
1	16~20인	68.3	8.2	2.9	17.8	1.1	1.0	0.6	61.8	7.4	2.7	25.6	1.1	1.0	0.5	(536)
93-101인 62.1 6.7 1.6 22.7 4.5 2.2 0.2 51.2 5.5 1.3 36.3 3.7 1.9 0.2 (37) 120-128인 63.9 7.7 1.0 24.5 2.8 0.1 0.0 52.5 6.3 0.8 38.0 2.3 0.0 0.0 (14) 138-146인 63.2 8.5 1.1 23.5 1.4 24 0.0 51.2 6.9 0.8 37.9 1.2 2.1 0.0 (5) 155 15.5 6.7 5. 2.4 29.8 2.9 1.0 0.0 41.4 5.8 2.2 43.5 23 1.8 0.0 (21) 광주 67.2 9.4 2.7 18.4 1.4 0.7 0.1 62.8 8.8 2.6 23.7 1.3 0.0 0.0 (21) 광주 67.2 9.4 2.7 18.4 1.4 0.7 0.1 62.8 8.8 2.6 23.7 1.3 0.8 0.2 (191) 46~54인 68.8 8.2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18) 73-81인 61.2 10.7 1.5 22.6 3.9 0.0 0.0 50.1 8.7 1.2 36.6 3.4 0.0 0.0 (17) 120-128인 64.5 8.5 1.5 22.5 1.9 0.0 0.0 50.5 61.1 0.3 35.9 4.5 0.0 0.0 (17) 138~146인 64.5 8.5 1.5 22.5 1.9 0.0 0.0 52.5 61.1 0.3 34.4 1.7 0.8 0.0 (17)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2.5 61.1 0.3 35.9 4.5 0.0 0.0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23) 대주 68.9 8.8 2.9 16.9 13. 0.8 0.0 52.5 61. 10. 35.9 4.5 0.0 0.0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23) 대주 68.9 8.8 2.9 16.9 13. 0.8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23) 대주 68.9 8.8 2.9 16.9 13. 0.8 0.5 62.8 8.3 2.8 2.5 2.5 1.9 0.7 0.3 (258)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7) 1.3 14.0 1.2 1.2 0.0 (23) 14.2 14.0 1.2 1.2 0.0 (23) 14.2 14.2 14.2 14.2 14.2 14.2 14.2 14.2	46~54인	65.2	7.2	2.3	21.4	2.5	0.7	0.6	55.2	6.1	2.0	33.4	2.3	0.6	0.5	(82)
120~128인 63.9 7.7 1.0 24.5 2.8 0.1 0.0 52.5 6.3 0.8 38.0 2.3 0.0 0.0 (14) 138~146인 63.2 8.5 1.1 23.5 1.4 2.4 0.0 51.2 6.9 0.8 37.9 1.2 2.1 0.0 (5) 165인 이상 55.6 7.5 2.4 29.8 2.9 1.9 0.0 44.4 5.8 2.2 43.5 2.3 1.8 0.0 (21) 장주 67.2 9.4 2.7 18.4 1.4 0.7 0.1 61.2 8.8 2.4 2.5 1.3 0.7 0.1 (27) 146~54인 68.8 9.7 3.2 16.3 1.0 0.8 0.2 66.9 9.4 3.1 18.6 1.0 0.2 0.2 (18) 46~54인 68.8 9.7 3.2 16.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18) 73~81인 61.2 10.7 15. 22.6 3.9 0.0 0.0 51.8 7.7 12. 36.6 3.4 0.0 0.0 (1.4) 93~101인 64.5 8.5 15. 22.5 18.9 1.0 0.0 0.0 52.5 6.1 1.0 35.9 45.0 0.0 0.0 (7.7) 120~128인 63.7 2. 1.2 24.2 5.1 0.0 0.0 52.5 6.1 1.0 35.9 45.0 0.0 0.0 (7.7) 158~140인 64.0 8.9 1.4 25.2 0.4 0.0 0.0 52.5 6.1 1.0 35.9 45.0 0.0 0.0 (7.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0 1.0 0.2 2.3 14.7 14.0 1.2 1.0 1.2 0.0 (2.3) 14.7 14.0 14.2 1.0 1.2 0.0 (2.3) 14.7 14.0 14.2 1.0 1.2 0.0 (2.3) 14.7 14.0 14.2 1.0 14.0 14.2 14.0 14.	73~81인	61.4	8.8	1.5	22.4	3.8	1.7	0.3	51.2	7.3	1.2	35.2	3.2	1.5	0.3	( 36)
188~146인 63.2 8.5 1.1 23.5 1.4 2.4 0.0 51.2 6.9 0.8 37.9 1.2 21 0.0 (5) 165인 이상 55.6 7.5 2.4 29.8 29 1.9 0.0 44.4 5.8 2.2 43.5 2.3 1.8 0.0 (21) 광주 67.2 9.4 2.7 18.4 1.4 0.7 0.1 62.8 8.8 2.6 23.7 1.3 0.7 0.1 (277) 16~20인 68.8 9.7 3.2 16.3 1.0 0.8 0.2 66.9 9.4 3.1 18.6 1.0 0.8 0.2 (191) 46~5억인 68.8 8.7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0.2 [191) 46~5억인 68.8 8.2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0.2 [191) 48~5억인 68.5 8.5 1.5 22.5 1.9 0.9 0.0 50.1 8.7 1.2 36.6 3.4 0.0 0.0 [1.4] 93~101인 64.5 8.5 1.5 22.5 1.9 0.9 0.0 50.5 1.8 7 1.2 36.6 3.4 0.0 0.0 [1.7] 120~128억 62.3 7.2 1.2 24.2 5.1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7.7] 138~146억 64.0 8.9 1.4 25.2 0.4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7.7] 138~146억 64.0 8.9 1.4 25.2 0.4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7.7] 138~146억 65.5 8.9 1.4 25.2 0.4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7.7] 138~146억 65.7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1.2 0.0 [2.3] 147~ 65.9 4.8 1.8 20.4 3.8 0.0 0.0 58.1 7.4 1.0 29.2 1.2 0.7 0.3 [2.58] 16~20억 68.9 8.8 2.9 16.9 13.0 0.0 0.0 58.1 7.4 1.0 29.2 1.2 0.7 0.3 [2.58] 18~0~101억 64.1 8.8 1.7 22.8 2.4 0.0 1.0 58.1 7.4 1.6 29.5 3.4 0.0 0.0 [2.1] 19~0~101억 64.1 8.8 1.7 22.8 2.4 0.0 0.0 58.1 7.4 1.0 29.2 1.2 0.0 (2.3) 18~0~101억 64.1 8.8 1.7 22.8 2.4 0.0 5.5 5.5 6.2 1.0 35.9 2.1 1.2 0.0 (3.8) 18~0~101억 64.1 8.8 1.7 22.8 2.4 0.0 1.0 55.1 7.6 1.6 32.6 2.0 1.0 0.0 [2.1] 11~11전 60.1 8.8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458) 16~20억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3.8 1.4 1.7 0.3 (458) 16~20억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3.8 1.4 1.7 0.3 (458) 16~20억 69.4 8.4 1.6 12.3 1.9 0.0 0.0 1.0 0.0 0.0 0.0 0.0 0.0 0.0 0.0	93~101인	62.1	6.7	1.6	22.7	4.5	2.2	0.2	51.2	5.5	1.3	36.3	3.7	1.9	0.2	( 37)
165인 이상 55.6 7.5 2.4 29.8 29 1.9 0.0 44.4 5.8 2.2 43.5 2.3 1.8 0.0 (21) 광주 67.2 9.4 27 18.4 1.4 0.7 0.1 62.8 8.8 2.6 23.7 1.3 0.7 0.1 (277) 16~20인 68.8 9.7 3.2 16.3 1.0 0.8 0.2 66.9 9.4 3.1 18.6 1.0 0.8 0.2 (191) 46~54인 68.8 8.2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18] 73~81인 61.2 10.7 1.5 22.6 3.9 0.0 0.0 50.1 8.7 7.2 1.3 36.4 1.7 0.8 0.0 [17] 120~128인 65.8 5.5 1.5 22.5 1.9 0.9 0.0 54.7 7.2 1.3 34.4 1.7 0.8 0.0 [17]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1.6 7.2 1.2 30.7 0.3 0.0 0.0 [7] 138~146인 64.0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23] 대구 67.8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0 [23] 대구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0 0.0 [21] 93~101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20.5 2.0 1.0 0.0 [21] 93~101인 65.7 8.1 3 1.6 2.6 1.5 1.8 0.0 53.5 6.2 1.0 35.9 21 1.2 0.0 [21] 93~101인 65.0 9.8 1.3 1.4 1.5 1.4 1.5 1.7 0.5 1.8 0.0 4.7 1.5 1.5 1.5 1.8 0.0 56.1 7.6 1.6 32.6 2.0 0.1 0.0 [21] 93~101인 66.1 8.5 1.7 22.8 2.9 5.1 8 0.0 49.7 7.1 0.6 32.6 8.4 1.6 0.0 [21] 11.5 1.5 1.9 0.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21] 11.5 1.5 1.9 0.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21] 11.5 1.5 1.7 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0~128인	63.9	7.7	1.0	24.5	2.8	0.1	0.0	52.5	6.3	0.8	38.0	2.3	0.0	0.0	(14)
165인 이상 55.6 7.5 2.4 29.8 29 1.9 0.0 44.4 5.8 2.2 43.5 2.3 1.8 0.0 (21) 광주 67.2 9.4 27 18.4 1.4 0.7 0.1 62.8 8.8 2.6 23.7 1.3 0.7 0.1 (277) 16~20인 68.8 9.7 3.2 16.3 1.0 0.8 0.2 66.9 9.4 3.1 18.6 1.0 0.8 0.2 (191) 46~54인 68.8 8.2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18] 73~81인 61.2 10.7 1.5 22.6 3.9 0.0 0.0 50.1 8.7 7.2 1.3 36.4 1.7 0.8 0.0 [17] 120~128인 65.8 5.5 1.5 22.5 1.9 0.9 0.0 54.7 7.2 1.3 34.4 1.7 0.8 0.0 [17]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1.6 7.2 1.2 30.7 0.3 0.0 0.0 [7] 138~146인 64.0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23] 대구 67.8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0 [23] 대구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0 0.0 [21] 93~101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20.5 2.0 1.0 0.0 [21] 93~101인 65.7 8.1 3 1.6 2.6 1.5 1.8 0.0 53.5 6.2 1.0 35.9 21 1.2 0.0 [21] 93~101인 65.0 9.8 1.3 1.4 1.5 1.4 1.5 1.7 0.5 1.8 0.0 4.7 1.5 1.5 1.5 1.8 0.0 56.1 7.6 1.6 32.6 2.0 0.1 0.0 [21] 93~101인 66.1 8.5 1.7 22.8 2.9 5.1 8 0.0 49.7 7.1 0.6 32.6 8.4 1.6 0.0 [21] 11.5 1.5 1.9 0.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21] 11.5 1.5 1.9 0.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21] 11.5 1.5 1.7 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8~146인	63.2	8.5	1.1	23.5	1.4	2.4	0.0	51.2	6.9	0.8	37.9	1.2	2.1	0.0	( 5)
16~20인 68.8 9.7 3.2 16.3 1.0 0.8 0.2 66.9 9.4 3.1 18.6 1.0 0.8 0.2 (191) 46~54인 68.8 8.2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18) 73~81인 61.2 10.7 1.5 22.6 3.9 0.0 0.0 50.1 8.7 1.2 36.6 3.4 0.0 0.0 (14) 93~101인 64.5 8.5 1.5 22.5 1.9 0.9 0.0 54.7 7.2 1.3 34.4 1.7 0.8 0.0 (17) 120~128인 62.3 7.2 1.2 24.2 5.1 0.0 0.0 51.6 7.2 1.3 34.4 1.7 0.8 0.0 (7)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5 1.6 7.2 1.2 39.7 0.3 0.0 0.0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23)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62.0 7.9 2.2 25.0 1.9 0.7 0.3 (258)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154)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1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4 4.7 8.3 1.1 39.5 3.7 0.0 0.0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대전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138~146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49.2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49.2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49.2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4 8.5 1.4 20.1 3.7 0.2 0.0 55.4 6.2 1.2 30.9 6.0 0.2 0.0 (10) 188~146인 -	165인 이상	55.6	7.5	2.4	29.8	2.9	1.9	0.0	44.4	5.8	2.2	43.5	2.3	1.8	0.0	
86.	광주	67.2	9.4	2.7	18.4	1.4	0.7	0.1	62.8	8.8	2.6	23.7	1.3	0.7	0.1	( 277)
73~81인 61.2 10.7 1.5 22.6 3.9 0.0 0.0 50.1 8.7 1.2 36.6 3.4 0.0 0.0 ( 14) 93~101인 64.5 8.5 1.5 22.5 1.9 0.9 0.0 54.7 7.2 1.3 34.4 1.7 0.8 0.0 ( 17) 120~128인 62.3 7.2 1.2 24.2 5.1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 7)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1.6 7.2 1.2 39.7 0.3 0.0 0.0 (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 23)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62.0 7.9 2.2 25.0 1.9 0.7 0.3 (258)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 154) 46~54인 68.7 8.2 1.2 19.6 1.3 0.8 0.0 60.5 7.2 1.0 29.2 1.2 0.7 0.3 (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0 ( 8) 138~146인 69.1 8.2 1.9 18.4 1.9 0.3 0.3 65.0 7.9 1.5 22.2 1.1 2.0 0.3 (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	16~20인	68.8	9.7	3.2	16.3	1.0	0.8	0.2	66.9	9.4	3.1	18.6	1.0	0.8	0.2	( 191)
93~101인 64.5 8.5 1.5 22.5 1.9 0.9 0.0 54.7 7.2 1.3 34.4 1.7 0.8 0.0 ( 17) 120~128인 62.3 7.2 1.2 24.2 5.1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 7)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1.6 7.2 1.2 39.7 0.3 0.0 0.0 (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 23)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62.0 7.9 2.2 25.0 1.9 0.7 0.3 ( 258)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 154)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 18)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8 0.3 63.6 7.7 1.5 23.8 1.4 1.7 0.3 (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 381) 46~54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0 32.6 8.4 1.6 0.0 ( 11) 120~128인 65.5 7.5 1.3 21.6 2.9 0.3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120~128인 66.1 7.4 1.5 17.9 6.8 0.3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138~146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5.9 0.0 2.2 1.9 18.4 1.9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5.9 10.4 2.5 19.1 2.3 0.9 0.8 1.5 2.5 1.4 31.0 2.6 0.2 0.0 ( 10) 138~146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1 8.5 1.4 20.1 3.7 0.0 0.0 55.8 5.5 1.4 31.0 0.0 1.0 ( 10) 138~1460	46~54인	68.8	8.2	2.5	18.9	1.1	0.2	0.2	62.7	7.5	2.2	26.2	1.0	0.2	0.2	(18)
120~128인 62.3 7.2 1.2 24.2 5.1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 7)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1.6 7.2 1.2 39.7 0.3 0.0 0.0 (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 23)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62.0 7.9 2.2 25.0 1.9 0.7 0.3 ( 258)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 154)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 18)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 8) 18~46인 65.0 1.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 381) 46~54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7.4 1.5 17.9 6.8 0.3 0.0 55.8 5.5 1.4 31.0 2.6 0.2 0.0 ( 10) 138~146인 66.7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7.4 1.5 17.9 6.8 0.3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0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0 66.1 7.4 1.5 17.9 0.8 1.9 0.0 1.5 57 6.7 0.2 32.4 3.1 0.0 0.1 ( 13) 138~1460 66.1 7.4 2.2 2.4 2.5 0.0 0.0 0.1 55.	73~81인	61.2	10.7	1.5	22.6	3.9	0.0	0.0	50.1	8.7	1.2	36.6	3.4	0.0	0.0	(14)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1.6 7.2 1.2 39.7 0.3 0.0 0.0 (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 23)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62.0 7.9 2.2 25.0 1.9 0.7 0.3 ( 258)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 154)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 18)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8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대전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 381) 4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 381) 46~2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93~101인	64.5	8.5	1.5	22.5	1.9	0.9	0.0	54.7	7.2	1.3	34.4	1.7	0.8	0.0	(17)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1.6 7.2 1.2 39.7 0.3 0.0 0.0 ( 7)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 23)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62.0 7.9 2.2 25.0 1.9 0.7 0.3 ( 258)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 154)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 18)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8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대전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1 8.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5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7.4 1.5 17.9 6.8 0.3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7.4 1.5 17.9 6.8 0.3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66.7 6.3 1.6 22.3 3.1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0 1.2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120~128인	62.3	7.2	1.2	24.2	5.1	0.0	0.0	52.5	6.1	1.0	35.9	4.5	0.0	0.0	(7)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62.0 7.9 2.2 25.0 1.9 0.7 0.3 (258)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154)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18)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10) 138~146인	138~146인	64.0	8.9	1.4	25.2	0.4	0.0	0.0	51.6	7.2	1.2	39.7	0.3	0.0	0.0	( 7)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154)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18)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1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11) 138~146인 -	165인 이상	60.5	8.9	1.4	26.4	1.5	1.4	0.0	49.2	7.2	1.1	40.1	1.2	1.2	0.0	( 23)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37)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1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11) 138~146인	대구	67.3	8.6	2.3	18.6	2.1	0.7	0.3	62.0	7.9	2.2	25.0	1.9	0.7	0.3	( 258)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21)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18)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10) 138~146인	16~20인	68.9	8.8	2.9	16.9	1.3	0.8	0.5	65.8	8.3	2.8	20.6	1.2	0.8	0.4	(154)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18]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381) 46~54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10] 138~146인	46~54인	68.7	8.2	1.2	19.6	1.3	0.7	0.3	60.5	7.2	1.0	29.2	1.2	0.7	0.3	( 37)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 8)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73~81인	65.7	8.4	1.8	20.4	3.8	0.0	0.0	58.1	7.4	1.6	29.5	3.4	0.0	0.0	(21)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9)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1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10) 138~146인	93~101인	64.1	8.8	1.7	22.8	2.4	0.1	0.0	56.1	7.6	1.6	32.6	2.0	0.1	0.0	( 18)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 11) 대전 69.1 8.3 1.6 16.8 1.2 2.2 0.3 63.6 7.7 1.5 23.8 1.4 1.7 0.3 (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0) 138~146인	120~128인	65.5	7.5	1.3	21.6	2.6	1.5	0.0	53.5	6.2	1.0	35.9	2.1	1.2	0.0	( 8)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458)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1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10) 138~146인	138~146인	59.0	10.3	1.3	24.8	4.5	0.0	0.0	47.4	8.3	1.1	39.5	3.7	0.0	0.0	( 9)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 38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 10) 138~146인	165인 이상	57.7	8.3	0.7	22.0	9.5	1.8	0.0	49.7	7.1	0.6	32.6	8.4	1.6	0.0	(11)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 33)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 10) 138~146인	대전	69.1	8.3	1.6	17.3	1.6	1.8	0.3	63.6	7.7	1.5	23.8	1.4	1.7	0.3	( 458)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6)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49.2 7.1 0.7 40.5 2.3 0.2 0.0 ( 1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 10) 138~146인	16~20인	69.4	8.4	1.6	16.8	1.2	2.2	0.3	65.0	7.9	1.5	22.2	1.1	2.0	0.3	(381)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 1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 10) 138~146인	46~54인	69.1	8.2	1.9	18.4	1.9	0.3	0.1	60.0	7.1	1.7	29.2	1.7	0.3	0.1	( 33)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 10) 138~146인	73~81인	66.1	7.4	1.5	17.9	6.8	0.3	0.0	55.4	6.2	1.2	30.9	6.0	0.2	0.0	( 16)
138~146인	93~101인	66.1	8.5	1.4	20.1	3.7	0.2	0.0	55.8	7.0	1.2	32.7	3.1	0.2	0.0	(11)
165인 이상 66.5 6.3 1.6 22.3 3.1 0.2 0.0 59.2 5.5 1.4 31.0 2.6 0.2 0.0 ( 7) 울산 65.0 9.8 2.5 19.1 2.3 0.9 0.4 59.8 9.1 2.3 25.5 2.1 0.9 0.3 ( 244) 16~20인 65.9 10.4 2.8 17.6 2.0 1.0 0.3 62.2 9.8 2.6 22.2 1.9 1.0 0.3 ( 170) 46~54인 64.1 9.6 1.7 20.8 1.9 0.8 1.1 56.5 8.5 1.5 30.1 1.7 0.7 1.0 ( 33) 73~81인 64.0 7.8 2.3 22.2 3.5 0.0 0.1 55.7 6.7 2.0 32.4 3.1 0.0 0.1 ( 18) 93~101인 62.1 7.6 1.2 24.7 3.6 0.7 0.1 51.0 6.2 1.0 38.1 3.1 0.6 0.1 ( 17) 120~128인 59.6 7.3 2.0 27.5 3.6 0.0 0.0 47.8 5.9 1.6 41.8 2.9 0.0 0.0 ( 3)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 1)	120~128인	65.4	9.3	0.9	21.2	2.9	0.3	0.0	49.2	7.1	0.7	40.5	2.3	0.2	0.0	( 10)
윤산 65.0 9.8 2.5 19.1 2.3 0.9 0.4 59.8 9.1 2.3 25.5 2.1 0.9 0.3 (244) 16~20인 65.9 10.4 2.8 17.6 2.0 1.0 0.3 62.2 9.8 2.6 22.2 1.9 1.0 0.3 (170) 46~54인 64.1 9.6 1.7 20.8 1.9 0.8 1.1 56.5 8.5 1.5 30.1 1.7 0.7 1.0 (33) 73~81인 64.0 7.8 2.3 22.2 3.5 0.0 0.1 55.7 6.7 2.0 32.4 3.1 0.0 0.1 (18) 93~101인 62.1 7.6 1.2 24.7 3.6 0.7 0.1 51.0 6.2 1.0 38.1 3.1 0.6 0.1 (17) 120~128인 59.6 7.3 2.0 27.5 3.6 0.0 0.0 47.8 5.9 1.6 41.8 2.9 0.0 0.0 (3)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1)	138~146인	-	-	-	-	-	-	-	-	-	-	-	-	-	-	-
16~20인 65.9 10.4 2.8 17.6 2.0 1.0 0.3 62.2 9.8 2.6 22.2 1.9 1.0 0.3 (170) 46~54인 64.1 9.6 1.7 20.8 1.9 0.8 1.1 56.5 8.5 1.5 30.1 1.7 0.7 1.0 (33) 73~81인 64.0 7.8 2.3 22.2 3.5 0.0 0.1 55.7 6.7 2.0 32.4 3.1 0.0 0.1 (18) 93~101인 62.1 7.6 1.2 24.7 3.6 0.7 0.1 51.0 6.2 1.0 38.1 3.1 0.6 0.1 (17) 120~128인 59.6 7.3 2.0 27.5 3.6 0.0 0.0 47.8 5.9 1.6 41.8 2.9 0.0 0.0 (3)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1)	165인 이상	66.5	6.3	1.6	22.3	3.1	0.2	0.0	59.2	5.5	1.4	31.0	2.6	0.2	0.0	( 7)
46~54인 64.1 9.6 1.7 20.8 1.9 0.8 1.1 56.5 8.5 1.5 30.1 1.7 0.7 1.0 ( 33) 73~81인 64.0 7.8 2.3 22.2 3.5 0.0 0.1 55.7 6.7 2.0 32.4 3.1 0.0 0.1 ( 18) 93~101인 62.1 7.6 1.2 24.7 3.6 0.7 0.1 51.0 6.2 1.0 38.1 3.1 0.6 0.1 ( 17) 120~128인 59.6 7.3 2.0 27.5 3.6 0.0 0.0 47.8 5.9 1.6 41.8 2.9 0.0 0.0 ( 3)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 1)	울산	65.0	9.8	2.5	19.1	2.3	0.9	0.4	59.8	9.1	2.3	25.5	2.1	0.9	0.3	( 244)
73~81인 64.0 7.8 2.3 22.2 3.5 0.0 0.1 55.7 6.7 2.0 32.4 3.1 0.0 0.1 ( 18) 93~101인 62.1 7.6 1.2 24.7 3.6 0.7 0.1 51.0 6.2 1.0 38.1 3.1 0.6 0.1 ( 17) 120~128인 59.6 7.3 2.0 27.5 3.6 0.0 0.0 47.8 5.9 1.6 41.8 2.9 0.0 0.0 ( 3)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 1)	16~20인	65.9	10.4	2.8	17.6	2.0	1.0	0.3	62.2	9.8	2.6	22.2	1.9	1.0	0.3	(170)
93~101인 62.1 7.6 1.2 24.7 3.6 0.7 0.1 51.0 6.2 1.0 38.1 3.1 0.6 0.1 ( 17) 120~128인 59.6 7.3 2.0 27.5 3.6 0.0 0.0 47.8 5.9 1.6 41.8 2.9 0.0 0.0 ( 3)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 1)	46~54인	64.1	9.6	1.7	20.8	1.9	0.8	1.1	56.5	8.5	1.5	30.1	1.7	0.7	1.0	( 33)
120~128인 59.6 7.3 2.0 27.5 3.6 0.0 0.0 47.8 5.9 1.6 41.8 2.9 0.0 0.0 ( 3)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 1)	73~81인	64.0	7.8	2.3	22.2	3.5	0.0	0.1	55.7	6.7	2.0	32.4	3.1	0.0	0.1	( 18)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 1)	93~101인	62.1	7.6	1.2	24.7	3.6	0.7	0.1	51.0	6.2	1.0	38.1	3.1	0.6	0.1	( 17)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 1)	120~128인	59.6	7.3	2.0	27.5	3.6	0.0	0.0	47.8	5.9	1.6	41.8	2.9	0.0	0.0	( 3)
165인 이상 56.1 9.8 0.8 25.2 8.2 0.0 0.0 46.8 8.1 0.6 37.3 7.2 0.0 0.0 ( 2)	138~146인	55.4	9.4	2.4	22.6	0.6	9.6	0.0	43.1	7.3	1.8	39.8	0.5	7.5	0.0	
	165인 이상	56.1	9.8	0.8	25.2	8.2	0.0	0.0	46.8	8.1	0.6	37.3	7.2	0.0	0.0	( 2)

(부표 Ⅱ-2-3 계속)

		<b>コ</b> ノ	타 필.	요경비	제외					타 필.	요경비	포함				
구분	인건 비	관리 운영 비	업무추 진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 타	인건비	관리 운영 비		수 사업 비	-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 타	(=	수)
세종	64.8	10.3	1.7	19.2	2.2	0.8	1.0	60.0	9.5	1.5	25.1	2.1	0.8	0.9	(	31)
16~20인	66.3	10.4	1.7	17.5	1.6	1.0	1.5	63.1	9.9	1.6	21.4	1.6	1.0	1.5	(	20)
46~54인	73.3	7.3	1.8	17.5	0.0	0.0	0.0	61.8	6.2	1.5	30.6	0.0	0.0	0.0	(	2)
73~81인	60.8	10.2	3.6	22.8	2.5	0.0	0.0	52.8	8.9	3.2	32.9	2.2	0.0	0.0	(	1)
93~101인	63.2	11.1	1.6	21.9	0.3	1.8	0.0	54.4	9.5	1.4	32.9	0.3	1.6	0.0	(	3)
120~128인	57.2	13.7	1.1	22.8	5.2	0.0	0.0	51.5	12.7	1.0	29.8	5.0	0.0	0.0	(	3)
138~146인	51.3	8.7	2.0	24.1	13.9	0.0	0.0	42.4	7.2	1.7	37.3	11.5	0.0	0.0	(	1)
165인 이상	63.3	3.1	0.5	29.2	3.9	0.0	0.0	61.6	3.0	0.5	31.1	3.8	0.0	0.0	(	1)
경기	66.8	8.5	2.1	19.8	1.2	1.3	0.3	58.8	7.4	1.8	29.4	1.1	1.2	0.3	(3,5	573)
16~20인	67.8	8.6	2.2	18.6	1.0	1.4	0.4	60.8	7.7	2.0	27.0	0.9	1.3	0.3	(2,8	829)
46~54인	64.4	7.6	1.9	22.7	1.8	1.4	0.2	52.7	6.2	1.5	36.7	1.6	1.2	0.1	( 2	280)
73~81인	62.3	8.6	1.5	24.2	2.5	0.9	0.0	51.3	7.1	1.3	37.4	2.1	0.8	0.0	( 1	176)
93~101인	63.2	8.6	1.1	24.2	2.0	0.6	0.2	51.6	7.0	0.9	38.2	1.6	0.5	0.2	( 1	126)
120~128인	62.2	7.8	0.9	26.5	2.2	0.4	0.1	47.9	6.0	0.7	43.2	1.8	0.3	0.1	(	53)
138~146인	61.7	8.5	0.8	25.5	3.2	0.1	0.2	47.3	6.5	0.6	43.0	2.4	0.1	0.2	(	32)
165인 이상	59.6	7.2	1.2	27.6	2.9	1.4	0.0	46.6	5.4	0.9	43.8	2.2	1.1	0.0	(	77)
강원	66.5	9.9	2.0	18.1	2.2	1.0	0.3	62.7	9.3	1.9	22.8	2.0	0.9	0.3	( 2	290)
16~20인	67.3	10.2	2.2	17.4	1.4	1.1	0.4	64.8	9.8	2.2	20.5	1.4	1.1	0.3	( 2	211)
46~54인	64.7	9.1	2.0	20.8	2.7	0.6	0.1	58.0	8.2	1.7	28.9	2.5	0.5	0.1	(	21)
73~81인	64.1	9.1	1.7	18.8	5.5	0.5	0.3	57.1	8.2	1.5	27.5	5.1	0.5	0.2	(	32)
93~101인	65.0	9.9	1.2	20.5	2.5	0.9	0.0	55.7	8.6	1.0	31.9	2.2	0.8	0.0	(	14)
120~128인	61.9	9.9	0.9	23.3	3.9	0.0	0.1	53.7	8.7	0.8	33.4	3.4	0.0	0.0	(	5)
138~146인	65.4	7.4	0.6	16.5	10.0	0.0	0.0	59.4	6.7	0.6	24.1	9.1	0.0	0.0	(	4)
165인 이상	66.7	9.1	0.1	22.8	0.9	0.4	0.0	58.1	8.0	0.1	32.6	0.8	0.4	0.0	(	3)
충북	66.6	10.0	2.3	17.9	2.4	0.7	0.1	62.3	9.3	2.2	23.2	2.2	0.7	0.1	(33	32)
16~20인	68.7	10.2	2.6	16.4	1.3	0.7	0.1	65.9	9.8	2.5	19.8	1.3	0.6	0.1	(24	42)
46~54인	65.5	9.5	2.0	19.2	3.2	0.5	0.1	57.9	8.4	1.8	28.6	2.8	0.4	0.1	( :	19)
73~81인	59.1	9.8	1.7	21.0	7.9	0.5	0.0	52.8	8.7	1.6	29.3	7.2	0.4	0.0	( 2	27)
93~101인	60.7	8.0	1.1	21.6	6.2	2.5	0.0	53.3	7.1	0.9	30.4	6.0	2.3	0.0	( :	17)
120~128인	61.3	9.2	1.4	23.2	4.5	0.1	0.4	50.8	7.7	1.1	36.5	3.5	0.1	0.3	(	7)
138~146인	58.8	11.7	1.2	23.5	3.5	1.3	0.0	51.2	10.4	1.0	33.1	3.1	1.1	0.0	(	5)
165인 이상	59.2	9.2	1.1	27.3	2.6	0.6	0.1	47.0	7.4	0.9	42.1	2.1	0.5	0.1	( :	15)
충남	67.2	8.8	2.1	18.9	1.4	0.9	0.7	61.7	8.1	2.0	25.5	1.2	0.9	0.6	(49	90)
16~20인	68.6	9.0	2.3	17.4	0.9	1.1	0.8	64.5	8.5	2.1	22.3	0.8	1.0	0.7	(38	82)
46~54인	65.1	7.5	1.7	21.6	3.2	0.4	0.4	55.6	6.4	1.6	32.8	2.9	0.4	0.4	١,	34)
73~81인	63.1	8.9	1.8	23.0	2.7	0.2	0.3	53.1	7.5	1.5	35.1	2.4	0.2	0.2	( 3	32)
93~101인	60.1	9.6	1.3	26.4	2.2	0.1	0.2	49.8	7.9	1.1	39.1	1.9	0.1	0.2	( :	17)
120~128인	64.3	7.9	0.7	22.5	4.3	0.1	0.1	49.5	5.9	0.5	40.2	3.7	0.1	0.1	(	5)
138~146인	63.9	7.3	1.0	24.6	3.2	0.1	0.0	54.8	6.2	0.9	35.4	2.7	0.1	0.0	(	5)
165인 이상	53.0	7.5	1.4	32.1	4.2	1.7	0.0	41.4	5.8	1.1	46.9	3.4	1.3	0.0	( :	15)

(부표 Ⅱ-2-3 계속)

(7 34 11-22			타 필요	<u> </u>	제외				7]	타 필요	.경비	포함			
구분	인건 비	관리 운영 비	업무추 진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 타	인건비	관리	업무추 진비		재산 조성 비	전출 금	기 타	(수)
전북	67.3	10.2	2.0	16.6	2.2	1.4	0.3	63.4	9.6	1.9	21.4	2.1	1.3	0.3	(320)
16~20인	68.3	10.7	2.1	15.3	1.4	1.7	0.3	66.0	10.3	2.1	18.2	1.4	1.7	0.3	(235)
46~54인	68.7	8.4	1.5	13.9	6.6	0.5	0.3	63.9	7.9	1.4	19.8	6.3	0.5	0.3	(20)
73~81인	62.9	8.4	1.5	20.7	6.0	0.4	0.1	54.7	7.4	1.3	30.9	5.4	0.3	0.1	(33)
93~101인	63.8	9.6	1.7	23.4	1.2	0.3	0.0	53.2	8.1	1.4	36.0	1.0	0.3	0.0	(23)
120~128인	72.5	6.1	0.7	19.1	0.6	1.0	0.0	66.2	5.5	0.6	26.3	0.6	0.9	0.0	(2)
138~146인	62.5	10.8	1.0	20.9	4.8	0.0	0.0	55.7	9.6	0.9	29.6	4.2	0.0	0.0	( 3)
165인 이상	59.6	7.6	0.6	31.0	1.2	0.0	0.0	46.5	5.9	0.4	46.1	1.1	0.0	0.0	(4)
전남	67.2	9.9	1.9	17.0	2.2	1.8	0.1	63.3	9.3	1.8	21.9	2.0	1.7	1.7	(269)
16~20인	69.9	10.3	2.2	14.5	0.9	2.3	0.0	68.1	10.0	2.1	16.7	0.9	2.3	2.3	(171)
46~54인	66.3	11.7	1.4	18.0	1.8	0.0	0.8	61.0	10.8	1.2	24.7	1.6	0.0	0.0	(24)
73~81인	62.0	8.7	1.7	20.3	7.4	0.0	0.0	55.4	7.8	1.5	28.5	6.8	0.0	0.0	(24)
93~101인	62.3	9.6	1.5	21.2	2.9	2.5	0.0	54.9	8.4	1.4	30.2	2.6	2.5	2.5	(17)
120~128인	64.6	8.5	1.0	23.3	2.2	0.5	0.0	54.1	7.1	0.9	35.7	1.8	0.4	0.4	(12)
138~146인	57.1	7.0	1.0	20.6	14.2	0.0	0.1	49.3	6.1	0.8	31.2	12.5	0.0	0.0	(3)
165인 이상	58.5	6.7	1.4	26.0	5.4	1.9	0.1	47.4	5.5	1.1	40.2	4.3	1.5	1.5	(18)
경북	65.1	10.5	2.4	18.6	1.4	1.7	0.3	62.0	10.0	2.3	22.5	1.3	1.7	0.3	(371)
16~20인	65.1	11.0	2.7	18.0	0.9	2.1	0.3	62.9	10.6	2.6	20.7	0.9	2.0	0.2	(272)
46~54인	67.3	9.8	1.5	18.1	2.7	0.6	0.0	62.5	9.1	1.4	23.8	2.6	0.5	0.0	(40)
73~81인	62.7	9.5	1.5	19.4	5.0	1.4	0.6	57.3	8.6	1.4	26.4	4.5	1.3	0.5	(27)
93~101인	64.4	8.4	1.4	22.9	1.0	0.7	1.2	57.7	7.5	1.3	30.7	0.9	0.7	1.2	(19)
120~128인	61.2	9.4	2.5	23.2	1.1	0.7	1.9	51.9	8.0	2.1	34.7	0.9	0.6	1.7	(4)
138~146인	63.7	6.2	1.5	27.0	1.6	0.0	0.0	53.3	5.1	1.3	38.9	1.4	0.0	0.0	( 3)
165인 이상	67.9	5.9	1.5	23.0	0.3	1.4	0.0	61.0	5.1	1.5	31.3	0.3	0.9	0.0	( 6)
경남	66.3	10.1	2.3	18.4	1.4	1.2	0.2	61.2	9.4	2.1	24.7	1.3	1.1	0.1	(790)
16~20인	66.7	10.5	2.5	17.5	1.2	1.4	0.2	62.9	9.9	2.4	22.2	1.1	1.3	0.2	(600)
46~54인	66.9	8.8	1.6	19.2	2.4	1.0	0.1	59.0	7.8	1.4	28.7	2.2	0.9	0.1	(56)
73~81인	65.6	9.4	1.9	21.5	1.4	0.0	0.3	56.2	8.0	1.5	32.9	1.2	0.0	0.2	(53)
93~101인	64.6	9.0	1.4	21.3	2.6	1.0	0.2	54.4	7.6	1.2	33.6	2.2	0.9	0.2	(44)
120~128인	67.6	7.4	0.9	20.4	1.3	2.5	0.0	54.9	6.1	0.8	35.1	1.0	2.1	0.0	(10)
138~146인	64.4	9.2	1.0	21.9	3.3	0.2	0.1	53.2	7.8	0.8	35.2	2.8	0.1	0.0	(12)
165인 이상	58.0	7.6	3.1	28.2	1.9	0.9	0.1	48.7	6.4	2.9	39.6	1.6	0.7	0.1	( 15)
제주	68.7	9.0	1.8	17.5	2.2	0.6	0.2	65.0	8.5	1.8	22.0	2.0	0.6	0.2	(127)
16~20인	71.6	9.3	2.4	14.7	0.5	1.2	0.3	70.2	9.1	2.4	16.5	0.4	1.2	0.3	(60)
46~54인	68.1	7.8	1.6	20.2	2.2	0.0	0.0	62.9	7.2	1.5	26.3	2.1	0.0	0.0	(15)
73~81인	66.4	10.3	1.0	20.8	1.5	0.1	0.0	60.3	9.3	0.9	28.2	1.3	0.0	0.0	(12)
93~101인	67.2	8.5	1.5	18.7	3.8	0.2	0.2	61.2	7.7	1.4	25.9	3.5	0.1	0.2	(21)
120~128인	64.6	8.7	1.7	21.0	3.9	0.0	0.0	59.3	8.0	1.5	27.7		0.0	0.0	(6)
138~146인	62.7	8.0	0.7	15.9		0.0	0.0	58.4	7.5	0.6	21.7		0.0	0.0	( 5)
165인 이상		9.4	0.9	23.2	3.5	0.7	0.0	55.6	8.3	0.8	31.5	3.2	0.6	0.0	(8)
<u>100년</u> 10													0.0	0.0	<u> </u>

〈부표 II-2-4〉 어린이집 규모별 인건비 세출 분포

단위: %(개소)

												<u></u> 날위: %	<u> ((개소)</u>
		기	타 필.	요경비 저	외			기	타 필요		함		
구분	기본 급	일용 잡급	제수 당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사회 보험 부담 비용	기타 후생 경비	기본 급	일용 잡급	제수 당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사회 보험 부담 비용	기타 후생 경비	(수)
서울	51.5	1.0	1.4	3.7	5.2	1.3	55.3	1.1	1.5	3.9	5.6	1.4	(2,194)
16~20인	54.7	1.1	1.1	3.6	5.5	1.3	57.1	1.1	1.2	3.8	5.8	1.4	(1,507)
46~54인	47.0	0.7	2.0	3.8	4.6	1.1	54.0	0.9	2.2	4.4	5.3	1.3	(270)
73~81인	43.5	0.7	2.1	3.5	4.8	1.4	50.3	0.9	2.4	4.0	5.5	1.6	(238)
93~101인	42.2	0.7	1.9	3.2	4.5	1.2	49.2	0.9	2.2	3.7	5.3	1.4	( 99)
120~128인	40.3	1.1	1.6	5.9	4.4	1.1	48.6	1.2	1.8	6.7	5.2	1.3	( 27)
138~146인	43.1	1.5	1.6	4.7	5.4	1.1	49.3	1.6	1.8	5.3	6.2	1.3	( 17)
165인이상	41.7	1.2	3.4	4.6	3.3	1.2	47.3	1.3	3.7	5.1	3.8	1.4	( 36)
부산	50.0	1.1	1.5	3.8	6.0	1.2	53.9	1.2	1.7	4.1	6.5	1.2	( 567)
16~20인	52.8	1.0	1.2	3.8	6.5	1.2	55.5	1.0	1.2	4.0	6.9	1.3	( 377)
46~54인	46.2	1.8	2.0	3.5	5.2	1.1	52.1	2.1	2.3	3.9	5.8	1.3	( 83)
73~81인	45.2	1.3	1.8	4.1	4.4	1.1	51.2	1.5	2.1	4.6	5.0	1.2	(40)
93~101인	41.5	1.4	2.7	4.4	5.4	1.1	47.9	1.6	3.1	5.0	6.2	1.2	( 35)
120~128인	43.5	1.6	2.3	4.2	4.2	1.0	50.2	1.9	2.8	4.8	4.9	1.2	( 16)
138~146인	-	-	-	-	-	-	-	-	-	-	-	-	-
165인이상	42.4	0.3	3.0	3.8	5.6	0.7	48.4	0.3	3.3	4.3	6.2	0.8	( 16)
인천	47.6	0.9	1.2	3.3	5.2	1.2	53.6	1.0	1.4	3.7	5.8	1.3	(731)
16~20인	49.9	0.8	1.0	3.3	5.6	1.2	55.2	0.9	1.1	3.6	6.1	1.3	(536)
46~54인	43.9	0.8	1.5	3.3	4.4	1.2	51.9	1.0	1.8	3.9	5.2	1.4	( 82)
73~81인	39.4	1.1	2.2	3.3	4.2	1.1	47.3	1.4	2.6	3.9	5.0	1.3	( 36)
93~101인	40.5	1.4	1.2	3.2	3.8	1.0	49.2	1.7	1.4	3.9	4.7	1.2	( 37)
120~128인	41.1	1.5	2.1	2.1	4.2	1.4	50.1	1.9	2.6	2.6	5.1	1.7	( 14)
138~146인	40.3	0.3	0.2	4.4	5.0	0.8	49.9	0.4	0.3	5.4	6.1	1.0	( 5)
165인이상	33.8	1.0	2.6	2.7	3.0	1.1	42.3	1.3	3.2	3.5	3.8	1.4	( 21)
광주	50.5	1.7	1.0	3.3	5.2	1.1	53.9	1.9	1.1	3.6	5.6	1.2	( 277)
16~20인	55.0	1.0	0.9	3.4	5.5	1.2	56.5	1.0	0.9	3.5	5.6	1.2	( 191)
46~54인	50.4	1.9	0.5	3.6	5.5	0.8	55.5	2.0	0.5	3.9	6.0	1.0	( 18)
73~81인	39.4	1.5	0.3	3.5	4.6	0.8	48.2	1.8	0.3	4.3	5.7	1.0	( 14)
93~101인	40.0	4.4	1.1	3.6	4.6	0.9	47.2	5.2	1.3	4.2	5.4	1.1	( 17)
120~128인	39.2	2.8	1.6	2.7	5.1	1.0	46.5	3.3	1.9	3.2	6.1	1.2	( 7)
138~146인	36.7	5.2	1.8	2.7	4.5	0.6	45.4	6.7	2.3	3.4	5.5	0.7	( 7)
165인이상	36.1	3.7	1.6	2.5	3.8	1.4	44.6	4.4	1.9	3.1	4.7	1.8	( 23)
대구	48.5	1.1	0.9	3.7	6.2	1.6	52.6	1.2	1.0	4.0	6.7	1.8	(258)
16~20인	52.3	1.0	0.7	3.7	6.3	1.8	54.7	1.0	0.7	3.9	6.6	1.9	( 154)
46~54인	46.2	1.4	0.9	4.2	6.7	1.2	52.6	1.6	1.0	4.7	7.6	1.3	( 37)
73~81인	45.5	0.2	0.8	3.6	6.4	1.7	51.6	0.2	0.8	4.1	7.2	1.8	( 21)
93~101인	42.3	2.3	1.3	3.8	5.4	1.0	48.3	2.5	1.5	4.4	6.2	1.1	( 18)
120~128인	39.7	1.0	1.9	4.0	5.6	1.3	48.6	1.2	2.4	4.9	6.8	1.6	( 8)
138~146인	34.7	1.9	1.2	2.4	5.1	2.1	43.2	2.4	1.5	3.0	6.4	2.5	( 9)
165인이상	35.8	1.7	1.9	3.5	5.0	1.9	41.5	1.9	2.1	4.1	5.8	2.3	( 11)

(부표 Ⅱ-2-4 계속)

=		フ	타 필요	경비 저	외				]타 필요	L경비 포	함		
			, , ===	퇴직금	사회	احاد			, , ==	퇴직금	사회	7) []	1
구분	기본 급	일용 잡급	제수당	및 퇴직 적립금	보험 부담 비용	기타 후생 경비	기본 급	일용 잡급	제수당	및 퇴직 적립금	보험 부담 비용	기타 후생 경비	(수)
대구	48.5	1.1	0.9	3.7	6.2	1.6	52.6	1.2	1.0	4.0	6.7	1.8	(258)
16~20인	52.3	1.0	0.7	3.7	6.3	1.8	54.7	1.0	0.7	3.9	6.6	1.9	(154)
46~54인	46.2	1.4	0.9	4.2	6.7	1.2	52.6	1.6	1.0	4.7	7.6	1.3	( 37)
73~81인	45.5	0.2	0.8	3.6	6.4	1.7	51.6	0.2	0.8	4.1	7.2	1.8	(21)
93~101인	42.3	2.3	1.3	3.8	5.4	1.0	48.3	2.5	1.5	4.4	6.2	1.1	( 18)
120~128인	39.7	1.0	1.9	4.0	5.6	1.3	48.6	1.2	2.4	4.9	6.8	1.6	(8)
138~146인	34.7	1.9	1.2	2.4	5.1	2.1	43.2	2.4	1.5	3.0	6.4	2.5	( 9)
165인이상	35.8	1.7	1.9	3.5	5.0	1.9	41.5	1.9	2.1	4.1	5.8	2.3	( 11)
대전	45.3	2.0	6.3	3.4	5.2	1.5	49.2	2.1	6.9	3.7	5.6	1.6	(458)
16~20인	46.2	2.0	6.6	3.4	5.4	1.5	49.4	2.1	7.0	3.6	5.7	1.6	(381)
46~54인	42.6	1.9	5.7	4.1	4.1	1.5	49.0	2.3	6.7	4.7	4.8	1.7	( 33)
73~81인	40.3	1.3	5.2	3.0	4.5	1.1	48.0	1.5	6.3	3.6	5.4	1.3	( 16)
93~101인	40.7	1.8	3.5	3.3	4.9	1.7	48.1	2.2	4.2	3.9	5.7	2.0	(11)
120~128인	35.2	1.5	4.4	2.6	4.0	1.5	46.5	2.0	6.1	3.5	5.2	2.0	( 10)
138~146인	-	-	-	-	-	-	-	-	-	-	-	-	-
165인이상	41.8	3.4	6.5	2.9	3.8	0.8	47.2	3.7	7.2	3.3	4.3	0.9	( 7)
울산	45.5	1.6	1.7	3.1	6.2	1.6	49.5	1.8	1.8	3.4	6.8	1.7	(244)
16~20인	47.7	1.5	1.9	3.0	6.4	1.6	50.5	1.6	2.0	3.2	6.8	1.7	(170)
46~54인	42.2	1.6	1.4	3.4	6.5	1.5	47.9	1.8	1.5	3.9	7.3	1.7	( 33)
73~81인	42.4	2.1	0.6	3.2	6.2	1.2	48.7	2.5	0.7	3.7	7.1	1.4	( 18)
93~101인	37.6	1.4	1.6	3.0	5.2	2.2	45.9	1.7	1.9	3.7	6.2	2.7	( 17)
120~128인	36.1	4.0	0.0	3.5	3.1	1.1	44.9	5.2	0.0	4.4	3.8	1.3	( 3)
138~146인	20.1	7.1	5.9	3.0	4.4	2.6	25.9	9.2	7.6	3.8	5.6	3.3	( 1)
165인이상	32.8	3.5	0.1	4.6	3.4	2.4	39.2	4.3	0.1	5.6	4.1	2.8	( 2)
세종	48.8	0.9	2.1	3.1	4.1	1.0	52.8	1.0	2.2	3.4	4.4	1.1	( 31)
16~20인	52.9	0.5	1.4	3.1	4.0	1.1	55.6	0.5	1.5	3.3	4.3	1.2	( 20)
46~54인	51.6	1.6	0.0	3.6	4.4	0.6	61.3	1.9	0.0	4.3	5.1	0.8	( 2)
73~81인	36.6	7.1	0.2	2.3	6.2	0.4	42.2	8.1	0.3	2.6	7.1	0.5	( 1)
93~101인	42.9	0.0	2.3	2.7	5.2	1.3	49.9	0.0	2.6	3.1	6.0	1.5	( 3)
120~128인	41.5	0.4	1.9	3.2	3.8	0.8	46.4	0.4	2.0	3.5	4.1	0.8	( 3)
138~146인	33.7	0.0	3.2	2.5	2.8	0.2	40.8	0.0	3.9	3.0	3.4	0.3	( 1)
165인이상	28.9	6.7	20.6	4.8	0.0	0.6	29.7	6.9	21.2	4.9	0.0	0.6	( 1)
경기	46.1	1.4	1.2	3.6	5.0	1.4	52.4	1.6	1.4	4.1	5.7	1.6	(3,573)
16~20인	48.0	1.3	1.1	3.6	5.2	1.5	53.6	1.4	1.3	4.1	5.8	1.7	(2,829)
46~54인	41.2	1.4	1.5	3.2	4.2	1.1	50.4	1.8	1.8	3.9	5.1	1.4	(280)
73~81인	38.3	2.1	2.0	3.5	4.1	1.4	46.4	2.7	2.3	4.3	5.0	1.6	(176)
93~101인	38.8	1.8	1.6	4.1	4.1	1.3	47.6	2.2	1.9	4.9	5.0	1.6	(126)
120~128인	35.2	2.3	1.5	3.9	3.9	1.1	45.7	3.1	1.9	4.9	5.1	1.4	( 53)
138~146인	35.3	1.7	1.7	3.1	4.2	1.3	46.2	2.3	2.0	4.1	5.4	1.7	( 32)
165인이상	35.5	1.9	1.7	3.0	3.2	1.2	45.0	2.5	2.2	4.0	4.2	1.6	( 77)

(부표 Ⅱ-2-4 계속)

(早並 Ⅱ-2	-4 계	녹)											
		기	타 필요	요경비 저	의			기)	타 필요	1.경비 포	함		
구분	기본 급	일용 잡급	제 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 보험 부담 비용	기타 후생 경비	기본 급	일용 잡급	제 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 보험 부담 비용	기타 후생 경비	(수)
강원	48.8	1.9	1.8	3.2	5.5	1.5	51.8	2.1	1.9	3.4	5.8	1.6	(290)
16~20인	50.8	2.1	1.7	2.9	5.7	1.5	52.7	2.1	1.8	3.1	6.0	1.6	(211)
46~54인	44.7	1.9	2.0	2.8	5.2	1.4	49.9	2.1	2.3	3.1	5.7	1.5	(21)
73~81인	43.3	1.6	1.9	3.9	4.8	1.7	48.7	1.7	2.1	4.4	5.3	1.9	(32)
93~101인	43.0	0.9	3.0	3.4	4.5	0.9	50.3	1.0	3.4	3.9	5.3	1.1	(14)
120~128인	41.2	1.5	1.4	3.6	5.4	0.7	47.5	1.8	1.6	4.1	6.2	0.7	( 5)
138~146인	41.6	1.1	1.8	9.0	4.9	1.0	46.1	1.1	2.1	9.6	5.4	1.0	(4)
165인이상	43.5	4.8	0.7	3.8	4.6	0.7	49.6	5.9	0.8	4.3	5.3	0.9	(3)
충북	48.0	2.3	1.8	4.0	5.0	1.3	51.2	2.5	1.9	4.2	5.3	1.4	(332)
16~20인	51.1	2.5	1.8	4.2	5.1	1.3	53.2	2.6	1.8	4.4	5.4	1.3	(242)
46~54인	44.1	2.6	2.3	3.4	4.5	0.9	49.8	3.0	2.9	3.8	5.0	1.0	(19)
73~81인	41.2	0.9	1.5	3.2	4.6	1.4	46.1	1.0	1.7	3.6	5.2	1.5	(27)
93~101인	40.1	1.2	2.1	3.9	4.7	1.1	45.9	1.4	2.4	4.4	5.4	1.2	(17)
120~128인	35.0	4.1	2.8	3.2	4.8	0.9	42.5	4.7	3.3	3.9	5.8	1.1	(7)
138~146인	37.4	3.1	0.3	3.1	5.1	2.3	42.8	3.5	0.3	3.6	5.9	2.6	( 5)
165인이상	34.0	2.8	2.1	3.2	3.6	1.3	42.8	3.5	2.4	3.9	4.7	1.8	(15)
충남	49.3	0.9	1.0	4.0	4.9	1.6	53.7	1.0	1.1	4.4	5.3	1.7	(490)
16~20인	51.8	0.9	0.8	4.2	5.1	1.7	55.1	0.9	0.9	4.5	5.5	1.8	(382)
46~54인	44.5	1.3	1.2	3.4	4.1	1.0	51.9	1.6	1.4	4.1	4.9	1.2	(34)
73~81인	41.8	1.1	1.9	2.9	3.7	1.7	49.6	1.3	2.4	3.5	4.4	2.0	(32)
93~101인	38.2	0.8	1.4	3.4	5.1	0.8	46.2	1.0	1.7	4.1	6.1	1.0	(17)
120~128인	39.9	1.0	1.8	2.5	3.5	0.9	51.7	1.3	2.1	3.3	4.6	1.2	( 5)
138~146인	43.8	0.0	0.4	3.1	4.3	3.1	51.1	0.0	0.4	3.7	5.0	3.5	( 5)
165인이상	30.2	1.0	1.2	4.8	3.3	1.0	38.8	1.3	1.5	5.9	4.2	1.3	(15)
전북	49.6	1.2	1.4	4.1	5.9	1.3	52.7	1.3	1.4	4.4	6.3	1.4	(320)
16~20인	51.9	1.4	1.4	4.1	6.0	1.3	53.8	1.4	1.4	4.2	6.2	1.3	(235)
46~54인	48.6	1.0	1.2	4.7	6.4	2.0	52.3	1.1	1.3	5.1	6.9	2.1	(20)
73~81인	43.0	0.6	1.4	3.9	4.8	0.9	49.5	0.7	1.6	4.5	5.5	1.1	(33)
93~101인	40.7	0.7	1.0	3.6	5.6	1.7	49.0	0.8	1.1	4.3	6.6	2.0	(23)
120~128인	41.2	2.1	1.2	14.9	5.5	1.4	45.8	2.1	1.3	15.5	6.2	1.5	(2)
138~146인	42.5	0.3	2.1	3.6	6.5	0.7	47.6	0.4	2.4	4.0	7.3	0.8	(3)
165인이상	34.0	1.3	2.2	2.8	5.5	0.7	43.7	1.4	2.9	3.7	7.0	0.9	(4)
전남	50.0	1.1	1.3	3.8	5.9	1.2	53.1	1.2	1.4	4.1	6.2	1.3	(269)
16~20인	54.1	1.0	1.2	4.0	6.4	1.3	55.6	1.0	1.3	4.1	6.6	1.3	(171)
46~54인	48.7	1.0	1.6	3.5	5.3	1.0	52.8	1.2	1.7	3.7	5.7	1.1	(24)
73~81인	43.9	1.3	1.3	3.3	4.7	1.0	49.1	1.5	1.4	3.6	5.2	1.1	(24)
93~101인	44.2	1.1	0.5	3.5	4.7	0.8	50.2	1.3	0.5	4.0	5.3	0.9	(17)
120~128인	40.3	0.9	2.6	4.5	4.6	1.2	47.7	1.1	3.3	5.5	5.6	1.5	(12)
138~146인	37.5	1.3	0.2	3.6	5.5	1.1	43.5	1.6	0.2	4.1	6.4	1.3	(3)
165인이상	34.8	1.6	1.2	3.4	4.8	1.7	42.9	1.9	1.5	4.1	6.0	2.1	(18)

(부표 Ⅱ-2-4 계속)

		フ	]타 필요	고경비 저	외			フ	]타 필요	L경비 포	함		
구분	기본 급	일용 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사회 보험 부담 비용	기타 후생 경비	기본 급	일용 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사회 보험 부담 비용	기타 후생 경비	(宁)
경북	48.6	0.9	1.3	4.0	5.5	1.7	51.0	1.0	1.3	4.2	5.8	1.8	(371)
16~20인	49.8	0.7	1.1	4.0	5.6	1.7	51.5	0.8	1.1	4.2	5.8	1.7	(272)
46~54인	48.0	1.1	1.5	3.6	6.0	2.2	51.7	1.2	1.7	3.9	6.4	2.4	(40)
73~81인	43.7	1.9	1.8	3.4	5.0	1.5	47.7	2.0	2.0	3.8	5.5	1.6	(27)
93~101인	45.0	1.9	1.7	4.2	4.2	0.8	50.2	2.1	1.9	4.7	4.7	0.8	(19)
120~128인	34.4	2.0	4.6	2.7	5.5	2.7	40.5	2.3	5.5	3.2	6.5	3.2	(4)
138~146인	39.3	0.8	1.5	2.7	8.0	0.9	47.0	1.1	1.9	3.3	9.3	1.1	(3)
165인이상	46.7	1.6	0.6	5.8	4.9	1.4	52.2	1.8	0.6	6.3	5.6	1.4	( 6)
경남	48.1	1.1	1.6	3.4	5.7	1.3	52.1	1.2	1.8	3.7	6.2	1.4	(790)
16~20인	49.9	1.1	1.4	3.3	5.8	1.4	52.9	1.1	1.5	3.6	6.2	1.5	(600)
46~54인	46.0	1.2	1.6	3.6	5.5	1.1	52.2	1.4	1.7	4.0	6.2	1.3	(56)
73~81인	43.7	1.0	2.2	3.2	5.2	0.9	51.0	1.2	2.5	3.7	6.1	1.1	(53)
93~101인	40.9	1.4	1.8	3.7	5.5	1.1	48.5	1.7	2.2	4.4	6.6	1.3	(44)
120~128인	38.2	2.2	5.1	3.2	5.4	0.8	47.0	2.7	6.4	3.9	6.5	1.0	(10)
138~146인	37.8	0.2	3.2	5.7	5.1	1.2	45.5	0.3	4.1	6.9	6.2	1.5	(12)
165인이상	36.8	1.1	2.6	3.2	4.2	0.8	43.5	1.4	3.3	3.9	4.9	1.0	(15)
제주	51.2	0.9	2.1	4.0	5.8	1.0	54.1	1.0	2.2	4.3	6.2	1.1	(127)
16~20인	56.4	1.5	1.7	3.9	5.8	0.9	57.6	1.5	1.7	4.0	5.9	0.9	(60)
46~54인	49.5	0.0	2.2	3.7	6.3	1.2	53.7	0.0	2.3	4.0	6.9	1.3	(15)
73~81인	45.3	0.7	3.1	3.7	6.3	1.3	49.9	0.8	3.4	4.0	6.8	1.4	(12)
93~101인	47.2	0.1	2.4	4.4	5.7	1.3	51.8	0.2	2.7	4.9	6.3	1.4	(21)
120~128인	44.0	1.5	2.0	6.4	4.2	1.2	48.2	1.6	2.3	6.8	4.5	1.3	(6)
138~146인	44.2	1.0	3.7	3.8	5.1	0.6	47.3	1.1	4.0	4.1	5.5	0.7	( 5)
165인이상	43.9	0.3	1.3	3.4	6.3	0.3	49.3	0.3	1.5	3.8	7.1	0.3	(8)

〈부표 II-2-5〉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업무추진비 세출 분포

단위: %(개소)

									단위:	<u>%(개소)</u>
구분		출 '있다'	는 비율			운영비	직취	책급		<u> </u>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서울	50.5	70.6	20.4	(2,194)	4,423	(1,107)	12,366	(1,549)	1,598	(447)
16~20인	45.1	69.4	16.4	(1,507)	4,690	(680)	15,720	(1,046)	2,007	(247)
46~54인	60.0	73.7	26.7	(270)	5,821	(162)	6,711	(199)	1,405	(72)
73~81인	63.4	78.6	31.5	(238)	2,814	(151)	5,195	(187)	905	(75)
93~101인	58.6	70.7	28.3	(99)	3,314	( 58)	3,850	(70)	1,040	(28)
120~128인	66.7	48.1	29.6	(27)	1,870	(18)	3,445	(13)	453	(8)
138~146인	64.7	64.7	29.4	(17)	1,735	(11)	2,989	(11)	599	(5)
165인이상	75.0	63.9	33.3	( 36)	3,504	(27)	2,473	(23)	1,154	(12)
부산	40.2	71.1	12.3	(567)	3,979	(228)	12,372	(403)	1,978	(70)
16~20인	35.3	69.5	10.1	(377)	4,504	(133)	15,502	(262)	2,130	(38)
46~54인	48.2	78.3	14.5	(83)	2,417	(40)	8,409	(65)	1,423	(12)
73~81인	50.0	82.5	20.0	(40)	1,704	( 20)	6,532	( 33)	2,924	(8)
93~101인	60.0	57.1	14.3	( 35)	2,666	(21)	4,476	( 20)	1,958	(5)
120~128인	31.3	56.3	12.5	(16)	16,125	( 5)	4,577	( 9)	1,026	(2)
138~146인	-	-	-	-	-	-	-	-	-	-
165인이상	56.3	87.5	31.3	(16)	4,549	( 9)	2,251	(14)	1,042	(5)
인천	42.7	71.7	13.4	(731)	5,866	(312)	16,008	(524)	1,505	( 98)
16~20인	39.0	71.1	9.5	(536)	5,248	(209)	19,246	(381)	1,970	(51)
46~54인	46.3	74.4	17.1	(82)	11,447	(38)	9,520	(61)	1,157	(14)
73~81인	52.8	86.1	22.2	(36)	860	(19)	6,983	(31)	1,321	(8)
93~101인	56.8	78.4	37.8	(37)	4,097	(21)	5,583	(29)	873	(14)
120~128인	64.3	78.6	28.6	(14)	580	(9)	4,297	(11)	668	(4)
138~146인	40.0	40.0	40.0	(5)	933	(2)	7,228	(2)	1,711	(2)
165인이상	66.7	42.9	23.8	(21)	13,497	(14)	3,894	(9)	384	( 5)
광주	65.0	72.9	9.0	(277)	3,308	(180)	16,978	(202)	2,363	(25)
16~20인	73.3	71.7	8.4	(191)	3,706	(140)	21,395	(137)	3,145	(16)
46~54인	72.2	72.2	11.1	(18)	2,455	(13)	13,394	(13)	1,705	(2)
73~81인	57.1	64.3	14.3	(14)	1,893	(8)	7,109	(9)	1,657	(2)
93~101인	35.3	88.2	5.9	(17)	1,120	(6)	6,658	(15)	719	(1)
120~128인	28.6	71.4	14.3	(7)	399	(2)	6,837	( 5)	322	(1)
138~146인	0.0	85.7	0.0	(7)	-	-	6,188	(6)	-	-
165인이상	47.8	73.9	13.0	(23)	2,004	(11)	5,245	(17)	333	( 3)
대구	50.8	69.8	15.5	(258)	3,828	(131)	13,966	(180)	1,803	(40)
16~20인	44.2	72.1	10.4	(154)	5,356	(68)	18,309	(111)	2,738	(16)
46~54인	54.1	54.1	24.3	(37)	1,482	(20)	8,264	(20)	1,046	(9)
73~81인	66.7	66.7	14.3	(21)	3,171	(14)	9,162	(14)	2,592	(3)
93~101인	50.0	77.8	27.8	(18)	4,051	(9)	6,721	(14)	1,124	(5)
120~128인	62.5	87.5	12.5	(8)	999	(5)	4,785	(7)	2,686	(1)
138~146인	66.7	77.8	44.4	(9)	1,937	(6)	4,952	(7)	420	(4)
165인이상	81.8	63.6	18.2	(11)	1,127	(9)	3,676	(7)	567	(2)

(부표 Ⅱ-2-5 계속)

	コ	출 '있다'	는 비율		기관(	우영비	직천	백급	회의	의비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수)	평균	<u>(</u> (宁)		···· (수)	- 평균	<u>'</u> (수)
대전	46.5	61.6	9.0	(458)	3,533	(213)	12,350	282	(282)	(41)
16~20인	45.7	59.1	7.3	(381)	3,483	(174)	13,408	225	(225)	(28)
46~54인	45.5	72.7	21.2	(33)	6,101	(15)	10,771	24	(24)	(7)
73~81인	50.0	75.0	12.5	(16)	1,237	(8)	8,493	12	(12)	(2)
93~101인	54.5	81.8	0.0	(11)	1,865	(6)	6,248	9	(9)	-
120~128인	50.0	60.0	10.0	(10)	622	( 5)	5,605	6	( 6)	(1)
138~146인	_	-	-	-	_	-	-	-	-	-
165인이상	71.4	85.7	42.9	(7)	6,149	(5)	2,627	6	(6)	(3)
울산	43.9	73.8	18.4	(244)	4,062	(107)	15,191	180	(180)	(45)
16~20인	41.2	72.9	15.3	(170)	4,069	(70)	18,500	124	(124)	(26)
46~54인	51.5	75.8	18.2	(33)	1,970	(17)	9,253	25	(25)	(6)
73~81인	38.9	72.2	22.2	(18)	15,028	(7)	8,390	13	(13)	(4)
93~101인	58.8	70.6	41.2	(17)	1,017	(10)	5,389	12	(12)	(7)
120~128인	33.3	100.0	33.3	(3)	167	(1)	<i>7,7</i> 15	3	(3)	(1)
138~146인	0.0	100.0	0.0	(1)	-	-	7,246	1	(1)	-
165인이상	100.0	100.0	50.0	(2)	381	(2)	2,496	2	(2)	(1)
세종	58.1	61.3	29.0	( 31)	2,546	( 18)	10,981	( 19)	1,730	(9)
16~20인	55.0	55.0	15.0	( 20)	1,902	(11)	14,593	(11)	2,078	(3)
46~54인	50.0	50.0	50.0	( 2)	3,396	( 1)	10,417	( 1)	700	(1)
73~81인	100.0	100.0	100.0	( 1)	6,142	( 1)	6,173	( 1)	5,015	(1)
93~101인	100.0	66.7	33.3	( 3)	4,228	( 3)	4,219	( 2)	964	(1)
120~128인	66.7	66.7	66.7	( 3)	1,346	( 2)	6,085	( 2)	563	(2)
138~146인	0.0	100.0	0.0	( 1)	-	-	9,420	( 1)	-	-
165인이상	0.0	100.0	100.0	( 1)	-	-	1,502	( 1)	1,533	(1)
경기	48.2	63.8	9.6	(3573)	4,742	(1,722)	13,678	(2,281)	1,751	(344)
16~20인	45.2	63.9	6.8	(2829)	4,725	(1,279)	15,676	(1,807)	2,253	(193)
46~54인	54.6	67.5	13.6	(280)	7,423	(153)	7,621	(189)	1,506	(38)
73~81인	62.5	67.0	22.2	(176)	4,363	(110)	5,833	(118)	1,148	(39)
93~101인	61.9	68.3	32.5	(126)	1,998	( 78)	4,744	(86)	904	(41)
120~128인	60.4	52.8	18.9	( 53)	1,493	( 32)	4,849	(28)	968	(10)
138~146인	71.9	59.4	21.9	( 32)	959	( 23)	3,771	( 19)	795	(7)
165인이상	61.0	44.2	20.8	(77)	5,983	(47)	3,806	( 34)	831	(16)
강원	45.9	67.6	8.3	(290)	4,117	(133)	13,290	(196)	1,812	(24)
16~20인	41.7	63.0	5.2	(211)	4,535	(88)	16,741	(133)	2,542	(11)
46~54인	57.1	81.0	9.5	(21)	3,228	( 12)	8,639	( 17)	616	(2)
73~81인	56.3	84.4	15.6	( 32)	5,113	( 18)	5,758	( 27)	2,017	( 5)
93~101인	50.0	85.7	14.3	( 14)	1,471	( 7)	4,704	(12)	476	(2)
120~128인	80.0	80.0	60.0	( 5)	891	(4)	2,553	(4)	960	(3)
138~146인	25.0	75.0	25.0	(4)	2,604	( 1)	3,076	( 3)	364	(1)
165인이상	100.0	0.0	0.0	( 3)	412	( 3)	-	-	-	

(부표 Ⅱ-2-5 계속)

—————————————————————————————————————	지	출 '있다'	는 비율		기관	운영비	직취	백급	회의	의비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충북	65.1	72.0	9.9	( 332)	4,154	(216)	13,696	( 239)	1,546	( 33)
16~20인	64.5	69.0	6.2	(242)	4,738	(156)	17,036	(167)	2,366	(15)
46~54인	63.2	89.5	21.1	( 19)	2,401	(12)	8,237	(17)	909	(4)
73~81인	63.0	85.2	7.4	(27)	4,761	(17)	6,353	(23)	400	(2)
93~101인	64.7	76.5	29.4	(17)	1,849	(11)	4,179	(13)	1,241	(5)
120~128인	71.4	71.4	14.3	( 7)	1,977	( 5)	5 <i>,</i> 755	( 5)	238	(1)
138~146인	60.0	80.0	20.0	( 5)	955	( 3)	5,134	(4)	384	(1)
165인이상	80.0	66.7	33.3	( 15)	1,272	(12)	3,863	(10)	854	( 5)
충남	42.2	70.2	11.0	(490)	6,088	(207)	13,280	( 344)	2,097	(54)
16~20인	40.1	70.9	8.6	(382)	6,026	(153)	15,046	(271)	2,665	(33)
46~54인	55.9	64.7	11.8	( 34)	10,807	( 19)	7,244	( 22)	2,900	(4)
73~81인	40.6	71.9	28.1	( 32)	6,613	( 13)	7,294	( 23)	1,049	(9)
93~101인	58.8	76.5	5.9	( 17)	2,879	( 10)	4,562	( 13)	223	(1)
120~128인	20.0	60.0	40.0	( 5)	1,774	( 1)	3,899	( 3)	454	(2)
138~146인	60.0	60.0	0.0	( 5)	659	( 3)	6,222	( 3)		
165인이상	53.3	60.0	33.3	( 15)	1,791	( 8)	8,211	( 9)	631	( 5)
전북	45.6	75.3	7.2	( 31)	4,621	(146)	11,769	(241)	2,299	(23)
16~20인	42.6	75.3	5.1	( 20)	5,204	(100)	13,706	(177)	3,262	(12)
46~54인	35.0	60.0	15.0	( 2)	10,284	(7)	8,509	(12)	909	(3)
73~81인	51.5	84.8	21.2	( 1)	2,022	(17)	6,208	(28)	1,516	(7)
93~101인	65.2	73.9	4.3	( 3)	2,701	(15)	6,737	(17)	396	(1)
120~128인	100.0	50.0	0.0	( 3)	1,727	(2)	3,279	(1)	-	-
138~146인	100.0	100.0	0.0	( 1)	1,058	(3)	3,427	(3)	-	-
165인이상	50.0	75.0	0.0	( 1)	397	(2)	2,130	( 3)	-	-
전남	48.0	67.7	6.7	(3573)	5,150	(129)	11,881	(182)	1,935	(18)
16~20인	50.9	60.2	6.4	(2829)	5,181	(87)	16,026	(103)	2,110	(11)
46~54인	37.5	79.2	4.2	(280)	3,554	(9)	7,905	(19)	900	(1)
73~81인	41.7	83.3	0.0	(176)	3,792	(10)	7,439	(20)	-	-
93~101인	47.1	70.6	5.9	(126)	15,539	(8)	6,447	(12)	1,438	(1)
120~128인	25.0	83.3	8.3	( 53)	723	(3)	4,773	(10)	1,000	(1)
138~146인	100.0	66.7	0.0	( 32)	1,888	( 3)	3,827	(2)		
경북	50.4	73.0	17.0	(290)	5,141	(187)	14,663	(271)	2,064	(63)
16~20인	47.8	73.9	14.3	(211)	5,571	(130)	17,137	(201)	2,618	(39)
46~54인	50.0	80.0	22.5	(21)	2,252	(20)	8,747	(32)	1,697	( 9)
73~81인	63.0	59.3	33.3	( 32)	7,741	(17)	6,504	(16)	<i>7</i> 97	( 9)
93~101인	52.6	73.7	21.1	( 14)	1,452	(10)	6,515	(14)	542	(4)
120~128인	75.0	100.0	25.0	( 5)	1,763	(3)	7,481	(4)	1,645	(1)
138~146인	66.7	66.7	33.3	(4)	3,649	(2)	4,006	(2)	1,641	(1)
165인이상	83.3	33.3	0.0	( 3)	6,688	( 5)	7,954	(2)	-	-

(부표 Ⅱ-2-5 계속)

——————————————————————————————————————	지	출 '있다'	는 비율		기관원	<u></u> 운영비	직최	내급	회의	의비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경남	38.7	66.3	15.2	( 332)	5,336	(306)	14,923	(524)	2,046	(120)
16~20인	36.3	64.2	12.0	(242)	5,920	(218)	17,786	(385)	2,699	(72)
46~54인	53.6	66.1	19.6	( 19)	2,580	(30)	8,924	(37)	1,373	(11)
73~81인	45.3	81.1	20.8	(27)	1,660	(24)	7,545	(43)	1,113	(11)
93~101인	36.4	75.0	36.4	( 17)	3,642	(16)	5,433	(33)	819	(16)
120~128인	60.0	50.0	20.0	( 7)	1,409	(6)	5,646	(5)	1,235	(2)
138~146인	41.7	83.3	41.7	( 5)	1,495	(5)	3,671	(10)	1,292	(5)
165인이상	46.7	73.3	20.0	( 15)	21,566	(7)	6,649	(11)	596	(3)
제주	21.3	80.3	17.3	(490)	2,497	(27)	11,628	(102)	1,564	( 22)
16~20인	8.3	75.0	15.0	(382)	5,897	(5)	18,517	(45)	2,297	(9)
46~54인	33.3	73.3	13.3	( 34)	4,612	(5)	8,570	(11)	974	(2)
73~81인	8.3	75.0	8.3	( 32)	1,316	(1)	4,955	(9)	2,218	(1)
93~101인	33.3	100.0	19.0	( 17)	1,096	(7)	6,348	(21)	1,393	(4)
120~128인	50.0	83.3	50.0	( 5)	1,429	(3)	7,020	(5)	738	(3)
138~146인	40.0	80.0	20.0	( 5)	156	(2)	4,284	(4)	147	(1)
165인이상	50.0	87.5	25.0	( 15)	324	(4)	4,057	(7)	814	(2)

〈부표 II-2-6〉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관리운영비 세출 분포

	\_	т.	11 2	. 0/	/\ _	_	天	016	VIН	71 -	-2 7	_' 니 ᆣ	0 01	AII =		_	
															단	위: %	(개소)
		지	출 '있	J다'는	- 비율			여	비	수	용비	차링	<u>}</u> #]	연토	[비]	기타	운영비
구분	여비	수용 비	차량 비	연료 비	기타 운영비	(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서울	31.2	99.2	16.5	12.5	74.2	(2,	,194)	2,457	(685)	40,249	(2,177	) 8,080	(362)	8,814	(275)	50,567	(1,627)
16~20인	25.0	99.7	11.7	9.6	86.3	(1,	,507)	3,916	(377)	42,808	(1,503	10,587	(177)	9,478	(145)	54,731	(1,300)
46~54인	41.9	97.8	29.6	15.2	55.2	(	270)	944	(113)	35,083	( 264	5,244	(80)	7,742	(41)	37,747	(149)
73~81인	45.8	99.2	25.6	21.0	42.9	(	238)	593	(109)	35,462	( 236	5,579	(61)	7,471	(50)	30,381	(102)
93~101인	48.5	98.0	23.2	17.2	44.4	(	99)	480	(48)	34,168	( 97	8,619	(23)	9,456	(17)	33,546	(44)
120~128인	48.1	100.0	25.9	37.0	48.1	(	27)	270	(13)	28,496	( 27	3,953	(7)	10,741	(10)	29,100	(13)
138~146인	47.1	100.0	29.4	17.6	35.3	(	17)	396	(8)	31,782	( 17	2,357	(5)	7,244	(3)	27,802	(6)
165인이상	47.2	91.7	25.0	25.0	36.1	(	36)	337	(17)	31,125	( 33	5,972	(9)	7,613	(9)	29,080	(13)
부산	16.4	99.8	59.4	39.9	78.0	(	567)	2,928	(93)	37,350	( 566	13,010	(337)	7,611	(226)	33,861	( 442)
16~20인	10.6	100.0	54.1	31.3	83.6	(	377)	4,746	(40)	40,002	( 377	15,412	(204)	9,219	(118)	36,589	(315)
46~54인	16.9	100.0	71.1	47.0	73.5	(	83)	1,916	(14)	34,392	( 83	9,539	(59)	5,233	(39)	29,773	(61)
73~81인	42.5	100.0	70.0	65.0	52.5	(	40)	1,199	(17)	32,157	( 40	11,997	(28)	6,921	(26)	23,891	(21)
93~101인	28.6	100.0	68.6	68.6	62.9	(	35)	1,968	(10)	32,384	( 35	7,830	(24)	5,559	(24)	30,638	(22)
120~128인	37.5	93.8	62.5	62.5	75.0	(	16)	1,932	(6)	27,393	( 15	7,942	(10)	7,223	(10)	18,937	(12)
138~146인	-	-	-	-	-		-	-	-	-	-	-	-	-	-	-	-
165인이상	37.5	100.0	75.0	56.3	68.8	(	16)	661	(6)	23,378	( 16	6,190	(12)	4,723	(9)	20,158	(11)
인천	21.3	99.0	27.2	20.4	82.1	(	731)	2,161	(156)	37,177	( 724	8,941	(199)	8,722	(149)	40,797	(600)
16~20인	16.4	99.6	20.0	15.3	85.8	(	536)	2,376	(88)	40,278	(534	11,520	(107)	9,653	(82)	42,404	(460)
46~54인	31.7	96.3	40.2	31.7	73.2	(	82)	2,526	(26)	30,210	( 79	6,172	(33)	8,318	(26)	36,412	(60)
73~81인	41.7	100.0	38.9	33.3	58.3	(	36)	2,148	(15)	34,188	( 36	5,416	(14)	8,736	(12)	35,127	(21)
93~101인	35.1	100.0	48.6	35.1	73.0	(	37)	1,217	(13)	21,817	( 37	7,913	(18)	8,099	(13)	32,729	(27)
120~128인	42.9	100.0	78.6	35.7	71.4	(	14)	1,468	(6)	25,076	( 14	3,691	(11)	7,355	(5)	35,023	(10)
138~146인	40.0	100.0	100.0	20.0	100.0	(	5)	683	(2)	27,319	( 5	5,174	(5)	7,094	(1)	29,277	( 5)
165인이상	28.6	90.5	52.4	47.6	81.0	(	21)	681	(6)	26,070	( 19	5,282	(11)	3,771	(10)	39,378	(17)
광주	10.5	99.6	67.9	23.8	81.6	(	277)	2,666	(29)	38,168	( 276	12,958	(188)	7,229	(66)	29,579	( 226)
16~20인	7.9	99.5	60.7	15.2	82.2	(	191)	3,503	(15)	44,796	(190	13,462	(116)	10,430	(29)	31,011	(157)
46~54인	22.2	100.0	83.3	38.9	72.2	(	18)	3,791	(4)	28,466	( 18	10,668	(15)	8,217	(7)	30,502	(13)
73~81인	-	100.0	85.7	50.0	64.3	(	14)	-	-	24,223	( 14	19,251	(12)	5,086	(7)	22,407	(9)
93~101인	17.6	100.0	88.2	47.1	76.5	(	17)	1,679	(3)	24,107	( 17	9,918	(15)	3,405	(8)	22,689	(13)
120~128인	-	100.0	85.7	28.6	85.7	(	7)	-	-	19,520	(7)	11,438	(6)	3,941	(2)	32,130	(6)
138~146인	14.3	100.0	71.4	57.1	85.7	(	7)	426	(1)	19,311	(7)	13,550	(5)	4,331	(4)	33,440	(6)
165인이상	26.1	100.0	82.6	39.1	95.7	(	23)	691	(6)	21,298	( 23	10,437	(19)	3,229	(9)	24,071	( 22)
대구	16.3	99.6	51.6	57.8	80.2	(	258)	2,957	(42)	34,655	( 257	10,697	(133)	6,371	(149)	31,502	( 207)
16~20인	11.7	100.0	41.6	54.5	79.9	(	154)	4,674	(18)	37,137	( 154	14,815	(64)	6,548	(84)	34,760	(123)
46~54인	18.9	100.0	48.6	62.2	73.0	(	37)	2,958	(7)	31,218	( 37	7,304	(18)	6,646	(23)	31,625	( 27)
73~81인	33.3	100.0	90.5	61.9	81.0	(	21)	1,975	(7)	29,102	( 21	7,550	(19)	7,238	(13)	22,243	(17)
93~101인	22.2	94.4	61.1	61.1	83.3	(	18)	915	(4)	34,411	( 17	7,685	(11)			22,515	
120~128인	12.5	100.0	50.0	50.0	87.5	(	8)	285	(1)	25,163	( 8	6,239	(4)	4,864	(4)	25,550	(7)
138~146인	22.2	100.0	77.8	77.8	100.0	(	9)	331	(2)	32,769	( 9	8,563	(7)	4,873	(7)	28,147	(9)
165인이상	27.3	100.0	90.9	63.6	81.8	(	11)	311	( 3)	30,898	( 11	3,017	(10)	6,086	( 7)	27,056	( 9)
	•																

(부표 Ⅱ-2-6 계속)

		지	출 'タ	있다'는	- 비율		여	비	수	<del>}</del> -b]	차링	}±11]	연료	[月]	기타운	-영비
구분	여비	수 <u>용</u> 비	· 차량 비	연료 비	기타 운영 비	(수)	평균	(수)	평균	(宁)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대전	10.9	99.3	50.0	17.2	84.5	( 458)	1,693	(50)	41,640	( 455)	11,889	( 229)	8,154	(79)	41,159	( 387)
16~20인	6.8	99.7	48.0	10.2	87.4	(381)	2,302	(26)	44,115	(380)	12,442	(183)	8,852	(39)	43,860	(333)
46~54인	15.2	97.0	57.6	48.5	69.7	( 33)	953	(5)	33,076	( 32)	11,402	( 19)	9,277	(16)	24,245	(23)
73~81인	43.8	100.0	56.3	68.8	81.3	( 16)	1,524	(7)	25,328	(16)	6,588	(9)	7,705	(11)	23,631	( 13)
93~101인	45.5	100.0	72.7	36.4	90.9	(11)	1,079	(5)	25,155	(11)	11,040	(8)	5,873	(4)	21,948	( 10)
120~128인	20.0	100.0	70.0	60.0	50.0	(10)	142	(2)	-	-	7,583	(7)	4,213	(6)	30,514	( 5)
138~146인	-	-	-	-	-	-	-	-	26,761	( 10)	-	-	-	-	-	-
165인이상	71.4	85.7	42.9	42.9	42.9	( 7)	740	(5)	29,109	(6)	9,443	( 3)	5,675	(3)	28,768	( 3)
울산	13.9	99.6	80.3	41.4	77.9	( 244)	2,722	(34)	39,013	( 243)	11,336	( 196)	9,665	(101)	38,749	( 190)
16~20인	8.2	100.0	81.2	42.9	82.4	(170)	3,531	(14)	42,298	(170)	13,304	(138)	10,327	(73)	41,111	(140)
46~54인	21.2	100.0	78.8	45.5	60.6	( 33)	3,576	(7)	35,603	( 33)	8,964	(26)	8,829	(15)	36,838	(20)
73~81인	33.3	94.4	72.2	16.7	72.2	(18)	1,837	(6)	31,883	(17)	5,366	(13)	7,298	(3)	22,417	(13)
93~101인	41.2	100.0	76.5	47.1	64.7	( 17)	1,009	(7)	23,412	(17)	5,039	(13)	7,498	(8)	36,946	(11)
120~128인	-	100.0	100.0	33.3	100.0	( 3)	-	-	24,902	( 3)	4,527	( 3)	4,269	(1)	35,220	( 3)
138~146인	-	100.0	100.0	0.0	100.0	( 1)	-	-	27,427	( 1)	1,533	( 1)	-	-	10,877	( 1)
165인이상	-	100.0	100.0	50.0	100.0	( 2)	-	-	36,275	( 2)	1,253	( 2)	3,708	(1)	27,885	( 2)
세종	19.4	100.0	61.3	54.8	71.0	( 31)	3,334	(6)	40,435	( 31)	15,006	( 19)	7,951	(17)	38,594	( 22)
16~20인	15.0	100.0	60.0	50.0	80.0	( 20)	4,702	(3)	46,947	( 20)	10,881	(12)	8,671	(10)	41,304	(16)
46~54인	-	100.0	50.0	0.0	50.0	( 2)	-	-	24,078	(2)	13,200	( 1)	-	-	24,640	( 1)
73~81인	-	100.0	100.0	100.0	100.0	( 1)	-	-	19,566	( 1)	16,163	( 1)	13,037	(1)	18,519	( 1)
93~101인	66.7	100.0	33.3	66.7	33.3	( 3)	2,480	(2)	37,134	( 3)	20,786	( 1)	10,231	(2)	81,728	( 1)
120~128인	33.3	100.0	100.0	100.0	66.7	( 3)	938	(1)	26,626	( 3)	34,074	( 3)	4,537	(3)	17,248	( 2)
138~146인	-	100.0	100.0	100.0	100.0	( 1)	-	-	36,744	( 1)	2,174	( 1)	1,355	(1)	28,820	( 1)
165인이상	-	100.0	0.0	0.0	0.0	( 1)	-	-	18,782	( 1)	-	-	-	-	-	-
경기	14.7	99.5	31.6	20.1	82.5	(3,573)	3,009	(526)	38,885	(3,556)	11,903	(1,129)	8,045	(719)	45,568	(2,946)
16~20인	10.6	99.9	27.0	15.4	86.0	(2,829)	3,596	(301)	41,571	(2,827)	14,088	(763)	8,890	(436)	47,864	(2,434)
46~54인	27.1	97.5	44.3	34.6	70.0	(280)	3,238	(76)	28,495	(273)	8,032	(124)	6,645	(97)	35,477	(196)
73~81인	34.1	98.3	48.9	42.0	63.1	(176)	1,739	(60)	30,586	(173)	7,792	(86)	7,131	(74)	34,399	(111)
93~101인	37.3	100.0	54.0	42.9	68.3	(126)	2,152	(47)	29,419	(126)	7,318	(68)	7,063	(54)	32,051	(86)
120~128인	26.4	100.0	54.7	30.2	73.6	( 53)	983	(14)	25,743	( 53)	6,293	(29)	5,488	(16)	35,981	( 39)
138~146인	37.5	100.0	62.5	50.0	81.3	( 32)	1,889	(12)	27,531	( 32)	3,920	( 20)	6,233	(16)	31,522	(26)
165인이상	20.8	93.5	50.6	33.8	70.1	( 77)	786	(16)	24,080	(72)	6,803	( 39)	6,444	(26)	36,860	( 54)
강원	21.7	100.0	73.4	42.1	79.0	(290)	3,216	(63)	37,221	(290)	14,057	(213)	10,749	(122)	35,394	(229)
16~20인	10.0	100.0	72.0	33.6	81.0	(211)	3,820	(21)	40,184	(211)	15,790	(152)	12,955	(71)	41,824	(171)
46~54인	33.3	100.0	76.2	61.9	66.7	(21)	1,633	(7)	27,735	(21)	11,786	(16)	7,673	(13)	23,637	(14)
73~81인	56.3	100.0	78.1	71.9	75.0	( 32)	3,037	(18)	30,621	( 32)	11,254	( 25)	5,363	(23)	13,748	(24)
93~101인	57.1	100.0	92.9	57.1	71.4	( 14)	4,913	(8)	29,141	(14)	6,053	( 13)	14,655	(8)	16,981	(10)
120~128인	60.0	100.0	80.0	40.0	80.0	( 5)	673	(3)	34,465	( 5)	5,825	(4)	2,705	(2)	15,662	(4)
138~146인	100.0	100.0	25.0	75.0	75.0	(4)	3,075	(4)	26,174	(4)	857	( 1)	10,641	(3)	7,475	( 3)
165인이상	66.7	100.0	66.7	66.7	100.0	( 3)	1,329	(2)	22,702	( 3)	10,730	( 2)	6,976	(2)	12,563	( 3)

(부표 Ⅱ-2-6 계속)

구분 여비 수용 차량 연료 기타운 (수) 평균 (수) 명균 (수) 면균 (수)	타운영비 균 (수) 475 (258) 890 (195) 812 (11)
응북 25.3 99.4 66.0 41.0 77.7 (332) 2739 (84) 40.558 (330) 16,031 (219) 6,875 (136) 35, 16~20인 18.2 99.6 59.1 30.2 80.6 (242) 2,904 (44) 44,489 (241) 18,185 (143) 9,142 (73) 35, 46~54인 57.9 100.0 63.2 68.4 57.9 (19) 1,983 (11) 29,507 (19) 18,630 (12) 3,195 (13) 21, 73~81인 48.1 96.3 92.6 77.8 70.4 (27) 4,222 (13) 35,999 (26) 13,100 (25) 4,268 (21) 59, 93~101인 35.3 100.0 82.4 52.9 64.7 (17) 1,762 (6) 27,472 (17) 8,598 (14) 5,601 (9) 27, 120~128인 57.1 100.0 100.0 71.4 85.7 (7) 1,748 (4) 25,877 (7) 6,318 (7) 7,318 (5) 23, 138~146인 40.0 100.0 100.0 60.0 60.0 (5) 1,179 (2) 34,478 (5) 12,073 (5) 1,420 (3) 23,	475 (258) 890 (195)
16~20인 18.2 99.6 59.1 30.2 80.6 (242) 2,904 (44) 44,489 (241) 18,185 (143) 9,142 (73) 35, 46~54인 57.9 100.0 63.2 68.4 57.9 (19) 1,983 (11) 29,507 (19) 18,630 (12) 3,195 (13) 21, 73~81인 48.1 96.3 92.6 77.8 70.4 (27) 4,222 (13) 35,999 (26) 13,100 (25) 4,268 (21) 59, 93~101인 35.3 100.0 82.4 52.9 64.7 (17) 1,762 (6) 27,472 (17) 8,598 (14) 5,601 (9) 27, 120~128인 57.1 100.0100.0 71.4 85.7 (7) 1,748 (4) 25,877 (7) 6,318 (7) 7,318 (5) 23, 138~146인 40.0 100.0100.0 60.0 60.0 (5) 1,179 (2) 34,478 (5) 12,073 (5) 1,420 (3) 23,	890 (195)
16~20인 18.2 99.6 59.1 30.2 80.6 (242) 2,904 (44) 44,489 (241) 18,185 (143) 9,142 (73) 35, 46~54인 57.9 100.0 63.2 68.4 57.9 (19) 1,983 (11) 29,507 (19) 18,630 (12) 3,195 (13) 21, 73~81인 48.1 96.3 92.6 77.8 70.4 (27) 4,222 (13) 35,999 (26) 13,100 (25) 4,268 (21) 59, 93~101인 35.3 100.0 82.4 52.9 64.7 (17) 1,762 (6) 27,472 (17) 8,598 (14) 5,601 (9) 27, 120~128인 57.1 100.0100.0 71.4 85.7 (7) 1,748 (4) 25,877 (7) 6,318 (7) 7,318 (5) 23, 138~146인 40.0 100.0100.0 60.0 (5) 1,179 (2) 34,478 (5) 12,073 (5) 1,420 (3) 23,	
46~54인 57.9 100.0 63.2 68.4 57.9 (19) 1,983 (11) 29,507 (19) 18,630 (12) 3,195 (13) 21, 73~81인 48.1 96.3 92.6 77.8 70.4 (27) 4,222 (13) 35,999 (26) 13,100 (25) 4,268 (21) 59, 93~101인 35.3 100.0 82.4 52.9 64.7 (17) 1,762 (6) 27,472 (17) 8,598 (14) 5,601 (9) 27, 120~128인 57.1 100.0100.0 71.4 85.7 (7) 1,748 (4) 25,877 (7) 6,318 (7) 7,318 (5) 23, 138~146인 40.0 100.0100.0 60.0 (5) 1,179 (2) 34,478 (5) 12,073 (5) 1,420 (3) 23,	812 (11)
93~101인 35.3 100.0 82.4 52.9 64.7 (17) 1,762 (6) 27,472 (17) 8,598 (14) 5,601 (9) 27, 120~128인 57.1 100.0100.0 71.4 85.7 (7) 1,748 (4) 25,877 (7) 6,318 (7) 7,318 (5) 23, 138~146인 40.0 100.0100.0 60.0 (5) 1,179 (2) 34,478 (5) 12,073 (5) 1,420 (3) 23,	
120~128인     57.1 100.0100.0 71.4     85.7 ( 7) 1,748 ( 4) 25,877 ( 7) 6,318 ( 7) 7,318 ( 5) 23, 138~146인     40.0 100.0100.0 60.0     60.0 ( 5) 1,179 ( 2) 34,478 ( 5) 12,073 ( 5) 1,420 ( 3) 23, 23, 23, 23	467 (19)
138~146인 40.0 100.0100.0 60.0 60.0 ( 5) 1,179 ( 2) 34,478 ( 5) 12,073 ( 5) 1,420 ( 3) 23,	417 (11)
	125 ( 6)
	348 ( 3)
	052 (13)
충남 15.7 99.2 46.1 32.4 83.1 (490) 3,163 (77) 40,037 (486) 11,131 (226) 8,082 (159) 34,	028 (407)
16~20인   12.3 99.7 40.6 27.2 85.1 (382)   3,823 (47)   43,622 (381)   11,825 (155)   9,210 (104)   36,	569 (325)
46~54인 29.4 94.1 64.7 47.1 67.6 (34) 4,057 (10) 29,314 (32) 8,430 (22) 6,877 (16) 21,	788 (23)
73~81인 40.6 96.9 75.0 40.6 68.8 (32) 1,308 (13) 28,973 (31) 9,348 (24) 6,920 (13) 20,	407 (22)
93~101인   17.6 100.0 70.6 52.9 82.4 (17)   817 (3) 26,605 (17) 12,341 (12) 5,019 (9) 19,	204 (14)
120~128인 - 100.0 40.0 100.0 80.0 ( 5) 20,434 ( 5) 19,315 ( 2) 2,606 ( 5) 20,	102 (4)
138~146인   40.0 100.0 80.0 80.0 100.0 ( 5) 844 ( 2) 20,569 ( 5) 7,173 ( 4) 4,985 ( 4) 22,	489 ( 5)
165인이상 13.3 100.0 46.7 53.3 93.3 (15) 1,071 (2) 22,951 (15) 8,207 (7) 6,137 (8) 39,	482 ( 14)
전북 15.0 100.0 77.5 40.6 73.4 (320) 1,959 (48) 40,505 (320) 17,089 (248) 9,420 (130) 30,	974 (235)
16~20인 7.7 100.0 79.1 33.6 74.5 (235) 2,634 (18) 44,998 (235) 18,219 (186) 12,037 ( 79) 33,	491 (175)
46~54인 25.0 100.0 70.0 60.0 75.0 (20) 2,792 (5) 37,750 (20) 15,555 (14) 6,306 (12) 21,	297 (15)
73~81인 39.4 100.0 78.8 63.6 69.7 (33) 780 (13) 24,081 (33) 14,543 (26) 5,195 (21) 22,	799 (23)
93~101인   30.4 100.0 78.3 52.2 65.2 (23)   1,932 (7)   26,239 (23)   11,476 (18)   5,464 (12)   25,	732 (15)
	530 (1)
	929 (2)
	660 ( 4)
	533 (204)
	803 (132)
	857 (18)
73~81인 45.8 100.0 79.2 66.7 62.5 (24) 3,399 (11) 26,358 (24) 13,039 (19) 6,662 (16) 20,	270 (15)
	576 (12)
	530 (10)
	912 ( 2)
	610 ( 15)
	897 (288)
	782 (230)
	296 (24)
	173 (15)
	161 (10)
120~128인 25.0 100.0100.0 75.0 75.0 (4) 1,230 (1) 18,841 (4) 10,123 (4) 8,043 (3) 23,	( )
	019 (3)
165인이상 16.7 83.3 50.0 50.0 50.0 (6) 7,014 (1) 25,062 (5) 4,438 (3) 1,174 (3) 29,	112 ( 3)

(부표 Ⅱ-2-6 계속)

		지	출 '있	다'는	비율		여비	]	수용	-비]	차링	:月]	연토	[H]	기타운	영비
구분	여비	수용 비	차량 비	연료 비	기타 운영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경남	11.1	99.5	75.7	37.2	78.9	(790)	2,395	(88)	38,789	(786)	14,789	(598)	7,951	(294)	37,326	(623)
16~20인	5.3	99.7	77.3	32.5	83.0	(600)	4,133	(32)	42,333	(598)	15,748	(464)	9,660	(195)	40,747	(498)
46~54인	25.0	100.0	67.9	41.1	69.6	(56)	1,525	(14)	31,299	(56)	11,970	(38)	5,705	(23)	26,901	(39)
73~81인	35.8	98.1	67.9	50.9	54.7	(53)	1,276	(19)	27,254	(52)	13,813	(36)	4,617	(27)	22,067	(29)
93~101인	40.9	100.0	75.0	56.8	61.4	(44)	1,561	(18)	26,154	(44)	9,313	(33)	4,671	(25)	22,351	(27)
120~128인	10.0	100.0	60.0	70.0	90.0	(10)	2,000	(1)	19,902	(10)	12,622	(6)	4,131	(7)	16,204	(9)
138~146인	16.7	100.0	100.0	58.3	66.7	(12)	484	(2)	29,180	(12)	10,411	(12)	2,797	(7)	28,616	(8)
165인이상	13.3	93.3	60.0	66.7	86.7	(15)	933	(2)	21,647	(14)	8,483	(9)	3,261	(10)	22,683	(13)
제주	7.9	100.0	17.3	7.9	76.4	(127)	5,836	(10)	37,514	(127)	9,292	(97)	6,011	(72)	30,906	(93)
16~20인	1.7	100.0	15.0	1.7	76.7	(60)	7,294	(1)	43,213	(60)	13,477	(46)	8,408	(24)	36,674	(39)
46~54인	14.3	100.0	13.3	14.3	86.7	(15)	11,533	(2)	31,663	(15)	5,091	(13)	7,138	(9)	54,766	(12)
73~81인	8.3	100.0	8.3	8.3	83.3	(12)	641	(1)	36,478	(12)	5,887	(10)	4,144	(10)	17,227	(9)
93~101인	19.0	100.0	19.0	19.0	71.4	(21)	3,562	(4)	31,839	(21)	6,825	(15)	3,450	(15)	20,807	(17)
120~128인	16.7	100.0	50.0	16.7	50.0	(6)	10,233	(1)	31,776	(6)	4,070	(3)	2,538	(4)	18,929	(4)
138~146인	20.0	100.0	20.0	20.0	80.0	(5)	2,875	(1)	31,307	(5)	3,342	(4)	6,181	(4)	14,227	(5)
165인이상	-	100.0	25.0	0.0	75.0	(8)	-	-	30,376	(8)	4,737	(6)	6,445	(6)	18,741	(7)

〈부표 II-2-7〉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사업운영비 세출 분포

단위: %(개소) 행사비 지출 '있다'는 비율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구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서울 99.9 83.9 (2,194)57,791 68.6 (2,191)14,895 (1,840)7,763 (1,506) 78.7 16~20인 99.9 (1,507)57,580 (1,505) 9,155 (1,186) 8,197 (997) 66.2 46~54인 99.6 91.9 57,007 68.5 (270)(269)21,746 (248)6,798 (185) 73~81인 100.0 98.3 79.0 (238)57,635 (238)25,394 ( 234) 7,233 (188) 93~101인 100.0 97.0 73.7 59,362 30,706 7,000 ( 99) ( 99) ( 96) 73) 120~128인 48,803 100.0 77.8 27) 21,718 27) 5,763 21) 100.0 27) ( 138~146인 100.0 100.0 88.2 17) 58,620 17) 33,158 5,519 15) ( 17) 165인이상 100.0 88.9 75.0 36) 75,567 36) 34,852 32) 6,882 27) 부산 100.0 67.7 50,241 (567) 7,569 (384) 56.4 (567)13,373 (320)(377)(158) 16~20인 100.0 41.9 69.2 51,180 (377) 7,016 8,103 (261) 46~54인 100.0 83.1 62.7 47,065 17,071 6,300 83) 83) 69) 52) 73~81인 100.0 87.5 72.5 47,380 24,335 35) 40) 40) 9,841 29) 93~101인 100.0 85.7 54.3 47,927 ( 35) 18,811 30) 3,994 ( 19) 35) ( 120~128인 100.0 81.3 75.0 52,587 ( 16) 15,263 ( 4,990 ( 16) 13) ( 12) 138~146인 165인이상 100.0 93.8 68.8 25,228 3,904 ( 16) 54,458 16) 15) 11)

(부표 Ⅱ-2-7 계속)

지출 '있다'는 비율				급간	신비	교재	고구비	행사비		
구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u>- '</u> 행사비	(수)	평균	<u>(</u> 수)	평균	(수)	평균	·····································
인천	99.9	63.3	25.6	( 731)	53,268	( 730)	13,482	( 463)	6,960	( 187)
16~20인	99.8	53.9	23.9	(536)	53,681	(535)	6,971	(289)	7,619	(128)
46~54인	100.0	85.4	18.3	(82)	53,503	( 82)	23,770	(70)	5,203	(15)
73~81인	100.0	94.4	47.2	( 36)	51,519	( 36)	26,191	( 34)	7,404	(17)
93~101인	100.0	94.6	32.4	( 37)	49,416	( 37)	21,822	( 35)	3,731	(12)
120~128인	100.0	100.0	35.7	(14)	46,323	(14)	25,758	(14)	1,622	( 5)
138~146인	100.0	80.0	40.0	( 5)	42,782	( 5)	19,566	(4)	14,611	( 2)
165인이상	100.0	81.0	38.1	( 21)	58,760	( 21)	27,669	(17)	5,044	( 8)
광주	100.0	56.0	80.9	( 277)	50,102	( 277)	16,093	( 155)	9,829	( 224)
16~20인	100.0	40.3	83.2	(191)	53,412	(191)	8,444	(77)	10,301	(159)
46~54인	100.0	77.8	77.8	(18)	43,561	( 18)	20,876	(14)	9,536	(14)
73~81인	100.0	100.0	78.6	( 14)	47,326	( 14)	23,385	( 14)	8,217	(11)
93~101인	100.0	100.0	64.7	(17)	43,953	(17)	23,722	(17)	10,519	(11)
120~128인	100.0	85.7	85.7	( 7)	34,433	( 7)	27,262	(6)	14,148	( 6)
138~146인	100.0	85.7	71.4	( 7)	36,899	( 7)	22,641	(6)	7,605	( 5)
165인이상	100.0	91.3	78.3	( 23)	42,755	( 23)	24,850	(21)	5,632	(18)
대구	100.0	69.8	76.4	(258)	49,134	(258)	15,839	( 180)	7,884	( 197)
16~20인	100.0	53.9	83.8	(154)	49,710	(154)	11,174	(83)	8,758	(129)
46~54인	100.0	89.2	64.9	( 37)	49,164	( 37)	14,746	( 33)	6,013	(24)
73~81인	100.0	95.2	85.7	(21)	47,894	(21)	18,199	( 20)	7,979	(18)
93~101인	100.0	94.4	55.6	( 18)	52,389	( 18)	25,684	( 17)	6,492	(10)
120~128인	100.0	100.0	25.0	( 8)	44,421	( 8)	16,868	( 8)	2,469	( 2)
138~146인	100.0	100.0	55.6	( 9)	45,446	( 9)	23,560	( 9)	2,608	( 5)
165인이상	100.0	90.9	81.8	(11)	44,453	( 11)	28,936	( 10)	5,848	( 9)
대전	100.0	53.3	71.6	(458)	53,041	(458)	11,614	(244)	9,789	(328)
16~20인	100.0	47.2	74.3	(381)	53,118	(381)	9,199	(180)	10,307	(283)
46~54인	100.0	90.9	75.8	( 33)	54,306	( 33)	18,379	( 30)	6,985	(25)
73~81인	100.0	81.3	56.3	( 16)	51,103	( 16)	14,124	( 13)	3,909	( 9)
93~101인	100.0	72.7	36.4	(11)	49,411	(11)	17,295	( 8)	7,216	(4)
120~128인	100.0	70.0	40.0	(10)	39,588	( 10)	28,978	( 7)	3,850	(4)
138~146인	-	-	-	-	-	-	-	-	-	-
165인이상	100.0	85.7	42.9	( 7)	72,249	( 7)	16,974	( 6)	13,233	( 3)
울산	100.0	55.3	75.0	( 244)	48,728	(244)	21,630	(135)	8,166	(183)
16~20인	100.0	40.6	78.2	(170)	50,053	(170)	15,158	( 69)	7,991	(133)
46~54인	100.0	78.8	69.7	( 33)	44,075	( 33)	27,769	( 26)	9,078	(23)
73~81인	100.0	94.4	61.1	( 18)	52,286	( 18)	31,930	( 17)	7,066	(11)
93~101인	100.0	100.0	70.6	( 17)	43,903	( 17)	25,875	( 17)	9,842	(12)
120~128인	100.0	100.0	66.7	( 3)	33,485	( 3)	34,841	( 3)	12,873	( 2)
138~146인	100.0	100.0	100.0	( 1)	49,799	( 1)	7,946	( 1)	1,006	( 1)
165인이상	100.0	100.0	50.0	( 2)	44,129	( 2)	28,538	( 2)	124	( 1)

(부표 Ⅱ-2-7 계속)

	기 기술 '있다'는 비율				급간	식비	교재고	2구비	행시	- <u></u>
구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	<u>평균</u>	· (宁)	평균	(수)	평균	· (수)
세종	100.0	67.7	93.5	( 31)	51,316	( 31)	20,717	(21)	8,266	( 29)
16~20인	100.0	50.0	90.0	( 20)	52,303	( 20)	6,524	(10)	10,000	( 18)
46~54인	100.0	100.0	100.0	( 2)	45,769	( 2)	10,977	( 2)	3,890	( 2)
73~81인	100.0	100.0	100.0	( 1)	48,408	( 1)	34,139	( 1)	7,340	( 1)
93~101인	100.0	100.0	100.0	( 3)	37,467	(3)	34,277	(3)	2,863	(3)
120~128인	100.0	100.0	100.0	( 3)	59,743	(3)	27,890	(3)	5,826	(3)
138~146인	100.0	100.0	100.0	( 1)	50,355	( 1)	29,143	( 1)	3,525	( 1)
165인이상	100.0	100.0	100.0	( 1)	62,819	( 1)	98,076	( 1)	15,002	( 1)
경기	100.0	65.4	31.2	(3,573)	53,203	(3,573)	12,735	(2,337)	8,618	(1,113)
16~20인	100.0	58.3	29.0	(2,829)	53,660	(2,829)	7,011	(1,650)	8,560	(820)
46~54인	100.0	92.5	35.0	(280)	53,735	(280)	22,849	(259)	10,400	(98)
73~81인	100.0	88.6	42.6	(176)	52,166	(176)	28,102	(156)	8,801	( 75)
93~101인	100.0	94.4	42.9	(126)	47,620	(126)	29,920	(119)	7,691	(54)
120~128인	100.0	98.1	43.4	( 53)	45,565	( 53)	28,115	( 52)	9,344	(23)
138~146인	100.0	96.9	37.5	( 32)	47,843	( 32)	24,204	( 31)	5,286	(12)
165인이상	100.0	90.9	40.3	(77)	53,491	(77)	30,259	(70)	6,434	( 31)
강원	100.0	64.5	72.8	( 290)	49,636	( 290)	17,111	( 187)	7,091	( 211)
16~20인	100.0	54.0	74.9	(211)	50,488	(211)	9,844	(114)	7,648	(158)
46~54인	100.0	81.0	57.1	(21)	42,895	(21)	33,117	(17)	9,678	(12)
73~81인	100.0	96.9	75.0	( 32)	49,671	( 32)	26,133	( 31)	4,645	(24)
93~101인	100.0	92.9	64.3	( 14)	46,938	(14)	31,373	( 13)	4,398	( 9)
120~128인	100.0	100.0	60.0	( 5)	48,540	( 5)	25,997	( 5)	3,618	( 3)
138~146인	100.0	100.0	100.0	(4)	55,454	(4)	18,412	(4)	2,242	(4)
165인이상	100.0	100.0	33.3	( 3)	43,158	( 3)	30,972	( 3)	783	( 1)
충북	99.7	63.0	78.9	(332)	51,634	(331)	14,519	(209)	8,802	(262)
16~20인	99.6	51.2	79.3	(242)	52,732	(241)	6,449	(124)	9,444	(192)
46~54인	100.0	89.5	73.7	(19)	45,366	(19)	26,672	(17)	6,598	(14)
73~81인	100.0	92.6	74.1	(27)	48,967	(27)	24,031	(25)	8,695	(20)
93~101인	100.0	94.1	82.4	(17)	50,923	(17)	29,049	(16)	6,033	(14)
120~128인	100.0	100.0	85.7	(7)	45,135	(7)	20,851	(7)	7,586	(6)
138~146인	100.0	100.0	80.0	( 5)	56,891	( 5)	22,106	( 5)	4,509	(4)
165인이상	100.0	100.0	80.0	(15)	48,805	(15)	30,618	(15)	6,557	(12)
충남	100.0	83.1	62.9	(490)	55,970	(490)	15,093	(308)	8,591	(335)
16~20인	100.0	85.1	55.5	(382)	56,383	(382)	8,229	(212)	8,996	(268)
46~54인	100.0	67.6	82.4	(34)	58,547	(34)	30,067	(28)	5,410	(20)
73~81인	100.0	68.8	87.5	(32)	56,799	(32)	26,826	(28)	8,803	(19)
93~101인	100.0	82.4	100.0	(17)	52,122	(17)	30,866	(17)	7,677	(11)
120~128인	100.0	80.0	80.0	(5)	47,471	( 5)	20,665	(4)	22,519	(2)
138~146인	100.0	100.0	100.0	(5)	46,824	( 5)	28,827	(5)	3,416	(5)
165인이상	100.0	93.3	93.3	(15)	48,092	(15)	39,964	(14)	4,507	(10)

(부표 Ⅱ-2-7 계속)

——————————————————————————————————————		지출 '있다'는	- 비율		급간	식비	교재고	1구비	행사비	
구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북	99.7	59.1	72.8	(320)	50,609	(319)	16,243	(189)	9,345	(233)
16~20인	99.6	47.7	76.2	(235)	52,715	(234)	9,694	(112)	9,743	(179)
46~54인	100.0	85.0	55.0	(20)	44,436	(20)	17,338	(17)	8,656	(11)
73~81인	100.0	90.9	81.8	(33)	44,093	(33)	28,999	(30)	6,779	(27)
93~101인	100.0	91.3	47.8	(23)	45,159	(23)	29,218	(21)	9,799	(11)
120~128인	100.0	100.0	50.0	(2)	56,629	( 2)	16,381	(2)	2,477	(1)
138~146인	100.0	100.0	66.7	(3)	49,248	(3)	27,253	(3)	17,019	(2)
165인이상	100.0	100.0	50.0	(4)	41,372	(4)	22,847	(4)	5,410	(2)
전남	100.0	56.5	62.1	(269)	51,482	(269)	21,088	(152)	7,570	(167)
16~20인	100.0	35.1	60.8	(171)	51,577	(171)	7,315	(60)	7,773	(104)
46~54인	100.0	83.3	83.3	(24)	45,901	(24)	24,808	(20)	9,252	(20)
73~81인	100.0	95.8	58.3	(24)	48,789	(24)	32,704	(23)	7,876	(14)
93~101인	100.0	94.1	58.8	(17)	72,967	(17)	26,502	(16)	5,173	(10)
120~128인	100.0	100.0	66.7	(12)	43,365	(12)	31,803	(12)	5,040	( 8)
138~146인	100.0	100.0	66.7	(3)	43,558	(3)	42,535	(3)	10,643	(2)
165인이상	100.0	100.0	50.0	(18)	48,058	(18)	32,490	(18)	5,248	(9)
경북	100.0	66.8	83.3	(371)	54,144	(371)	18,051	(248)	10,083	(309)
16~20인	100.0	58.8	84.9	(272)	55,082	(272)	15,196	(160)	10,561	(231)
46~54인	100.0	90.0	80.0	(40)	48,673	(40)	20,469	(36)	10,088	(32)
73~81인	100.0	85.2	77.8	(27)	55,809	(27)	29,600	(23)	7,421	(21)
93~101인	100.0	89.5	84.2	(19)	49,395	(19)	21,049	(17)	9,109	(16)
120~128인	100.0	100.0	50.0	(4)	44,661	(4)	23,046	(4)	2,158	(2)
138~146인	100.0	100.0	100.0	(3)	43,048	(3)	18,619	(3)	6,017	(3)
165인이상	100.0	83.3	66.7	(6)	67,530	( 6)	24,367	(5)	7,298	(4)
경남	100.0	59.2	78.9	(790)	48,967	(790)	17,874	(468)	8,792	(524)
16~20인	100.0	48.3	83.0	(600)	50,185	(600)	13,093	(290)	9,332	(408)
46~54인	100.0	94.6	69.6	(56)	43,589	(56)	20,559	(53)	8,100	(39)
73~81인	100.0	94.3	54.7	(53)	44,654	(53)	29,067	(50)	6,559	(33)
93~101인	100.0	90.9	61.4	(44)	45,417	(44)	26,167	(40)	6,500	(26)
120~128인	100.0	100.0	90.0	(10)	45,233	(10)	17,269	(10)	6,833	( 5)
138~146인	100.0	91.7	66.7	(12)	44,104	(12)	31,710	(11)	5,211	(7)
165인이상	100.0	93.3	86.7	(15)	52,331	(15)	32,624	(14)	4,606	( 6)
제주	56.7	100.0	73.2	(127)	53,486	(127)	13,510	(89)	7,082	(102)
16~20인	40.0	100.0	65.0	(60)	56,512	(60)	4,896	(27)	7,372	(51)
46~54인	60.0	100.0	80.0	(15)	49,865	(15)	15,311	(14)	9,827	(11)
73~81인	83.3	100.0	75.0	(12)	53,297	(12)	21,766	(10)	6,449	(10)
93~101인	71.4	100.0	81.0	(21)	48,978	(21)	14,888	(20)	7,289	(15)
120~128인	66.7	100.0	66.7	( 6)	55,730	( 6)	16,529	( 6)	4,281	(5)
138~146인	80.0	100.0	100.0	(5)	49,341	(5)	12,799	(4)	4,336	(4)
165인이상	75.0	100.0	87.5	( 8)	50,605	( 8)	23,760	( 8)	4,281	( 6)

〈부표 II-2-8〉 시도 및 어린이집 규모별 시설비 세출 분포

다위: %(개소)

						단위: %(개2				
구분		지출 '있	다'는 비율		시설	널비	자산추	무비	시설장비	]유지비
一工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서울	16.5	24.1	18.9	(2,194)	50,267	(363)	20,519	(528)	8,633	(414)
16~20인	10.0	16.1	12.1	(1,507)	56,523	(150)	25,068	(243)	8,481	(183)
46~54인	24.1	35.2	24.8	(270)	48,569	(65)	16,952	(95)	5,862	(67)
73~81인	35.7	38.2	36.1	(238)	46,793	(85)	15,629	(91)	7,981	(86)
93~101인	31.3	51.5	42.4	( 99)	53,516	(31)	12,590	(51)	14,035	(42)
120~128인	37.0	59.3	33.3	(27)	29,220	(10)	51,580	(16)	7,905	(9)
138~146인	41.2	52.9	58.8	(17)	28,855	(7)	11,584	(9)	4,985	(10)
165인이상	41.7	63.9	47.2	( 36)	32,068	(15)	6,014	(23)	13,658	(17)
부산	12.0	20.8	13.9	( 567)	29,406	(68)	17,054	(118)	8,669	(79)
16~20인	4.8	13.0	6.9	(377)	17,075	(18)	26,879	(49)	12,083	(26)
46~54인	14.5	28.9	15.7	( 83)	58,257	(12)	11,110	(24)	8,389	(13)
73~81인	42.5	32.5	32.5	(40)	27,499	(17)	12,630	(13)	8,823	(13)
93~101인	31.4	48.6	34.3	( 35)	26,706	(11)	10,340	(17)	3,529	(12)
120~128인	18.8	37.5	56.3	(16)	47,539	(3)	5,331	(6)	8,617	(9)
138~146인	_	-	-	-	_	-	-	-	_	-
165인이상	43.8	56.3	37.5	(16)	12,759	(7)	6,295	(9)	4,510	(6)
인천	12.7	19.3	19.2	(731)	42,799	( 93)	16,979	(141)	10,548	(140)
16~20인	6.2	14.6	11.8	(536)	53,318	(33)	24,703	(78)	7,612	(63)
46~54인	15.9	23.2	34.1	(82)	50,513	(13)	7,856	(19)	27,473	(28)
73~81인	38.9	30.6	36.1	( 36)	46,088	(14)	6,336	(11)	3,746	(13)
93~101인	29.7	48.6	45.9	(37)	60,700	(11)	7,597	(18)	5,357	(17)
120~128인	64.3	28.6	35.7	(14)	14,195	(9)	4,799	(4)	4,467	(5)
138~146인	20.0	20.0	60.0	(5)	20,979	(1)	214	(1)	3,377	(3)
165인이상	57.1	47.6	52.4	(21)	8,544	(12)	9,208	(10)	5,067	(11)
광주	12.6	20.2	17.3	( 277)	21,004	( 35)	15,205	( 56)	11,462	(48)
16~20인	7.3	14.1	10.5	(191)	36,810	(14)	19,301	(27)	11,014	(20)
46~54인	5.6	22.2	33.3	(18)	4,255	(1)	10,196	(4)	9,741	(6)
73~81인	35.7	35.7	42.9	( 14)	19,046	(5)	38,472	(5)	2,939	(6)
93~101인	17.6	41.2	23.5	(17)	14,510	(3)	6,760	(7)	13,738	(4)
120~128인	28.6	14.3	42.9	(7)	9,936	(2)	1,008	(1)	56,533	(3)
138~146인	14.3	14.3	14.3	(7)	8,191	(1)	2,798	(1)	798	(1)
165인이상	39.1	47.8	34.8	( 23)	5,414	(9)	4,189	(11)	3,560	(8)
대구	17.8	19.4	20.2	( 258)	53,341	(46)	16,786	(50)	7,374	( 52)
16~20인	8.4	11.0	12.3	(154)	93,674	(13)	21,767	(17)	9,117	(19)
46~54인	13.5	24.3	24.3	(37)	13,380	(5)	14,949	(9)	5,466	(9)
73~81인	23.8	33.3	19.0	(21)	84,044	(5)	25,570	(7)	5,841	(4)
93~101인	44.4	11.1	27.8	( 18)	18,116	(8)	4,526	(2)	11,860	(5)
120~128인	62.5	12.5	50.0	( 8)	12,341	(5)	2,082	$\begin{pmatrix} -1 \\ 1 \end{pmatrix}$	4,143	(4)
138~1469]	44.4	66.7	55.6	(9)	35,942	(4)	6,908	(6)	1,792	(5)
165인이상	54.5	72.7	54.5	( 11)	66,403	(6)	12,892	(8)	8,807	(6)
100 110	01.0	1 4.1	J 1.J	( 11)	50,103	( 0)	14,074	( 0)	0,007	( 0)

(부표 Ⅱ-2-8 계속)

=====		지출 '있	다'는 비율		시설	비]	자산추	부득비	시설장비유	 }지비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대전	11.4	19.2	11.4	( 458)	33,525	(52)	34,296	(88)	10,328 (	52)
16~20인	8.4	15.7	7.3	(381)	23,303	(32)	44,087	(60)	9,939 (	28)
46~54인	15.2	18.2	24.2	( 33)	16,920	(5)	13,366	(6)	23,756 (	8)
73~81인	25.0	50.0	18.8	(16)	182,441	(4)	14,153	(8)	10,267 (	3)
93~101인	36.4	45.5	36.4	(11)	19,482	(4)	19,499	(5)	3,557 (	4)
120~128인	40.0	50.0	40.0	(10)	20,032	(4)	7,059	(5)	1,756 (	4)
138~146인	-	-	-	-	-	-	-	-	-	-
165인이상	42.9	57.1	71.4	( 7)	8,397	(3)	11,646	(4)	3,331 (	5)
울산	9.4	27.0	14.8	( 244)	34,107	(23)	29,720	(66)	15,033 (	36)
16~20인	6.5	20.6	10.0	(170)	29,062	(11)	43,009	(35)	19,116 (	17)
46~54인	6.1	30.3	18.2	( 33)	36,584	(2)	20,143	(10)	21,702 (	6)
73~81인	22.2	44.4	27.8	(18)	35,305	(4)	19,607	(8)	2,460 (	5)
93~101인	29.4	52.9	23.5	(17)	37,222	(5)	7,914	(9)	9,513 (	4)
120~128인	0.0	100.0	66.7	( 3)	-	-	8,283	(3)	9,804 (	2)
138~146인	0.0	0.0	100.0	( 1)	-	-	-	-	1,957 (	1)
165인이상	50.0	50.0	50.0	( 2)	64,285	(1)	1,807	(1)	14,091 (	1)
세종	9.7	38.7	25.8	( 31)	36,380	(3)	18,672	(12)	6,098 (	8)
16~20인	0.0	30.0	10.0	( 20)	-	-	27,960	(6)	14,897 (	2)
46~54인	0.0	0.0	0.0	( 2)	-	-	-	-	-	-
73~81인	0.0	100.0	0.0	( 1)	-	-	12,099	(1)	-	-
93~101인	0.0	33.3	100.0	( 3)	-	-	2,153	(1)	785 (	3)
120~128인	33.3	66.7	66.7	( 3)	32,570	(1)	17,395	(2)	6,382 (	2)
138~146인	100.0	100.0	100.0	( 1)	54,638	(1)	5,899	(1)	3,870 (	1)
165인이상	100.0	100.0	0.0	( 1)	21,931	(1)	1,369	(1)	-	-
경기	9.2	18.9	20.2	(3,573)	28,507	(327)	15,776	(674)	6,238 (	723)
16~20인	6.1	14.7	17.1	(2,829)	31,201	(172)	19,859	(415)	6,575 (·	483)
46~54인	13.2	30.4	22.9	(280)	28,983	(37)	11,003	(85)	8,624 (	64)
73~81인	23.3	32.4	35.2	(176)	35,543	(41)	6,694	(57)	5,355 (	62)
93~101인	21.4	38.9	39.7	(126)	15,392	٠ /	9,975	(49)	4,114 (	50)
120~128인	24.5	37.7	41.5	( 53)	22,209	(13)	8,105	(20)	2,665 (	22)
138~146인	31.3	37.5	43.8	( 32)	23,392	(10)	7,176	(12)	8,549 (	14)
165인이상	35.1	46.8	36.4	(77)	18,052	(27)	9,391	(36)	2,383 (	28)
강원	14.1	26.2	19.7	(290)	50,782	(41)	18,619	(76)	5,653 (	57)
16~20인	7.6	19.0	9.0	(211)	50,481	(16)	25,312	(40)	5,065 (	19)
46~54인	33.3	33.3	38.1	(21)	25,054	(7)	9,273	(7)	4,182 (	8)
73~81인	43.8	37.5	50.0	( 32)	63,534	(14)	10,191	(12)	8,588 (	16)
93~101인	7.1	57.1	50.0	( 14)	46,495	(1)	10,793	(8)	3,923 (	7)
120~128인	20.0	60.0	80.0	( 5)	6,891	(1)	19,718	(3)	4,008 (	4)
138~146인	50.0	100.0	75.0	(4)	78,065	(2)	14,656	(4)	3,871 (	3)
165인이상	0.0	66.7	0.0	( 3)	-	-	5,631	(2)	-	-

(부표 Ⅱ-2-8 계속)

-		기출 '있	다'는 비율		시설	비	자산취득	·ㅂ]	시설장비	유지비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수)	평균	· (수)		· (全)	- FE	(수)
충북	16.0	28.6	19.6	(332)	22,846	(53)	36,574 (	` /		(65)
16~20인	7.9	21.9	12.4	(242)	18,700	(19)	22,610 (		14,817	(30)
46~54인	21.1	26.3	31.6	(19)	32,420	(4)	5,743 (	5)	24,191	(6)
73~81인	44.4	55.6	37.0	(27)	35,316	(12)	67,858 (		7,149	(10)
93~101인	52.9	47.1	35.3	(17)	25,749	(9)	125,085 (	8)	2,036	(6)
120~128인	42.9	57.1	42.9	(7)	17,081	(3)	14,947 (	4)	3,319	(3)
138~146인	0.0	40.0	60.0	(5)	_	-	34,168 (	2)	3,567	(3)
165인이상	40.0	53.3	46.7	(15)	3,185	(6)	12,600 (	8)	4,688	(7)
충남	68.4	10.4	24.7	(490)	24,455	(51)	15,392 (	121)	8,241	(67)
16~20인	70.2	4.2	18.8	(382)	22,782	(16)	18,824 (	72)	5,713	(38)
46~54인	58.8	32.4	44.1	(34)	32,321	(11)	17,977 (	15)	5,608	(9)
73~81인	59.4	21.9	40.6	(32)	29,416	(7)	5,682 (	13)	18,865	(7)
93~101인	64.7	29.4	52.9	(17)	10,041	(5)	8,587 (	9)	4,026	(8)
120~128인	40.0	40.0	0.0	(5)	47,407	(2)	-	-	1,306	(1)
138~146인	100.0	60.0	60.0	(5)	10,931	(3)	8,478 (	3)	4,704	(2)
165인이상	66.7	46.7	60.0	(15)	20,489	(7)	6,763 (	9)	54,816	(2)
전북	10.0	28.1	15.9	(320)	62,239	(32)	56,599 (	90)	7,134	(51)
16~20인	3.8	22.6	8.9	(235)	72,066	(9)	75,993 (	53)	8,316	(21)
46~54인	30.0	50.0	15.0	(20)	87,694	(6)	77,030 (	10)	10,943	(3)
73~81인	39.4	54.5	42.4	(33)	56,562	(13)	12,665 (	18)	7,032	(14)
93~101인	13.0	21.7	30.4	(23)	20,539	(3)	6,354 (	5)	3,462	(7)
120~128인	0.0	50.0	100.0	(2)			917 (	1)	3,185	(2)
138~146인	33.3	66.7	66.7	(3)	19,957	(1)	12,847 (	2)	10,047	(2)
165인이상	0.0	25.0	50.0	(4)			9,577 (	1)	3,614	(2)
전남	14.5	28.6	20.4	(269)	36,473	(39)	16,314 (	77)	11,683	(55)
16~20인	5.3	16.4	9.9	(171)	22,640	(9)	19,476 (	28)		(17)
46~54인	8.3	29.2	29.2	(24)	15,852	(2)	13,027 (	7)		(7)
73~81인	29.2	62.5	41.7	(24)	95,015	(7)	14,333 (	15)	18,402	(10)
93~101인	35.3	58.8	41.2	(17)	11,475	(6)	7,979 (	10)	12,048	(7)
120~128인	33.3	50.0	41.7	(12)	13,785	(4)	4,046 (	6)	7,283	(5)
138~146인	33.3	33.3	33.3	(3)	28,627	(1)	252,945 (	1)		(1)
165인이상	55.6	55.6	44.4	(18)	36,925	(10)	4,770 (		2,217	(8)
경북	9.4	17.0	14.8	(371)	33,964	(35)	28,983 (		9,512	(55)
16~20인	6.6	14.3	9.2	(272)	28,877	(18)	17,954 (	/ :		(25)
46~54인	15.0	22.5	32.5	(40)	23,724	(6)	81,199 (	9)		(13)
73~81인	22.2	29.6	29.6	(27)	75,189	(6)	43,680 (	8)	9,263	(8)
93~101인	21.1	15.8	5.3	(19)	14,903	(4)	8,620 (	3)	3,146	(1)
120~128인	0.0	50.0	75.0	(4)			5,784 (	2)	1,388	(3)
138~146인	33.3	33.3	66.7	(3)	15,862	(1)	1,473 (	1)	1,055	(2)
_165인이상_	0.0	16.7	50.0	( 6)			6,603 (	1)	1,254	(3)

(부표 Ⅱ-2-8 계속)

ㅋㅂ		지출 '있	다'는 비율		시설	비	자산취	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경남	66.3	8.4	19.4	(790)	32,645	(66)	26,559	(153)	8,928	(103)
16~20인	68.0	5.3	15.3	(600)	38,758	(32)	36,788	(92)	11,213	(55)
46~54인	69.6	14.3	32.1	(56)	37,181	(8)	18,806	(18)	5,414	(15)
73~81인	62.3	11.3	28.3	(53)	25,416	(6)	9,497	(15)	4,169	(7)
93~101인	59.1	22.7	27.3	(44)	25,261	(10)	9,508	(12)	9,710	(14)
120~128인	50.0	10.0	20.0	(10)	14,754	(1)	12,431	(2)	4,568	(3)
138~146인	58.3	41.7	50.0	(12)	22,708	(5)	6,055	( 6)	6,777	(5)
165인이상	40.0	26.7	53.3	(15)	20,858	(4)	2,848	(8)	2,248	(4)
제주	56.7	73.2	70.1	(127)	24,846	(24)	11,941	(49)	6,439	( 37)
16~20인	40.0	65.0	45.0	(60)	4,413	(3)	6,412	(15)	8,236	(7)
46~54인	60.0	80.0	93.3	(15)	26,281	(4)	10,694	(8)	3,202	(5)
73~81인	83.3	75.0	83.3	(12)	6,186	(3)	10,994	(4)	3 <i>,</i> 750	(3)
93~101인	71.4	81.0	95.2	(21)	44,204	(7)	5,280	(12)	6,322	(10)
120~128인	66.7	66.7	100.0	(6)	14,719	(2)	14,850	(3)	4,637	(4)
138~146인	80.0	100.0	80.0	(5)	28,328	(3)	52,955	(4)	8,876	(3)
165인이상	75.0	87.5	100.0	(8)	17,770	(2)	13,217	( 3)	8,983	( 5)

〈부표 IV-2-1〉 17개 시도 영영아 식단(초·중·후기 이유식)

<del></del>	월	화	수 수	목	금	토
서울			•			-
초기	감자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당근미음	당근미음	당근미음
중기	쇠고기양파죽	아욱죽	미역죽	달걀노른자죽	순두부죽	배죽
후기	쇠고기양파죽	아욱죽	미역죽	달걀노른자죽	순두부죽	배죽
부산						
초기	감자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애호박미음	애호박미음	애호박미음
중기	영양부추타락죽	채소죽	단호박죽	배추연두부죽	닭죽	브로콜리죽
후기	영양부추타락죽	채소진밥	단호박진밥	배추연두부죽	닭무른밥	브로콜리진밥
대구						
<b>초</b> 기	찹쌀미음	찹쌀미음	찹쌀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중기	단호박죽	감자아욱죽	쇠고기 표고버섯죽	완두콩죽	닭고기채소죽	고구마밤죽
후기	단호박진밥	감자아욱진밥	쇠고기 표고진밥	완두콩진밥	닭고기 채소진밥	고구마밤진밥
인천						
초기	찹쌀미음	찹쌀미음	찹쌀미음	오이미음	오이미음	오이미음
중기	쇠고기미역죽	쇠고기미역죽	닭고기가지죽	닭고기가지죽	연두부죽	연두부죽
후기	쇠고기 미역진밥	근대무진밥	닭고기가지 진밥	노른자 양파진밥	연두부취 나물진밥	참치채소진밥
광주						
초기	애호박미음	애호박미음	애호박미음	브로콜리미음	브로콜리미음	브로콜리미음
중기	검정깨죽	전복죽	참치죽	소고기당근죽	브로콜리죽	콩나물죽
후기	검정깨죽	전복채소진밥	참치채소진밥	소고기 당근진밥	브로콜리진밥	콩나물진밥
대전						
초기	바나나미음	바나나미음	바나나미음	양배추미음	양배추미음	양배추미음
중기	쇠고기 팽이버섯죽	검은콩죽	닭살양배추죽	명태죽	브로콜리 달걀죽	차조두부죽
후기	다시마 오이진밥	명태양배추진 밥	쇠고기 브로콜리진밥	닭살채소 무른밥	당근콩진밥	감자수제비
 울산	, , , ,	Н		Г		
초기	단호박미음	단호박미음	쇠고기미음	쇠고기미음	당근미음	당근미음
중기	단호박죽	소고기양파죽	노른자김죽	영양잡곡죽	표고버섯 장국죽	두부채소죽
후기	양배추 숙주진밥	파프리카진밥	피망옥 수수진밥	두부양파진밥	닭살오이진밥	잔멸치무른밥

## (부표 IV-2-1 계속)

<del></del> 분류	월	화	수	목	금	토
세종						
<i>초</i> 기	바나나마음	바나마음	바나나미음	양배추미음	양배추미음	양배추미음
중기	오이죽	파프리카 채소죽	다시마채소죽	당근죽	쇠고기   양송이죽	차조두부죽
후기	치즈채소진밥	명태양배추진밥	쇠고기 브로콜리지밥	닭살채소 무른밥	당근콩진밥	감자수제비
- 경기				1 - 1		
<i>초</i> 기	배추미음	배추미음	소고기미음	소고기미음	당근미음	당근미음
중기	배추연두부죽	달걀노른자묽 은죽	소고기무죽	시금치된장죽	당근죽	애호박죽
후기	배추연두부 진밥	달걀노른자 진밥	소고기무진밥	시금치된장진 밥	당근진밥	애호박진밥
강원						
<i>초</i> 기	사과미음	사과미음	사과미음	닭고기미음	닭고기미음	닭고기미음
중기	닭가슴살 고구미죽	시금치죽	브로콜리 양송이죽	현미묽은죽	달걀콩죽	호박죽
후기	쇠고기 미역무른밥	애호박 완두콩무른밥	가지나물 들깨진밥	닭기슴살 사과무른밥	양배추무른밥	치즈 채소무른밥
충북						
<i>초</i> 기	닭고기미음	닭고기미음	닭고기미음	수수미음	수수미음	수수미음
중기	김가루죽	닭죽	순두부죽	오이치즈죽	수수죽	쇠고기죽
후기	단호박죽	수수죽	양배추죽	멸치가루죽	참치죽	누룽지죽
충남						
<i>초</i> 기	쇠고기미음	쇠고기미음	쇠고기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중기	새송이버섯죽	김달걀 노른자죽	쇠고기죽	쇠고기오이죽	감자죽	감자치즈죽
후기	새송이버섯죽	김달걀 노른지죽	야채죽	게살치즈죽	아가용치즈	미역무른밥
전북						
<b>초</b> 기	바나나미음	바나나미음	바나나미음	닭살미음	닭살미음	닭살미음
중기	두부현미죽	노른자 바나나죽	소고기무죽	검은콩이욱죽	닭살청경채죽	감자들깨죽
후기	두부현미진밥	달걀바나나진 밥	소고기 무진밥	검 <del>은 콩</del> 아욱진밥	닭살청경채진 밥	감자들깨진밥
전남						
<i>초</i> 기	찹쌀미음	찹쌀미음	찹쌀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중기	연두부당근죽	연두부당근죽	연두부당근죽	달걀노른자감 자죽	달걀노른자감 자죽	달걀노른자감 자죽
후기	연두부당근진밥	소고기 무진밥	새우살 근대진밥	흑미버섯진밥	달걀노른자감 자진밥	소고기 연근진밥

## (부표 IV-2-1 계속)

분류	월	화	수	목	금	토
경북						
<i>초</i> 기	고구마미음	고구마미음	찹쌀미음	찹쌀미음	찹쌀미음	찹쌀미음
중기	콜리플라워 과일죽	닭미역죽	참깨녹두죽	현미배추죽	북어살당근죽	소고기찹쌀죽
후기	콜리플라워 과일진밥	닭미역진밥	참깨녹두진밥	현미배추진밥	북어살 생선진밥	달걀김무른밥
경남						
<i>초</i> 기	양배추미음	양배추미음	감자미음	감자미음	찹쌀미음	찹쌀미음
중기	잔멸치 양배 <del>추죽</del>	잔멸치 양배추죽	닭살감자죽	닭살감자죽	소고기 참쌐죽	소고기 찹쌀죽
후기	잔멸치양배추무른 밥	소고기 콩나물무른밥	닭살감자 무른밥	두부 채소무른밥	소고기찹쌀무 른밥	달걀 김무른밥
제주						
<i>초</i> 기	사과미음	사과미음	사과미음	단호박미음	단호박미음	단호박미음
중기	소고기 브로콜리죽	흰살생선 미역죽	양송이버섯죽	계란노른지쌀죽	닭고기감자죽	연두부당근죽
후기	소고기 브로콜리죽	흰살생선 미역죽	양송이버섯죽	계란노른자쌀죽	닭고기감지죽	연두부당근죽

〈부표 IV-2-2〉 17개 시도 영아 식단(만 1-2세)

<del></del> 구분	월	화	수	목	금	<u></u> 토
서울	_					
오전 간식	제철과일/우유	견과류/치즈	채소스틱/플레인요 거트	스크램블에그	제철과일	우유
점심 식사	기장밥 부추달갈국 쇠불고기 숙주나물 열무김치	후미밥 이욱국 돈육데리야끼 도라지오이무침 깍두기	키레라이스 미역국 과일샐러드 배추김치	수수밥 열무된장국 오징어볶음 청포묵무침 배추김치	보리밥 순두부찌개 닭실채소볶음 가지나물 깍두기	채소볶음밥 북엇국 양성추샐러드 깍두기
오후 간식	채소전	절펜보리차	우동	단팥뺑우유	찐단호백우유	
열량	420kcal	406kcal	419kcal	419kcal	375kcal	229kcal
부산						
오전 간식	포도	크림스프	바나나	장국죽	수박	누룽지탕
점심 식사	흰쌀밥 김치앙파국 비엔나채소볶음 양배추시과초무침 깍두기	현미밥 무맑은국 떡길비구이 느타리버섯무침 배추김치	마파두부덮밥 미소장국 멸치호두볶음 요구르트 배추김치	검정콩밥 미역국 오징어채소볶음 숙주나물 배추김치	검정쌀밥 시금치된장국 오리불고기 상추쌈 배추김치	채소볶음밥 북어국 콩자반 배추김치
오후 간식	단호박젬/우유	단팥뺑/사과계피 차	백설기√우유	온국수	양파청프렌치토 스트	미숫가루
열량	430kcal	442kcal	487kcal	442kcal	452kcal	406kcal
대구						
오전 간식	오렌지	쇠고기근대죽	방울토마토	흑임자죽	플레인요구르트	채소죽
점심 식사	백미밥 쇠소기무국 메추리살은약조림 새송이파프리카 볶음/ 배추김치	조밥 순두부찌개 참치깻잎전 사과무무침 배추김치	현미밥 계란파국 수제치킨까스 앙상추과일샐러 드/배추김치	찹쌀밥 만둣국 잔멸치호두조림 숙주당근무침 배추김치	기장밥 시래기된장국 쇠고기참쌀구이 두부여란잎쌀라드 깍두기	해물볶음밥 들깨무국 단호박올리고당찜 배추김치
오후 간식	무지개떡/우유	롤뺑우유	허니버터알감자/ 우유	시리엘우유	오이,당근스틱/ 저염두부쌈장	
열량	327kcal	442kcal	487kcal	442kcal	452kcal	299kcal
인천						
오전 간식	포되요구르트	찹쌀현미죽	오이스텍치즈	게실죽	찐감자/우유	씨리엘우유
점심 식사	후미밥 북엇국 두부양념점 애호박나물 깍두기	기장밥 콩비지찌개 삼치무조림 마늘쫑볶음 배추김치	돈육자장덮밥 (달걀프라이) 과일샐러드 무생채 요구르트	흰쌀밥 해물완자전 청경채나물 노각무침	현미밥 배추된장국 돼지고기수육 모듬쌈 깍두기	흰쌀밥(소) 튀김우동 배추김치 사과
오후 간식	미니미트볼	바나나팬케이크! 우유	수제비	김기루주먹밥	소보로뺑보리차	
열량	442kcal	445kcal	443kcal	445kcal	442kcal	305kcal

## (부표 IV-2-2 계속)

(Time 1V-2-2 /11-7)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광주						
오전 간식	검정깨죽	제철과일	전독	제철과일	브로콜리죽	제철과일
점심 식사	백미밥 북어국 돈육피망볶음 시금치통깨무침 배추김치	검정쌀밥 호박된장국 새송이메추리알 장조림무생채 배추김치	채소볶음밥 이욱맑은국 진미채볶음 김구이 배추김치	집곡밥 순두부찌개 해물김치채소전 숙주나물 깍두기	치조밥 어묵국 오라불고기 오이앙파무침 배추김치	오므라이스 맑은김칫국 단화원판생드 요구르트 깍두기
오후 간식	백설기√둥글레차	그림스파게티	찐감자/요구르트	쌀과자 <b>∤</b> 우유	모닝빵딸기잼	
열량	413kcal	426kcal	443kcal	444kcal	434kcal	326kcal
대전						
오전 간식	양송이스 <u>피</u> 자른 식빵	미역죽	방울토마 <i>퇴</i> 떠먹 는요구르트	애호박죽	바나나우유	떠먹는요구르트
점심 식사	잡곡밥 북엇국 돈육장조림 청포묵김무침 배추김치	집곡밥 닭곰탕 해물완자전 오이무침 배추김치	사금치로보유합 두부된장국 연근조림 배추김치	집곡밥 느타리버섯 쇠고&돼라 얼같이된장무침 깍두기	집곡밥 오징어무국 닭찜 깻앞나물무침 배추김치	미니우동 쇠교/채주박밥 양배추샐러드 배추김치
오후 간식	치즈떡볶이	찐감자/우유	들깨수제비	中极工船	약식/매실차	
열량	439kcal	462kcal	433kcal	472kcal	444kcal	228kcal
울산						
오전 간식	<del>?</del>	제철과일	연구생근	제철과일	토마토에그후라 이	떠먹는요구르트
점심 식사	잡곡밥 배추된장국 달걀채소찜 미른새우볶음 배추김치	집곡밥 맑은감자국 제육볶음 앙배추숙채 깍두기	집곡밥 크림스프 함박스테이크(소 스 배추김치	집곡밥 안매운김치호박 <i>국</i> 간장찜닭 숙주당근나물 깍두기	집곡밥 콩기루배츳국 고등어구이 앙파볶음 배추김치	키레라이스 실파장국 무생채 배추김치
오후 간식	게실죽	시루떡/우유	김치전	브로콜리주먹밥	찐고구마/우유	
열량	294kcal	382kcal	329kcal	314kcal	346kcal	244kcal
세종						
오전 간식	양송이스 <u>피</u> 자른 식빵	미역죽	방울토마 <i>퇴</i> 떠먹는요구르트	당근죽	오렌지/우유	떠먹는요구르트
점심 식사	후미밥 북어국 돈육장조림 청포묵무침 배추감치	백미밥 닭곰탕 해물완자전 오이무침 배추김치	시금치두부볶음 밥애호박된장 <i>국</i> 타코 배추김치	기장밥 느타리버섯국 쇠고집산타1日 얼갈이된장무침 깍두기	차조밥 쫑쫑오징어무국 닭찜 깻앞나물무침 배추김치	미니우동 크래미주먹밥 양배추샐러드 배추김치
오후 간식	호박전우유	찐감자∤우유	물만두	마쳤다	약식/매실차	
열량	465kcal	<b>461</b> kcal	450kcal	454kcal	431kcal	22 <b>4</b> kcal

구분	월	화	<u></u> 수	목	<del></del>	토
경기	-	-1	'	. ,	Ц	
오전 간식	떠먹는요구르트	당근스틱	사과	채소죽	바나나	코코아
점심 식사	쌀밥 맑은순두부국 이몬드멸치볶음 연근참깨무침 배추김치	후미밥 숭늉 단호박사태찜 도라지무침 상추겉절이	기장밥 감자국 닭강정 참나물무침 깍두기	잡곡밥 느타리버섯국 삼치무조림 깻잎나물무침 배추김치	자장밥 달걀국 만두탕수 단무지무침	잔치국수 쌀밥 동그랑땡전 배추김치
오후 간식	핫도그	절편	머펜두유	토스트/우유	부추전	찐고구마/마시는 요구르트
열량	475kcal	392kcal	433kcal	480kcal	433kcal	366kcal
강원						
오전 간식	과일	검 <del>은콩쥑</del> 우유	키스테라우유	과일/우유	채소죽	미숫/1루우유
점심 식사	쌀밥 소고기당면국 감자조림 오이부추무침 배추김치	잡곡밥 미역국 오리불고기 참나물된장무침 배추감치	무숙주비빔밥 저염긴장 숭늉 푸실리피망볶음 앙베추초절임	잡곡밥 김칫국 달걀말이 두부쑥갓무침 깍두기	잡곡밥 근대된장국 오장어간장볶음 고구마순나물 배추감치	수제비 쌀밥 배추김치
오후 간식	팬케이크/우유	키레떡볶이	찐고구마	우동	771/9동	
열량	487kcal	580kcal	536kcal	555kcal	554kcal	439kcal
충북						
오전 간식	방울토마 <u>되</u> 요구 르트	쇠고기죽	참외우유	참치죽	오렌지/우유	누룽지탕
점심 식사	쌀밥 표고북어국 돈육미늘쫑볶음 연근조림 배추김치	김치볶음밥 김자국 달걀프라이 숙주나물무침	쌀밥 얼길이된장국 미파두부 볼어묵조림 깍두기	보리밥 콩나물국 쇠고기잡채 저글 자장마음 배추김치	쌀밥 순두부국 꽁치캔무조림 조미구운김 배추김치	사골딱국 밥 단무지 배추감치
오후 간식	우유마숫기루	크림뺑우유	백설기√식혜	떠먹는요구르 <u>티</u> 견과류	욱수수맛살전	
열량	398kcal	439kcal	456kcal	463kcal	386kcal	228kcal
충남						
오전 간식	참외	크립스프	파프라카치즈	게살치즈죽	사과	시리엘우유
점심 식사	잡곡밥 만둣국 채소달갈말이 고사라나물 배추김치	잡곡밥 유부실파국 안매운제육볶음 참나물무침 열무김치	최고/항공/[유 달갈앙파국 이문드잔멸치조 림 배추김치	집곡밥 닭곰탕 미파두부 오이부추무침 배추김치	잡곡밥 아욱된장국 감자치즈전 뱅어포조림 배추김치	유부우동 밥 너비아니구이 배추김치
오후 간식	찐고구마/식혜	머펜우유	미니탕수육	우엉주먹밥보리 차	떡볶이	단호박라떼
열량	420kcal	414kcal	384kcal	472kcal	335kcal	497kcal

<u> </u>		<i></i>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전북						
오전 간식	청포 <i>되</i> 우유	옥수수스프	오렌지	완두콩스프	파인애플.우유	과일시리얼
점심 식사	치 <u>국</u> 밥 이욱국 닭실채소볶음 청경채나물 배추김치	수수밥 설렁탕 채소강정 애호박나물 깍두기	기장밥 미소장국 코다라무장조림 버섯무침 배추김치	설밥 콩나물국 수육 상취쌈장 배추감치	팔밥 소고기부추국 두부구이 시금치나물 배추감치	채소볶음밥 북엇국 메추리알장조림 배추김치
오후 간식	두유크립소스떡 볶이	견과류/플레인요 거트	모닝빵샌드위치/ 우유	찐고구마/결명자 차	잔치국수	
열량	404kcal	406kcal	417kcal	420kcal	420kcal	356kcal
전남						
오전 간식	제철과일	참치검은깨죽	제철과일	전복채소죽	제철과일	영양누룽지
점심 식사	수수밥 맑은조갯실국 매름보름산목 파래자반볶음 배추김치	기장밥 근대된장국 소고/ <del>브로콜/뷰음</del> 볼어묵조림 깍두기	백미밥 콩나물김칫국 오징어양배추 볶음/머위대나물 /깍두기	두부감자볶음밥 부추달칼국 견과류멸치볶음 배추김치	후미밥 미소국 <i>돈마스</i> (소스 시금치나물 깍두기	바지락미역국수 밥 단호박조림 배추김치
오후 간식	우엉치즈주먹밥/ 메밀차	미역자장볶음면	찐고구마/우유	참쌀도넷요구르 트	식뺑쨈우유	
열량	357kcal	437kcal	355kcal	328kcal	435kcal	181kcal
<b>경북</b> 오전 간식	바나나	채소죽	떠먹는요구르트	흰씰죽	키위우유	미니핫도그
점심 식사	쌀밥 물민둣국 순살고등어구이 진미양배추무침 배추김치	끝밥       북엇국       쇠고기떡볶음       깻잎순나물       배추감치	아기간장잡채 덮밥 호박들깨볶음 저염깍두기 과일	율무밥 어묵국 순살닭갈비 쩐브로콜리/소 스 배추감치	쌀밥 청국장 메추리알장조림 참치채소볶음 배추김치	돈까스 쌀밥 미소장국 마카로니샐러드 깍두기
오후 가식	<i>토스티</i> 주스	찐감자/두유	잘게자른떡/차	부추전	뺑요구르트	
열량	487kcal	488kcal	432kcal	5 <b>16</b> kcal	449kcal	333kcal
경남						
오전 간식	포도	양파스프	바나나	건과류플레인요 구르트	찹쌀채소죽	<del>?</del> #
점심 식사	쌀밥 열무된장국 완자전 브로콜리무침 배추김치	수수밥 쇠고기무국 참치채소볶음 부추나물 배추김치	쌀밥 맑은버섯두부탕 토마토장조림 숙주니물무침 깍두기	현미밥 오징어찌개 게맛실감자조림 구운김 깍두기	쌀밥 북어채국 닭살아채볶음 메밀묵무침 배추김치	매살당병국수 호박맑은국 깍두기
오후 간식	크림떡볶이	볶음우동	단호박샌드위치/우 유	약밥	찐고구마/우유	
열량	396kcal	421kcal	424kcal	474kcal	393kcal	341kcal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주						
오전 간식	글이스기포도 주스	<i>씨</i> 리얼/우유	토마토	참외/잣호두차	호상요구르트	두유
점심 식사	찰보리밥 시래기된장국 두부카레조림 어묵채소볶음 배추김치	현미밥 배추당면국 치킨찹스테이크 오이배초무침 깍두기	소고기볶음밥 콩나물맑은국 메추리알장조림 깍두기	기장밥 애호박양파국 삼차살데라아기조 램으깬감자샐러 드/배추김치	수수밥 유부된장국 찹쌀돼지고기장정 팡아버섯부추나물 배추김치	스파게티 채소모듬피클
오후 간식	단호박젬/우유	찐만두	머핀/결명자차	채소전	삶은달 <i>걜</i> 매실 차	바나나우유
열량	410kcal	406kcal	392kcal	377kcal	438kcal	289kcal

〈부표 IV-2-3〉 17개 시도 만 3-5세 표준 식단

요일	월	화	수 수	목	금	토
서울	= =	- 4	<u> </u>	7	п	
오전 간식	제철과일/우유	견과류/치즈	채소스틱/플레인 요구르트	스크램블에그	제철과일	유유
점심 식사	기장밥 부추달갈국 쇠불고기 숙주나물 열무김치	후미밥 이욱국 돈육데라야끼 도라지오이무침 깍두기	카레라이스 미역국 과일샐러드 배추김치	수수밥 열무된장국 오징어볶음 청포묵무침 배추김치	보리밥 순두부찌개 닭실채소볶음 기지나물 깍두기	채소볶음밥 북엇국 양배추샐러드 깍두기
오후 간식	채소전	절편보리차	우동	단팥뺑우유	찐단호박우유	
열량	600kcal	580kcal	599kcal	598kcal	535kcal	327kcal
부산						
오전 간식	우유	<del>우유</del>	떠먹는요구르트	<u> </u>	우유	누룽지탕
점심 식사	환쌀밥 김치앙파국 비앤나채소볶음 앙배추시괴초무 침 깍두기	현미밥 무맑은국 떡길바구이 느타리바섯무침 배추김치	미과두부덮밥 미소장국 멸치호두볶음 요구르트 배추감치	검정콩밥 미역국 오장아채소볶음 숙주나물 배추감치	검정쌀밥 시금치된장국 오라불고기 상추쌈 배추김치	채소볶음밥 북아국 콩자반 배추감치
오후 간식	단호박껨포도	흑임자죽	백설기/사과계피 차	온국수	양파청프렌치토 <i>스틱수</i> 박	마숫루
열량	614kcal	651kcal	676kcal	622kcal	645kcal	580kcal
대구						
오전 간식	오렌지	단호박죽	방울토미토구유	흑임자죽	키위	마었다
점심 식사	백미밥 계단파국 수제차킨까스 앙상추과알발라드 배추김치	<i>조</i> 밥 순두부찌개 참치깻잎전 사과무무침 배추김치	쇠고기당면덮밥 연두부찜간장 가지볶음 깍두기	침쌀밥 만둣국 잔멸치호두조림 숙주당근무침 배추감치	현미밥 길비탕 부추이채전 오이무침 배추감치	해물볶음밥 들깨무국 단호박올리고당찜 배추감치
오후 간식	무지개떡,우유	롤빵,우유	김기루우엉주먹 밥	시리얼,우유	으깬감자샐러 <i>드!</i> 우유	
열량	600kcal	627kcal	522kcal	633kcal	636kcal	427kcal
인천 오전 간식	포도/떠먹는요 구르트	찹쌀현미죽	오이스틱&치즈	게실죽	쩐감자/우유	씨리얼/우유
점심 식사	후미밥 북엇국 두부양념찜 애호박나물 깍두기	기장밥 콩비지찌개 삼치무조림 마늘쫑볶음 배추김치	돈육짜장덮밥 (달걀프라이) 과일샐러드 무생채 마시는요구르트	흰쌀밥 해물완자전 청경채나물 노각무침	현미밥 배추된장국 돼지고기수육 모듬쌈 깍두기	흰쌀밥(小) 튀김우동 배추김치 사과
오후 간식	미니미트볼	바나나팬케익/	수제비	김가루주먹밥	소보로뺑/보리 차	
열량	632kcal	636kcal	633kcal	636kcal	632kcal	436kcal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광주						
오전 간식	검정깨죽	제철과일	전복죽	제철과일	브로콜리죽	제철과일
점심 식사	백미밥 북어국 돈육피망볶음 시금치통깨무침 배추김치	검정쌀밥 호박된장국 새송이메추리알 장조림 새콤달콤무생채 배추김치	골고루채소볶음 밥 아욱맑은국 진미채볶음 김구이 배추김치	잡곡밥 순두부찌개 해물김치채소전 숙주나물 깍두기	차조밥 어묵국 오리불고기 오이앙파무침 배추김치	오므라이스 맑은김칫국 단호박건포도샐 러드 요구르트 깍두기
오후 간식	백설기/등글레 차	크림스파게티	찐감자/요구르 트	쌀과자/우유	모닝빵/딸기잼	
열량	590kcal	608kcal	633kcal	634kcal	620kcal	465kcal
대전 오전 간식	양송이스 <u>피</u> 지른 식뺑	미역죽	방울토마토 /떠먹는요구르트	애호박죽	바나나우유	떠먹는요구르트
점심 식사	잡곡밥 북엇국 돈육장조림 청포묵김무침 배추김치	잡곡밥 닭곰탕 해물완자전 오이무침 배추김치	시금치달갈볶음 밥 두부된장국 연근조림 배추김치	잡곡밥 느타리버섯국 쇠고기찹스테이 크 얼같이된장무침 깍두기	잡곡밥 오징어무국 닭찜 깻앞나물무침 배추김치	미나우동 쇠고기채소주먹 밥 양배추샐러드 배추김치
오후 간식	치즈떡볶이	찐감자 <b>/</b> 우유	들깨수제비	미니핫도기우유	약식/매실차	
열량	627kcal	660kcal	619kcal	675kcal	634kcal	326kcal
울산 오전 간식	딸기요거트쥬스	제철과일	고구마쉐이크	제철과일	카스텔라	감자스프
점심 식사	잡곡밥 아욱된장국 오리부추불고기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잡곡밥 콩기루배추국 쇠불고기 오이무침 배추김치	자장덮밥 누룽지탕 미나새송이볶음 배추김치	잡곡밥 김치호박국 생선가스& 타르타르소스 미나리나물 배추김치	접곡밥 새우시금치국 돈사태떡찜 시과앙배추샐러 드 배추김치	김가루주먹밥 어묵맛살우동 배추김치
오후 간식	백설기	딸기쨈토스트	참치주먹밥	채소떡볶이	찐고구마	
열량	551kcal	523kcal	606kcal	550kcal	543kcal	399kcal

요일	월	화	<u></u> 수	목	금	토
세종	_	,	,	,	1	
오전 간식	양송이스 <u>피</u> 자 른식빵	미역죽	방울토마토/떠 먹는요구르트	당근죽	오렌지/우유	떠먹는요구르트
점심 식사	흑미밥 북어국/배추김 치 돈육장조림 청포묵김무침	백미밥 닭곰탕/배추김 치 해물완자전 오이무침	시금치두부볶음 밥 애호박된장국 타코 배추김치	기장밥 느타리버섯국/ 깍두기 쇠고기참스테이 크 얼갈이된장무침	차조밥 쫑쫑오징어무국 /배추김치 닭찜 깻잎나물무침	미니우동 크래미주먹밥 양배추샐러드 베추김치
오후 간식	호박전/우유	찐감자/우유	물만두	미니핫도기두	약식/매실차	
열량	664kcal	659kcal	643kcal	678kcal	615kcal	320kcal
경기						
오전 간식	떠먹는 요구르트	당근스틱	딸기	채소죽	바나	코코아
점심 식사	쌀밥 맑은순두부국 이몬드멸치볶음 연근참깨무침 배추김치	후미밥 국 대신 숭늉 단호박사태찜 도라지무침 상추겉절이	기장밥 감자국 닭강정 참나물무침 깍두기	집곡밥 느타리버섯국 삼치무조림 깻잎나물무침 배추김치	짜장밥 달걀국 만두탕수 단무지무침	잔치국수 쌀밥1/2 동그랑땡전 배추김치
오후 간식	핫도그	절편	머펜두유	토스틱우유	부추전	찐고구마/마시는 요구르트
열량	678kcal	560kcal	618kcal	685kcal	619kcal	523kcal
강원 오전 간식	과일	검은콩쥑우유	키스테라우유	과일/우유	채소죽	마숫자
점심 식사	쌀밥 소고기당면국 감자조림 오이부추무침 배추김치	집곡밥 미역국 오라불고기 참나물된장무침 배추김치	무숙주비빔밥+저 염간장 숭늉 푸실리피망볶음 양배추초절임	집곡밥 김치국 달갈말이 두부쑥갓무침 깍두기	집곡밥 근대된장국 오장아간장볶음 고구미순나물 배추김치	수제비 소)쌀밥 배추김치
오후 간식	팬케이크/우유	키레떡볶이	찐고구마	우동	771/99	
열량	695kcal	829kcal	765kcal	793kcal	792kcal	672kcal
충북 오전 간식	방울토미토&요 구르트	<u> </u>	참외&우유	참치죽	오렌지&우유	누룽지탕
점심 식사	쌀밥 표고북어국 돈육나물종볶음 연근조림 배추김치	김치볶음밥 감자국 달걀후라이 숙주나물무침	쌀밥 얼갈이된장국 마파두부 볼어묵조림 깍두기	보리밥 콩나물국 쇠고기잡채 저염가지앙파볶 음 배추김치	쌀밥 순두부국 꽁치캔무조림 조마구운김 배추김치	시골딱국 밥 단무지 배추김치
오후 간식	우유미숫기루	크림뺑&우유	백설기&식혜	떠먹는요구르 <u>티</u> 견과류	옥수수맛살전	
열량	568kcal	627kcal	652kcal	662kcal	551kcal	325kcal

001	01	취		П	7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충남						
오전 간식	참외	크림스프	파프리카/치즈	게살치즈죽	사과	시리엘/우유
점심 식사	잡곡밥 만두국 채소달걀말이 고사리나물 배추김치	잡곡밥 유부실파국 제육볶음 참나물무침 열무김치	쇠고기청경채 덮밥 달갈앙파국 이몬드잔멸치조 림 배추김치	잡곡밥 닭곰탕 마파두부 오이부추무침 배추김치	잡곡밥 이욱된장국 감자(치즈)전 뱅어포조림 배추김치	유부우동 밥(소) 너비아니구이 배추김치
오후 간식	찐고구마/식혜	머펜우유	미니탕수육	우엉주먹밥/보 리차	떡볶이	단호박라떼
열량	600kcal	592kcal	548kcal	674kcal	479kcal	710kcal
전북 오전 간식	청포도/우유	옥수수스프	오렌지	완두콩스프	파인애플/우유	과일시리얼
점심 식사	차조밥 아욱국 닭살채소볶음 청경채나물 배추김치	수수밥 설렁탕 채소강정 애호박나물 깍두기	기장밥 미소장국 코다리무장조 림 버섯무침 배추김치	쌀밥 콩나물국 수육 상취/쌈장 배추김치	팥밥 소고기부추국 두부구이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채소볶음밥 북어국 메추리알장조 림 배추김치
오후 간식	두유크림소스 떡볶이	견과류/플레인 요거트	모닝빵샌드위 치/우유	찐고구마/결명 자차	잔치국수	
열량	577kcal	580kcal	596kcal	600kcal	600kcal	509kcal
전남 오전 간식	제철과일	참치검은깨죽	제철과일	전복채소죽	제철과일	영양누룽지
점심 식사	수수밥 맑은조갯살국 매콤달콤닭살조 림 파래자반볶음 배추김체/오이스 틱	기장밥 근대된장국 소고기브로콜리 볶음 볼어묵조림 깍두기	백미밥 콩나물감치국 오장어양배추볶 음 머위대나물 깍두기당근스틱	두부감자볶음밥 부추계란국 견과류멸치볶음 배추감치	흑미밥 미소국 돈가건소스 시금치나물 깍두기	바지락미역국수 약간의 밥 단호박조림 배추김치
오후 간식	우엉치즈주먹밥/ 메밀차	미역짜장볶음면	찐고구마/우유	찹쌀도넷요구르 트	식뺑쨈우유	
열량	610kcal	624kcal	577kcal	568kcal	622kcal	358kcal

요일	월	화	수	목	급	토
경북 오전 21/1	바나내우유	채소죽	떠먹는요구르트	흰쌀죽	키위/우유	미니핫도그
간식	쌀밥 물만둣국	팥밥 북어국	아기간장잡채덮 밥	율무밥 어묵국	쌀밥 청국장	돈까스 쌀밥
점심 식사	순살고등어구이 진미양배추무침 배추김치	쇠고기떡볶음 깻잎순나물 배추김치	호박들깨볶음 저염깍두기 과일	순살닭갈비 찐브로콜리/소 스 배추김치	메추리알장조림 참치채소볶음 배추김치	미소장국 마카로니샐럿 깍두기
오후 간식	토스트/쥬스	찐감자/두유	떡/차	부추전	뺑요구르트	바나내우유
열량	697kcal	639kcal	617kcal	542kcal	665kcal	475kcal
경남 오전 간식	포도	양파스프	바나나	견과류/ 플레인요구르트	찹쌀채소죽	발효유
점심	쌀밥 열무된장국 완자전	수수밥 쇠고기무국 참치채소볶음	쌀밥 맑은버섯두부탕 토마토장조림	현미밥 오징어찌개 게맛살감자조림	쌀밥 북어채국 닭살야채볶음	매실간장비빔국 수
4사	브로콜리무침 배추김치	부추나물 배추김치	숙주나물무침 깍두기	구운김 깍두기	메밀묵무침 배추김치	호박맑은국 깍두기
오후 간식	크림떡볶이	볶음우동	단호박샌드위치/ 우유	약밥	찐고구마/우유	_
열량	566kcal	602kcal	606kcal	677kcal	561kcal	487kcal
제주 오전 간식	슬라이스치 <i>즈</i> 포도쥬스	씨리얼/우유	토마토	참외/잣호두차	호상요구르트	두유
점심 식사	찰보리밥 시래기된장국 두부카레조림 어묵아채볶음 배추김치	현미밥 배추당면국 치킨찹스테이크 오이배초무침 깍두기	소고기볶음밥 콩나물맑은국 메추리알장조리 깍두기	기장밥 애호박양파국 삼치살데리야끼 조림 으깬감자샐러드 배추김치	수수밥 유부된장국 찹쌀돼지고기강 정 팽이버섯부추나 물 배추김치	스파게티 아채모둠피클
오후 간식	단호박찜/우유	찐만두	머핀/결명자차	야채전	삶은계란(매실 차	바나내우유
열량	586kcal	580kcal	560kcal	538kcal	626kcal	413kcal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아욱	2	1	1	-	1	-	-	-	1	-	-	1	1	-	1	1	-
양파	1	3	1	1	1	1	2	1	-	1	1	1	2 1	2	1	1	2
깻잎	1	1	1	1	1	1	-	1	1	1	1	-	1	-	1	1	-
브로 콜리	1	2	2	1	2	3	3	3	-	1	1	2	1	1	1	1	2
버섯	4	5	6	3	3	5	1	5	3	2	5	5	3	3	2	1	3
가지	2	1	1	1	1	3	-	3	-	1	1	1	1	2	2	1	-
열무	7	1	1	3	-	1	-	-	-	1	1	1	1	2	2	-	2
고구 마	3	3	2	1	1	-	1	-	1	3	1	2	3	3	2	2	3
빵	4	6	3	2	5	6	3	5	5	6	4	4	4	3	3	5	5
떡	5	7	7	3	4	6	5	5	11	3	5	3	5	6	3	6	3
가공 품	-	2	3	2	3	1	1	1	1	3	4	1	1	3	3	1	3
과일	13	18	14	16	16	11	14	12	12	9	14	13	16	17	12	14	15
오징 어	1	1	2	1	1	2	1	2	1	2	2	-	1	2	2	1	2
고등 어	-	-	-	1	1	1	1	1	1	1	1	-	1	1	-	1	-
삼치	1	1	1	1	1	1	-	1	1	-	-	1	1	1	1	1	1
톳	-	-	-	-	-	-	-	-	-	-	-	-	-	3	-	-	-
전복	-	-	-	-	1	-	-	-	-	-	-	-	-	1	-	1	1
미더 덕	-	1	-	-	-	-	-	-	-	-	-	-	-	-	-	-	-
북어	-	1	2	-	2	-	1	1	-	1	1	-	1	1	1	1	1
미역	3	3	3	2	3	2	4	2	1	5	2	3	3	5	3	1	3
해물	-	3	4	3	3	2	2	2	4	2	1	3	1	2	1	-	1
홍합	-	-	1	-	-	-	-	-	-	-	-	-	-	-	-	-	-
흰살 생선	-	-	1	-	-	-	-	-	-	1	-	-	-	-	-	1	1
멸치	1	2	1	1	2	2	1	2	2	1	2	1	2	1	1	2	1
게살	-	1	-	1	-	1	1	1	-	-	-	2	-	-	-	-	1
새우	-	2	1	2	2	1	2	1	4	2	1	3	1	1	1	-	1
동태, 명태	1	-	-	-	-	-	-	-	1	-	-	1	1	-	-	1	-
다슬 기	-	-	1	-	-	-	-	-	-	-	-	-	-	-	-	-	-
유제 품	23	14	19	19	13	25	16	23	17	25	22	20	15	15	15	19	26

### 부록 2. 연령별 교재교구 목록 및 단가(2015년 기준)

# 가. 0세 교재교구(6명 기준)

〈부표 IV-3-1〉 0세 교재교구

단위: 원

어서	2 D	그그그게 조르	소요		교재교구	· 단가		내용
영역	종목	교구교재 종류	기준	A	В	С	기타	연수
기저		모빌	1	45,000	-	-	-	3
기시 귀갈		딸랑이	2	10,000	14,900	11,920	-	3
이		그림이나 사진	1	-	-	-	3,400	2
		안전거울	1	196,000	48,000	65,000	-	5
낮잠		모빌	3	120,000	-	-	-	3
		아기 침대 놀이감	3	18,000	30,000	11,120	-	3
휴식		큰 동물 봉제인형	2	196,000	38,000	30,400	-	3
	대근육 조절(침대 놀이/누워서 사용)	소프트 놀이 매트	2	72,000	205,000	135,200	-	3
	대근육조절 (밀고 당기기)	미니버스·미니덤프트 럭·미니비행기	6	-	79,500	28,800		3
	이동운동	영아용 플레이 짐	1	2,490,000	-	-	-	7
	(기어오르기)	영아용 폼블록 세트	1	695,000	600,000	680,000	-	5
	이동운동 (잡고 걷기)	걸음마 거울	1	-	-	-	51,156	5
		영아용 워커	2	195,000	65,000	98,600	-	3
신체	(12 2/1)	걸음마 막대	4	29,000	29,000		-	3
다세		동물 끌기 장난감	1	46,000	43,000	38,700	-	3
	이동운동	풍선공	1세트	49,000	50,000	-	-	3
	(끌고	소리나는 공세트	1세트	29,900	29,900	23,920	-	3
	다니기) 이동운동(공)	작은 크기의 부드러운 공	1세트	29,000	15,000	-	-	3
		촉감천공	1세트	86,000	-	20,800	-	3
	기구운동(손	움직여 타는 놀잇감	2	312,000	77,000	64,800	-	5
	과발동작으 로이동,비이 동)	여러 가지 종류의 탈것 놀이기구(붕붕카)	2	95,000	65,000	62,500	-	3
	몸 움직임 즐기기	영아용 볼풀	1세트	2,390,000	130,000	1,056,00 0	-	5
		동물 봉제인형(대)	1세트	-	22,000	88,000	_	3
선취	서치노시	동물 봉제인형(소)	1세트	148,000	160,000	128,000	-	3
역할	역할놀이	사람 봉제인형	4	25,900	27,900	22,320	-	3

			소요		교재교구	나가		내용
영역	종목	교구교재 종류	기준	A	В	C	기타	- 17 8 연수
		소리나는 인형	4	24,900	26,900	21,520	-	3
		헝겊 소꿈놀이 세트	1	15,000	79,900	64,000	-	2
		소꿉놀이 그릇세트	1	95,000	39,000	39,200	-	3
		헝겁 과일모형	1	39,500	64,900	51,920	-	3
		헝겁 야채모형	1	39,500	64,900	51,920	-	3
		영아용 병원놀이세트	2	64,000	48,000	38,400	-	3
		영아용 싱크대	1	194,000	248,000	225,000	-	5
		영아용 자석 탈것	1세트	68,000	60,000	-	-	3
		우레탄 토탈 적목	1세트	-	600,000	-	-	5
		스펀지블록	1세트	62,000	148,000	47,000	-	3
λ1}.⇒1	ᄱᆚᆔᅩᄾ	종이벽돌 블록	2세트	45,000	55,000	48,400	-	1
쌓기	쌓기놀이	안전빌딩 블록	1세트	139,000	-	44,000	-	1
		스펀지 도형블록	2세트	57,900	62,900	-	-	2
		감각 컵블록	1세트	67,000	27,900	13,500	-	5
		그림카드 세트	2	126,000	-	-	-	3
		사진카드 세트	2	38,000	-	-	-	3
		전화기	2	18,000	32,000	25,500	-	3
	듣기·말하기	동물 손인형	1	23,000	15,900	10,400	-	3
		이야기 CD	4	-	-	290,000	-	3
		노래 CD	4	-	-	120,000	-	3
언어		CD플레이어	1	34,000	-	-	-	5
인어		헝겊책	8	12,000	41,900	33,520	-	2
		촉감책	8	12,500	28,900	23,120	-	2
	읽기	비닐책	8	-	-	-	-	2
	된기	소리나는 책	8	-	-	25,600	-	2
		주제관련 그림책	30	_	-	_	_	3
		(5권*6주제)	50					
	쓰기	-	-	-	-	-	-	
		딸랑이	2세트	10,000	14,900	11,920	-	3
		동물인형 딸랑이	1세트	76,000	24,900	19,920	_	3
	청각:소리(음	동물소리탐색교구	2	43,000	-	-	-	3
	악및동작)	영아용 리듬악기세트	1세트	129,000	49,000	39,200	_	3
	1 / 2 1)	동물 마라카스	1세트	-	22,000	4,100	-	3
		녹음기	1	-	-	-	25000	5
<b>-1</b> 11		음악CD	4	68,000	-	-	-	3
탐색		동물 딸랑이 치발기	6	34,000	9,900	8,000	-	1
	촉각	촉감자극인형	2	39,000	32,000	25,600	-	3
		감각공(촉감공)	1세트	74,000	-	20,800	-	3
		까꿍놀이용 비밀상자	2	108,000	-		-	3
	인지	모양・색깔 퍼즐	6	78,000	51,000	49,000	-	3
		모양상자	2	139,000	-	-	-	3
	소근육	영아용 망치놀이	2	42,000	30,000	24,000	-	3

영역	종목	교구교재 종류	소요		교재교구	- 단가		내용
8 4	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기준	A	В	C	기타	연수
		영아용 페그보드 세트	2	59,000	-	29,600	-	3
		오뚝이	2	-	28,000	-	-	3
		롤러코스터	2	98,000	40,000	65,300	-	5
		롤링 볼 타워	2	26,000	57,000	56,000	-	5
	미술	점토 모형틀(뚫린 틀)	2세트	50,000	9,000	980	-	3
	니돌	점토 모형틀(막힌 틀)	2세트	86,000	9,000	-	-	3
		터널미끄럼	1	-	169,000	135,200	-	5
	이동운동	안전수쿠터	2	115,000	118,000	64,000	-	3
		영아용 자동차	2	184,000	169,000	162,000	-	2
		영아용 시소	1	36,000	93,000	74,400	-	5
	균형잡기	흔들목마형 놀이기구	1	82,000	77,000	61,600	-	7
	판영엽기	흔들목마형 놀이기구	1		199,000	73,600	-	7
실외		놀이터그네 세트	1	23,000	23,000	26,300	-	5
		모래놀이 도구모음	2세트	172,000	37,000	39,200	-	3
		큰 트럭(모래놀이용)	1	99,000	37,000	33,300	-	3
	フトフトナーへ)	큰 포크레인	1		270,000			3
	감각놀이	(모래놀이용)	1	_	270,000	-	-	3
		물놀이풀(미끄럼풀장)	1	169,000	-	-	-	3
		물놀이감 세트	1	175,000	-	-	-	5

자료: A업체(2015). 제품 카다로그 B업체(2015). 제품 카다로그

C업체(2015). 홈페이지

#### 〈부표 IV-3-2〉 0세 비품

단위: 원

+) +)			소요			7 <del>}</del>		<sub>기</sub> . 전 내용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기준	A	В	C	기타	연수
		흔들 의자(성인용)	1	_	-	_	69,620	5
수유		영아용 식탁 의자	6	239,000	-	-	-	5
- !! 식사 간식		보온병	1	-	-	-	38,270	5 5
간식		냉장고	1	-	-	-	113,920	7
		자외선살균소독기	1	285,000	297,000	246,500	-	7
기저 귀갈 이		기저귀 갈이대	1	125,000	-	29,600	-	7
ı l.əl		아기 침대	2	82,400	-	-	-	7
낮잠		매트리스	6	46,000	90,000	68,000	-	5
중시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_	3
휴식		푹신한 깔개	1	51,500	-	32,000	-	3
		영아용 낮은 책꽂이	1	322,000	420,000	273,000	-	7
	언어	푹신한 깔개	1	215,000	-	90,000	-	3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	
	티. 제	교구장	2	348,000	450,000	266,000	_	5
	탐색 (쌓기)	안전거울	1	196,000	48,000	28,000	-	5
	( 0 × 1)	넓은쟁반, 바구니	10	7,900	11,000	4,800	-	3
		이불장	1	543,000	620,000	336,000	-	5
		영아 개인사물함	1	348,000	430,000	301,000	_	5
		옷걸이장	1	457,000	590,000	483,000	-	1
흥미 영역		책상	1	149,000	170,000	115,500	_	5
영역		게시판	2	159,000	250,000	200,000	-	5
		에어컨	1	-	-	_	244,990	10
	수납	공기정화기	1	-	-	-	224,500	7
	1 11	가습기	1	-	-	73,000	-	5 7
		디지털 카메라	1	-	-	-	234,450	7
		디지털 체온계	1	-	-	_	58,960	5
		온습도계	1	-	72,600	36,000	-	7
		시계	1	-	-	21,800	_	7
		약품상자	1	-	-	44,000	_	3
		유모차(2인용)	1	-	-		168,550	3

### 나. 1세 교재교구(10명 기준)

〈부표 IV-3-3〉 1세 교재교구

단위: 원

	·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딘	가		내용
0 7	0 7	307 1 3 11	' 0	A	В	C	기타	연수
		모빌	1	45,000	-	-	-	3
기저귀		그림이나사진	4	-	-	-	3,400	2
갈이		안전거울	1	196,000	48,000	65,000	-	5
		동물인형 딸랑이	1세트	76,000	24,900	19,920	-	3
낮잠		모빌	1	120,000	-	-	-	3
<u>휴</u> 식		큰 동물 봉제인형	2	196,000	38,000	30,400	-	3
	대근육조절( 밀고당기기)	큰 자동차(붕붕카)	4	95,000	65,000	62,500	-	3
	이동운동	영아용 플레이 짐	1	2,490,000	-	-	-	7
	(기어오르기: 계단,경사로)	영아용 폼블록세트	1	695,000	600,000	680,000	-	5
	이동운동잡 고 걷기)	영아용 워커	2	195,000	65,000	98,600	-	3
	이동운동 (끌고 다니기)	동물끌기 장난감	4	46,000	43,000	38,700	-	3
		풍선공	1세트	49,000	50,000	-	-	3
신체	이동운동	작은 <i>크</i> 기의 부드러운 공	2세트	39,900	50,000	-	-	3
	(공)	촉감천 공	1세트	86,000	-	20,800	-	3
		소리나는 공세트	2세트	29,900	-	23,920	-	3
		공 보관바구니	1	269,000	145,000	-	-	5
	기구운동 (손과발동작 으로이동,비	움직여 타는 놀잇감(앞 뒤로 움직이는 동물 놀이 기구)	3	312,000	77,000	64,800	-	5
	이동)	여러가지 종류의 탈것 놀이기구(비행기차 등)	3	-	61,000	48,800	-	3
	몸 움직임 즐기기	영아용 볼풀	1세트	2,390,000	130,000	1,056,000	-	5
		그림카드 세트	2	126,000	-	-	54,820	3
		전화기	2	25,000	32,000	25,500	-	3
		마이크	3	-	-	8,800	13,120	3
	  듣기,말하기	동물 손인형	6	23,000	15,900	10,400	-	3
	[문기, 달이기	동물 모자	1세트	99,900	110,000	88,000	-	3
언어		이야기 CD	4	-	-	290,000	-	3
		노래 CD	4	-	-	120,000	-	3
		CD 플레이어	1	34,000		-	-	5
		헝겊책	8	12,000	41,900	33,520	-	2
	읽기	촉감책	8	12,500	28,900	23,120	-	2

			1		뒤	<u></u>		내용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A	В	C	기타	연수
		비닐책	8	-	-	-	-	3
		소리나는 책	8	-	-	25,600	-	3
		주제관련 그림책 (5권*7주제)	35	-	-	-	-	3
	쓰기	자석스크린보드	2	212,000	20,000	37,600	-	1
		딸랑이 세트 (손목과 발목)	1세트	-	-	-	-	3
		동물소리탐색교구	2	-	6,000	-	16,350	3
	청각:소리	비치우드볼(멜로디 목 재구슬)	1	43,000	-	-	-	3
	(음악및동작	영아용 리듬악기세트	1세트	175,000	-	-	-	3
	( )	탬버린 세트	1세트	129,000	49,000	39,200	-	3
		미니 레인 셰이커	1세트	90,000	14,000	12,600	-	3
		실로폰	2	72,000	13,000	10,400	-	3
		녹음기	1	34,000	33,000	32,250	-	5
		음악테이프	4	-	-	-	25,000	3
		촉감 퍼즐	2	-	-	-	9,800	3
	촉각	촉감자극인형	2	40,000	-	-	31,900	3
		촉감인형 조작놀이	1세트	39,000	32,000	25,600	-	3
		색깔구분보드	2	272,000	-	48,500	363,000	3
		모양 구분보드	2	58,000	-	-	-	3
	인지	모양 맞추기 집	2	58,000	-	21,000	-	3
		꼭지퍼즐	2	39,000	36,000	27,000	-	3
		손잡이 퍼즐	2	20,000	22,000	20,000	-	3
탐색		영아용 망치놀이	2	52,000	15,000	11,300	-	3
		영아용 칼라페그보드	2	42,000	30,000	24,000	-	3
		영아용 실꿰기	2	59,000	-	29,600	-	3
	소근육	영아용 목재구슬꿰기	1	58,000	33,000	24,800	-	3
	소는퓩	연결고리 끼우기	1	185,000	36,000	27,000	-	3
		영아용 낚시놀이	1	23,000	25,000	18,800	-	3
		자동차 트랙놀이	2	76,000	54,000	44,000	-	5
		롤러코스터	2	132,000	110,000	-	-	5
		점토 모형틀(뚫린 틀)	2세트	98,000	40,000	65,300	-	3
		점토 모형틀(막힌 틀)	2세트	50,000	9,000	980	6,400	3
	미술	롤러스탬프	2세트	86,000	9,000	-	6,400	3
	- 비포 - 비포 - 비포	도장찍기(동물, 모양도 장등)	2세트	23,000	30,000	-	17,700	3
		동물 봉제인형	1세트	36,000	33,000	22,400	-	3
		사람인형	2	148,000	160,000	128,000	-	3
	역할놀이	물세탁 영아용 다인종 형	1세트	25,900	27,900	22,320	-	3

영역	조모	コポコフ そこ	수량		딘	<u></u> :가		내용
34	종목	교재교구 종류	一十分	A	В	С	기타	연수
		인형 유모차	2	270,000	-	132,000	-	3
		포대기	3	59,000	72,000	13,600	-	2
		헝겁 소꿉놀이 세트	2	18,500	-	9,600	5,500	2
		그릇 세트	1	15,000	79,900	64,000	-	3
		음식모형 세트	1	95,000	39,000	39,200	-	3
		과일바구니	1	119,000	130,000	36,000	-	3
		야채 바구니	1	100,000	110,000	82,500	-	3
		자작싱크대	1	83,000	90,000	67,500	-	5
		자작오븐렌지(영아용)	1	179,000	330,000	161,000	-	5
		병원놀이 세트	2	179,000	330,000	161,000	-	3
		직업 자동차 (병원차, 소방차, 경찰차)	6	64,000	48,000	38,400	-	3
		우레탄 토탈 적목	1세트	41,500	28,000	33,800	-	5
		영아용 안전 빅블록	1세트	-	600,000	-	600,000	5
		종이벽돌블록	2세트	139,000	-	44,000	-	1
		헝겊 블록	4개	45,000	55,000	48,400	-	3
	쌓기놀이	스펀지 도형블록	1세트	39,000	-	36,000	-	3
		감각 컵블록	1세트	57,900	62,900	-	-	5
		목재기차 블록	2	67,000	27,900	13,500	-	3
		레고블록	2세트	48,000	55,000	24,300	-	5
		소형 자동차	8	-	160,000	-	142,560	3
	기구운동	안전스쿠터	3	-	169,000	135,200	-	3
	/11 4 0	영아용 자동차	3	115,000	118,000	64,000	-	2
		시소	2	184,000	169,000	162,000	-	5
	균형잡기	흔들목마용 놀이기구	1	36,000	93,000	74,400	-	7
	실외	흔들목마용 놀이기구	1	-	55,000	64,800	-	7
실외		놀이터 그네 세트	1	-	-	-	-	5
		안전모래놀이세트	1	-	199,000	<i>7</i> 3,600	-	3
	ㅁ훼(무)	큰 트럭(모래놀이용)	2	135,000	135,000	127,500	-	3
	모래(물) 놀이	큰포크레인(모래놀이용)	2	172,000	37,000	39,200	-	3
	E 1	물놀이 풀	1	99,000	37,000	33,300	-	3
	ما جا (2015)	물놀이 도구세트	1	-	270,000	-	248,000	3

〈부표 IV-3-4〉 1세 비품

							단위	의: <u>원</u>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단	가		내용
8 4	0 7	亚州亚丁多开	7 %	A	В	C	기타	연수
		영아용 식탁 의자	6	239,000	-	-	-	5
수유		보온병	1	-	-	-	38,270	5
一十		냉장고	1	-	-	-	113,920	7
		자외선살균소독기	1	285,000	297,000	246,500	-	7
기저귀 같이		기저귀 갈이대	1	125,000	-	29,600	-	7
 낮잠		아기 침대	2	82,400		-	-	7
ズ 百		매트리스	10	46,000	90,000	68,000	-	5
휴식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	3
मिं न		푹신한 깔개	1	51,500	-	32,000	-	3
		영아용 낮은 책꽂이	1	322,000	420,000	273,000	-	7
	언어	푹신한 깔개	1	215,000	-	90,000	-	3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	3
		교구장	2	348,000	450,000	266,000	-	5
	탐색/쌓기/ 언어	안전거울	1	196,000	48,000	28,000	-	5
	21	넓은 쟁반, 바구니	20	7,900	11,000	4,800	-	3
		이불장	1	543,000	620,000	336,000	-	5
		영아 개인사물함	1	348,000	430,000	301,000	-	5
충디		책상	2	149,000	170,000	115,500	-	5
흥미 영역		환경판	1	159,000	250,000	200,000	-	5
0 7		에어컨	1	-	-	-	244,990	10
		공기정화기	1	-	-	-	224,500	7
	수납	가습기	1	-	-	73,000	-	5
	ָ ֓ ֓ ֞ ֡ ֡	디지털 카메라	1	-	-	-	234,450	7
		디지털 체온계	1	-	-	-	58,960	7 5
		온습도계	1	-	72,600	36,000	-	7
		시계	1	-	-	21,800	-	7
		약품상자	1	-	-	44,000	-	3
		유모차(2인용)	1	-	-	-	168,550	3

### 다. 2세 교재교구(14명 기준)

〈부표 IV-3-5〉 2세 교재교구

단위: 원

							닌	위: 원
영역	종목	77 77	수량		단기	-		내용
34	84	교재 교구	ては	A	В	С	기타	연수
휴식		큰 동물 봉제인형	2	196,000	38,000	30,400	-	3
	대근육 조절	자동차(큰)	4	95,000	65,000	62,500	-	3
	이동운 동(계단 오르고 내려오 기)	미끄럼틀	1	296,000	175,000	-	-	7
	이동운 동(잡고 걷기)	영아용 워커	2	195,000	65,000	98,600	-	3
신체	균형잡 기	영아용 트램플린	2	364,000	275,000	88,000	-	5
다시		탄력공세트	2세트	57,900	62,900	50,320	-	3
	이동운	작은공 (무지개 스포츠 공)	2세트	39,900	50,000	*	-	3
	동(공)	손세탁 감각볼모음	1세트	86,000		20,800	-	3
		후프 4개 세트	2세트	90,000	-	6,400	-	3
	기구 운동 (이동)	여러 종류의 탈 것 (비행기, 차 등)	3	-	61,000	48,800	-	5
	몸 움직임 즐기기	영아용 볼풀	1세트	2,390,000	130,000	1,056,000	-	5
		그림카드 세트	2	126,000	-	-	-	3
		사진자료 세트	4	38,000	-	-	-	3
		마이크	3	-	-	8,800	-	3
		전화기	2	25,000	32,000	25,500	-	3
	듣기,	손인형(동물)	6	23,000	15,900	10,400	-	3
	말하기	손인형(사람)	6	67,000	72,000	57,600	-	3
		동물 모자	6	99,900	110,000	88,000	-	3
		이야기 테이프	4	-	_	290,000	-	3
언어		노래 테이프	4	-	-	120,000	-	3
		CD 플레이어	1	34,000	-	-	-	5
		헝겊책	8	12,000	41,900	33,520	-	2
		촉감책	8	12,500	28,900	23,120	-	2
		소리나는 책	4	-	-	25,600	-	2
	읽기	주제관련 그림책(5 권*9주제)	9	-	-	-	-	3
		기타 주제 그림책	1	-			53,370	3

~~~~~~~~~~~~~~~~~~~~~~~~~~~~~~~~~~~~~~	- Z P	77 77	스카		단가			내용
영역	종목	교재 교구	수량	A	В	С	기타	연수
	쓰기	자석쓰기 판	3	212,000	20,000	37,600	-	1
	촉감, 소리	멜로디 목재 구슬 세트	1	175,000	-	-	-	3
	탐색	소리상자	1	48,000	115,000	43,920	-	3
		촉감인식 발자국놀 이	2	165,000	-	-	-	3
		옷입히기 입체퍼즐 세트	1	59,000	25,000	22,500	-	3
		자석 퍼즐세트(이야 기 속 주인공들)	1	39,000	26,000	32,000	-	3
		어미와 새끼 동물퍼 즐 세트	1	14,000	-	102,400	-	3
		감정표현 퍼즐세트	1	216,000	-	-	-	3
		크기와 색감 손잡이 퍼즐	2	152,000	49,000	49,000	-	3
감각 탐색		과일타워쌓기	2	84,000	_	-	-	3
탐색	조작	도형놀이판	2	29,000	36,000	31,500	-	3
	활동	도형퍼즐	2 2	36,000	16,000	18,800	-	3
		입체모형분리스탠드		35,000	-	-	-	3
		영아용 목재 구슬판	2	152,000	_	22,400	-	3
		탑쌓기	2	30,000	42,000	34,400	-	3
		영아용 목재구슬 꿰 기	2	185,000	36,000	27,000	-	3
		나무 실꿰기	2	30,000	-	-	-	3
		동물 실꿰기 세트	1	24,000	33,000	28,000	-	3
		연결고리 끼우기	2	23,000	25,000	18,800	-	3
		영아용 낚시놀이	2	76,000	54,000	44,000	-	3
	탐색	대형 돋보기 세트	1	176,000	-	-	-	3
	활동 자료	자석막대 세트	1	39,000	5,400	800	-	3
		동물 봉제인형	8	148,000	160,000	128,000	_	3
	인형	가족 봉제인형	8	59,000	-	64,000	-	3
		다인종아기인형	1세트	270,000	-	132,000	-	3
	인형	인형놀이 끌차	2	124,000	-	20,800	-	3
	돌이 소품등	포대기	3	18,500	-	9,600	-	2
		자작싱크대	1	179,000	330,000	161,000	-	5
역할	소꿉 놀이	자작오븐렌지 (영아용)	1	179,000	330,000	161,000	-	5
	자료	식기세척기	1	169,000	_	-	-	5
		식사용 낮은 탁자	1	235,000	150,000	70,000	-	5
		전화기	2	25,000	32,000	25,500	_	3
	소꿉 놀이 소품	소꿉놀이 세트	1	95,000	39,000	39,200	-	3

영역	종목	77 77	스라		단가			내용
34	84	교재 교구	수량	A	В	С	기타	연수
		요리도구 세트	1	8,000	49,800	44,200	-	3
		음식모형 세트	1	119,000	130,000	36,000	-	3
		과일모형세트	1	100,000	110,000	82,500	-	3
		야채 모형 세트	1	83,000	90,000	67,500	-	3
	병원 놀이	병원놀이	2	64,000	48,000	38,400	-	3
	놀이집	놀이집	1	289,000	260,000	384,000	-	7
		우레탄 적목	1세트	-	600,000	-	-	5
		우레탄 공간 적목	2세트	-	325,000	-	-	5
		레고빅브릭스	1세트	996,000	-	-	-	5
	블록	종이벽돌블록 (1세트*2)	2세트	45,000	55,000	48,400	-	1
	三十	원목블록 종합세트	1	365,000	37,000	256,000	-	3
쌓기		자석도형블록	4세트	-	82,500	114,800	-	3
중기		스펀지블럭 (주사위 8개 세트)	1	-	47,900	38,320	-	3
		십자블럭	2세트	32,000	35,000	26,300	-	3
		동물자동차세트	1	92,000	-	-	-	3
	쌓기	목재자동차세트	1	89,000	89,000	-	-	3
	놀이 소품	종합동물모형모음	1	265,000	240,000	396,000	-	3
		자동차 놀이 모음	1세트	179,000	320,000	240,000	-	3
	밀가루	찰흙 디자인 모형	1세트	95,000	35,000	41,300	-	3
미술	점토 놀이	찰흙 범피 롤러세트	1	25,000	-	-	-	3
	찍기,	롤러스탬프	2세트	23,000	30,000	_	-	3
	밀기	모양도장	1세트	36,000	33,000	22,400	-	3
		핸드드럼 세트	1	65,000	14,800	48,800	-	3
		탬버린 세트	1세트	90,000	14,000	12,600	-	3
		봉고 드럼	3	79,000	35,000	37,500	-	3
	리듬	목재에그쉐이크	6	7,000	6,000	4,500	-	3
	악기	종합쉐이커 모음	1	79,000	-	19,800	-	3
		목재 마라카스	2세트	14,000	24,000	18,000	-	3
		칼라 마라카스	1	8,000	10,000	7,500	-	3
음률		리듬막대칼라세트	1	9,000	12,000	9,800	-	3
	소리	영아용 목재실로폰	2	34,000	33,000	32,250	-	3
	탐색	영아용 피아노	2	34,000	76,000	40,000	-	3
	동작	활동 스카프 세트	1	36,000	11,000	21,600	-	3
	표현 돕기	손목 리본 세트	1	58,000	15,000	-	_	3
		리본스틱	1	42,000	25,000	-	-	3
	노래 듣기	녹음기	1	-	-	-	25,000	5
실외	기구 운동	영아용 자전거	4	-	169,000	135,200	-	3

<del></del>	종목	77 77	수량		단가			내용
37	34	교재 교구	てな	A	В	С	기타	연수
		영아용 자동차	4	-	1,650,000	1,320,000	-	2
		안전모래놀이세트	1	-	-	-	-	3
		트럭(큰)	2	154,000	119,000	55,300	-	3
		포크레인(큰)	2	184,000	169,000	162,000	-	3
	모래	굴삭기(큰)	2	36,000	93,000	74,400	-	3
	(물) 놀이	테이블/의자	1	135,000	135,000	127,500	-	5
	'	놀이집	1	172,000	37,000	39,200	-	5
		물놀이 풀장	1	99,000	37,000	33,300	-	3
		물놀이 도구세트	1	152,000	37,000	33,300	-	3

〈부표 IV-3-6〉 2세 비품

							단	<u>위: 원</u>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단	가		내용
	07	712/11/11/21 0 11	1 0	A	В	С	기타	연수
수유식사		냉장고	1	-	-	-	113,920	7
간식		자외선살균소독기	1	285,000	297,000	246,500	-	7
낮잠		매트리스	14	46,000	90,000	68,000	-	5
휴식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	3
π-1		푹신한 깔개	1	51,500	-	32,000	-	3
	언어	책꽂이	1	382,000	490,000	315,000	-	7
		푹신한 깔개	1	-	-	90,000	-	3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	3
	언어/	교구장	5	348,000	450,000	266,000	-	5
	다.// 탐색/ 쌓기/ 음률/ 미술	교재교구 세팅 탁자	2	245,000	154,000	94,500	-	5
		안전거울	1	196,000	48,000	28,000	-	5
		넓은 쟁반, 바구니	35	7,900	11,000	4,800	-	3
		이불장	1	543,000	620,000	336,000	-	5
흥미영역		영아 개인사물함 (8인용)	2	381,000	520,000	343,000	-	5
용미정역		옷걸이대	2	192,000	450,000	-	-	1
		책상	3	149,000	170,000	115,500	-	5
		게시판	2	159,000	250,000	200,000	-	5
	수납	에어컨	1	-	-	-	244,990	10
		공기정화기	1	-	-	-	224,500	7
		디지털 카메라	1	-	-	-	234,450	7
		디지털 체온계	1	-	-	-	58,960	5
		온습도계	1	-	72,600	36,000	-	7
		시계	1	-	-	21,800	-	7
		약품상자	1	-	-	44,000	-	3

### 라. 3세 교재교구(15명 기준)

〈부표 IV-3-7〉 3세 교재교구

							단	위: 원
영역	종목	교재교구명	수량		단>			내용 연수
	0 7	, , ,	7 %	A	В	С	기타	연수
휴식		큰 동물 봉제인형	2	2	196,000	38,000	30,400	3
	이야기	수수께끼 상자	1	-	-	-	19,900	3
	나누기 자료	언어활동사진자료세 트(사물유아용품,음 식,동물,계절)	5세트	403,000	-	72,000	-	3
		손인형(동물) 세트	1	23,000	15,900	10,400	-	3
		손인형(가족) 세트	1	67,000	72,000	57,600	-	3
		역할놀이손인형세트	1	272,000	199,900	159,920	-	3
	인형	다인종 학습 손인형 세트	1	265,000	170,000	136,000	-	3
		역할놀이마스크세트	1	74,000	40,000	7,650	-	3
		손가락 인형 세트	4	45,900	49,900	39,920	-	3
		인형극장(틀)	1	194,000	328,000	294,000	-	5
		융판 (삼각자료판)	1	21,000	22,000	17,600	-	3
	이야기	매직가방(융판)	1	-	39,900	31,920	-	3
언어	만들기	융판자료세트	10	13,700	14,900	47,120	-	3
인어		이야기 만들기 카드	1세트	139,000	99,800	-	-	3
		이야기 테이프	10	-	-	290,000	-	3
	듣기	CD플레이어(녹음겸용)	1	34,000	-	-	-	5
		헤드폰	2	-	-	14,000	-	3
	위기 책	주제관련 그림책 (5권*12주제)	12	-	-	-	-	3
	씍	기타 그림책	20	-	-	-	-	3
	글자	자석글자(한글)	3	-	-	-	85,050	3
	관심	자석보드판	2	174,000	19,900	21,600	-	3
	갖기	한글 퍼즐	2	36,000	28,000	37,600	-	3
		화이트 보드(끄적거 리기용)	3	20,000	20,000	17,600	-	1
	쓰기	글자 도장세트	2	26,000	-	16,500	-	3
		쓰기학습 교구(선긋 기)	1세트	-	200,000	-	-	3
		실물사진 동물퍼즐 세트	1	225,000	-	172,800	-	3
		하루일과 사진퍼즐 세트	1	162,000	-	44,000	-	3
수과학	수조작 퍼즐	나탄 따라하기 퍼즐 모음 세트	1	-	-	-	16,500	3
		감정표현퍼즐세트	1	216,000	-	-	-	3

병역	종목	교재교구명	수량		단	단가			
o i	89	亚州亚丁多	7 %	A	В	С	기타	연-	
		세계의 어린이 퍼즐	1	189,000	34,500	-	-	3	
		교통기관조립퍼즐(비 행기등)	3	79,000	22,000	93,600	-	3	
	일대일 대응	순서 개념 구슬놀이 세트	1	109,000	-	132,800	-	3	
	া দাত	매칭카드게임(동물)	1	74,000	23,500	112,000	-	3	
	규칙성	도형 구슬꿰기 세트	1	49,000	55,000	24,800	-	3	
	분류	분류상자 세트	1	115,000	39,600	76,000	-	3	
	ਦੱਸ	집게 분류게임 세트	1	72,000	49,500	-	-	3	
	도형	도형 쌓기 수놀이	1	182,000	255,000	-	-	5.0	
	工名	도형놀이판	2	29,000	36,000	31,500	-	3	
	순서	크기와 색감 손잡이 퍼즐	2	152,000	49,000	49,000	-	3	
		배열하기 연습판	1	98,000	-	-	-	3	
	부분과 전체	분수퍼즐	1	19,000	19,000	14,300	-	3	
	ul –	도형 막대끼우기	1	29,000	36,000	31,500	-	3	
	비교	크기학습퍼즐	1	32,000	-	33,600	-	3	
	측정	양팔저울	1	65,000	39,600	16,000	-	3	
		풍경 꾸미기 놀이	1	145,000	-	-	-	3	
	위치	하우스 위치 게임	1	84,000	-	-	-	3	
		그림매칭목재블록	1	142,000	-	41,300	-	3	
		돌림판 카드 수세기	1	62,000	44,000	28,800	-	3	
	수세기	수세기 도미노 게임	1	23,000	-	-	-	3	
	누세기	수 활동 도미노	1	68,000	-	-	-		
		1,2,3 숫자 세기	1	75,000	39,600	32,800	-	3	
	ساما	메모리 카드 게임 농장	1	53,000	67,000	32,000	-	3	
	게임	실물 자료 기억력 게임	1	129,000	-	-	-	3	
		망치질 세트	1	85,000	24,000	29,700	-	3	
		옷입기 액자모음 세 트	1	158,000	99,900	80,000	-	3	
	소근육	먹이주기 연상게임	1	159,000	-	-	-	3	
		옷 입기 실꿰기	1	-	16,000	27,000	-	,	
		목공놀이대	1	139,000	185,000	166,500	-	,	
		자석 막대 세트	1	39,000	5,400	800	-		
	과학	강력 자석모음 세트	1	49,000	-	-	-	,	
	기본 자료	종합확대경 세트	1	24,000	22,000	25,200	-	(	
	1	다목적 확대경	2	23,000	10,000	-	-	3	
	생물 관련 자료	식물도감세트(봄,여 름,가을,겨울)	1	-	-	-	27,000	3	

종목 자연 현상 관련	교재교구명 동물도감 세트 사진세트	수량 1	A	단> B	С	기타	내용 연수
자연 현상 관련	사진세트	1					ピナ
자연 현상 관련	사진세트		_	_	-	29,700	3
관련	(봄,여름,가을,겨울)	1	-	-	-	3,200	3
	온습도계	1	-	72,600	36,000	-	5
	도마	4	-	-	5,000	-	5
	칼	4	-	-	-	6,930	5
	접시	6	-	-	-	940	5
	그릇	6	-	4,000	-	-	5
요리용 도구	보울	4	-	3,000	-	-	5
	냄비	2	-	-	-	27,350	5
	후라이팬	2	-	14,600	-	-	5
	가열기	2	-	-	-	27,300	5
	숟가락	6	-	-	-	5,890	5 5
	포크	6	-	-	-	6,300	5
	젓가락	6	-	-	-	4,940	5
	자작싱크대	1	179,000	330,000	161,000	-	5
	자작오븐렌지	1	179,000	330,000	161,000	-	5
기본	식기세척기	1	169,000	-	-	-	5
가구류	냉장고	1	185,000	380,000	245,000	-	5
	식사용 낮은 탁자	1	235,000	150,000	70,000	-	5
	화장대	1	286,000	330,000	217,000	-	5
	동물 봉제 인형	8	148,000	160,000	128,000	-	3
	다인종아기인형 (3개1세트)	1세트	270,000	-	132,000	-	3
	인형놀이 끌차	1	124,000	-	20,800	-	3
2 77.	인형 침대	1	82,000	72,000	44,800	-	3
조곱 놀이	전화기	2	25,000	32,000	25,500	-	3
소품	소꿉놀이 세트	1	95,000	39,000	39,200	-	3
		1	8,000	49,800	44,200	-	3
	모형세트	1	90,000	50,000	28,000	-	3
	세트	1	119,000	130,000	36,000	-	3
		2	64,000	48,000	38,400	-	3
		2	42,000	48,000	34,400	-	3
		2	27,000	60,000	26,400	-	3
역학	역할놀이 요리사 복 장	2	39,000	60,000	26,400	-	3
놀이 소품	역할놀이 소방관 복 장	2	68,000	60,000	52,800	-	3
7	기본류 잡이품 알이품	전가락 자작성크대 자작오븐렌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식사용 낮은 탁자 화장대  동물 봉제 인형 다인종아기인형 (3개1세트) 인형놀이 끌차 인형 침대 전화기 소품 설립들이 세트 요리도구 세트 소꿉놀이 세트 요리도구 세트 소꿉놀이 파일야채 모형세트 소꿉놀이 음식모형 세트 병원놀이 미용세트 역할놀이 의사 복장 역할놀이 요리사 복 장	전가락 6	전가락 6 지각시크대 1 179,000 자각오븐렌지 1 179,000 시기세척기 1 169,000 시가용 보은 탁자 1 235,000 화장대 1 286,000 지각시용 낮은 탁자 1 235,000 화장대 1 286,000 지각시용 나은 탁자 1 235,000 자장대 1 286,000 지각시용 나은 탁자 1 270,000 지각시트) 1세트 270,000 인형 참대 1 82,000 전화기 2 25,000 소꿉들이 생트 1 95,000 요리도구 세트 1 95,000 요리도구 세트 1 8,000 소꿉들이 과일야채 1 90,000 소꿉들이 과일야채 1 119,000 사업들이 음식모형 1 119,000 무형세트 2 64,000 미용세트 2 42,000 역할놀이 의사 복장 2 27,000 역할놀이 요리사 복 2 39,000	전가락 6	전가락 6	포크 66 6,300

~1~1	7.17	-1-7-1	<i>ኤ</i> ማኔ		 단>	7 <del>}</del>		내용
영역	종목	교재교구명	수량	A	В	С	기타	연수
		쇼핑카트	1	36,000	100,000	8 0,000	-	3
		우레탄 적목	1세트	-	600,000	-	-	5
		원목 공간적목	1세트	824,000	-	-	-	5
		유니트 적목	1세트	1,170,000	720,000	256,000	-	5
		레고빅브릭스	1세트	996,000	-	-	-	5
	블록	종이벽돌블록 (1세트*2)	2세트	45,000	55,000	48,400	-	1
	- 27	자동차 길만들기 세 트	2	104,000	150,000	292,500	-	3
		자석도형블록	2세트	-	82,500	114,800	-	3
		레고블록(중)	1세트	419,000	-	-	-	3
ᄊᆛᅱ		십자블럭	2세트	32,000	35,000	26,300	-	3
쌓기		꽃 블록	2세트	28,000	30,000	18,800	-	3
	쌓기	세계인형 모음	1	90,000	153,000	-	-	3
	놀이	미니자동차세트	1	149,000	82,500	80,000	-	3
	소품	종합동물모형모음	1	265,000	240,000	396,000	-	3
	점토 놀이	찰흙놀이 디자이너세트	1세트	95,000	35,000	41,300	-	3
	5.1	디자인 롤러세트	1	38,000	-	-	-	3
	찍기, 밀기	롤러스탬프	2세트	23,000	30,000	-	-	3
		도형그림도장	1세트	36,000	33,000	22,400	-	3
		세계민속문양비드	1세트	43,000	24,000	-	-	3
		붓 세트	1	25,000	35,000	3,200	-	3
		탬버린	3	25,000	8,000	12,600	-	3
		트라이앵글	3	13,000	8,000	6,400	-	3
		캐스터네츠	5	8,500	4,000	3,400	-	3
	리듬	봉고 드럼	3	79,000	35,000	37,500	-	3
	악기	종합쉐이커 모음	1	79,000	-	19,800	-	3
		목재 마라카스	2세트	14,000	24,000	18,000	-	3
		칼라 마라카스	1	8,000	10,000	7,500	-	3
		리듬막대칼라세트	1	9,000	12,000	9,800	<b>-</b>	3
		우드블록	3	9,500	7,000	11,300	-	3
음률	) 가락	소프라노 실로폰 (목음)	1	529,000	-	-	-	3
	악기	소프라노 실포론 (철금)	1	529,000	-	-	-	3
		키보드	1	-	싯가	-	168,410	3
	전통 악기	소고	15	7,500	8,000	6,400	-	3
	악기	북	4	110,000	145,000	97,500	-	3
		활동 스카프 세트	1	36,000	11,000	21,600	_	3
	동작활	손목 리본 세트	1	58,000	15,000	-	-	3
	동자료	리본스틱	1	42,000	25,000	-	-	3

~	2 17		ムル		·····	'}-		내용
영역	종목	교재교구명	수량	A	В	С	기타	연수
		한삼	6	-	-	2,400	-	3
		탈춤 소품	4	-	36,000	-	-	3
		동물 가면	4	-	2,400	1,920	-	3
	음악 감상	CD플레이어	1	34,000	-	-	-	5
	감상	음악테이프	4	-	-	120,000	-	3
		사진세트(연주,악기)	2	-	-	-	-	3
	영역	그림 악보	10	-	-	-	-	3
	게시물	그림이 있는 노래 가사	10	-	-	-	-	3
		자전거	3	163,000	332,000	-	-	3
		트렉터	3	352,000	-	-	-	3
		접이식 매트	2	165,000	180,000	144,000	-	3
		스폰지 블록 세트	1	2,280,000	2,480,000	976,000	-	3
		안전트램플린	1	364,000	275,000	88,000	-	5
	기구 운동	평균대	1	198,000	299,000	165,000	-	5
		고리던지기	1	69,500	77,000	31,500	-	5
		터널 통과하기 놀이	1	212,000	70,000	56,700	-	5 5 5 5 5
		컬러 유니바	1	238,500	265,000	180,000	-	5
		낙하산 놀이 (대)	1	289,000	165,000	77,000	-	5
		낙하산 놀이(소)	1	149,000	33,000	44,000	-	5
		후프 4개 세트	1세트	90,000	-	6,400	-	3
실외		탄력공세트	1세트	23,000	94,000	1,000	-	3
	공놀이	플레이볼 세트	1	192,000	45,000	-	-	3
		이동식 농구대	1	110,000	120,000	108,000	-	5
		안전 모래놀이세트	1	135,000	135,000	127,500	-	3
		트럭(큰)	2	172,000	37,000	39,200	-	
		포크레인(큰)	2	99,000	37,000	33,300	-	3
		굴삭기(큰)	2	152,000	37,000	33,300	-	3
	모래	손수레	1	29,000	-	-	-	3 5
	(물)놀	테이블/의자	1	159,000	200,000	104,000	-	5
	'	놀이집	1	289,000	480,000	384,000	-	5
		물놀이 풀장	2	-	270,000	-	-	3
		물놀이 도구세트	1	169,000	-	-	-	3
		물 모래놀이 테이블	1	254,000	378,000	311,200	-	3

〈부표 IV-3-8〉 3세 비품

							단	위: 원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よった			가		내용
	"		수량	A	В	С	기타	연수
낮잠		매트리스	15	46,000	90,000	68,000	-	5
휴식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	3
-11 -7		푹신한 깔개	1	51,500	-	32,000	-	3
		책꽂이	1	382,000	490,000	315,000	-	7
	언어	푹신한 깔개	1	215,000	-	90,000	-	3
		쿠션(긴 등받이)	1	0	-	55,800	-	3
		교구장	7	348,000	450,000	266,000	_	5
	언어/ 수조작	교구교재세팅탁자 (언어,과학,음률)	3	280,000	-	-	-	5
	/과하/	옷걸이대(역할영역)	1	192,000	450,000	-	-	5
	쌓기/ 음률/ 미술	책상	5	159,000	180,000	126,000	-	5
	음률/	의자	20	51,900	65,000	45,500	-	5
	미술	안전거울	1	196,000	48,000	28,000	-	5
		넓은 쟁반, 바구니	45	7,900	11,000	4,800	-	3
	rl) 7) rl.	이동식 칠판	1	495,000	400,000	336,000	-	5
	대집단 활동	피아노	1	-	-	510,000	-	7
	20	빔프로젝트/스크린	1	-	-	-	642,060	7
흥미 영역		이불장	1	543,000	620,000	336,000	-	5
34	수납	유아 개인사물함(6인용)	2	348,000	430,000	301,000	-	5
		유아 개인사물함(4인용)	1	-	-	-	-	5
		게시판	3	159,000	250,000	200,000	-	5
		물 세팅 탁자	1	274,000	154,000	94,500	-	5
		물통	1	-	-	75,600	-	3
		자외선살균소독기	1	285,000	297,000	246,500	-	7
		에어컨	1	-	-	-	244,990	10
	7) -1	공기정화기	1	-	-	-	224,500	7
	기타	디지털 카메라	1	-	-	-	234,450	7
		캠코더		-	-	-	286,270	7
		디지털 체온계	1	-	-	-	58,960	5
		온습도계	1	-	72,600	36,000	-	7
		시계	1	-	-	21,800	-	7
		약품상자	1	-	-	44,000	-	3

### 마. 4·5세 교재교구(20명 기준)

〈부표 IV-3-9〉 4·5세 교재교구

단위: 원

					 다	·가		내용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A	В	C	기타	연수
 휴식		큰 동물 봉제인형	2	196,000	38,000	30,400	, ,	3
	이야기	수수께끼 상자	1	-	-	-	19,900	3
	나누기 자료	언어활동사진자료세트 (사물유아용품,음식,동 물,계절)	5세트	403,000	-	72,000	-	3
		손인형(동물) 세트	1	23,000	15,900	10,400	-	3
		손인형(가족) 세트	1	67,000	72,000	57,600	-	3
		역할놀이 손인형 세트	1	272,000	199,900	159,920	-	3
	인형극 자료	다인종 학습 손인형 세트	1	265,000	170,000	136,000	-	3
		역할놀이 마스크 세트	1	74,000	40,000	7,650	-	3
		손가락 인형세트	4	45,900	49,900	39,920	-	3
		극놀이 센터	1	379,000	328,000	343,000	-	5
		융판(삼각자료판)	1	21,000	22,000	17,600	-	3
		융판자료세트	10	13,700	14,900	47,120	-	3
	이야기만	목재 마굿간	1	205,000	-	-	-	3
	이야기만 들기	동물 모음(마굿간, 애 완동물)	2세트	89,000	104,000	134,100	-	3
언어		동화 만들기 카드	1세트	139,000	99,800	-	-	3
		이야기 만들기카드	1세트	139,000	99,800	-	15,060	3
		이야기 테이프	20	-	-	290,000	11,100	3
	듣기	CD 플레이어 (녹음기 겸용)	1	34,000	-	-	59,000	5
		헤드폰	2	-	-	14,000	1	3
	책	주제관련그림책 (6권*12주제)	12	-	-	-	1	3
		기타 그림책	30	-	-	-	85,050	3
	글자	자석글자(한글)	3	174,000	19,900	21,600	-	3
	관심	자석보드판	2	36,000	28,000	37,600	-	3
	갖기	언어낱말카드(명사)	1	126,000	136,000	80,000	-	3
		언어낱말카드 (과일채소)	1	-	9,000	7,200	-	3
	쓰기	화이트 보드 (끄적거리기용)	3	20,000	20,000	17,600	-	1
		글자도장 세트	2	26,000	-	16,500	14,500	3
		쓰기학습 교구(선긋기)	1세트	-	200,000	-	-	3
	수조작						-	
수과학	퍼즐	밑그림 목재퍼즐	1세트	115,000	184,000	96,000	-	3

어서	2.0	그레그그 조리	스마	단가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A	В	С	기타	내용 연수
		하루일과 겹퍼즐	1세트	65,000	-	-	-	3
				38,000	46,000	-	-	3
		주제별 퍼즐		36,000	46,000	14,400	-	3
		(명절, 교통기관, 우주,	12개	38,000	46,000	15,300	-	3
		계절, 우리동네, 동식	12/11	36,000	46,000	-	-	3
		물)		39,000	46,000	-	-	3
				38,000	46,000	15,300	-	3
		자연과 환경퍼즐 모음	1세트	-	-	-	-	3
	43.33.43	세계의 어린이퍼즐	1	189,000	34,500	-	-	3
	일대일 대응	논리학습 게임	1	115,000	-	171,200	-	3
	규칙성	매칭게임 센터세트	1	-	-	-	-	3
	도형	패턴블록 카드 세트	1	35,000	55,000	34,400	-	3
		칠교놀이 세트	2	10,000	13,000	5,600	-	3
	순서	원인과 결과 게임	1	86,000	95,000	87,200	-	3
		다목적 저울	1	57,000	-	-	-	3
	측정	큰 모래시계 세트	1세트	162,000	8,800	19,200	-	3
		2단 밸런스 보드	1	274,000	36,000	27,000	-	3
		블록위치 게임	1	150,000	-	-	_	3
	01-51	그림매칭 목재 블록 세트	1	142,000	-	-	-	3
	위치	색깔큐브 쌓기	1	74,000	67,000	24,800	_	3
		도형 모자이크	1	79,000	-	100,800	-	3
		목재흑백 모자이크	1	294,000	-	-	-	3
		페그 수세기 판	1	99,000	-	-	-	3
		수세기 도미노게임	1	23,000	-	-	-	3
	수세기	숫자놀이 실꿰기	1세트	34,000	-	27,200	-	3
		수 학습자석 미로	1	113,000	-	96,000	-	3
		팽이놀이 숫자게임	1	75,000	-	-	-	3
		하노이탑	1	-	17,000	22,000	11,900	3
		체커 보드 게임	1	28,000	58,000	9,000	-	3
		신호등 게임	1	89,000	50,000	-	-	3
	게임	유아 체스 게임	1	21,000	-	9,000	-	3
		메모리 게임 활동 세 트	1	53,000	67,000	32,000	-	3
		시장놀이(주사위 게 임)	1	-	-	167,920	_	3
		옷입기 연습 세트	1	158,000	99,900	80,000	-	3
	소근육 옷 입기 실꿰기	1	-	16,000	27,000	-	3	
		구두 실끼우기	1세트	13,500	25,000	18,800	-	3
	과학							
	기본 자료	자석 막대 세트	1	39,000	5,400	800	-	3

~ ~ ~	2.17	7-11-7-7-7-7	入っト		 단	·가		내용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A	В	С	기타	연수
-		강력 자석모음 세트	1	49,000	-	-	-	3
		종합확대경 세트	1	24,000	22,000	25,200	-	3
		다목적 확대경	2	23,000	10,000	-	-	3
	생물 관련	식물도감 세트	1	-	-	-	27,000	3
	관련 자료	동물도감 세트	1	-	-	-	29,700	3
	자연 현상 관련자료	사진세트 (봄,여름,가을,겨울)	1	-	-	-	3,200	3
	vi) =1)	지구본	1	76,500	72,600	34,700	-	3
	세계 여러나라	세계지도 퍼즐	1	64,000	46,000	52,500	-	3
	1-101-101	우리 나라 퍼즐	1	64,000	20,000	49,000	-	3
		도마	4	-	-	5,000	5,650	5
		칼	4	-	-	-	19,010	5
		접시	6	-	-	-	3,040	5
	요리용 도구	그릇	6	-	4,000	-	9,800	5 5
		보울	4	-	3,000	-	1,100	
		냄비	2	-	-	-	20,250	5
		후라이팬	2	-	14,600	-	24,550	5
		가열기	2	-	-	-	69,850	5
		숟가락	6	-	-	-	C 200	5
		포크	6	-	-	-	6,300	5 5 5
		젓가락	6	-	-	-	8,100	5
		싱크대	1	179,000	330,000	161,000	-	5
		스토브	1	179,000	330,000	161,000	-	5 5
	기본가구	냉장고	1	185,000	380,000	245,000	-	5
	류	주방세트 찬장	1	210,000	380,000	392,000	313,000	5
		낮은 원형 책상	1	235,000	150,000	70,000	-	5
		화장대	1	286,000	330,000	217,000	-	5
		동물 봉제 인형	4	148,000	160,000	128,000	-	3
		다인종아기인형 (3개 1세트)	1세트	270,000	-	132,000	-	3
역할		다민족 친구들 인형모음	1세트	645,000	-	204,000	-	3
극별		장애우와 함께하기	1세트	63,000	-	76,800	-	3
		인형 침대	1	82,000	72,000	44,800	-	3
	소꿉놀이	전화기	2	25,000	32,000	25,500	-	3
	소품	모형계산기	1	46,000	48,000	68,000	-	3
		소꿉놀이 세트	1	95,000	39,000	39,200	-	3
		요리도구 세트	1	8,000	49,800	44,200	-	3
	:	소꿉놀이과일야채모형 세트	1	90,000	50,000	28,000	-	3

~~~	2.17	7-11-7-7-7-7	ムコト		 단		내용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A	В	С	기타	연수
		소꿉놀이 음식모형세트	1	119,000	130,000	36,000	-	3
		병원놀이	2	64,000	48,000	38,400	-	3
		미용세트	2	42,000	48,000	34,400	-	3
	역할놀이	직업의상세트(소방관, 의사, 요리사 등)	1세트	914,000	-	-	-	3
	소품	다문화 전통의상	1세트	76,000	-	-	-	3
		마트놀이(대)	1	572,000	225,500	-	-	5
		쇼핑카트	1	36,000	100,000	80,000	-	3
		소프트유니트블록	1세트 (소)	329,000	325,000	-	-	5
		원목 공간 적목	1세트	824,000	-	-	-	5
		유니트 블록 대	1세트	1,170,000	720,000	256,000	-	5
	블록	빅블록 (구조물시리즈)	2세트	165,000	180,000	135,000	-	5
		종이벽돌블록 (1세트*2)	2세트	45,000	55,000	48,400	-	1
	27	십자블럭	2세트	32,000	35,000	26,300	-	3
		네이쳐 블록	3세트	67,000	-	-	107,100	5
쌓기		길만들기시티 블록	2세트	272,000	139,000	-	-	3
0 1		대형 볼트 블록	1세트	262,000	85,000	32,000	-	3
		레고블록(중)	2세트	265,000	-	-	70,600	3
		지오콘(교실용)	1세트	-	-	-	90,680	3
		자석블록	2세트	-	82,500	114,800	-	3
	쌓기 놀이 소품	세계인형모음	1	90,000	153,000	-	-	3
		우리 이웃 역할놀이 세트	1	112,000	144,000	115,200	-	3
		미니자동차세트	1	149,000	82,500	80,000	-	3
	7-6	종합동물모형모음	1	135,000	190,000	396,000	-	3
		기차 모형 세트	1	-	18,800	103,500	-	3
	점토	찰흙놀이디자이너세트	1세트	95,000	35,000	41,300	-	3
	놀이	디자인 롤러세트	1	38,000	-	-	-	3
미술	77]]	롤러스탬프	2세트	23,000	30,000	-	17,700	3
기권	찍기, 밀기	도형그림 도장	1세트	36,000	33,000	22,400	-	3
	E- 1	세계 민속문양비드	1세트	43,000	24,000	-	-	3
	그리기	스탠드 이젤	1	392,000	128,000	128,800	-	3
	1	탬버린	4	25,000	8,000	12,600	-	3
	1	트라이앵글	4	13,000	8,000	6,400	-	3
		캐스터네츠	6	8,500	4,000	3,400	-	3
	리드	봉고 드럼	2	79,000	35,000	37,500	-	3
음률	리듬 악기	종합쉐이커 모음	1	79,000	-	19,800	-	3
		목재 마라카스	2세트	14,000	24,000	18,000	-	3
		리듬막대칼라세트	1	9,000	12,000	9,800	_	3
		우드블록	4	9,500	7,000	11,300	-	3

		_			<u></u>	·가		내용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A	В	C	기타	연수
-		레인스틱	4	34,000	_		-	3
		소프라노 실로폰(목음)	1	529,000	-		_	3
	가락	소프라노 실포론(철금)	1	529,000	-		-	3
	가락 악기	멀티옥타브글로켄슈필	1	280,000	240,000	187,500	-	3
		키보드	1	-	실가		223,750	3
		소고	8	7,500	8,000	6,400	-	3
		북	4	110,000	145,000	97,500	-	3
	전통 악기	장구	4	85,000	140,000	713,000	-	3
	7/1	꽹과리	1	96,000	95,000	71,300	-	5
		징	1	215,000	260,000	195,000	-	5
		활동 스카프세트	1	36,000	11,000	21,600	-	3
	동작활동 자료	손목 리본세트	1	58,000	15,000	-	-	3
		리본스틱	1	42,000	25,000	-	-	3
		한삼	6	-	-	2,400	-	3
		탈춤 소품	4	-	36,000	-	-	3
		동물 가면	4	-	2,400	1,920	-	3
	음악 감상	CD플레이어	1	34,000	-	-	-	5
	감상	음악테이프	4	-	-	120,000	-	3
	~	사진세트(연주,악기)	2	-	-	-	-	3
	영역 게시물	그림 악보	10	-	-	-	-	3
	711.15	그림 있는 노래가사	10	-	-	-	-	3
		자전거(3인승)	2 2	826,000	689,000	-	-	3
		짐수레 자전거		253,000	-	-	-	3
		안전세발 스쿠터	2	239,000	-	-	-	3
		접이식 매트	2	165,000	180,000	144,000	-	3
		스폰지 블록 세트	1	2,280,000	2,480,000	976,000	-	3
		다변형 평균대	1	465,000	348,000	-	-	5
	フルユ	구름사다리 구성놀이	1	482,000	355,000	-	-	5
	기구 운동	위플레이 시스템	1	492,000	475,000	-	538,470	5
		링토스게임	1	135,000	18,000	-	-	5
		터널 통과하기 놀이	2	212,000	70,000	56,700	-	5
실외		컬러 유니바	1	238,500	265,000	180,000	-	5
_ ,		낙하산 놀이 (대)	1	289,000	165,000	77,000	-	5
		바구니 캐치볼 세트	2	59,000	-	-	116,380	3
		후프 4개 세트	1세트	90,000	-	6,400	-	3
		줄넘기	6	-	-	3,100	2,600	2
		탄력공세트	1세트	23,000	94,000	1,000	_	3
	공놀이	플레이볼 세트	1	192,000	45,000	-	-	3
		이동식 농구대	1	110,000	120,000	108,000	-	5
		안전모래놀이세트	1	135,000	135,000	127,500	-	3
	모래(물) 놀이	큰 모래놀이 도구모음	2세트	108,000	35,000	26,300	-	3
	늘이	손수레	1세트	29,000	-	-	138,570	3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내용		
3 =	94	교세교기 중류	수량	A	В	С	기타	연수
		피크닉 테이블	1	232,000	237,000	-	-	5
		놀이집	1	289,000	480,000	384,000	-	5
		유아용 물놀이 풀장	2	-	270,000	-	248,000	3
		물놀이 도구 세트	1	169,000	-	-	88,350	3

〈부표 IV-3-10〉 4·5세 비품

							단위	<u> 일: 원</u>
영역	종목	교재교구 종류	수량		_	가		내용
	0 1			A	В	С	기타	연수
휴식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	3
		푹신한 깔개	1	51,500	-	32,000	-	3
		책꽂이	1	382,000	490,000	315,000	-	7
	언어	푹신한 깔개	1	215,000	-	90,000	-	3
		쿠션(긴 등받이)	1	-	-	55,800	-	3
		교구장	7	348,000	450,000	266,000	-	5
	이시스	교구교재세팅탁자(언 어,과학,음률)	3	280,000	-	-	-	5
	언어/수 조작/과	옷걸이대(역할영역)	1	192,000	450,000	-	-	5
	학/쌓기/	책상	5	159,000	180,000	126,000	-	5
	음률/미	의자	20	51,900	65,000	45,500	-	5
	술	유아용 컴퓨터	1	-	-	-	432,370	5
		안전거울	1	196,000	48,000	28,000	-	5
		넓은 쟁반, 바구니	60	7,900	11,000	4,800	-	3
	대집단	이동식 칠판	1	495,000	400,000	336,000	-	5
		피아노	1	-	-	510,000	-	7
		빔프로젝트/스크린	1	-	-	-	642,060	7
÷-1	활동	텔레비전 받침대		293,000	-	406,000	-	7
<u>흥</u> 미 영역		텔레비전,DVD,VTR콤 보		-	-	-	593,210	7
		이불장	1	543,000	620,000	336,000	-	5
	수납	유아개인사물함(6인용	3	348,000	430,000	301,000	-	5
		유아개인사물함(4인용)	1	245,000	300,000	-	-	5
		게시판	4	159,000	250,000	200,000	-	3
		먹는 물 세팅 탁자	1	274,000	154,000	94,500	-	5
		물통	1	-	-	75,600	-	3
		자외선살균소독기	1	285,000	297,000	246,500	-	7
		에어컨	1	-	-	-	244,990	10
	الحاد	공기정화기	1	-	-	-	224,500	7
	기타	디지털 카메라	1	-	-	-	234,450	7
		캠코더		-	-	-	286,270	7
		디지털 체온계	1	-	-	-	58,960	5
		온습도계	1	-	72,600	36,000	-	7
		시계	1	-	-	21,800	-	7
		약품상자	1	-	-	44,000	-	3

#### 〈부표 IV-3-11〉 연령별 소모품

				〈무표	∃ IV-3	3-11>	연령말	소모	苦			
							1					단위: 원
-	구분	0/		1/		구분	2/	.,	3,		4~!	
		수량 2세트	단가	수량 4세트	단가	크레	수량 6세트	단가	수량 10세트	단가	수량 12세트	단가
	무독성 크레용	2세드   (18색)	1460	(24색)	1,960	크데 파스	(48색)	3,960	(24색)	1,960	(36색)	3,160
	색연필	-		4세트	1,700	색연필	6세트	1,700	8세트	1,700	10세트	1,700
						사인펜	6세트	2,150	10세트	2,150	10세트	2,150
						마카펜			20개	4,400	30개	4,400
핔						색분필	4통	780	5통	780	10통	1,050
필기						연필 (12자 루)			-		10세트	1,500
						지우개	-		-		10개	140
						큰 붓	10개	3,850	5개	3,850	5개	3,850
						중간붓			5개	2,400	5개	2,400
						작은붓	_				5개	1,700
물 감							10세트	4,700	5세트	4,700	10세트	4,700
召						먹물					5통	420
	도화지 (100장) 색도화	2세트	3,900	4세트	3,900	도화지 (100장) 색	7세트	3,900	10	3,900	8세트	3,900
	지 (100장)	1세트	3,500	1세트	3,500	도화지 (100장)	2세트	3,900	3	3,500	5세트	3,500
좆	색종이 (대형	20개	800	25개	800	색종이 (대형)	33	800	50	800	2상자	800
종 이	전지	30장	150	50장	150	전지	80장	150	100장	200	100장	200
						골판지			20장	560	30장	560
						한지			30장	228	50장	228
						두꺼운 도화지					300장	50
						복사지 (A4)					6박스	18,400
-71	밀가루 점토	18개	5,900	70개	5,900	밀가루 점토	110	5,900	70개	5,900	70개	5,900
점 토						찰흙			100개	190	300개	190
						종이 점토			100개	500	200개	500
						풀	30개	200	60개	200	100개	200
пL						셀로판 테이프	30개	330	15개	330	100개	330
만들기도구						안전 가위	10개	460	15개	460	20개	460
- - - - - - -						핑킹 가위	-	-	-		5개	850
						펀치	-	-	1개	4,400	3개	4,400

	ユㅂ	0/	세	1/	세	구분	2	세	3/	세	4~5	<u>5</u> 세
구분		수량	단가	수량	단가	丁七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고무줄			1통	1,180	4통	7,000
						뿅뿅이			10봉지	3,320	15봉지	3,320
11)						스팡클			10봉지	1,100	10봉지	1,100
만 들 기						수수깡			20봉지	<b>42</b> 0	30봉지	420
기						모루			10개	800	20개	800
잭						솜			10봉지	1,900	10봉지	1,900
료 류						리본끈			5개	2,500	5개	2,500
11						백업			5개	500	10개	500
						빨대			10봉지	1,190	10봉지	1,190
기 타	스티커			10세트	1,000	스티커	20세트	760				

자료: 네이버 홈페이지(2015년 11월 5일 검색).

#### 부록 3.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_	조사표	E 번호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 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정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원장님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정운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연락처: 이동하 연구원(02-398-7760, dongha04@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주소	( )시·도 (	)구.	군 (	)동읍면
어린이집 명		전화번호		
시도번호		지역번호	① 서울 ③ 시도의 동	② 수도권(인천,경기) ④ 시도의 읍면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 어린이집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	--------

	71		0#0		해당됩니까?
١.	71	어딘이십의	T 25	어니어	애당됩니까?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어린이집

④ 민간개인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2. 귀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 : ( )명 현	현원 : ( )명
-------------	-----------

#### I. 어린이집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1.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 중 귀 어린이집이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 에 ✔표 해 주십시오.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2가지만 1,2순위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현재 받고 있지 않는 지원이더라도 도움된다고 생각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1-1. 인건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구분	71 01		도움정	[도		어린이집 _운영에		
, .	지원 여부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운영에 도움 되는 지원		
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 취사부 인건비								
3) 장기근속수당								
4) 복리후생비								
5) 보육교사 교통비								
6) 평가인증 수당								
7) 담임수당								
8) 농어촌 특별근수수당								
9) 기타(무엇: )								
10) 기타(무엇: )								

1-2. 사업운영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구부	) ol		도움정	[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지원		
1 42	지원 여부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도움되는 지원		
1) 영 유아 급간식비								
2)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								
3) 보육교사 중식비								
4) 우유 급식비								
5) 교재교구비								
6) 기타(무엇: )								
7) 기타(무엇: )								

	1-3. 관리운영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구분	-z) o)		도움종	]도		어린이집 운영에 		
	,	지원 여부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도움되는 지원		
	1) 안전공제 가입비								
	2) 배상보험료								
	3) 공기질관리비								
	4)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5) 소독방제비								
	6)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								
	7) 냉난방비								
	8) 차량운영비								
	9) 기타(무엇: )								
	10) 기타(무엇: )								
			·						
	1-4. 시설비		-1.0						
	- N		현재	받고 있는 지역 도움정			어린이집 운영에		
	구분	지원 여부	전혀 도움되지	도움되지	대체로	매우 도움됨	도움되는 지원		
	1) 기서케비스비		않음	않음	도움됨	111	710		
	1) 시설개보수비								
	2) 비품수선비 3) 기타(무엇: )								
	3) 기타(무엇: ) 4) 기타(무엇: )								
	4) 기대(千久: )			# 1					
ı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	거비 관련 3	질문인니다.						
_									
1.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이외 어린		,				도를 지급		
	합니까? 2015년 기준 최저임금( ※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각종				으로 응답해	수십시오.			
	① 최저임금보다 낮다	(2) 최저임금 ·		•	최저임금보디	l Ŀrl			
	W MV 88 74 X4	@ 4/1 B B -	T	<b></b>	퍼시 요요포의	<u>п</u> Ч			
*	최저임금 : 55,800원 * 209/	시간(월) = 1	,166,220원						
2.	귀 어린이집은 기본급 외에 보	유교사에게 저	지급하는 비용 5	도는 수당은	무엇입니까	? 지급하는 5	항목 모두		
	✔표 해 주십시오(※ 보육교사	에게 직접 지	급하는 수당은	제외합니디	·.)				
	□ ① 처우개선비	□ ② 근무	환경개선비		③ 급식비				
	□ ④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 ⑤ 연구			⑥ 정근수당				
	□ ⑦ 관리업무수당	□ ⑧ 명절			⑨ 가족수당				
	□ ⑩ 자녀학자금	□ ① 특별			① 기타(	)			
	□ ③ 기타( )	□ ⑭ 기타	.(	)					
3.	귀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시간의	l 근무를 하는	- 교사가 있습니	까?					
① 시간외 근무 교사 없음 ② 일부 교사가 시간외 근무함									
	③ 모든 교사가 시간 외 근무함								

2.

3.

	3-1. (시간외 근무 보육교사가 있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① 해당교사에게 시간을 계산해서(문 3-1-1로) ② 시간외 근무 있으나 미지급 ② 보든 교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문 3-1-2로) ④ 호봉,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3-1-1.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시간당 단가는 얼마를 지급 하십니까? ① 급여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 ② 일정액(얼마: 원)을 동일하게 지급
	3-1-2. (모든 교사에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월 얼마를 지급 하십니까? $^{2}$ ( ) $^{1}$
I	I. 어린이집 교재교구 관련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를 주로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교재교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사용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1개 선택)
	① 교재교구 전문업체(예: 보육사, 국민서관 등) ② 유아교재교구 온라인 업체(키드키드, 아이꿈터 등) ④ 일반 온라인 쇼핑몰(G마켓,11번가,옥션,위메프 등) ④ 기타( )
	1-1. (교재교구 전문업체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경우) 귀하는 교재교구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지역 대리 점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에 상관없이 제품 가격이 동일하다 ② 일부 제품은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③ 대부분의 제품이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 ④ 기타( )
II	Ⅱ. 어린이집 급간식비 관련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은 공동구매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합니까 <b>?</b> ① 구매학(☞ 문항 1·1로) ② 구매하지 않음
	1-1. (① 공동구매 이용하는 경우) 귀 어린이집이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는 식자재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다음 보기에서 찾아 ✔표 해 주십시오.(※ 한 품목에서 일부만 공동구매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입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쌀 등 곡식 □ ② 육류 □ ③ 생선, 어패류 □ ④ 채소 □ ⑤ 과일 □ ⑥ 과자류 □ ⑦ 유제품(우유, 요커트 등) □ ⑧ 기타( 무엇: )
	1-2. 귀 어린이집이 구입하는 식자재 중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린이집에서 지출하는 총 식재료 구입비 중 공동구매로 구입하는 식자재비의 비중을 적어 주십시오.
2.	지 어린이집이 구입하는 식자재 중 지역 농축산물(쌀, 육류, 생선, 채소 등) 구입 시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받는다면 어떤 식자재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 주십시오.  □ ① 쌀 등 곡식 □ ② 유류 □ ③ 유기농 채소 □ ④ 생선 및 어패류 □ ⑤ 과일 □ ⑥ 유제품(우유, 요거트 등) □ ⑦ 기타( ) □ ⑧ 기타( )
ľ	V. 어린이집 관리운영비 관련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은 난방연료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 주로 사용하는 난방연료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도시가스       ② LPG가스       ③ 등유       ④ 기타(       )
2.	귀 어린이집은 난방비로 어느 정도를 지출합니까? (※ 난방을 하지 않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지출액을 적어 주십시오.) ( ) <sup>천원</sup>

3.	귀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은 농어촌 ① 예	를 특례 적용 지역 ② 아니오				
4.	귀 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합니까 균 연료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운영한다면 운	은영 차량은 몇 디	대이고, 평일	하루 평균 운행거리와 월	실 평
	1) 운영여부		2) 차량수		4) 월 평균 총 연료비	
	① 운행(☞문항 2)로) ② 운행하	지 않음		대		천원
٧	'.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 관	련 질문입니디	<b>ŀ.</b>			
	귀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20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① 있음(얼마: 만원					코수를
	1-1. (① 부담하는 경우) 귀 어린이 ① 냉난방설비(보일러, 배관, 온수 ② 마감재(페인트, 벽지, 장판, 타 ③ 소방 및 가스안전설비(가스경 ④ 급배수설비(수도 배관, 양변기 ⑤ 채광설비(방충망, 문, 창문 등) ⑥ 소모품(현광등, 백열등, 소화기 ⑦ 기타(	-기 등) 일, 방수, 보도블록 보기, 화재경보기, , 세면기 등)	· - - - - - - - - - - - - - - - - - - -	개보수 항목(	은 무엇입니까? (1가지 선	<u>년</u> 택)
	다음 항목 중 귀 어린이집에서 매 시오.	릴 렌탈비 또는	월정료를 지불하	는 항목은 또	무엇입니까? 모두 ✓표 혀	내 주십
	□ ① 공기청정기	□ ② 정수기			제습기	
	□ ④ 보안시스템	□ ⑤ 수족관		□ 6	방역 및 소독	
	□ ⑦ 음식물쓰레기 처리	□ ⑧ 복사기		□ 9	프린터	
	□ ⑩ 기타( )					
	2-1. (문항 2에서 1가지라도 응답함	. ,	린이집에서 지출	하는 렌탈비	또는 월정료는 어느 정!	도입
	니까? 월 총 지출액을 적어	수십시오.				
	( )원					
ı	I. 원장 일반 사항					
1.	.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D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	<i>ग</i>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2, 3	년제) 졸업	③ 4년제 대	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 귀하의 어린이집 총 경력은 어. (※ 2015년 9월 기준으로 개월			오.)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	총	개월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개월			
	현재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개월			
	♣ 끝	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		

#### 연구보고 2015-29

####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5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 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